

서울역사
중점연구 02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 연구

서울역사편찬원

발간사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나 학살, 엄청난 재난 · 재해가 벌어졌던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문화가 융성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 자랑스러운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이민족의 압박과 지배를 받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랑스러운 시기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때도 모두 우리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다크 투어리즘을 하는 이유처럼, 다시는 부끄러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시의 역사를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 연구≫도 이러한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일제강점기이지만 이 시기의 역사적 실상을 제대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학습해야만 다시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서울 역사의 취약 분야'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책자 형식으로 발간하는 '서울역사 중점연구총서 발간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 지원한 두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조선시대 한성판윤 연구≫(서울역사 중점연구총서 제1권)로 이미 출간되었고, 두 번째 결과물인 이 책이 서울역사 중점연구총서 제2권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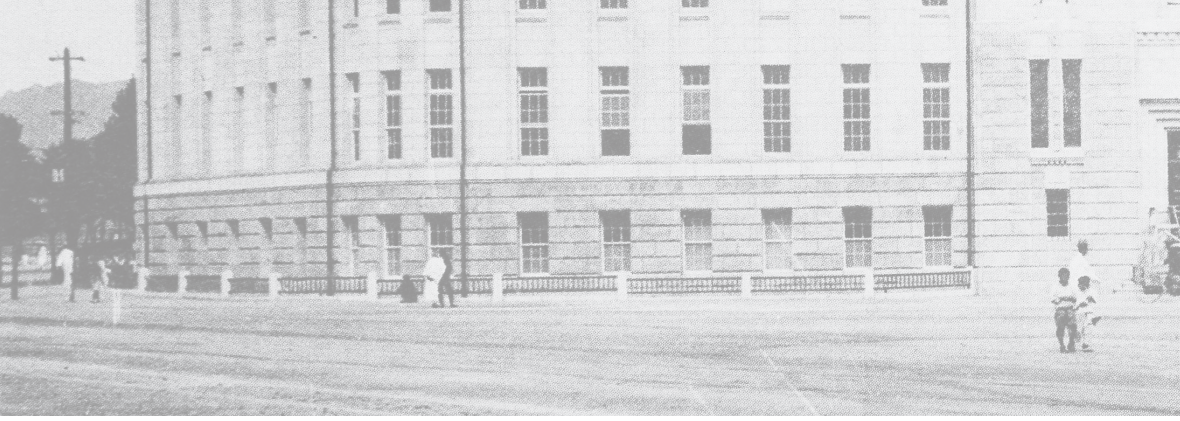
이 책은 크게 총설, 경성부윤을 다룬 제1부, 경성부협의회 · 경성부회를 다룬 제2부,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이른바 '문화통치'의 실시와 경성부윤의 칙임관 승격을 기준으로, 경성부윤의 이력과 그들이 수행한 주요 정책을 1910년대, 1920~1933년, 1933~1945년

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제2부는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1931~1939년), 전시체제기(1939~1945년)의 네 시기로 나눈 다음 각 시기마다 경성부협의회 또는 경성부회의 인원 구성과 역할의 변화 과정 및 협의회 · 부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 각 부의 앞에 총론 격으로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와 〈일제하 경성부(협의)회의 위상 변화〉라는 글을 배치하여 각 부의 주요 내용을 개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첨부한 5개의 부록은 일제강점기에 재직하였던 총 18명의 경성부윤, 경성부윤을 보좌했던 109명의 경성부 고등관, 경성부 행정을 감독했던 17명의 경기도지사, 그리고 217명에 달하는 경성부협의회 · 경성부회의 임명자 및 당선자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연구에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개별 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모쪼록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소략했던 경성부윤과 경성부(협의)회 연구가 활성화되어 서울 역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자 선생님, 서울역사편찬원의 연구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따가운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2017. 10.

서울역사편찬원장



목차

발간사 002

총설/ 염복규 008

제1부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제1장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 염복규

1. 머리말 014
2. 1910~1932년 병합과 경성부윤의 위상 015
3. 1932~1945년 부윤의 칙임관 승격과 '특별부제' 논의 022
4. 맺음말 031

제2장 1910년대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염복규

1. 머리말 036
2. 1910년대 경성부윤 및 경성부 고등관의 추이 036
3. 1910년대 경성부윤의 주요 정책 047
4. 맺음말 055

제3장 1920~1933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김대호

1. 머리말 058
2. 1920~1933년 경성부윤 및 경성부 고등관의 추이 059
3. 1920~1933년 경성부윤의 주요정책 082
4. 맺음말 099



제4장 1933~1945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이정선

1. 머리말 104
2. 1933~1945년 경성부윤 및 경성부 고등관의 추이 105
3. 1933~1945년 경성부윤의 주요정책 127
4. 맺음말 – 해방 이후 140

제2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제1장 일제하 경성부(협의)회의 위상 변화/ 김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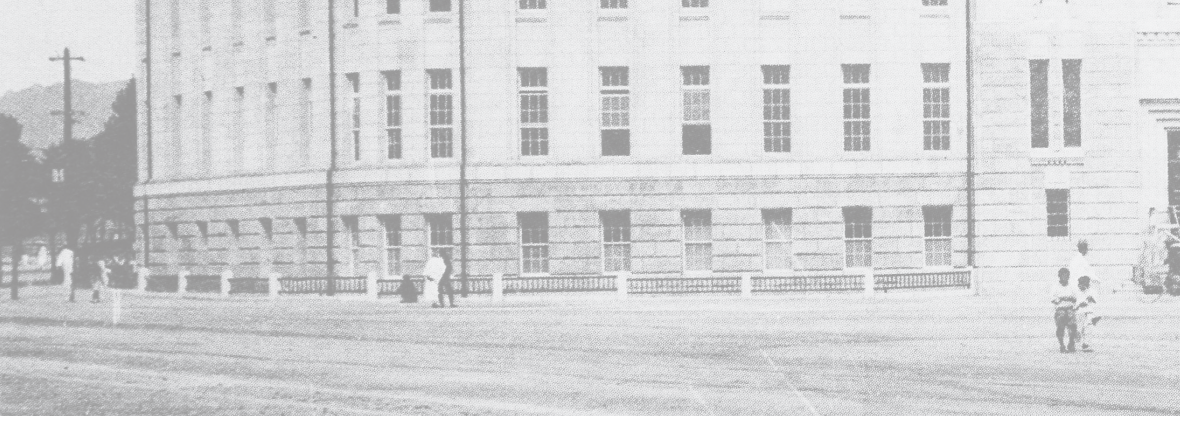
1.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46
2. 1920년대 선거에 의한 경성부협의회 조직 149
3. 1930년대 의결기관 경성부회로의 변화 151
4. 전시체제기 경성부회의 '추천선거제' 153

제2장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김제정

1. 머리말 158
2.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 158
3.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활동 173
4. 맺음말 181

제3장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최인영

1. 머리말 184
2.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 185
3.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활동 197
4. 맺음말 216



제4장 1920년대 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전영욱

1. 머리말 222
2. 1920년대 후반 경성부협의회의 성립 223
3. 1920년대 후반 경성부협의회의 주요 활동 245
4. 맺음말 273

제5장 1930년대(1931~1939년) 경성부회의 구성과 활동/ 고태우

1. 머리말 278
2. 1930년대 경성부회 선거와 당선자 현황 279
3. 1930년대 경성부회의 회의 추이와 주요 안건 305
4. 맺음말 337

제6장 전시체제기(1939~1945년) 경성부회의 구성과 활동/ 양지혜

1. 머리말 344
2. 전시체제기 경성부회 선거와 당선자 현황 345
3. 전시체제기 경성부회의 회의 추이와 주요 관련사건 358
4. 맺음말 397



부 록

부록 1–1: 경성부윤(1910~1945년) 419

부록 1–2: 경성부 고등관(1910~1945년) 429

부록 1–3: 경기도지사(1910~1945년) 455

부록 2–1: 경성부(협의)회 회기별 임명 · 당선자 현황 463

부록 2–2: 경성부(협의)회 의원의 주요 경력 471

찾아보기 519

총설

염복규(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이 책은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행정장관인 경성부윤과 지방의회격인 경성부(협의)회의 변화를 총괄하여 정리한 것으로 경성부윤 4편, 경성부(협의)회 6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은 일제강점기 지방행정제도의 특성상 행정장관인 부윤의 지위가 현저히 낮은데 반해 오히려 지방의회격인 부(협의)회의 경우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보인 사정에 기초한 것이다. 이하 이 책의 전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성부윤 편은 총론격인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 및 〈1910년대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1920~1933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1933~1945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등 4편으로 구성했다.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에서는 식민지화에 따라 조선시대 한성판윤에 비해 근본적으로 낮아진 경성부윤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일제하 경성부는 공식적으로 제국 일본의 '외지'인 식민지 조선의 한 지방인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에 불과했다. 따라서 경성부윤도 주임관급의 일개 지방 행정관일 뿐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경성부를 실질적으로는 식민지 '수도'로 취급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경성부윤의 위상도 다른 부윤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이런 특수성은 1932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경성부윤이 도지사급인 칙임관으로 승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910년대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에서는 병합에서 3·1운동에 이르는 동안 3명의 부윤과 부윤 휘하에서 행정 실무를 총괄한 고등관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식민지 행정체계가 아직 자리 잡히기 전이어서 경성부의 행정 권한이 보잘 것 없었다. 또 부윤 역임자의 사회적 위상도 낮았고 고위관료인 고등관의 정원도 매우 적었다. 따라서 주요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도 특기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1920~1933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에서는 3·1운동 이후 1932년 경성부윤이 칙임관으로 승격되기 전까지의 7명의 부윤과 고등관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이른바 '문화통치기'의 다양한 사회 정책이 실험되었던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본격적인 도시화와 도시 인구 증가가 시작된 시기이다. 부윤의 주요 정책을 보면 위생 문제, 도시계획, 1930년대 초 자력갱생운동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3~1945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에서는 부윤의 칙임관 승격 이후 1945년 8·15광복에 이르는 동안의 8명의 부윤과 고등관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경성부윤의 지위가 칙임관으로 승격함에 따라 다른 부와 공식적으로 구별되어 도지사급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 관제에도 다른 부보다 한 단계 높은 부장(部長) 지위가 도입되는 등 경성부의 전반적 지위는 다른 부보다 높은 도급이 되었다. 이 시기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제의 침략 전쟁 수행이 격화되는 시기로서 부윤의 주요 정책도 전시 총동원 사무, 1945년의 도시 소개 등이 눈에 띈다. 한편 행정구역 확장과 시가지계획이 본격 시행되기도 했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 등 도시 문제의 해결책이 크게 대두하기도 했다.

경성부회 편은 총론격인 〈일제하 경성부(협의)회의 위상 변화〉와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1920년대 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1930년대(1931~1939) 경성부회의 구성과 활동〉, 〈전시체제기(1939~1945) 경성부회의 구성과 활동〉 등 6편으로 구성했다.

〈일제하 경성부(협의)회의 위상 변화〉에서는 경성부(협의)회의 인원 구성과 역할의 변화 과정을 네 시기로 나누어 정리했다. 병합 직후 거류민단을 해체당

한 일본인 측의 요구에 의해 경성부협의회가 부윤의 자문기구로 구성되었다. 협의회원은 일본인, 친일 조선인 유지 가운데 도장관(도지사)이 임명했다. 이는 3·1운동 이후 (제한)선거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의 위상은 계속되었다. 1930년대 지방제도 개정으로 경성부협의회는 의결기구인 경성부회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부회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등 한계가 많았다. 게다가 1940년대 초에는 그나마 선거제도도 총독부 측에서 미리 추천모체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추천선거제로 바뀌어 행정청을 견제하는 지방의회로서 경성부회의 역할은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다.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에서는 병합에서 3·1운동에 이르는 동안의 임명제 협의회원의 면면과 주요 자문 안건을 살폈다. 이 시기 협의회원은 '명예직'이나 다름 없어 주로 전직 관료와 실업계 출신의 '거물급' 인사가 많았다. 자문 안건은 경성부의 예산·조세·재정 문제 등이 대부분으로 당시 협의회원들이 '납세자의 대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단면을 보여준다.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에서는 3·1운동 이후 지방제도 개정으로 부협의회 구성이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전환한 초기의 실상을 살폈다. 처음에는 3·1운동 직후의 고양된 분위기에서 조선인의 선거 참여가 저조했으나, 점차 선거 참여 열기가 고조됨을 지적한 점이 이채롭다. 이 시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총독부에서 관리하던 상수도의 이관 문제, 경성부청사 신축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1920년대 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에서는 협의회원 선거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시기의 실상을 살폈다. 이 시기에는 협의회원에 여러 차례 당선된 유경험자가 증가하면서 그 활동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부협의회라는 (의사)공론장을 무대로 형성된 '유지 집단'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낸다. 이 시기의 주요 안건도 매우 다양하나 공익질옥(公益質屋)의 설치가 크게 논의되었으며, 1929년 조선박람회 개최 준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30년대(1931~1939) 경성부회의 구성과 활동〉에서는 지방제도 개정으로

자문기구인 부협의회가 의결기구인 부회로 개편된 초기의 실상을 살폈다. 부회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의원직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졌으며 점차 선거 열기도 과열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의원 당선자 중 변호사, 의사 등 근대적 전문직 출신이 증가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시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경성전기 사업(전기, 전차, 가스)의 부영화 문제, 청계천 개수 문제 등이 보인다. 이런 문제를 통해 기존의 민족별 대립 구도에 더하여 경성부 내의 지역별 대립 구도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시체제기(1939~1945) 경성부회의 구성과 활동〉에서는 일제 말기 추천선거제의 도입으로 부회의원 선거제도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가는 실상을 살폈다. 이에 추천선거제가 시행된 1943년 선거에서는 기존의 부회의원 유경험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연소한 새로운 세대의 '신진 친일 유력자'가 부회의원으로 다수 진입했다. 이 시기의 주요 안건은 시대적 특징이 크게 반영되어 창씨개명 문제, 각종 친일협력단체 참여 문제, 시국 강연 및 헌납 문제, 부정조사회의 설립 문제 등이 보인다. 또 이 시기 부회의원들은 연배상 광복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의 행적이 보인다. 이를 조사하여 광복 전후 역사상의 연속과 단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대해 덧붙혀 둔다. 경성부윤 편에서는 총 18명의 경성부윤 역임자의 이력을 정리한 〈부록1-1: 경성부윤(1910~1945)〉, 총 109명의 경성부 고등관 역임자의 이력을 정리한 〈부록1-2: 경성부 고등관(1910~1945)〉, 경성부 행정의 직접 감독관인 경기도지사 역임자 총 17명의 이력을 정리한 〈부록1-3: 경기도지사(1910~1945)〉를 수록했다. 경성부회 편에서는 1914~1943년 경성부(협의)회 임명· 당선자 217명의 의원 역임 현황을 정리한 〈부록2-1: 경성부(협의)회 회기별 임명· 당선자 현황〉, 이들의 기초 이력을 정리한 〈부록2-2: 경성부(협의)회 의원 주요 경력〉을 수록했다. 부록을 통해서도 일제강점기 경성부 행정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한편 경성부를 근거로 활동한 일본인, 친일 조선인 유력자 집단의 윤곽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1부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제1장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

염복규(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1. 머리말
2. 1910~1932년 병합과 경성부윤의 위상
3. 1932~1945년 부윤의 칙임관 승격과 '특별부제' 논의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수도 한성부(漢城府)는 단지 지방 행정기구가 아니었다. 중앙의 육조와 동격인 정2품의 관서로서 수도 행정은 물론 전국의 호적 관리와 소송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였다. 이런 위상은 갑오개혁 이후 변화했다. 1896년 8월 이래 한성부는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한성부 구역 내의 행정만을 관장하는 기구로 격이 낮아졌다. 명실공히 지방관서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한성부윤은 여전히 칙임관으로서 도 관찰사와 동격이었으며, 지방관을 열거할 때는 오히려 관찰사에 우선했다. '수도 행정의 장관'으로서 '특별한' 지위는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10년 10월 1일 병합과 더불어 한성부가 공식적으로 제국 일본의 '외지'인 식민지 조선의 한 지방인 경기도 도청 소재지 경성부로 격하되면서 부윤의 지위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한편 행정적 위상의 변화와 더불어 1913년 전국 행정구획 정비로 경성부의 관할 구역도 이전의 '도성 내 + 성저십리(城底十里)'에서 '도성 내 + 용산'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후 경성부의 직제는 대체로 '작은 경성부'에서 '큰 경성부'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쳤다.[1] 이것은 지속적인 경성부의 도시적 발전과 이를 반영한 행정적 변화(1936년 행정구역 확장)에 발맞춘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2]를 기반으로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 및 부윤을 제외한 경성부 고위관료로서 고등관의 변화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이런 변화를 둘러싼 몇 가지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 및 그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시기는 경성

1) '작은 경성부', '큰 경성부'는 최근 서현주가 사용한 용어이다(서현주, 〈일제하 경성부 행정조직과 운영의 식민지성〉 ≪향토서울≫ 86, 2014).

2) 경성부, ≪경성부사≫ 1~3, 1934~1941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600년사≫ 1~6, 1977~1996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행정사≫, 1997 ; 원영환, 〈京城府研究〉 ≪향토서울≫ 38, 1980 ; 서현주, 앞의 논문, 2014.

부윤의 관등이 주임관에서 칙임관[3]으로 승격하는 1932년을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누었다. 부윤의 칙임관 승격을 기점으로 경성부 자체의 공식적 위상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2. 1910~1932년 병합과 경성부윤의 위상

병합 당시 경성부에는 주임관급 부윤 외에 고등관으로서 부사무관(府事務官)과 부통역관(府通譯官)이 설치되었다. 부윤의 위상은 1932년 '경성부윤 칙임관제'가 시행될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병합과 동시에 제정된 최초의 지방관관제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각 부군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부윤 또는 군수 주임 (중략) 부에 사무관 및 통역관을 둘 수 있다. 부사무관 및 부통역관은 주임으로 한다. /제19조 각 부를 통틀어 사무관 및 통역관은 전임 4명 (중략) / 제21조 부윤 또는 군수는 도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여 처리[掌理]하고 부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부사무관은 부윤의 명을 받아 府務를 관장한다. 부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통역을 관장한다. / 제23조 각 도 및 각 부군에 參事를 둘 수 있다. 참사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참사는 도, 부군 관할 내에 거주하고 학식, 명망이 있는 자에서 취하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이를 명한다. / 제24조 참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도장관 또는 부윤,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참사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다.[4]

먼저 관제상 경성부윤의 지위가 과거 한성부윤에 비해 매우 보잘 것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성부윤은 다른 부윤과 동급일 뿐 아니라 군수와도 동급으

3) 일제하 관료 체계는 먼저 크게 고등관과 판임관으로 나누어지며, 고등관은 다시 칙임관(고등관 1, 2등)과 주임관(고등관 3~9등)으로 나누어진다. 칙임관 중 일부(천황이 임명하는 자)는 친임관이라고 불렸다.

4) 칙령 제357호, 1910.9.30.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9월 30일.

로 원칙상 주임관급의 누구라도 부임할 수 있는 지위가 되었다.[5] 부윤 외에 부 행정을 총괄하는 고등관으로는 부사무관과 부통역관이 각 1명씩 부임했다.[6] 그런데 1912년 3월 지방관관제 개정에서 이것이 폐지되어 경성부윤 외에 고등관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7] 경성부 고등관은 1914년 6월 지방관관제 개정으로 부사무관이 다시 부활했으며,[8] 1918년 4월 지방관관제 개정에서는 기술 분야의 고등관으로 부기사(府技師)가 신설되었다.[9]

이 시기 경성부 직제를 보면 1914년 5월 현재 경성부에는 부윤 아래에 서무, 내무, 재무의 3계를 두었다. 서무계는 '부윤 관방(官方; 직할)'이었으며, 내무와 재무계는 부사무관이 총괄했다. 그런데 1916년 4월 경성부 직제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계를 묶어 공식적인 두 개의 과(課)를 설치한 것이다. 제1과는 세무 외의 모든 업무를 관장했으며, 제2과는 세무과였다. 과의 설치에 따라 부사무관 2명은 공식적으로 과장 직위를 맡았다. 부윤-과-계로 이어지는 직제는 전

---

5)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성부윤으로 정말 '아무나' 부임한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칙임관 승급 이전에도 경성부윤으로는 거의 예외 없이 주임관 중 최고위인 고등관 3등 관료가 부임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염복규 〈1910년대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과 김대호 〈1920~1932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참고.

6) 한편 부윤의 자문역으로 府參事가 설치되었다. 부참사는 정식 관료가 아니라 명예직이지만 직원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대우 등으로 미루어볼 때 '고등관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참사는 3·1운동 이후 지방제도 개정으로 또 다른 부윤의 자문기구인 부협의회가 선거제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부참사의 면면은 이 책의 염복규 〈1910년대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참고.

7) "칙령 제37호 1912.3.27.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중 개정의 건〉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제18조 각 부군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부윤 또는 군수 주임 (중략) 부에 사무관 및 통역관을 둘 수 있다. 부사무관 및 부통역관은 주임으로 한다)을 지운다." ;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3월 28일 호외.

8) "칙령 제133호 1914.6.27.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중 개정의 건〉 제18조에 다음 두 항을 넣는다. 부에 부사무관을 둘 수 있다. 부사무관은 주임으로 한다. / 제19조 부사무관은 각 부를 통틀어 전임 3명 (중략) / 제21조의 2 부사무관은 부윤의 명을 받아 부무를 관장한다." ;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7월 2일.

9) "칙령 제97호 1918.4.25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중 개정의 건〉 제19조 부사무관은 각 부를 통틀어 전임 3명, 기사는 전임 1명 (중략) / 제21조의 2에 다음 항을 넣는다. 기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 기술을 관장한다." ;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4월 30일.

국 부·군에서 처음 도입한 것이었다.[10] 이 역시 경성부를 다른 부와 구분하게 만드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식민통치 초기 부윤의 위상이나 고등관이 2명이 불과한 것(그나마 1명은 통역을 전담하는 부통역관)은 경성부의 위상이 병합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는 근거이다. 그러나 칙령 제357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전체의 부 전임 고등관이 4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중 절반을 배치한 것이나 다른 부와 다른 행정 체계('과' 설치)를 채택한 점 등은 식민지 '수도'로서 경성부의 '특별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일제하 경성부의 위상은 처음부터 '이중적'이었다. 따라서 향후 경성부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열려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도 1910년대 초부터 경성부에도 일본의 '시제(市制)'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이 눈에 띈다. 예컨대 아래의 1912년 기사를 보자.

> 부산에서는 각 단체, 각 계급의 유지 발기로 시민회를 조직하야 부산에는 여하한 市制를 施하던지 적당함을 조사한다는 事는 旣報하얏거니와 경성에서도 민단의원, 상업회의소 의원, 학자 유지를 망라하야 특별시제조사회를 조직할 議가 有하야 시민회 의장 海津三鎭, 민단의원 開川廣濟의 2씨가 崔히 열심으로 분주하는 모양이라더라.[11]

위 기사는 〈부제(府制)〉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성 일본인거류민단이 경성부에 일본의 〈시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경성뿐 아니라 거류민단이 존재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잠시 일본 근대 지방제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는 종래 지방질서의 중심으로 기능했던 군(郡)과 정·촌(町·村)을 도태시키고 새롭게 구(區)라는 행정구획을 신설했다

10) 서현주, 2014, 앞의 논문, 133쪽.

11) ≪매일신보≫ 1912년 10월 2일.

(1871). 아직 잔존한 지방 무사 세력의 힘을 빼고 메이지 중앙 정부의 '위로부터의' 통치력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자유민권운동의 확산 속에서 일본 정부는 점차 기존의 지방질서를 추인하는 방향으로 지방제도를 개정해 나갔다. 그리하여 1888년 종래의 시, 정, 촌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법률 제1호 〈시제〉, 〈정촌제〉가 공포되었다.[12] 나아가 1911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 정·촌장 공선제가 도입되었다. 시장은 시회에서 선출한 후보자 3명 중 내무대신이 임명하고, 정·촌장은 정·촌회에서 선출하여 부·현지사(府·縣知事)가 임명하게 된 것이다. 마침 이 무렵 시·정·촌회원 선거가 보통선거로 전환되었다. 보통선거로 구성된 시·정·촌회가 선출한 시·정·촌장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13]

위 기사에서 언급한 '특별시제'란 일본식의 제도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물론 일본인 거류민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불과 1년여 뒤 공포된 조선의 〈부제〉(제령 제7호, 1910.10.30)에서 '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하향식 지방제도에서 '도'에 속하는 지방행정청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부제〉에서 부는 '법인(法人)'으로 규정되기는 했으나 정작 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부 사무의 대부분은 총독 혹은 도장관(道長官, 1920년대 이후 '도지사'로 개칭)의 권한이었으며, 부의 행정장관인 부윤의 고유권한은 거의 없었다. 부윤은 단지 총독 혹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전결하는 자'에 불과했던 것이다.[14]

---

12) 〈시제〉, 〈정촌제〉는 별개의 법률이나 마치 하나의 법률처럼 법률 제1호로 같이 공포되었다.

13)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일제시대사 연구실 편,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지방제도 관계법령 비교자료집≫ 선인, 2010, 43~48쪽.

14) 여기에서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으나, 이후 〈부제〉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비해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윤의 실질적인 권한은 증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8·15 때까지 부윤의 근본적인 위상은 변함이 없었다.

1910년대 내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경성부의 행정 체계에는 1920년대 들어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다. 먼저 1921년 2월 고등관인 부사무관이 이사관(理事官)으로 개정되었다.[15] 부사무관을 이사관으로 개정한 취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16] 따라서 보직과 인사이동의 여러 사례를 종합하여 사무관과 이사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고등관 임용 '유자격자'로서 조선의 경우 총독부의 국·과에 근무하는 (본부) 사무관과 지방에 근무하는 도사무관, 부사무관으로 나뉜다. 도사무관은 도의 부장급이었으며, 부사무관은 1910년대 경성부와 부산부에만 존재한 직위로서 경성부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장급이었다. 한편 이사관은 기본적으로 '유자격자'가 아니라 판임관에서 승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총독부 본부에는 없는 지방 관료로서 1910년대까지는 도의 과장급인 도이사관만 존재했다. 대체로 사무관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임을 알 수 있다.[17] 따라서 1921년 2월 개정으로 경성부의 과장급이 부사무관에서 이사관으로 바뀐 것은 도의 과장급에 맞추어 관제를 정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무관의 경우 총독부 본부와 지방 전체 사무관 총수에 연동하여 정원이 조정되는 반면 이사관의 정원 조정은 비교적 유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부에서도 이사관의 정원은 개정 당시 2명이었다가 1922년 8월 3명,[18] 1927년 6월 4

15) "칙령 제23호 1921.2.10.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중 개정의 건〉 제18조 (중략) 전항 직원 외 경성부에 이사관 전임 2명 및 기사 전임 1명, 부산부에 이사관 전임 1명을 둔다. 이사관 및 기사는 주임으로 한다. / 제21조 중 (중략) '부사무관'을 '이사관'으로 고친다. / 제21조의 2 중 '부사무관'을 '이사관'으로 고친다." ; ≪조선총독부관보≫ 1921년 2월 16일.

16) 나아가 식민지 조선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기 일본 본국의 관제에서 사무관이나 이사관 등의 직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나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17) 일본 본국에서 이사관이라는 관명이 메이지 시기 'resident'의 번역어로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이사관 ≒ 지방관료'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교수 이형식 선생님의 교시에 따름).

18) "칙령 제372호 1922.8.10.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중 개정의 건〉 제18조 중 (중략) '전임 2명'을 '전임 3명'으로 (후략)" ;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8월 15일.

명으로 증원되었다.[19] 경성부의 도시화가 진전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관 정원이 증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 그런데 하나 덧붙혀 둘 점은 지방관관제에서 경성부 이사관은 '전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1920년대 초 부임한 이사관 대부분은 총독부 내무국 속(屬)을 겸하고 있었다.[21] 여기에서 고등관인 이사관은 행정을 총괄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고 행정 실무를 지휘한 것은 여전히 판임관급인 주사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행정체계의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1910년대 다소 모호했던 경성부의 위상을 분명하게 경기도 산하 행정기구로 정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3·1운동 이후 지방제도 개정에 즈음하여 벌써 경성부윤의 급을 주임관에서 칙임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이 논의는 1920년대 내내 부윤의 승급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았지만, 부윤의 승급은 연쇄적으로 부 행정체계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미 1919년 말 지방제도 개정 과정에서부터 총독부는 "총독 소재지이며 또한 인구 기타의 점에서 타의 각부와 동일히 시(視)치 못할" 경성부윤을 칙임관으로 승격시킬 계획을 세웠다.[22] 그러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년간 이에 대한 논의는 잠잠했다.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었다. 1924년 총독부 내무국장 오츠카(大塚常三郎)가 (일본 본국과 달리 조선에서) 부의 자치 실시를 가로

19) "칙령 제211호 1927.6.29.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중 개정의 건〉 제18조 중 (중략) '이사관 전임 3명'을 '이사관 전임 4명'으로 (후략)" ; ≪조선총독부관보≫ 1927년 7월 5일.

20) 물론 이런 경향은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1934년 4월 경성부 이사관 정원이 3명으로 감원되기도 했다. "칙령 제112호 1934.4.28.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중 개정의 건〉 제18조 (중략) '경성부에 이사관 전임 4명'을 '경성부에 이사관 전임 3명'으로 (후략)" ; ≪조선총독부관보≫ 1934년 5월 3일.

21) 〈부록 1-2: 경성부 고등관(1910~1945)〉 참고 ; 일제하 관료의 지위로서 '屬'의 위상을 설명해주는 자료나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여러 사례를 종합해보면 속은 '고등관 임용/승진 예정 판임관' 혹은 '고등관 대우 판임관'을 의미한다.

22) ≪매일신보≫ 1919년 12월 14일.

막는 근본 원인은 부 재정의 궁핍에 있으며, 따라서 부의 완전한 자치나 경성부윤의 칙임관 승격 등의 개정은 수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총독부 수뇌부의 판단을 잘 보여준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부윤 칙임관 승격 논의는 1920년대 중반 벌써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1926년 말 총독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관관제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국 정부에 송부했다.[24] 이 때 경성부윤 우마노(馬野精一)의 말을 빌면 경성부윤을 칙임관으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조(照)하야 경성부윤은 타지방장관과 이(異)하야 고급인 관계상 경성부의 사정을 전부라는 것을 이해도 하기 전에 전임을 하게 되는 폐가 유함으로 가급적 칙임으로 하야 장기간을 경성부윤의 임에 당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5] 우마노의 언급은 고위 관료의 입장에서 경성부윤 칙임관 승격의 이해관계를 솔직하게 보여준다. 지방관관제에서 경성부윤의 자격은 주임관급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례상 경성부윤은 최고위 주임관인 고등관 3등 관료가 부임했다. 그리고 고등관 3등은 대규모 인사 이동시 대개 칙임관으로 승진하여 도지사 등으로 영전하는 관계로 부윤 재임 기간이 1년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아예 더 이상의 승진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칙임관으로 부윤의 급을 높여 장기간 근무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6년 말의 관제 개정안은 재정 주무 관서인 대장성의 반대로 곧 폐기되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경성부윤의 칙임관 승격을 거의 매년 시도했다.[27] 이는 1930년대에 가서야 비로소 실현 도상에 오를 수 있었다.[28]

---

23) ≪朝鮮新聞≫ 1924년 3월 27일.

24) ≪매일신보≫ 1926년 12월 8일.

25) ≪매일신보≫ 1926년 12월 10일.

26) ≪매일신보≫ 1926년 12월 15일.

27) ≪매일신보≫ 1928년 3월 19일, 3월 22일, 1929년 3월 29일.

28) ≪매일신보≫ 1930년 11월 9일 ; ≪동아일보≫ 1932년 2월 20일.

3. 1932~1945년 부윤의 칙임관 승격과 '특별부제' 논의

공식적인 경성부윤의 칙임관 승격은 1932년 3월 지방관관제 개정으로 비로소 실현되었다. 그 내용은 말 그대로 1932년 현재 전국 14개 부의 부윤 중 "경성부윤인 자는 이를 칙임으로 할 수 있다"는 것뿐 다른 내용은 전혀 없었다.[29] 그런데 이 무렵의 논의를 살펴보면 실제 변한 것 이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들어 경성부윤의 승급 문제가 처음 불거진 1930년 11월 경성부협의회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하여 "수상, 척상(拓相, 식민지 업무를 관장하는 척무대신), 장상(藏相, 대장대신), 법제국장에게 전보"했다.

> 1. 경성부윤을 칙임관으로 할 것, 2. 부윤 차석 보좌로 부부윤격인 고급 助役을 임명할 것, 3. 常置 의원제도를 설할 것을 질의 (중략) 경성부윤의 경질이 빈번한 것은 부정에 지장이 잇스니 그 완화책으로 칙임부윤을 설치하도록 하야 달라 (후략)[30]

한눈에 알 수 있듯이 경성부협의회의 의견은 단지 경성부윤의 승급 문제가 아니었다. 정무직 부윤을 전제로 한 행정 부부윤 신설, 부윤의 칙임관 승급을 전제로 한 (준)임기제, 그에 대응한 부협의회의 권한 강화('상치 의원제도') 등 전반적으로 일본의 〈시제〉를 모델로 한 여러 요구였다. 물론 이런 요구는 부윤의 급이 아무리 높아도 선출직이 아니라 관리에 불과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 행정관리'인 조선의 현실에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일례로 위 기사의 '조역'이란 당시 일본에서 선출직인 시장(일종의 '정치인')을 보좌하는 전문 행정가격이었다. 그리고 실제 실현된 것도 단지 부윤의 승

29) "칙령 제34호 1932.3.25.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중 개정의 건〉 제18조 제1항 중 '부윤 14명 주임'을 '부윤 14명 주임(경성부윤인 자는 이를 칙임으로 할 수 있다.)'로 고친다." ; ≪조선총독부관보≫ 1932년 3월 30일.

30) ≪동아일보≫ 1930년 11월 25일.

급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총독부의 지방관관제 개정 이유 설명은 총독부마저도 이것을 부윤의 승급 이상의 문제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경성부는 이미 그 호수가 7만 4천여이며 인구는 39만 4천으로서 목하 편입을 앞두고 있는 중이다. (1931년에 구역 변경을 행할지는 조사 중) 따라서 같은 경제권 내의 인접 시가지를 합하면 인구는 50만을 헤아려 조선 내 다른 부 13개의 호구를 합한 것의 6할에 가깝다. 내지의 도시와 비교해도 내지 6대 도시에 가깝다. (중략) 경성은 조선 통치의 중심으로서 이왕가를 비롯하여 조선귀족의 대부분이 이 곳에 거주하며, 영·미·노·지나 등의 여러 외국인 역시 다수 거주한다. 또 조선총독부, 군사령부, 현병대사령부, 고등법원, 이왕직, 각국 영사관, 경성제국대학, 기타 각종 관공사립학교 등의 주소지이며, 다수의 회사, 은행의 본점 혹은 주 사무소를 포함한 정치경제상의 중심지이다. 그 지위의 중요함은 내지에 있어서 도쿄시 정도를 제외하면 사무의 복잡 번다함이 도저히 다른 부와 비교할 수 없다. (중략) 따라서 경성부윤은 다른 부윤과 같이 주임관으로 하는 것은 외부 관민에 대한 절충, 조치 시행상 심히 곤란하다. 더불어 최근 경성의 상공업이 날로 발전하고 제반 행정이 더욱 복잡, 광범위해짐에 따라 경성부윤은 한층 더 수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성부는 한국정부시대에 이미 칙임관으로서 부윤을 설치하여 지방장관으로서 중앙정부에 직속하여 각도 관찰사 즉 지금의 도지사와 대등한 지위에 두었는데, 병합 이후 이런 제도를 바꾸어 도지사의 휘하에 속하게 하여 다른 부윤과 지위가 동일해졌다. 이렇게 연혁상으로 보아도 경성부윤에 한해서 그 지위를 칙임관으로 하여 직책과 지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31]

위에서는 경성부윤의 급을 다른 부윤과 달리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목하 편입을 앞두고 있는 중", 즉 '대경성' 확장을 앞두고 있는 점이다. 이는 규모의 문제로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음으로 제시한 이유들의 배치가 흥미롭다. 경성에 입지한 주요 인사·기관·시설의 사례로서 제일 먼저 "이왕가를 비롯하여 조선귀족의 대부분"을 들고 있다.

31) 〈京城府尹ヲ勅任ト爲スヲ要スル理由說明〉 ≪帝國官制關係雜件 - 朝鮮總督府官制ノ部: 昭和7年度 法律勅令(其ノ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茗荷谷 문서(국사편찬위원회 수집사료).

이것이 외국인, 총독부를 비롯한 주요 관서, 주요 은행·회사 등보다 앞서는 것이다. 이런 배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 구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지위의 중요함은 내지에 있어서 도쿄시 정도"에 비길 수 있다. 직접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수도'라는 것이다. 뒷부분에서 경성부의 연혁을 논한 것도 이 설명문의 '속내'를 뒷받침해준다. 병합 이전 경성부는 "중앙정부에 직속"하는 수도였다는 것, 그러나 병합 이후 부(윤)의 위상이 다른 부와 같아져서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위 이유 설명에서 경성부윤의 칙임관 승급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 '수도'로서 경성부의 위상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파생시킬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중 제일 먼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부부윤 신설문제였다. 관제 개정 이후 첫 칙임관 부윤이 부임(1933.12.)하기 이전부터 이 논의는 자주 보인다.[32] 부부윤 신설의 명분은 "부부윤으로 하여금 사무 방면을 총괄하게 하고 부윤은 정치 방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한다는, 즉 비록 임명직이라도 경성부윤의 위상을 관료 이상으로 상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33] 그리고 이는 "이를 계기로 경성특별부제"를 시행하여 경성부를 총독 직할로 하고, 경성부 경찰 행정은 부윤에게 이양해

---

32) 1932년 3월 지방관관제 개정 이후 실제 첫 칙임관 부윤이 부임한 것은 1년 반 이상이 지난 후였다. 여기에는 약간의 사정이 있었다. 원래 총독부는 관제 개정 당시 부윤 井上清을 칙임관으로 승진시킬 계획이었다. 이노우에 본인이 "칙임 초대 부윤"을 자처하며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내정은 거의 확실했던 듯하다. 그러나 이는 본국 정부 측의 문제 제기로 무산되었다. 이노우에가 고등관 3등으로 2년 이상 재임하지 않아 칙임관 승급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노우에는 이미 1926년 경기도 내무부장(도사무관)으로 재임하며 칙임관 대우까지 올랐다가 1928년 초 행정 정리로 퇴관하여 민간 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하던 중 과거 인연이 있던 今井田清徳의 정무총감 부임을 계기로 다시 관계에 복직하여 경성부윤이 된 자였다. 일본 정부 측의 유권 해석은 퇴관 전 경력은 산입할 수 없으며 복직 후 경력만 따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분히 '꼬투리 잡기'의 느낌이 강하다. 당시 세간에서도 이마이다와 계통이 다른 관료 세력의 견제를 받아 퇴관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노우에는 1933년 말 부윤에서 물러나기 직전 칙임관으로 승급하여 이마이다 정무총감 시기 총독부 체신국장으로 재임했다(≪朝鮮新聞≫ 1932년 3월 27일 ; ≪동아일보≫ 1932년 4월 5일, 4월 24일). 이노우에의 경력 및 칙임관 승급을 둘러싼 논란의 상세한 내용은 이 책의 김대호 〈1920~1932년 경성부윤과 주요정책〉 참고.

33) ≪매일신보≫ 1933년 5월 25일 ; ≪조선중앙일보≫ 1933년 6월 23일.

야 한다는 등의 주장과도 연결되었다. 어느 모로 봐도 이는 단순히 칙임관 포스트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34]

부부윤 신설 문제는 그 급은 "3등 사무관"으로 "명년부터 채용할 방침"이라는 언급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 이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된 듯하나,[35] 이 때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부윤 신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이듬해 경성부에서는 회계계 서기, 토목과 서기보, 위생과 고원(雇員) 등 하급 관료 여러 명이 연루된 공금 횡령 사건이 적발되었다. 기실 이런 사건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8·15 때까지 늘 "조선 관계의 일대 복마전"[36] 이라는 평판이 있던 경성부에서는 늘 발생하는 일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1934년의 경우 이 사건은 "이와 같은 문제가 속출하는 것에 감(鑑)하야 명년도부터는 그 동안의 현안인 부부윤을 두어 엄중히 감독을 시킬 예산을 요구"[37]하기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항상 빈발하는 부정 사건이 부부윤 신설의 명분으로 연결되는 모양새였다.

게다가 이는 경성부만의 구상이 아니었다. 이듬해 초 총독부 내무국은 "세상에 복마전이라는 칭호까지 듣게 된 경성부의 제도 개정을 목표로 하고", "종래로 추상적으로만 논의되는 부부윤 제도를 실현하고 내무부, 산업부 혹은 내무, 경제부 등의 2부를 두는 동시에 현재의 토목과와 수도과는 국으로 승격하거나 부로 하야 각 부장들은 종래의 부이사관이든 것을 사무관으로 하여", "조선 수도의 대경성부로서의 위신도 보전하려니와 그 감독과 취체가 조직화하야 의옥(疑

34) ≪동아일보≫ 1933년 8월 29일 ;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9일.

35) ≪大阪每日新聞 朝鮮版≫ 1933년 6월 26일 ; ≪동아일보≫ 1933년 7월 14일, 8월 11일. 주지하듯이 3등 사무관은 최고위 주임관으로 그때까지 경성부윤 부임자의 관등이었다.

36) 김성환, 〈解放前後의 서울市政 - 나의 京城府 在職時代〉 ≪향토서울≫ 6, 1959, 89쪽 ; 김성환은 1934년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각지의 세무 관료를 역임했으며, 1943년 12월 경성부 부사무관(민생부장)으로 부임, 광복 후 잠시 경성부윤 대리를 지낸 인물이다.

37) ≪동아일보≫ 1934년 7월 21일.

獄) 사건의 방지"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38] 1935년 초 총독부 구상의 특징은 단지 부부윤 신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성부의 기본 행정 단위인 과를 부를 승격하고 부장의 직급을 이사관에서 사무관으로 올리려는 것이었다.[39] 그렇게 되면 경성부의 직제는 다른 부와 근본적으로 구분되어 도급이 될 것이었다.[40] 이런 구상은 1936년 4월 행정구역 확장에 이어 9월 지방관관제 개정으로 실현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칙령 제366호 1936.9.25.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중 개정의 건〉[41]
제18조 (중략) 제2항 중 '경성부에 이사관 전임 3명'을 '경성부에 사무관 전임 2명, 이사관 전임 2명'으로, '이사관 및 기사'를 '사무관, 이사관 및 기사'로 고친다. / 제21조 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중략) 단 경성부에서는 관등의 순서에 따라 사무관, 부산부에서는 이사관이 부윤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21조의 2 제1항 중 '부윤'을 '상관'으로 고치고, 동조를 제21조의 4로 하며 제21조의 3을 제21조의 5로 한다. / 제21조의 2 경성부에 서무과, 총무부, 재무부 및 工營部를 둔다. 그 사무 분장은 지사가 이를 정한다. /제21조의 3 부장은 총무부 및 재무부에서는 사무관으로, 공영부에서는 사무관 또는 기사로 충원하고 부윤의 명을 받아 부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며, 부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위의 개정에 의해 경성부는 조선의 부 중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부 체계를 도입하여 총무, 재무, 공영 3부와 그 아래 14과 체계가 성립했다. 더불어 15년 만에 부사무관을 보임하게 되었다. 이후 8·15 때까지 경성부는 부장은 부사무관 혹은 (사무관급) 부기사, 과장은 이사관 혹은 부주사, 계장은 총독

38) ≪동아일보≫ 1935년 1월 18일.

39) ≪조선중앙일보≫ 1935년 6월 18일.

40)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지방 행정의 기본 체계는 도는 부(부장 도사무관)-과(과장 도이사관), 부는 경성부의 경우 과(과장 이사관)-계(계장 주사), 다른 대부분의 부의 경우 계(계장 주사)였다. 따라서 경성부에 부(부장 부사무관) 체계를 도입하면 경성부의 직제는 다른 부에 비해 단지 복잡한 것을 넘어서 급이 올라가 도와 동일하게 된다.

41) ≪조선총독부관보≫ 1936년 9월 29일.

부 속, 부주사, 부서기로 보임했다.[42] 이보다 더 주목할 점은 부윤의 대리 석차를 부사무관으로만 규정한 점이다(제21조 제2항 단서). 이는 부윤 대리를 같은 고등관 중에서도 지방 관료에 한정되지 않는 사무관으로 규정한 것으로 비록 부부윤 직제가 신설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사무관으로 부부윤격"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오랜 만에 '부활한' 경성부 부사무관에 누가 부임할지도 주목 대상이었다. 처음 물망에 오른 인물은 총독부 지방과장 니시오카(西岡芳次郎), 대구부윤 가도와키(門脇默一) 등이었다. 당시 총독부 주임관 중 최고위급이었던 셈이다.[43] 그러나 실제로 총무부장으로는 충북 내무부장 마츠시마(松島清)가 부임했고, 재무부장으로는 당시 경성부 사회과장(선임 이사관) 김영상(金永祥)이 사무취급으로 승진, 임명되었다(1937.5. 부사무관으로 승급, 정식 임명). 하마평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짐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윤의 칙임관 승급 → 행정구역의 확장과 '대경성화' → 도급의 부 체계 도입 등의 일련의 흐름은 점차 경성부의 위상이 다른 부와 '구분'되어 '특별'해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였음을 보여준다. 추후로도 "경성부특별부제 문제는 최근 매우 활발하게 되여 금후 중요문제화 하랴함은" 예상되는 바였다.[44] 1938~1939년 이런 움직임은 활발하게 보인다. 이른바 조선 '지방자치'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1938년 경성부회는 경성을 만주국의 신징(新京)이나 하얼빈 같은 "특수도시"로 하여 경기도에서 분리하고 총독부 직할로 할 것을 요망하고자 '특별부제실현촉진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45] 이듬해 예산 부회에서 이런 '요망'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

42) 김성환, 앞의 논문, 90쪽.

43) ≪매일신보≫ 1936년 8월 10일.

44) ≪매일신보≫ 1936년 9월 4일.

45) ≪매일신보≫ 1938년 2월 17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선일체의 결실이 나타나게 된 데 따라 지난번 중의원에서는 조선인의 참정권 문제까지 질문전에 올으게 되엇거니와 경성에서는 경성부회를 내지의 시회와 같이 의장을 의원 중에서 호천하는 것이 조흘 듯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게 되엇다. 지난 소화6년에 자문기관으로부터 의결기관으로 곳치어지게 된 후로 대경성의 발전에 따라 일반민중의 문화 정도도 내지와 그다지 손색이 업슴으로 부정에 참여하는 부회에 의장이 관리인 부윤이 되고 또 제안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며 의안 제창자인 부윤이 의장이 되어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정에 민의를 완전히 살피지 못하는 것이라 하야 재삼 고려할 필요가 잇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총독부에 진정을 하야 경성에 특별부제를 실시하야 의장은 내지와 같이 의원 호천으로 결정하고 부윤은 소위 參與官으로서 부회에 열석하도록 곳치는 것이 올타는 의견인데 오는 5월 21일 부회의원 개선기를 압헤 두고 현재 의원들은 맹렬한 운동을 하고 잇는 중이라고 한다.[46]

위 기사에 보이는 경성부회의 견해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본 본국의 〈시제〉를 경성부에도 시행하여 '특별부제'를 시행해달라는 것인데, 그 핵심은 부회에 본국 시회급의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었다. 1939년 초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은 같은 해 5월 부회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3월 예산 부회에서는 경성특별부제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의견서 초안의 방향이 세간에 알려진 바와는 달라서 또 논란이 일어났다. 의견서 초안은 경성부는 "조선 안에 잇는 다른 부와 동일한 부제로써 도의 감독 아래 잇는 가장 하급 관청으로 되어 잇게 되어 시제와 거리가 심히 멀"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배를 떠나 총독부 직할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결의기관에 관하야는 현 제도를 답습하야", "특별한 부제를 실시"해달라는 내용이었다.[47]

본국의 시회보다 훨씬 제한적인 현재 부회의 권한에 머물겠다는 수준인 셈이었다. 의견서는 다수 견해로 채택되었으나,[48] 몇몇 의원들은 "맹렬한 반대" 의

46) ≪매일신보≫ 1939년 2월 27일.
47) ≪매일신보≫ 1939년 3월 31일.
48) ≪朝鮮新聞≫ 1939년 4월 29일.

견을 냈다. 대표적으로 언론인 출신의 이시하라(石原憲一)[49]는 의견서의 내용은 경성부를 도급으로 올려 총독부 직속으로 하는 외에 내실이 없는 형식상 특별부제일 뿐 이상적 자치제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런 의견서가 채택된 배경은 경성부회에 관료 출신 의원이 많은 탓이라고 주장했다.[50] 이시하라의 비판은 오랜 세월 간헐적으로 전개된 경성부 위상 승격 논의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즉 이 논의는 늘 본국의 〈시제〉를 준거로 했지만, 결론은 줄곧 '관청으로서 경성부'의 승급 내지는 확대에 그쳐왔던 것이다.

이런 한계는 일제하 경성부 행정체계의 마지막 대개정인 1943년 '구제(區制)' 시행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936년 행정구역 확장과 지속적인 인구 격증을 배경으로 1940년경부터 부 행정구역을 나누어 "내지와 같은 '자치구'제"를 시행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51] 그런데 '자치구'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단순한 하위 행정구획의 창출이 아니라 '자치 확대론'이었다. 그러나 구제의 실제 완성 과정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구제의 대강이 완성된 시점에서 경성부측은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조선의 부는 내지의 시와 달리 불완전 자치체로서 부윤의 집행권이 비상히 광범위한 '理事者 중심주의'로서 모든 부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다. 다만 부의 대소에 따라 사무량의 갑을이 있어 현재의 행정기구로는 경성부의 행정 능률을 충분히 발휘하기

49) 石原憲一은 1920년대 ≪京城日日新聞≫ 편집장, 주필 등으로 재조선 일본인 언론계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1931년 이후 경성의 '지역 정계'에 진출하여 내리 부회의원 4선을 했다. "일찍이 경성일일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날마다 지상에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예리한 관찰력과 뼈에 사무치는 필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부회에서도 본래의 패기를 잃지 않고 당당히 소견을 진술하는 등 부정을 규탄하고 혹은 같은 의원의 내면을 파헤치는 태도가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인물평을 보건대 전형적으로 총독부에 비판적인 재조선 민간 일본인 세력의 지향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다(국편DB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id/im_215_00881). 1910년 도한하여 용산 지역 일본인 사회의 유지로 활동하며 1910년대 경성부협의원, 1920~1940년대 관선 경기도(평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石原磯次郎의 장남이기도 하다.

50) 石原憲一, 〈京城特別府制(都制)案〉 ≪朝鮮及滿洲≫ 1939년 5월호.

51) ≪동아일보≫ 1940년 5월 17일.

어려운 포화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구제를 실시하여 부본청의 사무를 적당히 區域所에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략) 구제의 시행은 조선의 지방제도로서는 새로운 발전으로 昭和 5년 부제 대개정 이래의 큰 개정이 아닐 수 없다. (중략) 내지 시제 중 구제를 대체의 모법으로 가져오고 외지로서의 특수사정으로부터 또 경성부가 조선반도에 있어서 점한 특수지위상 독자적인 새로운 안[新機軸]을 만들어내야 할 점이 없지 않다.[52]

먼저 조선의 부가 본국과 다른 "불완전 자치체"라는 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구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단지 넘치는 사무를 "적당히 구역소에 배분"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결국 조선의 구제에서 "내지의 시제 중 구제를 대체의 모법"으로 하는 것은 형식일 뿐이며, 제한적 자치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외지의 특수 사정"이 핵심으로 다만 규모가 다른 부를 압도하는 "경성부가 조선 반도에서 점한 특수 지위"가 문제될 뿐이었다. 그렇다면 신설된 구의 위상과 기능은 어떠했을까? 1943년 6월 공식 제정된 구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의 4 경성부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해 경성에 區를 둔다. 그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 제21조의 5 區長은 이사관으로 충원하고 부윤의 명을 받아 그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주관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며 부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53]

신설된 구의 핵심 기능은 경성부의 사무(부 고유 사무, 총독부 위임 사무, 부윤 직권 위임 사무)를 분산 처리하는 것이었다. 물론 경성부는 본청의 사무를 분산 처리하기 위해 병합 당시부터 출장소를 설치했다. 1943년 현재 출장소

52) 京城府 內務課 川原福藏, 〈府政雜觀〉 ≪京城彙報≫ 1942년 2월호.

53) 칙령 제485호 1943.6.8.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중 개정의 건〉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6월 18일.

는 동부, 서부, 용산, 영등포 등 4개였다.[54] 그러나 출장소는 〈경성부조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경성부 고유 사무의 일부(각종 증명, 세금 수납)만 처리할 수 있을 뿐 경성부 행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총독부 위임 사무나 부윤 직권 위임 사무는 처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청 사무를 실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칙령(지방관관제)에 의한 기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었다. 더불어 이미 예상했던 바이지만 구장은 본청 과장급인 이사관으로 충원되었다. 권한과 인사 모두 구제 제정은 자치구 운운과는 무관한 '관청으로서 경성부'의 확대였던 것이다.[55]

4. 맺음말

이상에서 1910년 병합으로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는 시기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와 그를 둘러싼 여러 논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병합과 더불어 일제는 조선의 수도 한성부를 제국 일본의 외지인 조선, 조선의 한 지방인 경기도 도청 소재지로 격하시켰다. 그리하여 경성부윤의 위상은 이전의 한성부윤은 물론이거니와 자치단체의 수장인 식민 본국의 시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잘 것 없어졌다. 그러나 경성부는 병합 당시부터 줄곧 다른 부와는 구분되는 식민지

54) 그리하여 구제 제정 당시 구도 출장소 구역을 기반으로 7개구(동부출장소-동대문구·성동구, 서부출장소-서대문구, 용산출장소-용산구, 영등포출장소-영등포구, 본청-종로구·중구)가 신설되었다. 여기에 1944년 10월 서대문구와 용산구 일부를 분할·합병, 마포구를 신설하여 8·15 당시 서울에는 8개구가 존재했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97, 앞의 책 참고.).

55) 이상 경성부 구제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이명학, 2011 〈아시아-태평양전쟁기(1940-1945) 京城府 재정의 전쟁 지원과 자금 총동원〉 고려대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참고.; 이명학에 따르면 태평양전쟁기 식민지권력이 경성부에 굳이 구제를 시행한 이유는 이 시기 경성부의 '비상한' 도시화에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태평양전쟁기 점차 시급해지는 인적 자원의 정확한 파악과 통제, 물적 자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원에 있었다. 한편 이런 '시국적' 이유로 구제를 시행하면서도 당시 행정 간소화의 방침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구역소 인원은 구장만 새롭게 충원했을 뿐 실무자는 거의 본청의 인원을 분산 배치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수도'로 인식되기도 했다. 더구나 식민지권력은 이런 경성부의 '이중적 위상'을 해체·통합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대략 3·1운동으로 언로가 일정하게 열리면서 개시된 경성부의 위상을 둘러싼 여러 논의는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논의의 결과 경성부 및 경성부윤의 위상은 일제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셈이다. 경성부윤의 칙임관 승급, 다른 부와 다른 도급의 부-과 체계의 도입, 구제 신설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 변화는 모두 본국의 〈시제〉를 참조 항으로 내세웠지만 그 실질은 자치제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시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로지 행정청으로 경성부의 관료 조직이 확대되는 과정이었으며, 한마디로 관치가 심화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현상으로 칙임관 승급 이후 경성부윤의 교체 빈도가 오히려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주지하듯이 부윤의 칙임관 승급이 필요한 이유로 줄곧 이야기되었던 것은 부윤의 급을 높여야 재임 기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부윤의 급이 높아졌음에도 교체가 잦았던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경성부회 의원 이사하라의 언급이 흥미롭다. 이시하라는 경성부윤의 칙임관 승급 이후 부윤으로 "관료로서 최종역"(고등관 1등)을 목표로 하는 고등관 2등이 주로 부임하면서 오히려 승진·전임이 잦아졌다고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려면 경성부윤은 민간이나 관계를 막론하고 "정치적 수완이 있는 인물을 특별 임용"하여 "임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6] 이시하라의 주장도 두말할 나위 없이 경성부(윤)의 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관청으로서 경성부', '관리로서 경성부윤'의 위상의 근본적 전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일제하 이런 전환은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광복 후에도 적어도 1994년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때까지 관치는 계속되었다. 식민지 유산은 청산

56) 石原憲一, 〈京城府尹の地位〉 ≪朝鮮公論≫ 1942년 8월.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서울시장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앙에 종속된, 그리하여 시장을 거쳐 '다음 자리로의 영전'을 목표로 하는 위상은 변하지 않았다.

제2장

1910년대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염복규(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1. 머리말
2. 1910년대 경성부윤 및 경성부 고등관의 추이
   1) 경성부윤
   2) 경성부 고등관
3. 1910년대 경성부윤의 주요 정책
   1) 부윤 재임의 소회
   2) 주요 정책
4. 맺음말

1. 머리말

병합 후 3·1운동에 이르는 1910년대는 경성부의 위상이 도청 소재지로 격하되고 조직도 대폭 하향·축소되어 제한된 역할만 수행했던 전형적인 '작은 경성부' 시기이다.[1] 따라서 이 시기 부임한 경성부윤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지는 인물이었으며, 주요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또 부 행정을 관장하는 고등관 포스트도 매우 적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1910년대 경성부윤 및 경성부 고등관의 인적 특징과 정책의 초점을 살펴보겠다.

2. 1910년대 경성부윤 및 경성부 고등관의 추이

1) 경성부윤

<표 1> 1910년대 경성부윤과 그 이력

대수	경성부윤	재근 기간	특기 사항	경기도 지사
1대	大庭寬一	1910.10.1~1912.4.1	山口縣 출신, 아시아주의 단체 東邦協會 회원, 愛媛縣 지사 역임	檜垣直右 (1910.10.1~1916.3.28)
2대	金谷充	1912.4.1~1919.12.4	1908년 대한제국 정부 고빙, 경성부윤에서 마산부윤 좌천 발령 후 부임 직전 사망	松永武吉 (1916.3.28~1919.9.26)
3대	齋藤禮三	1919.12.4~1921.8.6	1908년 통감부 관료로 도한, 경성부윤 역임 후 도지사로 영전한 첫번째 경우	工藤英一 (1919.9.26~1923.2.24)

1910년대 경성부윤으로 재임한 인물은 모두 3명으로 부윤 한 명의 평균 재임 기간이 2년도 채 안되었던 이후 시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장기간 재임했다. 이는 2대 부윤 가나야 쥬(金谷充)가 7년 8개월 동안 장기 재임했기 때문이

1) 이 책의 염복규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 참고.

다. 그의 장기 재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인사이동의 관례가 확립되기 전인 식민통치 초기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2] 그러면 먼저 1910년대 재임한 부윤 3명의 이력상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3]

(1) 1대 오바 간이치

1대 부윤 오바 간이치(大庭寬一)는 1865년 야마구치현(山口縣) 사족 가문에서 태어나 1887년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조슈번(長州藩, 야마구치)의 무사 계급 출신이라는 점은 오바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다. 그는 대학 졸업 이듬해 내무성 시보(試補)가 되었으며 곧 경보국(警保局) 속(屬)으로 근무했다. 이후 군마현(群馬縣), 효고현(兵庫縣) 참사관을 거쳐 1894~1895년경 조선 정부에 고빙되어 내부 고문관을 지냈다.[4] 한편 그는 1891년 추밀원 부의장 소에지마(副島種臣)를 중심으로 조직된 '아시아주의' 단체 동방협회(東方協會)[5] 회원으로 조선 근무 경험을 담은 저서 ≪조선론(朝鮮論)≫을 이 단체에서 간행했다.[6] 이런 점에서 오바의 정

---

2) 이런 장기 재임은 이후 1945년 8 · 15 때까지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3) 이하 부윤 및 고등관의 이력상의 특징 중 특별히 출처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근현대인물자료'와 '직원록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4) 京城府, ≪京城府史≫ 2, 1936, 625쪽.

5) 동방협회는 청나라와 조선을 서구 열강의 간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일본의 적극적 대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단체로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병합 등 일련의 고비에서 일본의 대외 정책의 방향을 팽창주의로 견인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 단체이다. 회원 중에는 이 시기 조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있었다(최혜주, 〈일본 東邦協會의 조선사정 조사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2012 참고).

6) ≪조선론≫은 본문 2부 5장, 부록 동방협회의 취지 · 규약으로 구성된 300여 쪽의 책자이다. 본문은 총론, 결론을 제외하면 조선의 조세와 재정 등을 소개한 '국력론', 유교를 설명한 '국교론', 대외 관계를 분석한 '외교론'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판권지에 '1896년 7월 발행'으로 되어 있으나, 서문에 저자 오바가 '전 조선 내부 고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집필 일자는 '1895년 12월'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 책의 집필은 1895년 중에 이루어졌으며 연말에는 이미 내부 고문직을 사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내부 고문 활동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치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에서 짧은 고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오바는 사가현(佐賀縣), 시즈오카현(靜岡縣) 서기관을 거쳐 1898년 12월 에히메현(愛媛縣) 지사로 영전했다.[7] 지사 재임 중에는 에히메농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 설립에 관계하는 등 중등 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0년 4월 지사직에서 퇴관했다. 이후 병합 때까지 오바의 이력은 크게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조선과 관련하여 오바의 이름은 1904년 한국인의 멕시코 이민에 관계한 인물로 다시 등장한다.[8] 오바는 1903년 도쿄의 중앙이민회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이민회사인 대륙식민회사(大陸植民會社) 경성지사의 책임자였다.[9] 그런데 멕시코 이주 한인의 처지가 열악했기 때문에 대륙식민회사나 오바의 활동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매우 안 좋았다. 예컨대 황현(黃玹)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일본인 大庭寬一은 생활이 궁색한 우리 유민을 꾀어 남녀 수천 명을 배에 싣고 멕시코로 들어가 노비로 팔았다. 멕시코 사람들은 그들을 농부로 만들어 소나 말처럼 학대하므로 그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도주하거나 사망하여 거의 인원이 헤어지고 없었다"고 썼으며, 1909년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기사도 한인의 멕시코 이민은 "窮凶極惡ᄒᆞᆫ 大庭貫一(日人)의 賣人肥己ᄒᆞᄂᆞᆫ 手段에 陷入"한 까닭이라고 했다.[10]

오바는 병합과 더불어 경성부윤에 임명되어 약 1년 6개월 간 재임 후 1912년 4월 1일 신병으로 퇴관했으며, 1916년 3월 사망했다.[11] 오바는 무엇보다 이

7) 그런데 ≪경성부사≫에 오바는 '愛知縣知事'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경성부, ≪경성부사≫ 2, 1936, 519쪽). 이는 '愛媛縣'의 오기라고 여겨진다. 역대 아이치현 지사 명단에 '大庭寬一'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으나 ≪愛媛縣史 部門史 人物≫(1989)에서는 '大庭寬一'을 "전직 관선 지사 및 조선총독부 관료 역임자"로 소개하고 있다.

8) 물론 이 사람이 경성부윤을 지낸 오바와 동일 인물이라는 '확증'은 없으나 개연성은 낮지 않다.

9) 국사편찬위원회 편, ≪재외동포사총서 6 – 중남미한인의 역사≫ 제1장, 2007 참고.

10) 高元勳, 〈懷我墨西兄弟〉 ≪大韓興學報≫ 4, 1909.6.

11) ≪매일신보≫ 1910년 10월 1일, 1912년 4월 7일 ; ≪愛媛縣史 部門史 人物≫(1989).

미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현지사를 지낸 전직 관료로서 격에 맞지 않는 자리인 조선의 부윤으로 다시 부임한 점이 이례적이다. 짐작하건대 퇴직 관료에게 병합에 따라 새롭게 생긴 '자리'를 준 정치적 인사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인사는 식민지 관료제의 정상적인 싸이클이 아직 정착하지 못한 병합 초기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2대 가나야 주

2대 부윤 가나야 주(金谷充)는 1858년 도쿄 부근 사이타마현(埼玉縣) 태생으로 학력은 알 수 없다. 1881년 효고현 경부(警部)가 되어 이후 경시청, 히로시마현(廣島縣), 도쿠시마현(德島縣) 등지에서 경찰 생활을 했다. 1888년 경찰을 사직하고 교토 동지사(同志社) 간사로 9년간 재직하다가 다시 경시청 속으로 관계에 복귀했다. 1897년 이래 아오모리현(青森縣), 후쿠이현(福井縣) 등지의 여러 군에서 군장(郡長)으로 재임하다가 1908년 6월 대한제국 정부에 고빙되어 함경남도 도서기관에 임명되었다. 병합 후에도 계속해서 함경남도 도사무관(내무부장)으로 재임하다가 1912년 4월 1일 경성부윤에 임명되었다.[12] 가나야는 경성부윤으로 7년 8개월간 장기 재임하다가 1919년 12월 4일부로 마산부윤으로 전임되었는데 부임 준비 중 12월 18일 사망했다.[13] 그런데 부윤 중 최선임자인 경성부윤에서 마산부윤으로 전임한 것은 명백히 좌천성 인사였다. 다음 기사에서 이런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재작년 가을까지 경성부윤으로 있다가 마산부윤으로 좌천이 되면서 도임하기 전에 졸연히 세상을 하직한 金谷充씨는 경성부윤 팔년 동안에 년년히 부하에 공금을 범포하는 자가 생기는 까닭으로 여기 대한 책임을 지게 되야 그 동안에 월급 한번 오르지 못하고 연말 상여금도 어더 먹지 못하다가 마지막 해에 간신히 별일 업섯슴으

12) 〈1908.6.9, 通牒, 내부 비서과장代辦 吳在豊→내각 법제과장 洪運杓〉 ≪각사등록 근대편≫ ;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4월 6일.

13)≪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12월 11일 ; ≪매일신보≫ 1919년 12월 17, 19일.

로 금년에는 처음으로 상여금도 먹고 승급도 되겟다고 깃거하면서 "실상 그 동안에는 가족에 대하야도 면목이 없섯다"고 정근한 친구의게 이야기를 한 지 몃칠이 되지 못하야 돌연히 경성을 떠나게 되고 인하야 세상까지 버렷다는 사실을 보아도 (후략)[14]

상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가나야의 부윤 재임 중 하급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가나야는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했음을 알 수 있다.[15] 가나야는 1914년 〈부제〉 제정 이전 부윤에 임명되어 〈부제〉 제정 이후 장기간 재임한 점에서 부 행정 과도기의 부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제〉 제정에 따른 여러 변화는 가나야 부윤 시기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일례로 1914년 4월 1일 〈부제〉 시행일의 풍경을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金谷부윤은 前 5部長을 該府廳으로 集하야 설명하기를 종래 숙제되던 部사무소 폐지의 안건은 본1일로써 단행하는 바 부장의 명칭도 이를 從하야 소멸됨은 不易의 事이나 행정상 補佐가 不尠하야 관민간의 의사를 매개 소통케 한 效勞는 필설로 難記라 하얏고 각부에 근무하던 서기는 정식으로 解免발령서를 일일 분급하고 사무는 전과 如히 시무케 하라 하얏다더라. (중략) 폐지된 5부장 이하 일반 서기를 부윤실 문전에 會立하고 부사무 폐지된 내용을 설명하고 다년 근무하던 공로 위로금 약간식을 급여하얏다더라.[16]

(3) 3대 사이토 레이조

3대 부윤 사이토 레이조(齋藤禮三)는 1875년 구마모토현(熊本縣) 태생으로 1901년 동경제국대학 영법과를 졸업하고 곧 검사로 임용되어 나고야(名古屋) 등지의 지방재판소에서 재직했다. 그는 관료 경력 초기부터 유력 정치인 고토(後

14) 〈貧民의 膏血을 酒色에 범포케 한 경성부 내면의 폐막〉 ≪동아일보≫ 1921년 6월 30일.

15) 이렇게 본다면 가나야가 경성부윤으로 이례적으로 장기 재임한 것은 그가 원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본인의 관력에 계속 상처가 되는 경성부윤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배경'을 가지지 못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할 듯하다.

16) ≪매일신보≫ 1914년 4월 3일.

藤新平),[17] 기요우라(清浦奎吾)[18]와 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9년 경성부윤 전임에 즈음한 프로필 기사는 사이토를 경력을 이렇게 말한다.

> (전략) 齋藤禮三씨는 肥後藩士의 後로 明治8년 熊本縣에서 출생하야 명치34년 帝大 英法科 출신의 법학사이오 학교를 출한 후 直히 검사에 임명되야 名古屋 기타 각지방 재판소에 봉직하얏고 후에 後藤新平 男의 推輓으로 대만총독부 사무관, 경시, 참사관 등의 요직을 경하고 41년에 통감부 서기관으로 轉하야 즉시 한국정부에 용빙되야 내부 서기관겸 경무국 보안과장과 지방순찰관 등을 역임하얏다가 병합 전후에 경상남북도의 내무부장이 되고 대정원년에 충청북도 제1부장이 되야 금일에 급하얏는대 그간에 노진하야 고등관3등 1급봉을 수하고 종5위 훈5등의 위훈을 유하얏더라. (중략) 다년 지방행정에 종사하야 상당한 경험 포부를 유한즉 경성부윤으로 실로 적임이라 하겟고 씨는 현 樞府 부의장 清浦奎吾 子의 신임을 수하야 전년 청포내각이 성립하랴할 때에 씨도 모 중요한 지위에 발탁되랴다가 遂히 蹉跌하얏는대 久히 충북 小天地에 蟄伏하다가 금일의 영전을 견하얏스니 씨의 득의도 상상함에 유여하도다.[19]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토는 검사로 재직 중 고토의 추천으로 대만총독부에서 식민지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1908년 통감부로 전임했으며, 거의 동시에 대한제국 정부에 고빙되었다.[20] 병합 당시 경상남도 도서기관으로 재임하다가[21]병합 후 경상북도를 거쳐 충청북도 도사무관(제1부장)으로 거의 8년여 간(1912~1919) 재임했다. 위 기사에 나오는 "현 樞府(추밀원) 부의장 清浦奎吾 子의 신임을 수하야 전년 청포내각이 성립하랴할 때에 씨도 모 중요한 지위에 발

17) 後藤新平(1857~1929): 일본 정치가, 식민행정 전문가. 1895년 이래 내무성 위생국장, 대만총독부 민정장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초대 총대, 내무대신, 도쿄 제도부흥원 총재 등 역임.

18) 清浦奎吾(1850~1942): 구마모토 출신, 일본 정치가. 사법대신, 농상대신, 추밀원 의장 등을 거쳐 1924년 호헌 3파 내각의 총리대신 역임.

19) ≪매일신보≫ 1919년 12월 9일.

20) 〈1908.3.24, 通牒, 內部 祕書課長 金裕曾→內閣 祕書課長 高源植〉 ≪각사등록≫.

21) 〈1910.8.20, 庶收 제663호, 慶尙南道 書記官 齋藤禮三→東萊府尹 金彰漢〉 ≪觀察道來去案≫ 제2책, 奎118131.

탁되랴다가 遂히 蹉跌하얏는대"라는 표현은 1914년 지멘스 사건으로 제1차 야마모토(山本權兵衛) 내각이 무너지고 기요우라가 조각 대명을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 그러나 당시 기요우라 내각은 해군 측의 반대로 성립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이토는 기대했던 기요우라 내각의 주요 지위에 발탁되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조각 실패의 파문에 휩쓸렸던 것으로 보인다. "久히 충북 小天地에 蟄伏"했다는 표현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일단 한 도의 도사무관으로 8년 가까이 재임한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식민지시기 충청북도는 도세가 약한 세칭 '3등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이토에게 오랜 만에 충청북도를 떠나 경성부윤에 발탁된 것은 일종의 '재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윤 전임 1년여가 지난 1921년 초 벌써 도지사 영전 후보로 거명되는가 하면 경성부윤이 칙임관으로 승급하면 그에 오를 제일의 후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22] 사이토는 1921년 8월 함경북도지사로 영전했다. 언론에서는 그의 빠른 영전을 "예정된 수순"이라고 평했다.[23] 사이토는 통감부 시기 도한한 점에서 식민통치 초기 고위 관료군과 맥을 같이 하나 제국대학 출신으로 유력 정치가와 인맥이 닿아있고, 그리하여 경성부윤 직위를 정치적 재기를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로 삼은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공식 행사장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연설을 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여 언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 그날(봉래정 昭義學校[후일 남대문상업학교, 현재 동성고등학교] 상과 설립 피로연)은 각 학교 교장과 학무과장이며 경성부윤도 참석하야 그 학교의 전도를 축하얏다. 그러하나 경성 30만인의 부민을 대표하는 부윤 齋藤禮三君이 축사를 述함에 당하야 兩手를 '포켓트'에 入한 채로 방약무인의 태도로서 더구나 전도가 만리갓흔 소년 학생 등의게 훈유하는 식장이다. 재등군은 관리생활을 幾許나 經ㅁ하얏스며 여사한 식단에 출입함이 기회인지 차를 지키 난하겟스나 소위 부민 대표된 부윤의 자

22) ≪매일신보≫ 1921년 1월 30일.

23) ≪매일신보≫ 1921년 8월 6 · 7일.

격으로서 이갓흔 무례한 태도는 금일 초견이다. 재등군이 여하히 관료식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少히 자기의 지위와 체면을 顧할 필요가 유하니 군의 상관인 재등 총독이 盛히 평민주의를 실행하거던 하물며 그 부하인 부윤쯤으로서 여사한 무례의 태도에 출함과 여함은 자못 온건치 못하다. 오인은 窃히 재등군의 일고를 促하노라.[24]

2) 경성부 고등관

<표 2> 1910년대 경성부 고등관과 그 이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통역관	1910.10.1~1912.4.1	高雄謙三	1895 원산일본영사관 서기생 1904~1905 부산일본영사관 서기생 1906 통감부 통역생 1907~1910.10.1 통감부 통역관
부사무관	1910.10.1~1911.11.15	高橋康世	
	1912.1.11~1912.4.1 1914.8.11~1918.3.8	石原留吉	1909.4~1910.10 대한제국 내부 주사(경무국) 1910.10.1~1912.1.11 경성부 부서기 1912.4.1~1914.8.11 경남 도사무관
	1915.11.2~1921.2.10	北村健吉	1910~1915.11.2 충남 도서기(재무부, 제2부)
	1918.3.14~1921.1.15	服部豊吉	1907.11 대한제국 재정고문부 1909.4 탁지부 회계검사국 부검사관 1910.10~1918.3.14 조선총독부 속(탁지부 사계국, 토목국 등)
	1919.11.1~1921.2.10	曾我章四郎	1905~1906 경성우편국, 부산우편국, 대구우편국 1906 통감부 체신 속 1907~1909 통감부 인사과 통신관리국 1908 철도관리국
	1919.11.1~1921.2.10	曾我章四郎	1910.10.1~1920 조선총독부 속, 서기, 통신(체신) 사무관보 겸무(총무부 인사국, 철도국, 통신국 등) 1920~1921.8.5 조선총독부 속(관방 비서과)

24) ≪매일신보≫ 1920년 5월 3일.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사무관	1919.12.27~1921.2.10	澤村荒次郎	1910.4 경북 도주사 1910.10.1~1911.5.9 경북 도서기(관방, 내무부) 1911.5.9~1921.2.16 조선총독부 속(내무부 지방국) 1919.12.27~1921.2.16 경성부 사무관, 이사관 겸무
	1921.1.24~1921.2.10	丹羽太一郎	1910.10.1~1913.2.15 조선총독부 속(식산국 농무과) 1913.2.15~1914.9.29 함남 도서기(내무부) 1914.9.29~1920.2.6 조선총독부 속 (농상공부, 식산국) 1920.2.6~1921.1.24 경북 도사 겸 도경시 (울릉도사, 울릉도경찰서장)
이사관	1921.2.10~1921.6.14	北村健吉	위와 같음
	1921.2.10.~1921.8.5	曾我章四郎	위와 같음
	1921.2.10~1924.12	澤村荒次郎	위와 같음
	1921.2.10~1922.9.16	丹羽太一郎	위와 같음
	1921.1.12~1921.5.6	吉留直哉	1910.11.24~1921.5.6 조선총독부 속(총무부 회계국 경리과, 총무국 회계과, 총무국 인쇄소, 서무부 회계과 재근)
부기사	1918.7.9~1920.5.5	杉與三	1915.8.3~1917 조선총독부 기수(토목국 토목과) 1918 조선총독부 기수 (토목국 평양출장소) 1918.6.21~1918.7.9 조선총독부 기사 (토목국 토목과)
	1920.6.21~1922.8.22	寺本千太郎	1912.7.6~1914 조선총독부 기수(토목국 공무과) 1915~1916 조선총독부 기수(토목국 경성출장소) 1917~1918 조선총독부 기수(토목국 부산출장소) 1919 조선총독부 기수 (토목국 경성출장소) ~1920.6.21 조선총독부 기수(토목국 토목과)
부참사	1911.2.1~1913.6.4	兪吉濬	1881 조사시찰단 1883 보빙사 수행원 1894 외아무참의 1895 내부협판 1907 한성부민회장
	1911.2.1~1919.9.10	沈宣碩	1892 무과 급제 1895.4 내부 기수 1895.7~1907 내부 기사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참사	1915.11.1~1919.9.10	金重煥	1888 문과 급제 1898 내부협판 1898 개성부윤 1900 중추원 의관 1919.5 광화문금융조합장

1910년대 경성부 고등관은 지방관관제상 정원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직위 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부통역관은 다카오(高雄謙三) 1명이 재임하다가, 부통역관 폐지에 따라 총독부 총무국으로 전임했다.

부 행정을 총괄하는 부사무관으로는 모두 7명이 재임했으며 이들 중 4명은 관제 개정으로 이사관으로 직위를 바꾸어 계속 재임했다. 그밖에 처음부터 경성부 이사관으로 부임한 자로서 요시토메(吉留直哉) 1명이 있다.[25] 이들은 주요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개 통감부 시기 대한제국 정부 관료로 고빙되었으며, 병합 후 총독부 서기·속 등의 판임관을 거쳐 승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수는 경성부 재임 전 기간 혹은 일부 기간 중 경성부 고등관과 총독부 내무국 속을 겸무했다.[26]

한편 이들 중 경성부 고등관을 거쳐 지방 부윤으로 승진하여 관료 생활을 마친 자가 4명이나 된다. 신의주·원산부윤을 지낸 이시하라(石原留吉), 목포부윤을 지낸 소가(曾我章四郎), 군산부윤을 지낸 사와무라(澤村荒次郎), 평안남도 이사관을 거쳐 원산부윤을 지낸 니와(丹羽太一郎) 등이 그들이다. 여기에서 '총독부 판임관(서기·속) → 경성부 고등관(부사무관·이사관) → 지방 부윤 → 퇴관'이 판임관에서 출발하여 고등관이 된 관료가 거쳐 가는 전형적인 코스 중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여러 직위에서 다양한 지방행정 경험을 하여 실무에 밝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사와무라의 경우 퇴관 후에

25) 부사무관에서 이사관으로 직위가 바뀐 것은 현재의 공무원 제도에 빗대어 말하자면 요컨대 중앙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26) 여기에서 총독부 속과 경성부 고등관이 거의 비슷한 급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총독부와 경성부 촉탁을 계속 지내며 1931년 4월 지방제도 개정안 작성에도 참여하는 등 일종의 '지방행정 전문가'로 활동했다.[27]

그밖에 부사무관을 지낸 자들 중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이시하라를 들 수 있다. 그는 1910년대 경성부 고등관 역임자 중 유일한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로서 병합 후 경성부 부서기를 거쳐 부사무관으로 재임했다. 그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가 간행한 ≪경성안내(京城案內)≫ 집필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진회 관람객에게 경성을 소개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 책자는 경성을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주요 명승고적을 큰 비중으로 다루었다.[28] 이런 책자의 집필을 전담한 것은 그가 그만큼 초기부터 경성부에 다년한 재임한 관료였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케이스로서 1894년부터 일본에서 하급관료 생활을 하다가 1907년 대한제국 관료로 고빙되어 병합 후 총독부 속을 거쳐 1918년 3월부터 부사무관(제1과장)으로 약 3년간 재임한 핫토리(服部豐吉)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는 퇴관 후에도 계속 경성부를 근거로 여러 기업체에 관여하는 한편 1923년 경성부협의회원에 당선되기도 했으며, 1924년에는 일본인이 주도하고 일부 친일 조선인이 결합한 '친일단체'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에서 활동했다. 갑자구락부는 친일단체 중에서도 주로 재조선 일본인 지위 향상 운동, 참정권 청원 운동 등을 전개한 '(조선인의) 친일단체'라기보다 '재조선 일본인 단체'에 가까운 단체였다.[29] 이런 점에서 핫토리는 식민지 관료로 출발하여 퇴관 후 재조선 민간 일본인 유력자로 전신(轉身)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식민통치 후반부로 들어서면 이런 유형의 인물이 간혹 보이나 1910년대 고등관 역임자로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

27) 〈숨은 功勞者의 一人〉 ≪매일신보≫ 1931년 4월 1일.

28) 김백영, 〈경성안내〉 ≪오늘의 도서관≫ 244, 2016.

2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갑자구락부' 항목.

3. 1910년대 경성부윤의 주요 정책

1) 부윤 재임의 소회

1910년대 경성부는 부 행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시기이다. 부윤 또한 식민지 관료의 '정통' 코스를 거쳐 성장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윤으로서 특기할 만한 정책 목표나 지향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가능한 선에서 경성부 행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30]

1대 부윤 오바는 〈부제〉 공포 이전에 재임했다. 이 시기 경성부 소관 사무는 토지·가옥 소유권 증명, 전당권 집행 등 극히 제한적인 사무 처리에 불과했다. 따라서 부윤이 부정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발언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대 부윤 가나야도 역시 〈부제〉 공포 이전에 부임했다. 그러나 워낙 장기간 재임했기 때문에 그의 재임 기간 중 〈부제〉가 공포되어 부는 법인격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일본인 거류민단의 해체, 각종 행정·재정 정리, 5부 8면의 외곽 행정구역 축소·정리 등의 절차가 뒤따랐다. 또 대형 행사로서 1915년 가을 조선물산공진회가 경복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어서 총독부 신축 공사도 시작되었다. 그런가 하면 도시 기반 시설 확충으로서 제1기 경성부 하수도 확장 사업(1918~1924)도 시작되었다. 그는 1919년 12월 마산부윤 전임을 앞두고 경성부윤 재임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명치45년 4월에 부임하야 8년 동안이나 경성부윤의 중임을 띄고 성심성의로 부내를 다스려오던 금곡충씨가 이번에 돌연히 마산부윤으로 전임 (중략) 내가 중임을 띄고 항상 생각하던 바는 경성은 조선에 首府인 고로 무슨 일이던지 다른 곳의 모범이 될 만하게 만들랴 하얏스나 나의 힘이 부족하야 필경에는 뜻과 같지 못하얏슴이

30) 경성부윤 편에서 각 시기 경성부윤 주요 정책의 1절은 부윤 임기 개시에 즈음한 나름의 정책 목표를 밝힌 '부윤 취임 제일성'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1910년대의 경우 취임에 즈음한 부윤의 발언을 찾을 수 없어 부윤에서 물러나면서 재임 중의 소회를 밝힌 발언으로 대체한다.

유감이올시다. (중략) 경성부에 부임한 지 이미 햇수로 여덜 해이나 되는데 아무 것도 한 일이 업슴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와 갓흔 어려운 공사는 완성이 되얏지오. 그 밧게 중앙시장, 간이시장, 도로, 도서관, 주택문제 같은 것도 두루 생각을 하얏스나 그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도 만습니다. 진실로 붓그러웁슴니다.[31]

가나야는 본인 재임 중의 뚜렷한 '공적'으로 하수도 확장 사업의 개시를 내세우고 있다. 그에 비해 시장, 도로, 도서관, 주택 등 여러 사회 시설은 큰 진척을 보지 못했음을 자인하고 있다. 기실 부윤이 누구라도 이 시기 경성부 재정 규모를 염두에 두면 별다른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은 어려운 형편이었다. 1910년대 경성부의 가장 뚜렷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으로는 시구개수(市區改修)에 의한 도로 정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총독부의 국비 사업이었다. 또 제1기 하수도 확장 사업도 개시는 되었지만 그 성과는 계획에 훨씬 못미쳤다.[32]

3대 부윤 사이토는 부윤으로 오래 재임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야와 비슷하게 함경북도지사로 영전하면서 밝힌 부윤 재임의 소회가 있다.

금회 경성부윤으로 함경북도지사로 영전한 재등례삼씨는 경성부 발전책에 대해야 語하야 曰, 경성부는 조선 제일 도회로 且 정치의 중심지임에 불구하고 특히 현저진보가 무함은 심히 유감에 불감하는 바이라. (중략) 이것이라 할 만한 공장도 업스며 상업도 역 부진한 바 일시 한강의 水를 이용하야 일대 제지 공업을 계획하얏섯스나 재계 불황으로 수히 불성공에 終하얏도다. 장래 경성의 발전을 計코자 하면 여하히 하던지 한강을 이용하야 공업의 발달을 圖치 안이하면 불구하도다. 현재 한강을 이용하야 사업을 행하는 자가 無함은 유감이오 전기회사와 如함은 한강을 이용하면 전등료도 극히 저렴히 시민에게 공급함을 득할지오 시구개정과 如함도 경성부 발전책으로 하야 필히 단행치 아니하면 불가한대 차는 불소한 경비를 요한 고로 용이히 단행키 난하며 시구개정과 동시에 하수의 개량도 역 필요한 바이라. 현재와 如한 현

31) 〈馬山으로 轉任되는 金谷充氏의 多情한 一言의 付託〉 ≪매일신보≫ 1919년 12월 11일.

32) 제1기 경성부 하수도 확장 사업의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 ≪朝鮮土木事業誌≫, 1937, 1239~1265쪽 참고.

상으로는 도시의 가치가 무하며 교통기관과 如함도 소위 사통팔달이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도시의 가치가 無한 바인대 장래 시구개정이 완성되면 시내는 물론 시외라도 일층 교통의 편이 유할 터인대 현재에는 매우 양호치 못하며 가옥의 拂底도 경성부의 발전상 심히 유감되는 바이라. 부에서는 주택 완화를 위하야 부영주택을 건설하얏는대 도저 부민의 요구를 만족함이 불능하도다. 余는 一昨年 12월 부윤으로 著任한 이래 약 1年有半이 되는데 행할 바 事가 多함에 불구하고 중도전임하게 됨은 심히 유감이로다.[33]

대체로 전임자의 상투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거듭하여 한강의 용수와 수력을 이용한 공업 개발을 역설하는 점은 1920년대 이후 점차 활발해질 경성 도시계획 논의를 예고하고 있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2) 주요 정책

(1) 징세 독려

경성부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1910년대 상황에서 부윤의 행정 행위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세 독려이다. 이는 1910년대 경성부 징세 성적이 상당히 부진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후일의 자료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경성 시외 인민에 대해 융희 3년(명치 42년, 1909) 가옥세·주세·연초세법을 만들어 비로소 과세를 시작한 사실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는 물론이고, 기타 공과금을 부담시킨 일이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경성부 시가의 인민은 일반적인 납세 관념이 전혀 없었다. ② 부·면에 빈궁자 수가 매우 많았다. ③ 옛부터 조선에서는 家運의 성쇠에 따라 主家를 교체하는 습관이 있었다. 또 매년 시구 개정이 있었고, 이주자의 증가와 轉居 등으로 인한 출입이 대단히 빈번하였다. 게다가 경

33) 〈京城의 發展策, 齋藤知事談〉 ≪매일신보≫ 1921년 8월 10일.

> 성부의 부·면은 이 무렵까지 民籍조차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동 신고를 하는 자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과세 물건의 정리도 교란되어 확실한 부과도 할 수 없었다(주세와 연초세도 이러한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④ 지세 면적은 468만 3,380리인데, 이 땅의 지주인 납세 인원은 실제로 2만 3,677명에 달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채 199厘도 되지 않는 등 매우 영세한 액수에 불과했다. 이처럼 부담액이 소액이었으므로 언뜻 보면 징수가 용이할 것 같지만, 실제 납세원으로서 택지와 논밭을 모두 소유한 지주는 고작 4,428명에 불과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만 9,249명의 지주는 모두 택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빈약한 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따라서 199리의 부담조차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 같은 다수의 납세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독촉을 가해야만 했다. ⑤ 이것은 단지 조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위생비·부면비·학교수업료 등 각종 부과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⑥ 위와 같은 이유로 항상 체납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품이 들어갔다.[34]

위에서는 경성부 징세 부진의 이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리하면, 첫째, 부민의 경제 상황이 빈한하여 세금 납부 능력이 떨어지는 점, 둘째, 초창기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의무자가 불분명한 점, 셋째, 그간 시가지에 대한 과세가 없어서 부민의 과세 관념이 희미한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토지조사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을 말해준다. 문제는 세 번째이다. 종래 도성 내의 토지에는 지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도성민은 과세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1914년 〈시가지세령〉을 제정하여 호수 1천 호 이상의 이른바 "시황이 번화한 시가지"를 지정하여 시가지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시가지세 과세 지역은 행정적 도시인 부와 거의 일치했다. 그런데 당시의 관념에서 시가지세는 완전히 새로운 조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체납율도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5]

---

34) 京城府, ≪京城府史≫ 2, 1936, 437쪽.

35) 박준형, 〈'租界'에서 '府'로〉 ≪사회와 역사≫ 110, 2016 참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징세 성적은 조금씩 개선되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강력한 징세 독려 때문이었다. 예컨대 가나야 부윤의 경우 1912년 4월 부임과 더불어 가장 먼저 한 일이 구역내 가옥세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시킨 동부장(東部長) 사일환(史一煥)을 표창하고, 관내 5부 8면장에게 납세조합 조직을 독려하는 통첩을 내린 일이었다.[36] 심지어 1912년 6월 7일 새롭게 남부장(南部長)에 임명된 예종석(芮宗錫) 환영회 연설이 "남부 관내 각항 납세를 지원하고 장애가 없게 할 목적으로 납세 찬무원 30여 명을 선정"했음을 강조하는 등 온통 징세 이야기뿐이었음은 부윤이 여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37] 이듬해 초 부·면장 신년회에서도 부윤의 제일성은 "세금 징수시에 반드시 審愼할 것"이었다.[38] 같은 해 5월에는 납세 성적 양호 시상식을 거행하는 한편 백작 이완용, 자작 조중응 등 '거물급' 인사를 납세조합장에 임명하기도 했다.[39] 이런 '독려' 결과 징세 성적은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경성부사≫의 서술을 보자.

> 징수 성적을 보면 매년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결코 납세 관념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종래 납세 독촉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불평했던 자들이 점차 엄격하고 공정한 납부 독려에 대해 도저히 돈을 내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된 상황을 스스로 깨달아 결과적으로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물론 다소나마 납세 의무에 관한 관념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징수 성적이 좋아진 것은 다름 아닌 징수 관련 시설의 정비와 관의 주도적인 독려 결과 덕분이었다.[40]

36) ≪매일신보≫ 1912년 6월 16일, 7월 4일.
37) ≪매일신보≫ 1912년 7월 6일.
38) ≪매일신보≫ 1913년 1월 10일.
39) ≪매일신보≫ 1913년 5월 15~22일.
40) 京城府, ≪京城府史≫ 2, 1936, 437쪽.

(2) 하수도 확장 사업 개시

1910년대 경성부가 추진한 거의 유일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은 1918년 개시된 제1기 하수도 확장 사업이었다. 병합 직후 경성에는 전통적인 간선 하수도인 청계천, 대한제국 후기부터 통감부 시기 축조된 덕수궁, 황금정 입구(현재 서울광장 부근), 남대문로 배수로, 그리고 남촌 구 일본인 거류지에 거류민단이 축조한 배수로 정도 외에는 하수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41]

이런 가운데 1912년 경성시구개수가 개시되면서 도로 정비와 하수도 축조를 병행한 도쿄의 전례를 따르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이는 열악한 부 재정 때문에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경성부의 하수도 확장은 1910년대 후반에 와서야 겨우 논의 선상에 올라 마침내 1918년 제1기 하수도 확장 사업이 개시되었다. 2대 가나야 부윤은 이를 자신의 가장 큰(거의 유일한) '업적'으로 내세웠다. 아래의 기사에 따르면 가나야는 더 이른 시기부터 하수도 확장 사업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경성의 하수구 문제는 양삼년래의 문제이니 嘗히 왕년에 경성부에서 설계의 안을 具하야 모처에 상신하얏스나 시기와 예산의 관계상으로 중지함에 至하얏던 것이라. 연한대 금일에 再히 동문제가 略其형체를 整하야 출현한 것은 誠히 경하를 불승할 자라. 도시정책상으로 하면 시구개정, 상수도 등과 공히 하수구의 문제로 해결함이 가한 자인데 獨히 하수설비뿐 금일까지 천연한 것은 其間 又萬不得한 사정이 유함에 인함이라. 하수구의 개설은 단히 도시 외형의 미관을 첨할 뿐 아니라 공중위생상과 개인위생상에 다대한 이익을 여하는 것이로다. (중략) 경성부 금일의 재정상태로 언하면 도저히 재원을 증세에 구함과 여한 사는 불가능인 즉 勢가 차를 부채에 俟치 아니함을 부득할지니 若 玆에 30만 내지 40만의 부채를 기한다 하면 그 상환방법은 인구의 증가에 반한 부세입의 자연 증수에 의할는지 혹은 경우에 의하야 일부의 증세를 단

41) 병합 당시 경성의 하수도 현황은 조선총독부, 앞의 책, 1937 ; 경남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관내 근대배수로 정밀조사≫, 2013 ; 이연경,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 시공문화사, 2015 참고.

행하야써 연부 상환의 재원으로 하지 아니함이 불가하겠도다. 가령 증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물론 부민의 부담에 耐키 부득함과 여한 증세는 절대로 행치 아니할 방침이로다. (중략) 연이나 하수구가 준공되면 적극적의 이익은 무하나 도시의 위생상태로 하야금 건전 안고케 하고 延하야 위생비의 지출액을 감소케 하는 등 소극적의 이익을 蒙함이 일이에 지치 아니할 터인 즉 부민은 宜히 본 사업에 대하여 일제히 사의를 표하고 일일이라도 早히 사업의 낙성을 기할 각오가 유함을 희망하는 자이로다.[42]

다른 재원이 없는 가운데 경성부의 구상은 되도록 많은 액수의 기채(起債)를 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채 액수의 설정 같은 것은 경성부가 아닌 경기도의 권한이었다. 또 경기도는 경성부의 경제 규모를 넘어가는 기채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성부의 최초 사업 구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 기사는 이런 사정을 말해준다.

(전략) 하수구의 개설은 목하 급무인 즉 만난을 排하고 此를 기공하기로 하앗고 只 그 경비의 出所에 대하야는 屠獸場의 수입 3만원 내외와 자연 增收에 依할 외에 재원이 無하야 자연 국고 혹은 지방비의 보조를 仰하던지 사무를 절약하던지 進하야 일부의 증세를 행하던지 부채를 起하던지 할 외에 他道가 無함으로 일응 同工事의 직접의 감독관인 경기도장관과 상세히 상의를 요할 자이라 하야 (후략)[43]

당시 경성부의 재정 규모와 권한으로는 아무리 하수도 확장안을 큰 규모로 입안하더라도 실현이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하수도 확장 사업의 개시와 전개 과정은 형식상 법인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 권한이 거의 없는 경성부, 그리고 경성부윤의 제한된 권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42) 〈下水溝와 起債〉 ≪매일신보≫ 1916년 6월 29일.

43) 〈下水溝協議會〉 ≪매일신보≫ 1916년 7월 18일.

(3) 내선 융화

주지하듯이 병합 당시 일제가 내세운 통치 슬로건은 이른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동화주의였다. 그 본질은 물론 형식적 기만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제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다양한 '내선융화(內鮮融和)' 단체의 조직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런 단체는 대부분 수도 경성부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경성부윤은 여기에서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13년 경제인 중심의 실업구락부(實業俱樂部)의 경우 "金谷(가나야)부윤 등의 알선 진력한 결과" 조직되었다.[44]

7년 8개월이나 재임한 가나야 부윤 시기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이라면 단연 1919년 3·1운동의 발발을 들 수 있다. 3·1운동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의 친일 유력자와 관변이 연합한 교풍회(矯風會)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경성에서도 1919년 7월 경성교풍회가 조직되었다. 가나야는 창립 간화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고 있다.

> 본일은 高話를 拜聽하기 위하야 각위의 래임을 청하얏더니 여사히 다수 신사의 출석을 득함을 최히 欣幸하는 바인데 차 기회에 여는 일언의 희망을 진하야 각위의 찬성을 득코자 하나이다. 차는 非타라. 豫는 曾往부터 부민을 위하야 상호 융화 친목을 도하고 隣佑상조하야 질서의 유지 풍속 개량 등을 목적하는 정신적 단체를 설함에는 각의 이익이 될 뿐 不ㅁ라 延하야 상의하정상달을 계하는 상에도 不尠한 稗益이 잇슬줄로 신하노라. 고로 차 희망이 행으로 각위의 의견과 일치 공명함을 득하오면 詢히 欣喜하는 바이라. 機不可逸이니 행히 차석에서 협정하심이 여하오.[45]

창립 당시 경성교풍회는 회장 윤치호(尹致昊), 부회장은 김중환(金重煥, 경성부 부참사 역임), 한상룡(韓相龍), 유문환(劉文煥) 등이었으며, 민영기(閔泳綺), 민원식(閔元植), 조진태(趙鎭泰), 그리고 부윤 가나야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

44) 〈社說: 實業俱樂部〉 ≪매일신보≫ 1913년 7월 15일.
45) ≪매일신보≫ 1919년 7월 22일.

다. 경성이라는 지역 특성상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위급 친일 유력자들이 보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인 유력자로 조직된 교풍회에서 가나야는 유일한 일본인 참여자였다. 가나야는 부윤 재임 중의 소회를 밝히는 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또 그중 큰 문제는 내선인이 서로 정신의 융합을 한 후에 모든 사업을 시작하여야 완전할리라는 지신으로 일즉이 이에 뜻이 잇서 대정친목회, 노인계 같은 단체를 用하야 내선인의 융합을 도모하얏스나 맛침 실행치 못함은 유감이올시다. [46]

4. 맺음말

이상에서 1910년대 경성부윤의 면면, 경성부 고등관의 개요, 경성부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 격하된 경성부의 위상이 가장 뚜렷했던 '작은 경성부' 시기였으며, 부 행정이나 관료제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해 부윤이나 고등관 인사 또한 이례적인 면이 많은 시기였다. 따라서 경성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성부의 위상은 이후에도 8·15 때까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윤의 실질적·형식적 위상은 점차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했다. 그리고 고등관 정원, 직제 등 여러 측면에서 지방 행정 체계 역시 복잡해졌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병합과 더불어 경성부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격하시킨 일제의 방침이 얼마나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었는지 느낄 수 있다.

---

46) 〈馬山으로 轉任되는 金谷充氏의 多情한 一言의 付託〉 ≪매일신보≫ 1919년 12월 11일.

제3장

1920~1933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김대호(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머리말
2. 1920~1933년 경성부윤 및 경성부 고등관의 추이
   1) 경성부윤
   2) 경성부 고등관
3. 1920~1933년 경성부윤의 주요정책
   1) 취임 제일성, 경성부윤의 포부
   2) 주요 정책
4. 맺음말

1. 머리말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하면서 한성부가 갖고 있던 수도로서의 권위는 상실되었다. 한성부의 명칭은 경성부로 변화되고, 위상도 경기도 내 하나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전락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정구역도 대폭 축소되었고 부윤의 지위도 '중급' 식민지 행정관으로 격하되었다.

여기서 다루는 1920~1930년대는 경성부에 본격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지며 경성부민의 다양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던 시기였다. 1910년대 중후반 경성의 인구는 대략 24만 명으로 정체되어 있다가 1920년대에 들어 연 1~5%의 완만한 인구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성부의 중심부, 특히 종로와 그 이북 지역으로의 일본인 진출이 이어졌고, 경성부 인접 지역에서의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경성부 신청사의 건립, 전차 노선의 확대 등 도시 외관의 모습도 크게 변화되었고, 1923년 부업품박람회, 1929년 시정20주년 기념 조선박람회 등 각종 근대적 행사가 개최되었다. 또한 1920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기존 중앙의 행정업무 중 수도, 전기, 토목과 같은 일부 업무에 대해 지방 이관을 시행되고, 부의 자문기관인 부협의회원을 선거로 뽑게 되었으며, 1930년에는 자문기관이던 부협의회가 형식적으로나마 의결기관으로 바뀌는 등 제도적인 변화도 잇따랐다. 축소되었던 경성부의 위상도 높아 갔고 경성부를 특별부로 승격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1)]

이 글에서는 경성의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던 1920~1933년에 임명된 제4~10대 경성부윤과 그 시기 경성부에 재직한 고등관의 이력을 정리하고, 이 시기 경성부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26 – 경성부 도시 행정과 사회≫, 2015 및 이 책의 염복규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 참조.

2. 1920 ~ 1933년 경성부윤 및 경성부 고등관의 추이

1) 경성부윤

<표 1> 1920~1933년 경성부윤과 그 이력

대수	경성부윤	재근 기간	특기 사항	경기도지사
4대	吉松憲郎	1921.8.5~ 1923.2.23	1907년 대한제국 재정고문부 고빙으로 한국에 옴 도시 계획 및 민중 선도 개선 주력 도시계획 위원회 활동 경성부윤 후 퇴관	工藤英一 (1919.9.26~1923.2.24)
5대	谷多喜磨	1923.2.24 ~1925.6.14	도쿄제국대학 출신 1909년 경성재판소 판사로 한국에서 관직 시작 "민선 부윤" 자처 경성부윤에서 평안북도지사	時實秋穗 (1923.2.24~1926.3.7)
6대	馬野精一	1925.6.15 ~1929.1.20	1919년 경기도 경찰부장으로 조선에 옴 전형적인 경찰 관료 성향 위생제일주의 경성부윤에서 함경남도지사	米田甚太郎 (1926.3.8~1929.1.20)
7대	松井房治郎	1929.1.21 ~1929.12.10	도쿄제국대학 출신 1911년 조선에 옴(함경남도) 전남, 경기 등 내무부장 역임 조선박람회 협찬회 활동 경성부윤에서 함경남도지사	渡邊忍 (1929.1.21~1931.9.22)
8대	關水武	1929.12.11 ~1930.11.11	도쿄제국대학 출신 1919년 조선에 옴(도사무관) 각도 내무부장 역임 경성부윤에서 함경남도지사	
9대	安藤袈裟一	1930.11.12 ~1931.9.22	1919년 조선에 옴 (평안북도 도사무관) 황해, 평안, 경기 등 경찰부장, 충남, 전라 내무부장 역임 부회 실시 경성부윤에서 함경북도지사	

대수	경성부윤	재근 기간	특기 사항	경기도지사
10대	井上清	1931.9.23 ~1933.12	도쿄제국대학 졸업 1910년 조선에 옴(임시토지조사국 서기) 조선총독부 세무과장, 함경남도, 경기도 내무부장 역임 1928년 퇴관 후 朝鮮煙草元賣捌會社 사장, 1931년 경성부윤으로 관계 복귀 이마이다 정무총감, 마쓰모토 경기도 지사와 밀접한 관계 자력갱생 운동 적극 참여 경성부윤에서 조선총독부 체신국장으로 영전	松本誠 (1931.9.23~1934.11.4)

출처 : ≪조선총독부관보≫(조선총독부 관보 활용 시스템) ;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이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매일신보≫ ; ≪동아일보≫.
비고: 자세한 이력은 이 책의 <부록 1-1> 참조.

경성부윤은 경기도 내 지방 행정 기관의 책임자로서 상급 기관과 민 사이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시책 변화와 경성부의 급격한 도시화는 경성부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었다. 1920~1933년 경성부윤은 조선총독부 및 경기도의 새로운 시책(문화통치, 자력갱생 정책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경성부의 변화와 다양한 경성부민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시기의 경성부윤이 조선에 온 시기는 1910년 전후, 1919년으로 크게 나뉜다. 그러나 한국에서 관직을 시작한 시기와 경성부윤이 되는 것과는 특별한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1930년대 이후의 경성부윤이 이른바 조선에서 관료 인생을 시작하고 이후 인생의 대부분을 조선에서 보낸 '조선형 관료'인 것에 비해 이 시기에는 그런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다. 도리어 이들이 지극히 실무적인 지방 행정 관료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도쿄제국대학을 나와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에서 처음 관료 생활을 한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도 대부분 도 행정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적'인 '조선형 관료' 성격을 지니며, 일본

에서 관료 생활을 한 사람들도 조선에 오기 전에 지방 행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일본 본토의 인기 관청에 들어갈 수 없어 각종 경제적 혜택이 큰 조선에 와서, 지방 행정 실무 경험을 살려 관료 생활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 경성부윤이 가졌던 지방 행정 관료적 경험과 지향이, 도리어 그들이 경성부의 급격한 변화와 경성부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경성부의 확장, 인구 증가, 지방자치의 확대, 경성부민의 다양한 요구 등은 경성부윤의 위상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경기도의 지방행정구역의 행정관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중앙도시의 행정관으로 점차 경성부윤의 위상이 상승하였던 점은 분명하였다. 경성부윤은 일본의 중앙 유력자, 조선총독, 정무총감, 경기도지사 등과 직접적 관계를 맺으며 조선에서 손꼽히던 경성부의 유력자보다도 더 미력할 수도 있었다. 어떤 면에서 1920년대 초반의 경성부윤은 조선총독부 본부의 사무관보다도 그 영향력이 적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4대 경성부윤 요시마쓰 노리오(吉松憲郎)가 경성부윤에서 총독부 사무관이 되는 것을 영전이라고 할 정도였다.[2] 그러나 사실상 경성부윤을 끝으로 관직을 마친[3] 4대 요시마쓰 노리오와 달리 5대 다니 다키마(谷多喜磨) 이후 경성부윤은 대부분 평안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 등 도지사로 영전하였다. 1930년대 초의 제10대 부윤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는 조선총독부 체신국장이라는 요직으로 영전하였다. 또한 1920년대 중반 이후 경성부윤을 칙임관으로 하자는 경성부민의 여론이 매우 강해진 것도 상급 기관과 민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 통로가 되는 경성부윤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

2) 吉松憲郎, 安藤袈裟一 등 이력을 찾기 어려운 부윤들이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각종 인명록에 등장하지 않고 그나마 신문 기사나 본인이 쓴 회고담 등을 통해서 그 이력의 단편을 추적할 수 있다. 요시마쓰의 사무관 영전 관련 기사는 ≪매일신보≫ 1923년 2월 26일, 3월 10일 참조

3) 요시마쓰 부윤은 1923년 2월 24일 조선총독부 사무관(고등관 2등)이 된 이틀 후인 2월 26일 퇴직하였다. 퇴직 전에 고등관 2등을 달아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하 1920~1933년 재임한 경성부윤 7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4]

(1) 4대 요시마쓰 노리오

요시마쓰 노리오(吉松憲郎)의 출생연도와 출생지는 현재 알려진 것은 없다.[5] 그는 1907년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가 관리하던 재정고문부에서 고빙되어 한국에 왔다. 당시 메가타는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서 일제의 한국 침탈에 앞장서며, 세제 정비, 금융 관련 기관의 설치에 주력하고 있었다. 요시마쓰는 한국 정부에서 용빙한 스즈키(鈴木穆) 아래에서 사무를 담당하였다. 1907년 5월 통감부 재정 감사관에서 재정고문본부 총무부 서무과장이 되었으며 1908년에는 탁지부 문서과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약 30여 년 후(1936년)에 쓴 회고에서 군대 해산 때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회상하였다.[6] 1909년 말 결혼하였다.[7]

일제 강점 후 조선총독부가 들어서자 1910년 11월 조선총독부 도사무관이 되었다. 이후 1913년 식민지 재정 조사를 위해 이리에 카이헤이(入江海平, 1936년 척무차관)과 함께 독일에 시찰을 가서, 독일 할레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다. 다음 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일본 유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학생들을 감옥에 가두자 8월 14일 독일을 탈출하였다.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는 평안남도 재무부장을 거쳐 1916년 11월 경상북도 내무부장이 되었다. 경상북도 내무부장 역임 당시 3·1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 12월 경성부로 이동하였

---

4) 이하 부윤 및 고등관의 이력상의 특징은 ≪조선총독부관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직원록자료' 및 ≪동아일보≫, ≪매일신보≫ 등 신문 자료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5) 요시마쓰의 이력은 당시 인물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朝鮮新聞≫ 1936년 12월 2·3·4일에 실린 〈朝野名士の朝鮮觀〉을 통해 그의 생애를 대략적이나 파악할 수 있다. 이하 주요 이력은 해당 기사에 기초하여, 각종 신문 및 직원록 자료 등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6) ≪황성신문≫ 1907년 5월 24일 ; ≪內閣往復文≫(1909.1.11).

7) ≪황성신문≫ 1909년 12월 1일.



고, 1921년 8월 5일 경성부윤이 되었다가 1923년 2월 23일 그 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가 총독부 사무관으로 영전한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본인은 도리어 우려의 기색을 보였다. 그는 결국 총독부 사무관(고등관 2등)이 된 직후 퇴임하였고, 3월 10일 일본 도쿄에 도착하였다. 퇴직의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관 2등으로 승급한 후 바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나이 등의 사유로 총독부가 퇴직시킨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그 후의 행적은 1934년 도쿄의 중앙조선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8]

그는 부윤에서 물러난 지 10년 뒤에 경성부에 대해 회고하며, 자신의 업적에 대해 "사이토 총독의 문화통치에 적극 협력하고, 더불어 시구 개정, 부청사의 개축, 도로의 개수 등을 착착 실현하는 데 노력하였다"고 밝혔다.[9]

(2) 5대 다니 다키마

다니 다키마(谷多喜磨)는 1884년 사가현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9년 도쿄제국대학 독법과를 졸업하고, 그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경성구 재판소 판사에 취임하여 한국에 건너왔다. 1910년 12월 행정관으로 변경하여 충청남도, 황해도 등의 재무부장을 역임하고, 총독부 수산과장을 거쳤다. 1919년 6월 강원도 제1부장으로 진급하고 1923년 2월 24일 경성부윤으로 임명되었고 1925년 6월 15일 평안북도 지사가 되었다. 1929년 경남 지사로 영전하였으며 1930년 12월 관직에서 물러나 조선화재해상보험회사 사장으로 발탁되어 재계 활동을 시작하였다. 1932년 12월 조선신탁회사가 설립되자 초대 사장이 되었다. 1942년에

8) ≪매일신보≫ 1923년 2월 26일, 3월 10일 ; ≪삼천리≫ 1934년 8월 1일.
9) ≪조선신문≫ 1936년 12월 4일.

는 한강수력전기회사 사장, 사단법인 조선어업조합중앙회 경성부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해내는 인물이며 원기왕성하고 활동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웅변을 매우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 [10]



1923년 3월 13일 경성부윤으로 부임한 그는 "민선 부윤"을 자처하며 경성부민의 기대를 모았으나[11] 그에 대한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경성 삼십만 부민"의 명의로 "곡 경성부윤 불신임"이란 우편물이 부협의회원에게 배달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다니 부윤은 모범 도시의 부윤이 될 자격이 없고 부민을 위하는 사업은 하나도 아니하며, 전기 사업같이 진실로 부민에게 막대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는 척도 하지 않으며, 부협의원 선거에서 부정 사건이 있고 부하도 단속하지 못해 토목기수 방화사건, 민적계원 인지 위조 등 각종 불상사가 벌어진다며 그를 비판하였다.[12]

재임 기간 중 가축시장 문제로 그에 대한 조선인의 불만은 최고조에 올랐다. 다니 부윤이 조선인의 풍습을 무시하고 가축시장을 강행해서 만들었는데 실적이 매우 열악했던 것이다. 입장료와 중개료를 내려도 두 달 동안 입장한 소가 겨우 13마리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다니 부윤은 게다가 이를 위해 자본금 20만 원의 경성가축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불입금을 상업은행에서 자신 개인 명의로 빌렸다. 게다가 다니 부윤은 이를 우육상으로 조직된 조선인 집성 조합에 떠넘기려고 해서 사람들이 매우 분개했다.[13]

---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근현대인물자료(http://db.history.go.kr/id/im_215_21144).

11) ≪매일신보≫ 1923년 3월 15 · 16일.

12) ≪동아일보≫ 1924년 1월 30일.

13) ≪동아일보≫ 1924년 11월 20 · 22 · 30일, 12월 4일.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듯 조선인의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그는 1925년 6월 평안북도지사로 영전하였다.

(3) 6대 우마노 세이이치

우마노 세이이치(馬野精一)는 이전의 부윤과 달리 3·1운동 이후 조선에 온 관료이다. 그의 이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1884년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고,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1919년 조선에 가서 "제일선에서 상당한 활약"을 하고 경기도 경찰부장에 뽑히고 경성부윤이 되었다는 정도이다. [14]



조선에서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 일본 도야마현 이사관이었던 그는 1919년 8월 황해도 제3부장(총독부 도사무관)으로서 조선에 왔다.[15] 그후 1921년 경상남도 경찰부장을 거쳐, 1922년 9월 경기도 경찰부장이 되었다. 1924년 3월에는 총독부 경찰관강습소장이 되었다가 그해 12월 다시 경기도 경찰부장이 되었다. 이후 1925년 6월 15일 경성부윤이 되었고 1929년 1월 21일 함경남도 지사로 영전하였다. 1930년 전라남도지사가 되었다가 1931년 9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잠시 정계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1941년 조선해수흥업 사장이 되었다.[16]

경기도 경찰부장을 역임했던 그는 전형적인 경찰 관료로서 상당히 고압적이고 조선인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1923년 12월부터 1924년 1월 중순까지 경성에서 복어국을 끓여 먹

1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근현대인물자료(http://db.history.go.kr/id/im_215_21144).

15)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8월 28일.

1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직원록자료 ; ≪동아일보≫ 1931년 9월 17~23일, 1936년 2월 23일.

고 죽은 이가 12명이나 발생했다. 이들은 너무 가난하여 남들이 내어버린 복어 내장을 끓여 먹다가 사망한 것으로, 복어에 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다수의 사람이 죽자 복어 판매를 금지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그는 비록 비루한 거지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먹고 죽은 사람들은 자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판매 금지는 정사(情死) 때문에 연애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17]

이러한 경찰부장의 경력 때문일까. 우마노 경성부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둔 것은 위생 문제였다. 언론에서는 그에 대해 '위생 제일주의'라고 할 정도였다. 물론 위생은 우마노 부윤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도시 위생 문제는 경성부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와 맞물려 발생한 주요 현안이었으므로, 위생 문제를 강조하지 않은 경성부윤은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당시 우마노 부윤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생 제일주의라고 한 것은 그만큼 그가 이를 강조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의 위생 정책에 대해서는 뒷 절의 경성부윤의 주요 정책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18]

한편, 경성부윤이 된 그는 교육 문제로 경성부민, 특히 조선인과 많은 마찰을 빚었다. 부임 직후 우마노 부윤에게 처음 닥친 문제는 바로 이완용에게 부과된 학교비를 반감하여 학교비평의원회 전체 20명 중 19명이 사직을 결의한 것이다. 당시 이완용은 자신의 학교비를 5등급으로 결정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우마노 부윤은 학교비를 반감해주었다. 결국 이완용이 기부금 1,000원을 내는



17) ≪동아일보≫ 1924년 1월 10일.

18) ≪동아일보≫ 1926년 2월 23일 ; ≪매일신보≫ 1925년 7월 5일.

것으로 사태는 정리되었다.[19]

우마노 부윤은 바로 다음해 1월에도 학교비평의원회에서 조선인 평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일본인 소학교에는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한국인 보통학교에는 그렇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조선인에게 호별할로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조선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였던 것이었다. 조선인 의원들의 반발에 그는 법규대로 수속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나, 결국 조사회를 설치하여 보통학교 근본 방침을 연구하는 것으로 타협을 모색하였다.[20] 1926년 7월에는 경성부 주최로 보통학교 확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부협의원, 학교평의원, 학교조합원, 경기도청 측 등 50여 명이 참가하여, 1931년까지 5년간 100만 원을 내어 현재의 222학급에서 54학급을 증가하기로 하였다. 많은 비용이 부담되자 50만 원을 국고 부담으로 요청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비용 확보 문제는 당시 이슈가 되던 경성전기를 부영화하고 남산 국유 임야를 총독부로부터 불하받아 부영주택을 경영하여 비용을 확보하자는 논의로도 확장되었다.[21]

1929년 1월 함경남도지사로 영전한 우마노는 경성부윤 당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두고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우마노는 부협의회의 협찬도 받지 않고, 경성부 신당리의 부유지를 매각하면서 오사카에 사는 시마(島德藏)에게 대금도 받지 않고 2선 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인 학교조합의 땅은 부유지에 비해 매우 비싸게 책정하여 일본인의 이익을 우선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마쓰이 부윤도 이 뒤처리에 골머리를 썩었고 우마노의 함경남도지사의 사퇴설까지 흘러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마노는 전라남도지사로, 마쓰이는 우마노에 이어 함경남도지사로 영전하였지만, 이 신당리 토지 문제는 계속 우마노에게 꼬리표가 되었다.[22]

---

19) ≪동아일보≫ 1925년 7월 16일, 8월 7일.

20) ≪동아일보≫ 1926년 1월 8 · 9 · 10 · 11일.

21) ≪동아일보≫ 1926년 7월 8일, 8월 19일, 9월 30일.

22) ≪동아일보≫ 1929년 3월~12월 관련 기사 요약.

(4) 7대 마쓰이 후사지로

마쓰이 후사지로(松井房治郎)는 1881년 교토부에서 태어나서 1909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1911년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곧바로 조선에 시보로 부임하였다. 1912년 함경남도 사무관, 1913년 함경남도 재무부장, 1915년 3월 전북 재무부장, 1917년 8월 원산 세관지서장, 1919년 5월 부산세관장을 거쳐, 1923년 3월 전남 내무부장, 1926년 6월 경남 내무부장, 1928년 3월 경기 내무부장이 되었다. 1929년 1월 21일 경성부윤이 되고, 같은 해 12월 11일 함남지사로 승진했다. 1930년 11월 함남지사에서 물러나 새로 창립된 미곡창고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1937년 12월 10일 사망하였다. [23]



마쓰이는 경성부윤 재임 기간은 겨우 11개월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시책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그가 부윤에 있던 시기, 조선총독부는 조선박람회를 조선총독부 후원, 즉 경복궁에서 개최하였는데, 경성부에서 협찬회를 조직하여 그 성공에 협조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업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경성부 협찬회의 활동보다는 전임 우마노 부윤 때 벌어진 신당리 토지 문제였다. 신당리 토지 문제가 재임 기간 동안 불거지면서 마쓰이 부윤은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24]

이후 함경남도지사로 부임한 그는 조선총독부의 농촌 진흥 운동에 적극 협력하여 농업 제일 주의를 제창하고 부업 장려에 힘썼다. 이것이 그가 미곡창고주식회사 사장이 된 이유로 보인다. 그는 미곡창고주식회사 사장으로서 척무성이나 조선총독부 당국과 협상을 담당하며 조선 내 미곡 문제의 권위자로 알려졌다.

---

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id/im_215_12278 ; ≪동아일보≫, 1930년 11월 16일, 1937년 12월 12일 ; 사진, ≪매일신보≫ 1929년 1월 23일

24) ≪동아일보≫ 1929년 12월 6일

(5) 8대 세키미즈 다케시

세키미즈 다케시(關水武)는 1883년 1월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나 1911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1911년 이바라키현 속관이 되었고, 다음해 1912년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현의 이사관이 되었다. 1919년 8월 조선총독부 도사무관으로 전임되어 조선에 건너가 충남 경찰부장, 총독부 사무관(위생과장) 겸 감찰관, 평안 내무부장, 경남 내무부장, 경기 내무부장을 역임하였다. 이어서 1929년 12월 11일 경성부윤이 되었고, 1930년 11월 11일 함남지사로 선임되었고, 1933년 경남지사로 영전하였다. 1935년 관직에서 물러나 특수 회사인 조선석유회사의 상무취체역이 되었다.[25]



세키미즈 역시 마쓰이 후사지로와 마찬가지로 단 11개월만 경성부윤을 역임하였다. 이렇게 부윤 임기가 짧은 데는 야마나시에서 사이토로 총독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키미즈 역시 마쓰이 전임 부윤과 비슷한 곤란을 겪었다. 신당리 토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경성부 구청사 기지도 방매되지 않아 경성부 재정도 부족했다.[26] 세키미즈가 부윤이 된 1930년대 초 경성부의 예산이 여러 차례 재편이 되어 예산 편성이 늦게 되었다. 이는 일본 내 경기 불황으로 인한 긴축 재정의 영향으로 보인다.[27] 세키미즈는 남산 국유림의 불하에 대해 부협의회의 협찬을 받아 총독부 당국과 교섭을 진행하였다. 결국 1931년 2월 세키미즈 다음 대인 안도 부윤 시기에 총

2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근현대인물자료(http://db.history.go.kr/id/im_215_00147) ; 사진, ≪매일신보≫ 1929년 12월 17일. 왼쪽은 마쓰이 전임 부윤, 오른쪽은 세키미즈 신임 부윤.

26) ≪동아일보≫ 1930년 1월 10일, 3월 27일, 10월 29일, 12월 6일.

27) ≪동아일보≫ 1930년 3월 26일.

독부는 남산 국유림의 경성부 불하를 결정하였다. [28]

세키미즈 당시 이슈가 되었던 것은 도지사가 매수 수속도 안한 땅에 전염병원인 다나카마루병원(田中丸病院)의 건축을 허가한 사건이었다. 전염병원을 도시 한 가운데 신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자, 부윤이 중간에 중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도지사가 허가는 부당하지 않다며 허가 취소 요구에 반발하자 도지사의 뜻대로 의견을 바꾸었다.[29]

1930년 11월 함경남도지사로 영전한 그는 미개척 오지 부락에 자력갱생 운동을 펼쳤다. 사료 개선을 통해 연료의 경제화 및 생활 개선을 이루고자 하였다. 경상남도지사가 돼서도 똑같은 장려 활동을 펼쳤다.

(6) 9대 안도 게사이치

안도 게사이치(安藤袈裟一)의 생년, 출생지 등 인적 사항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1919년 12월 4일 사이타마현에서 조선총독부 도사무관으로 전임하였다.[30] 그는 평안남도 도사무관을 거쳐 이후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경기도 경찰부장을 역임하였다. 1928년 충청남도 내무부장, 전라북도 내무부장을 거쳐 1930년 11월 12일 경성부윤(고등관 3등)으로 부임하였다. 그 역시 겨우 9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부윤으로 있었고, 1931년 9월 23일 함경북도지사(고등관 2등)으로 영전하였다. 그런데 함북지사 취임 축하 피로연 도중 뇌일혈로 쓰러져 9월 29일 사망하였다. [31]

지방제도 개정으로 안도 부윤 시기인 1931년 4월 1일부터 경성부에서는 부회가 처음 시행되고, 기존의 부협의회, 학교비 평의회 등이 해체되었다. 당시 부

---

28) ≪동아일보≫ 1931년 2월 7일.

29) ≪동아일보≫ 1930년 3월 1 · 4 · 5 · 8 · 16일, 4월 10일.

30)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12월 11일.

31)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록DB, ≪조선총독부관보≫ 1924년 4월 4일, 1930년 11월 17일, 1931년 9월 29일 ; ≪동아일보≫ 1921년 2월 26일, 1925년 6월 22 · 30일, 1927년 8월 9일, 1928년 8월 4일, 1931년 9월 30일.



협의회에서는 버스 경영 개선, 수도료 인하 등이 주요 논쟁 사항이었고, 이 문제는 경성부회에서도 지속되었다. 경성부회에 의원 48명 중 23명이 전기·가스의 부영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영업 허가 기간이 조만간 만료가 되므로 이를 기회로 부영으로 하자는 의견이었다. 당시 안도 부윤은 부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장차 중대한 일을 맡을 나로서는 지금 언명할 수 없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답변을 피했다.[32] 그렇지만 부회 등의 압력으로 결국 1931년 9월 11일 경성전기와사사업 공영 준비위원회(회장 안도 부윤)를 개최하고 15일에는 위원에 조선인 3명(이승우·조병상·박준호), 일본인 4명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안도 부윤이 얼마 후 함북지사로 영전하면서 그 뒤를 이은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 부윤에게 넘겨졌고 관민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된다.[33]

(7) 10대 이노우에 기요시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는 1885년 도쿄시에서 이토(伊藤正誼)의 4남으로 태어나 1917년 숙부 이노우에(井上)의 양자가 되었다. 1909년 도쿄제국대학 법과 정치과를 졸업하고 그해 11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였다.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서기로 임명되어 조사과에서 근무하다 1912년 4월 임시토지조사국 감사관(고등관 7등)에 임명되었다. 1913년 임시토지조사국 사무관을 거쳐 1917년 충청남도 제2부장이 되었다. 이후 함경북도 제1부장, 내무부장을 거쳐 1921년 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장, 그해 12월 함경남도 내무부장이 되었다. 1926년 1월 잠시 서구 출장을 다녀오고 5월 경기도 내무부장이 되었다.[34]

1928년 1월 조선연초원매팔회사가 창립되자 경기도 내무부장(고등관 2등)에

32) ≪동아일보≫ 1931년 3월 11 · 13 · 20일, 6월 4일, 7월 3일, 8월 7 · 10일.

33) ≪동아일보≫ 1931년 9월 12 · 16일 ; 사진, ≪매일신보≫ 1930년 11월 26일.

34) ≪매일신보≫ 1931년 9월 27일.

서 물러나 전무 취체역으로 취임하고 그해 12월 사장으로 발탁되었다. 1931년 9월 23일 경성부윤(고등관 3등)으로 다시 관계에 복직하였으며 1933년 9월 고등관 2등으로 승서된 후 12월 5일 총독부 체신국장(고등관 2등)으로 영전하였다.[35]



이노우에가 관계에 복직하여 경성부윤이 된 것은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이마이다 기요노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27년 3월 사이토 총독 재임 당시 조선총독부 전매국에서는 담배를 일본인 원매팔인을 통해서 판매했는데, 반관반민의 조선연초원매팔주식회사를 만들어 이를 통해 원매팔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사장에는 다카키(高木德彌), 전무취체역에는 당시 평양부윤이었던 마쓰이 신스케(松井信助)가 내정되었다. 전무의 연봉은 6,000원이었다. 그런데 마쓰이 평양부윤이 평양부민의 강한 반대로 취임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미즈구치(水口) 전매국장과 다카키 사장, 고노(河野) 취체역 등이 협의하여 당시 경기도 내무부장이었던 이노우에를 추천하여 이케가미 신임 정무총감의 승인을 받았다. 1928년 1월 연초원매팔회사가 창립되자 이노우에가 전무취체역으로 취임하고 곧이어 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1930년 11월 조선총독부의 방침이 다음해(1931년)부터 연초 도매를 관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1931년 7월부터 전매국에서 연초 판매를 직영하며 연초원매팔회사는 해산되고 말았다.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촉망받던 관료였던 이노우에는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

그를 다시 경성부윤으로 복귀시킨 것은 1931년 6월 우가키 총독과 함께 부임한 이마이다 신임 정무총감이라는 것이 당시 널리 퍼진 소문이었다. 이마이다 정무총감(1884년 생)은 이노우에와 함께 1909년 도쿄제대 법학대학 정치과를 졸업한 긴밀한 사이였다. 비록 이마이다 정무총감이 앞선 정무총감들에 비해

3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근현대인물자료(http://db.history.go.kr/id/im_215_01477) ; ≪조선총독부관보≫, ≪동아일보≫ 기사 참조

상당히 약체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그래도 조선 총독부의 2인자였다. 이노우에 부윤은 이마이다 정무총감의 강한 지원 아래, 그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관직을 유지하였다. [36]

이노우에 부윤 시기 1932년 3월 25일 관제 개정으로 경성부윤을 칙임관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칙임 승격은 보류되었다. 이는 관직에서 물러났던 그의 경력 탓으로 보인다. 비록 재임 당시 칙임 부윤이 되지는 못했지만, 앞선 부윤들이 도지사가 되었던 것에 비해 이노우에는 총독부 체신국장이라는 요직으로 바로 영전하였다. [37]

2) 경성부 고등관

1916년 4월 1일 내훈(內訓) 제1호에 의하여 〈경성부처무규정(京城府處務規程)〉이 정해지면서 경성부는 전국의 부군 가운데 최초로 과 체제를 도입하였다. 1918년(3월 20일 기준) 제1과(서무계, 내무계, 학무계, 토목계, 위생계, 민적계)와 제2과(재무 제1·2계, 회계계)로 구성되어 있었고 전체 직원은 조선인 53명, 일본인 126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후 경성부의 행정기구는 1936년까지 20년간 무려 13회나 개정되었다. 1936년에는 비서계 및 서무과(문서계·호적계·감사계), 내무과(내무계·회계계·영선계·권업계), 사회과, 학무과, 위생과, 토목과(서무계·공사계·도시계획계), 수도과(서무계·공사계), 세무과(부과계·징수계)가 설치되어 있었다.[38]

---

36) ≪동아일보≫ 1927년 3월 29일, 4월 9일, 10월 12 · 17일, 11월 18일, 12월 4 · 8일 ; ≪동아일보≫ 1928년 1월 8 · 17일 ; ≪동아일보≫ 1930년 11월 22 · 29일 ; ≪동아일보≫ 1931년 7월 1일 ; ≪조선중앙일보≫ 1933년 3월 27일.

37) 칙령 제34호 1932.3.25.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중 개정의 건〉 ≪조선총독부관보≫ 1932년 3월 30일 ; ≪동아일보≫ 1932년 4월 24일.

38) 서현주, 〈일제하 경성부 행정조직과 운영의 식민지성〉 ≪향토서울≫ 86, 2014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4, 1981 ; 이 책의 이정선, 〈1933~1945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참조.

여기서 다루는 1920~1933년 시기의 경성부 행정기구는 도시의 확장 및 행정 수요에 따라 매우 잦은 개편을 거듭하였고, 행정기구의 개편과 고등관 직제 및 정원은 이와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1921년 2월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경성부는 이사관 2명, 기사 1명의 고등관을 두었다. 이사관의 수는 이후 1922년 8월 3명, 1927년 6월 4명으로 증원되었다. 반면에 기사는 1918년 1명을 전임으로 둔 것을 유지하였다.

고등관, 특히 이사관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사관은 기본적으로 지방 행정 기관에 한정된 고등관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과장급 지위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사관 정원의 증가는 경성부 행정 기구의 개편 및 행정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사관 아래 각 과의 실무는 대부분 판임관급 주사가 지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9]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실제로 경성부에 근무한 고등관 수는 정원보다 더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정원만으로는 기구 개편 및 행정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 조선총독부 본부의 직원, 특히 속(屬)이 이사관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당시 경성부의 도시개발에 따라 토목기사가 부족하였으므로 조선 토목기사 등 조선총독부의 기사들도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1) 이사관

〈표 2〉는 경성부에 임명된 이사관들을 보직을 중심으로 시간 순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사관은 주로 서무과장, 내무과장, 학무과장, 세무과장 등 실무 행정 부서의 관리자로 임명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9) 이 책의 염복규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와 이정선 〈1933~1945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참조. 이사관은 기본적으로 지방에 한정된 고등관(도이사관, 부이사관으로서 도, 부의 과장급)이며, 본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총독부 屬과 겸무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며, 판임관을 거쳐 승진한 경우가 많았다.

<표 2> 1920~1933년 경성부 일반 이사관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이사관	1921.1.24~1922.9.16	丹羽太一郎	1914.9.29~1920.2.6 조선총독부 속 (농상공부, 식산국) 1922.9.16~1924.9.9 평남 도이사관 (내무부 권업과장, 지사관방 비서과장) 1924.9.11~1924.12.9 함남 원산부윤
	1921.6~1922.9	山路秀二郎	1910.3 대한제국 농상공부 주사 1920 조선총독부 속(식산국 농무과) 1926.8 동양척식주식회사 본점 감사과장
부이사관 (서무과장)	1922.10~1931.2	吳斗煥	1907.3 대한제국 농상공부 서무 촉탁 (임업과) 1921.3 경기도 경성부 속(서무계) 1921.7 경기도 장단군수 1931.2 펑텐 주재 일본총영사관 부영사 1937.8 경상남도 김해군수
	1932.1~1933.7	李源甫, 李家源甫	1909.4 대한제국 영흥경찰서 번역관보 1914.4 함경남도 홍원경찰서 경부 1925.2 경기도 경찰부 도경시(형사과장) 1930.2 경기도 진위군수
부이사관 (내무과장)	1921.6~1927.3 내무과장 (1926~1927.3)	長尾仟	島根縣 소학교 훈도 1910.10 경북 도서기 1911.2 평남 도서기 1917.7 조선총독부 속(내무부)
	1923.5.1~1929.12.17 내무과장 (1927.3~1929.12)	吉村傳	1908 농상공부 농무국 미간지과 주사 1916.6.16~1917.12.10 경남 도서기(제1부) 1922~1927 조선총독부 속 (사회과, 지방과) 1923.5.1~1927.3.12 경성부 이사관 겸무 1929.12.17~1931.12.11 경남 창원군수
	1930.11~1931.12	前田茂助	1908 佐賀縣 西松浦郡 서기 1911.5 평남 군서기 1927 평남 평양부 내무국 지방과장 1929.12 충남 논산군수 1931.12 청진부윤
	1931.12~1933.1	門脇黙一	1914 廣島縣 佐伯郡 서기 1928 조선총독부 도이사관 1930.10~1931.12 마산부윤 1934.5 대구부윤 1938.6 경성지방전매국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이사관 (내무과장)	1933.1-1934.4	森武彦	1908 愛知縣 八幡小學校 훈도 1915.3 京城 元町公立尋常高等小學校 1922.11 경기도 도시학(학무과) 1930.11 조선총독부 도경부 (경기도 경찰부 경무과) 겸임
부이사관 (세무과장)	1924.12~1929.10	高橋源六	1911 강원도 도서기(재무부) 1920~1924.12 조선총독부 속(식산국 수산과) 1929.10 사망
	1929.11~1933	中村清一	1909.10 대한제국 재무서 주사(평양) 1916.4 평남 도서기 1927.10 평남 도이사관 (재무부 세무과장) 1934.5 조선총독부 사세관 (인천세무서장)
부이사관 (학무과장 추정)	1927.9~1929.12.	奧山仙三	1913~1922. 조선총독부 속(학무과) 1923 경상남도 이사관(학무과장) 1931 조선총독부 촉탁(사회과) 1936~1938 명륜학원 강사
부이사관 (학무과장)	1929.12~1933.10	松橋喜代治	1914 秋田縣 속 (내무부 교육과) 1921.3~1929.12 조선총독부 속 (학무국 학무과) 1933.10~1937.3 조선총독부 이사관 (학무국 학무과)
부이사관 (겸임)	1921.1.12~1921.5.6	吉留直哉	1910.11.24~1921.5.6 조선총독부 속 (총무부 회계국 경리과 등) 1921.5.6~1928.8.27 조선총독부 부사무관 (전매국 서무과 재근) 1929.8~1931 조선연초원매팔주식회사 서무과장
	1921.10~1922.2	小田留吉	1910.2 대한제국 내부 주사 1920 조선총독부 속(토목부 토목과) 1921.10 경기도 부이사관 겸임 1922.2 조선총독부 전매국 副사무관 1922.2 사망
	1924.12~1926.6	西猛美	1910 조선총독부 속(총무부 경리과) 1923 조선총독부 속(토목부 공사과) 1926.6 조선총독부 토목사무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이사관 (겸임)	1924.12.24~1927.8.8	龜山猛治	1908 탁지부 재무서 대구재무감독국 청주 재무서 주사 1913.9.4~1920 충남 도서기 (재무부, 제2부, 제1부) 1922~1924 조선총독부 속(감찰관실) 1927.8.8~1931 평남 평양부 이사관
	1925.7.8~1927.7.4	金原良助	1912.4.1~1913.1.14 조선총독부 기수 (임시토지조사국 측량과) 1913.1.14~1919 조선총독부 속 (총무국 총무과) 1923~1927 조선총독부 속 (재무국 세무과)
	1927.7.2~1929.10.3	鈴木友厚	1914.2.21~1915.3.23 조선총독부 서기 (임시토지조사국 총무과) 1920~1922 조선총독부 속 (총독관방 비서과) 1927~1929 경기 도경부 (경찰부 경무과) 1929.10.3~1931.4.27 (현) 충남 연기군수

이 시기 경성부 부이사관(겸직 포함)을 역임한 사람은 총 19명으로, 이 중에서 6명이 겸직이었다. 이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주로 조선총독부의 직원(특히 속)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鈴木友厚)와 같이 경기도 속이 겸임을 했던 경우도 존재한다. 1921~1922년에는 부이사관이 2명(丹羽太一郎, 山路秀二郎) 있었으며, 1922년 8월 부이사관 정원이 3명으로 증가하며 서무과장으로 오두환이 취임하였다.

특히 서무과장은 한국인이 장기간에 걸쳐 맡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오두환은 1922~1931년까지 거의 1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서무과장을 역을 맡고 이원보가 이어서 그 자리를 계속하였다. 서무과(1936년 기준)는 문서계, 호적계, 감사계로 구성되었다. 문서계는 관인(官印)과 공인(公印)의 관리, 문서의 접수·정서(淨書)·발송·보관, 공고 등, 신분·재산 등의 증명, 다른 계에서 취급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담당하였고, 호적계는 한국인의 개명(改名), 호적과 거주, 인감, 매장·개장·화장의 인가, 묘지와 화장장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

였다. 감사계는 일반사무의 감사, 금전과 물품의 출납 검사, 부금고의 검사 등에 관한 것을 담당하였다.[40]

반면에 내무과장, 세무과장, 학무과장은 일본인이 담당하였다. 내무과장은 나가오(長尾仟), 요시무라(吉村傳), 마에다(前田茂助), 가도와키(門脇黙一), 모리(森武彦)가 맡았고, 세무과장은 다카하시(高橋源六), 나카무라(中村淸一)가 역임하였다. 내무과(1936년 기준)는 내무계, 권업계, 회계계, 영선계로 구성된 경성부의 가장 중추적인 부서였고, 세무과 역시 부과계, 징수계로 구성된 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였다. 학무과장은 1927년 부이사관 정원이 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오쿠야마(奥山仙三), 마쓰하시(松橋喜代治)가 담당하였다. 참고로 오쿠야마(奥山仙三)는 경성부 이사관이지만 보직을 확인할 수 없다. 퇴관일이 마쓰하시(松橋喜代治)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학무과장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학무과(1936년 기준)는 교육 학예, 학교 유치원의 직원과 학교간호부의 진퇴와 신분, 청년훈련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교화, 도서관 등에 관한 것을 담당했다. 당시 교육의 문제는 경성부에서 한국인이 가장 차별적 대우를 경험하는 영역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마찰이 강하게 발생하던 지점이었다. 이를 보면 부의 핵심적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성부 부이사관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부윤, 군수급이라고 할 수 있다. 오두환(장단군수), 이원보(진위군수), 마에다(前田茂助)(논산군수), 가도와키(門脇黙一)(대구부윤) 등이 군수, 부윤을 거쳐 경성부 부이사관이 되었다. 부이사관을 거쳐 부윤이나 군수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니와(丹羽太一郎)는 원산 부윤, 오두환은 김해군수, 요시무라(吉村傳)는 창원군수, 마에다(前田茂助)는 청진부윤이 되었다.

---

4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4, 1981. 이하 경성부 조직의 세부 기능은 해당 자료 참조.

(3) 기사

〈표 3〉는 경성부에 임명된 기사들을 시간 순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를 보면 부기사(府技師) 외에 부토목기사, 부위생기사 등이 있었으며, 조선토목기사가 경성부에서 근무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경성부 부기사(겸직 포함)을 역임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이 중 1명이 겸직이었고, 조선토목기사 2명이 경성부에 근무하였다. 기사는 정원이 1명이었으므로 이 역시 이사관과 마찬가지로 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차이점은 인력구성으로 봐서는 조선총독부의 기사(또는 속), 조선토목기사 등을 겸직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과정원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경성부의 토목 공사가 많아 그 수요를 겸직만으로는 대체하기 힘들었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부기사는 부기사, 부토목기사, 부건축기사, 부위생기사, 부수도기사로 세분되었다. 그런데 부토목기사/부건축기사, 부위생기사/부수도기사는 전공(또는 전문영역)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직무(또는 소속)과 관련되어 세부 직렬이 갈라진 것은 아닌가 싶다. 일례로 사카이는 부수도기사에서 부위생기사로 변경되었고, 고마다는 부토목기사, 부건축기사를 모두 역임하였다.

<표 3> 1920~1933년 경성부 기사와 그 이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기사 (토목과장)	1920.6.21~ 1922.8.22	寺本千太郎	1912~1914 조선총독부 기수(토목국 공무과)
부기사	1922.12~ 1924.7	河野誠	1922 조선총독부 기수(토목부 공사과) 1922.5 조선총독부 기사 (총독관방 토목부)
부토목기사 부주사, 부건축기사(영선계장)	1923~1932	駒田德三郎	1932.6 경성토목담합사건으로 검거 1934 징역 1년 언도
부기사	1925~ 1931.12.	岩城信太郎	1907.7 대한제국 세관공사부 기사 1922 조선총독부 기사(토목부 공사과) 1933.4 부기사 의원면본관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기사 (토목과장)	1932.1~ 1933.4.	町田義知	1926.4 조선총독부 기수 (내무국 토목과) 1928.4 조선총독부 기사(내무국) 1932.2 전북 도기사(내무부 토목과장) 1941.5 조선총독부 기사(청진토목출장소장) 겸 함남 도기사
부기사, 부수도기사 (수도과장)	1922.6.3~ 1932 (1927.4~ 수도과장)	多田隆吉	1907.11~1908 내부 기수 (인천수도 노량진공영소) 1911~1923 조선총독부 기수 (토목부 토목과) 1922~1923 총독부 기수 겸무 부기사
부수도기사	1925~ 1929, 1931	酒井謙治郎 (樋下田謙治郎)	1912.2 도기수 (1913.1 酒井에서 樋下田으로 개씨) 1916 경기도 도기수(제1부) 1921.4 조선총독부 기사 겸임 (총독관방 토목부)
부위생기사	1923	酒井謙治郎 (樋下田謙治郎)	위와 같음
	1925~ 1925.7	加藤賢	1924.1 교토제국대학 의학박사 1925.7 퇴직(교토 의과대학 부임 예정)
부위생기사 (위생과장)	1926~1929	森岡收	〈腸チブスの症狀と療法〉 (≪朝鮮及滿洲≫, 1928.3 게재) 1929.8 조선박람회사무위원
부위생기사	1929.11~1934	荻野正俊	1921.4 조선총독부 지방병전염병연구과 1922.12 조선총독부의원 제2내과 1929.11 경성부 위생기사 (1930.4~1939 순화원 겸무) (1932.1 동경제대 의학박사) 1933.10~1942.2 경성부 위생과장
	1931~1934	椎葉芳彌	1919 關東廳 임시검역의 1921.4 조선총독부 기사 (경무국 위생과) 1921.7 조선총독부의원 기사 겸임 1922.9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겸 조선총독 부의원 기사 (1924.5 도쿄제국대학 졸업) 1926.4 경성제국대학 조교수 1931.2 경성제국대학 교수 1931.2 의원면본관. 순화병원 병원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조선토목기사	1925.5.7~ 1926.8.16	大森鶴吉	1916.4.30~1918 조선총독부 기수 (토목국 토목과) 1919~1921 조선총독부 기수(경성출장소) 1922~1923 조선총독부 기수(토목부 공사과) 1926.8.16~1928.5.23 충남 조선토목기사 (내무부 토목과장) 1928.5.23~1931.12.21 전북 도기사 (내무부 토목과장) 1929~1930 용산철도의원 촉탁 1932.9.21 전북 토목과장 재직시 독직사건으로 체포 1933.10.23 경성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언도
	1927~1929	杉山食一	1910 조선총독부 고원 1914.12 조선총독부 기수(토목과) 1918. 조선총독부 기수(부산출장소) 1926.9 조선총독부 조선토목기사 1931.5 충청남도 토목기사(내무부 토목과장) 1935.2 평안북도 기사 (내무부 토목과장) 1944.5 旭土木電業株式會社 취체역

이러한 부기사는 토목과, 위생과, 수도과에 배치되어 그 과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토목과(1937년 기준, 이하 동일)에는 서무계, 공사계, 도시계획계가 있었고, 서무계는 도로·하천·제방·하수의 사용, 폐도(廢道)·폐구(廢溝)의 처리, 토목사업에 대한 수용과 일반 토목공사에 수반되는 토지 매수, 사업용 재료와 기구 기계의 수납과 보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않는 것을 담당하였다. 공사계는 도로·하천·제방·하수·공원·운동장 등 토목공사의 조사와 설계 시행 감독과 유지, 시구(市區)의 정리, 채석장·교통·청부공사의 준공에 관한 것, 공사용 기구·기계의 검사 등에 관한 것을 담당하였다. 도시계획계는 도시계획조사·도시계획재원조사·도시계획위원회 등에 관한 것을 담당하였다. 위생과는 위생과 전염병, 묘지와 화장장의 관리, 도축·의료기구·기타 위생재료의 수납검사 등에 관한 것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위생기사 상당수가 의학박사(또는 의학 전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가토(加藤賢)는 교토제국대학에서 〈이른바 햇빛 소독의 실태

에 대해서(所謂日光消毒の本態について)〉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1924.1.17) 경성부 퇴직 후 교토 의과대학에 부임한 것으로 보인다. 오기노(荻野正俊) 역시 도쿄제국대학에서 〈적리 본형균 독소의 약리적 연구(赤痢本型菌毒素の薬理学的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1932.1.25). 시이바(椎葉芳彌) 역시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조교수, 경성제국대학 교수, 순화병원 병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다. 학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모리오카(森岡收) 역시 위생과장을 역임 중 〈장티푸스의 증상과 요법(腸チブスの症狀と療法)〉(≪조선급만주≫, 1928.3 게재)이라는 글을 썼다.

마지막으로 수도과는 서무계와 공사계로 구분되며, 특히 공사계는 배수·수도공사의 조사·설계·시행·감독에 관한 것, 송수관과 그의 부속된 기구, 수원지와 배수지의 유지·수선, 청부공사·준공검사와 공업용 기구·기계의 검사 등에 관한 것을 담당하였는데, 업무 성격상 위생과, 토목과와 모두 관련이 깊다.

3. 1920~1933년 경성부윤의 주요정책

1920~1933년 시기의 경성부윤은 실무적인 지방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료였다. 이들은 지방 행정기관의 중상급 관리자로서 총독부와 경기도의 통치 방침을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체적으로 경성부만의 독자적인 정책 목표를 내세우거나 개인적인 정책 지향을 찾아보기는 힘들며 도리어 기존의 업무 경험에 따라 행정 처리 방식의 개인적 성향이 드러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이들의 지방 행정 관료적 경험과 지향은 경성부윤의 위상·책임과 연동되어, 경성부의 급격한 변화와 경성부민의 요구에 대응하며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920년대 초반에서 1930년대로 거쳐 가며 경성부윤의 역할도 일정 부분 변동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성부윤을 단순히 지방 행정 관리자

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당시 경성부는 조선총독부 청사, 경기도 청사가 있는 행정의 중심지이며, 일본인이 가장 많이 살고 민간 유력자의 영향력도 가장 강한 곳이기도 했다. 경성부윤은 비록 전체 관료 구성에서는 중상위 관리층에 해당하는 위치이지만, 상급 관리자의 지시와 시민의 요구 속에서 휘둘리면서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부과된 책임과 권한 이상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 경성부윤 칙임 논의는 경성부의 위상 변화, 경성부윤의 역할과 그 지위 간의 괴리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우마노 세이이치 부윤의 발언은 이런 지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자신과 직접 관계되므로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성부윤은 다른 지방장관과 달리 고급인 관계상 경성부의 사정을 전부 알기 전에 전임(轉任)을 하게 되는 폐단이 있으므로 가급적 칙임으로 하여 장기간 경성부윤의 임무를 맡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칙임이 되지는 않더라도 직무상 상당한 지위와 권한을 주어 팽창하는 경성부를 더욱 향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41]

1) 취임 제일성, 경성부윤의 포부

4대 부윤 요시마쓰는 1910년대 부윤에서 1920년대 부윤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경성부윤을 그만두고 총독부 사무관이 되었을 때 영전이 되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경성부윤은 총독부의 사무관보다도 못한 자리로 인식되었다. 이는 경성부윤이 고등관 3등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요시마쓰 이후 대부분의 부윤이 도지사로 영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당시 경성부윤의 위상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1910년대 부윤처럼 제한된 행정 실무

41) ≪매일신보≫ 1926년 12월 10일.

처리에 힘썼으며 자신만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요시마쓰는 자신의 정책을 이른바 '문화주의'라고 자칭하였다. 부윤에서 물러난 지 10년 뒤에 경성부에 대해 회고하며, 자신의 업적에 대해 "사이토 총독의 문화통치에 적극 협력하고, 더불어 시구(市區) 개정, 부청사의 개축(改築), 도로의 개수 등을 착착 실현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42] 1922년 예산 설명에도 그의 이른바 '문화주의' 방침이 잘 드러난다. 그는 "시대는 시시각각으로 진보되어 문화적 시절을 미리 측량하기 어려운 고로, 부민의 복리 증진에 불가피한 사업이 발생될 때는 예산에 구니(拘泥)치 아니하고 기채라도 하여 시대 진척에 적응케 할 심산을 가지고 있다. 경성부는 조선의 수부(首府)요 문화의 집중지이므로 나는 희생적으로 각반 시설에 진력하여 도시된 면목을 일신케 할 각오로 다소의 비난은 괘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43]

1923년 2월 경성부윤에 부임한 제5대 경성부윤 다니 다키마에 대한 경성부민의 기대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임에 대해, 그가 지방관으로 재직하던 중 적지 않은 공적이 있고 "조선인에 대해 비상한 양해와 심후한 동정을 가져 성망이 높다"며 그의 경성부윤 전임에 대해 강원도 사람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도 하였다.[44] 1923년 3월 13일 경성부윤으로 부임한 직후 열린 피로연에서 다니 부윤은 매우 특이한 발언을 하였다. 당시 피로연은 주최 측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 측 인사였다. 그는 "대도시에 있어서는 민중의 힘이 극히 강대한 것이며 따라서 민중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아무 말도 되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은 민중의 협력을 얻어 용이하게 일을 하여 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부에서 임명되었지만은, 민간에서 추천한 부윤으로 생각하고 원조"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민간 측 대표인 고죠(古城)는 답사(答辭)에서 이러한 발언은 처음 듣는다며 매우 기꺼워했다. 당시 다니 부윤의 발언은 신선한 충격이

42) ≪朝鮮新聞≫ 1936년 12월 4일.

43) ≪매일신보≫ 1922년 3월 13일.

44) ≪매일신보≫ 1923년 2월 28일.

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에서는 "민선(民選) 부윤"을 자처한 그가 민중을 무시하는 관료적 기풍을 벗어났다며 "벌써 만점에 가까운 합격"이고 "부민은 절대의 신임과 원조"로 그를 후원할 것이라고 극찬하였다.[45] 그러나 그에 대한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특히 그의 일본인 위주 정책은 조선인과 많은 갈등을 빚었다. 조선인 지역의 하수구 설비 부족, 조선인 지역의 침수 등으로 조선인들의 피해가 극심하였음에도 다니 부윤은 일본인 지역의 피해 우려, 도시 계획상의 예산 중복 등을 핑계로 이를 무시하였다. 조선인과의 갈등은 뒤의 경성부윤의 위생 정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게다가 다니 부윤이 조선의 풍습을 무시하고 가축시장을 강행해서 만들면서 조선인과의 갈등은 최고조로 올랐다. 이런 점에서 그가 대변하고자 하였던 민(民)은 경성부민 일반이 아니라 경성의 유력자, 특히 일본인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제6대 부윤 우마노 세이이치는 경찰 관료로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특히 그가 경기도 경찰부장과 경성부윤을 지내던 시기, 경성에서는 의열 투쟁이 전개되고 있던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1923년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및 시가전,[46] 1926년 나석주의 동척 및 식산은행 폭탄 투척 및 시가지 총격전이 있었다.

우마노의 경성부윤 취임 발언은 특별히 언론에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 경찰부장을 그만둘 당시 눈물의 고별사를 했다는 기사[47]와 그의 부임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당시 이윤용과 함께 문제적 인물로 꼽혔다. ≪매일신보≫에서는 그에 대해 와세다대 출신으로 42세에 경성부윤이 된 것이면 여러 가지 난처한 사정이 많은 조선 정계에서 어지간히 신수가 좋은 편

45) ≪매일신보≫ 1923년 3월 15 · 16일.

46)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의 주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김영범,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26-의열투쟁 I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47) ≪매일신보≫ 1925년 6월 23일.

이라고 하였다. 또한 도 경찰부장으로 양행(洋行)을 한 후 다시 도 경찰부장이 될 때 사람들은 너무 의외로 여겼고 본인도 경찰관은 본의가 아니라며 성화를 하였는데, 이번에 경성부윤이 된 것은 그에게 칼을 놓을 기회가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우마노하면 경찰 관료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가 부윤으로 있던 당시 경성부는 경성부청이 완공되고 각종 도시계획이 세워지며 이른바 '대경성'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던 시기였으므로 많은 기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위생 제일주의'라고 할 정도로 위생을 강조하며 조선인을 상당히 경멸하는 듯한 발언을 종종하며 경찰부장의 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7대 부윤 마쓰이 후사지로는 겨우 11개월밖에 경성부윤을 역임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시책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조선박람회 개최시 경성부 협찬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경성부윤으로서 대표적인 업적일 정도였다. 특별한 발언은 보이지 않는다.

제8대 부윤 세키미즈 다케시 역시 단 11개월만 경성부윤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1919년 8월 조선에 와서 충청남도 제3부장, 본부 감찰관, 경찰국 위생과장을 지냈다. 양행하고 돌아와서 경남 내무부장으로 있다가 경기도 내무부장을 거쳐 경성부윤(당시 47세)으로 임명되었다. ≪매일신보≫에서는 그에 대해서 "인격이 원만한 민완가(敏腕家)로 관계에 명망이 높다"고 평가하였다.[48] 그도 특별히 경성부윤으로서 개인적 포부를 밝힌 발언은 보이지 않는다.

9대 경성부윤 안도 게사이치 역시 겨우 9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부윤을 지낸 후, 1931년 9월 23일 함경북도지사(고등관 2등)으로 영전하였다. 전라북도 내무부장에서 영전한 안도는 부청사에서 신임 훈시를 한 후,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48) ≪매일신보≫ 1929년 12월 12일.

경성에는 1925년부터 1927년까지 (경기)도 경찰부장으로 있었던 관계로 경성은 그리 생소하지 아니하다. 경성 재직 중에 대사건이 속출하여 한강의 대수해, 은행회사의 폭탄투척, 권총단의 격투, 제1차 공산당 등 대곤란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이 있는 경성이니만치 또 부윤으로 어떠한 곤란을 받을지도 모르나 나는 본래 표리가 없는 사람인 고로 더구나 자치제 실시와 동시에 실언 탈선 등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미리 각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윤은 시누이가 많은 만큼 매우 일하기 어려운 곳이다. 府政을 완전히 하자면 속히 민선부윤을 두는 것이 지당하다. 아직 착임 초로 경성부정에 대하여는 전혀 백지이니 앞으로 여러분과 의논하여 연구 노력하겠나이다.[49]

'거구'의 안도 부윤 역시 우마노와 같이 경기도 경찰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는 부윤의 자리에 대해 시누이가 많은 자리이며, 경성부는 민선 부윤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점이 주목이 된다.

제10대 경성부윤 이노우에 기요시는 1년의 임기도 채우지 않고 교체된 3명의 전임 부윤에 비해 2년 2개월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경성부윤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조선연초원매팔회사 사장에 있다가 다시 경성부윤으로 복귀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노우에 경성부윤의 활동은 같은 날 부임한 마쓰모토 마코토(松本誠) 경기도지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노우에가 조선연초원매팔회사 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마쓰모토는 전매국장이었으며, 이노우에가 1931년 9월 23일 경성부윤으로 부임할 때 그도 경기도지사로 함께 부임하였던 것이다. 이노우에는 마쓰모토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마이다 정무총감의 지시에 따라 경성전기의 부영화 문제에 대처하고 또 자력갱생 운동에 적극 호응하였다. 같은 나이의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의 이마이다 정무총감은 그의 큰 배경이었지만, 기존의 정무총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는 이마이다 정무총감 계열이라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제약이 되기도 했던 것으

49) ≪매일신보≫ 1930년 11월 26일.

로 보인다. 경성의 유력자들은 이노우에 경성부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자 이마이다 정무총감 위의 존재인 총독과 직접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이마이다 정무총감과 총독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이노우에 부윤 역시 다른 부윤처럼 개인적인 정책적 목표나 지향을 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1933년 당시 경성부의 주요 시정 방향을 통해 그의 정책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다. 1932년 12월 28일 열린 정례 회견에서 이노우에는 부영버스 매각, 경전에서 받을 2차 기부금의 용도는 미정, 경성부의 시구개수는 1933년 완성, 1934년부터의 시구 개정안을 새로 수립 예정, 토목사업으로는 중하수구, 소하수구를 주로 개수, 남산 방면 부유지 계발하기 위한 남산 주회도로의 일부(이태원) 정리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자력갱생에 대해서는 교화단체의 연합활동을 통해, 또는 각 방면위원들의 연합 활동을 통해 더 힘 있게 활동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50] 이노우에 부윤의 자력갱생 운동에 대해서는 뒤의 주요 정책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주요 정책

행정기관의 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돈의 사용, 즉 재정의 배분이다. 일제시기 경성부의 재정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상부(고정적 수입원과 지출), 임시부(임시적 수입원과 지출)에서 경상부와 임시부 비중이 세입은 45:55, 세출은 34:66으로 임시부 비중이 전체 부(세입 60%. 세출 70%)에 비해서 낮았다. 식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경성부의 특성상 세출에서 도시 기반 시설, 위생 환경 개선 비용이 다른 부보다 많았다고 지적되고 있다.[51] 특히 토목비, 수도비, 오물청소비 등의 세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4〉에서 보이듯이 토목비, 수도비, 오물청소비는 각각 경성부 경상 지출의

50) ≪동아일보≫ 1932년 12월 29일.

51) 재정에 관한 서술은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26 – 경성부 도시 행정과 사회≫, 2015 참조.

10.99%, 18.53%, 21.69%를 차지했고, 임시부 지출에서는 토목비, 수도비가 각각 36.01%, 8.93%를 차지하였다. 토목비는 도로와 교량 공사만이 아니라 하수구 시설의 유지, 보수 공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오물청소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비가 1922년부터 수도 운영권이 경기도에서 경성부로 이관되면서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상당 부분 위생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경성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바로 당시 경성부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경성부 세출 주요 항목 비중(1920~1933) (단위: %)

연도	경상비에 대한					임시부에 대한			
	사무비	토목비	수도비	오물 청소비	기타	토목비	수도비	부채 상환비	기타
1920	18.9	12.4	0.0	41.2	23.8	24.2	0.0	5.3	70.5
1921	20.4	16.9	0.0	32.9	25.3	12.5	0.0	5.2	82.4
1922	19.1	16.7	0.0	32.5	29.2	78.9	0.0	6.7	14.4
1923	11.4	1.4	31.8	23.1	19.8	55.5	26.8	4.5	13.2
1924	11.7	8.7	32.4	22.7	23.0	39.5	18.3	7.4	34.8
1925	13.0	12.3	30.4	21.2	21.3	42.6	9.5	12.8	35.2
1926	17.8	11.7	21.5	19.1	25.6	24.5	6.5	44.8	24.3
1927	19.2	14.6	21.2	18.7	24.4	42.7	10.4	15.5	31.4
1928	17.3	8.6	20.3	16.8	35.2	20.2	9.3	49.1	21.4
1929	16.5	8.0	20.9	16.3	26.3	25.3	9.2	53.1	12.4
1930	15.2	8.1	19.8	15.6	39.2	38.3	16.0	38.6	7.2
1931	14.9	8.2	20.1	15.0	39.9	38.0	14.0	39.3	8.8
1932	17.3	7.8	19.3	14.1	40.1	34.7	2.0	47.3	16.0

연도	경상비에 대한					임시부에 대한			
	사무비	토목비	수도비	오물 청소비	기타	토목비	수도비	부채 상환비	기타
1933	16.5	7.4	21.7	14.4	36.0	27.2	3.0	26.1	43.7
평균	16.37	10.99	18.53	21.69	29.22	36.01	8.93	25.41	29.69

출처: 서울역사편찬원, ≪서울2천년사 26 – 경성부 도시 행정과 사회≫, 2015, 104쪽.

(1) 위생 문제

당시 도시 위생 문제는 경성부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와 맞물려 부의 주요 현안이 되었으며, 문명을 내세우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시책으로 자주 거론되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역대 경성부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한국인과 많은 마찰을 빚은 사안이기도 했다. 특히 1920년대 초기, 위생 문제에 대한 경성부윤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위생과가 별도의 과로 만들어지고, 부기사 중 위생기사가 유달리 많고 또 수준이 높은 것도 이러한 정책적 의지 및 필요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형 행정 관료였던 제4대 경성부윤 요시마쓰는 1922년 예산을 설명하면서 전문 기사를 두어 위생에 대한 방역 사무와 오물 분석 사무를 하게 하여 위생 행정의 조장을 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요시마쓰는 경성부윤을 떠나기 직전인 1923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전년도(1922)의 사업에 대해서 회고하였다.

> 특히 1922년은 부정 시행상 내외의 다사다단의 관계로 혁신을 요할 일이 많고, 각반의 시설도 겨우 그 緖에 나아갔다 하나, 그 실적을 거두는 것은 장래 심히 요원하다. (중략) 시대의 진운과 부정의 실상은 일찍이 본년에 각종 시설을 요망하는데 그중 금일의 사회 상황은 이를 救濟指導하는 각종의 사회시설이 급무이다. (중략) 이를 전년에 회고하면 경성부에서 먼저 府 인사상담소를 개설하고 인정의 약점을 구제하며, 이어서 부립 도서관을 창설하여 고결한 인격 양성에 노력 (중략) 가축시장을 설치하여 식료품의 조절을 도모 (중략) 除穢 조사회를 두어 오물의 근본적 처리 방법을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 위생의 개선에 힘쓰고, 사회교화위원회를 발기하여 각

종 사회 교화에 관한 심의를 하여 부민의 행복 증진케 할뿐 아니라 민간에 있는 이런 사회적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보조 및 장려금을 하부하여 이런 일을 조장 (중략) 특히 부민 위생에 관계가 극히 깊은 수도를 이관하여 직접 우리부의 경영으로 하며 더욱 시설의 팽대를 (후략)[52]

그는 특히 부(府) 인사상담소 개설, 부립도서관 창설, 가축시장 설치, 사회교회위원회 발기, 민간의 사회시설에 대한 보조 및 장려금 하부, 수도 부영 등 사회시설 설치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당시 이른바 문화통치에서 표방한 민중의 선도 개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특히 밑줄과 같이 위생 시설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다.

제5대 부윤 다니 다키마 역시 재정 긴축 방침 속에서도 도로 개수, 오물 소제, 가축시장 개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였다.[53] 그렇지만 조선인과는 많은 갈등을 낳았다. 안국동 일대의 큰길, 특히 인사동길과 낙원동길은 하수구가 불완전하여 해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겨 매우 큰 피해를 당했다. 조선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도의 설비를 요구하였으나, 다니 부윤은 광화문에서 창덕궁 돈화문에 이르는 북부 간선도로 공사가 이미 착수 중이므로 하수도 설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54] 또한 이촌동 일대도 비가 올 때마다 침수하여 둑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둑이 설치되면 용산 일대가 잠길 수 있다며 이마저도 거부하였다.[55] 이외에도 수통(水桶) 처리 문제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56]

52) ≪매일신보≫ 1923년 1월 1일.
53) ≪매일신보≫ 1923년 3월 23일.
54) ≪동아일보≫ 1924년 3월 6일.
55) ≪동아일보≫ 1924년 7월 27일.
56) ≪동아일보≫ 1924년 2월 25일.

유달리 경기도 경찰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던 6대 경성부윤 우마노는 '위생 제일주의'라고 할 정도로 위생에 집착하였다.[57] 1926년 예산에 대한 ≪동아일보≫의 평에서도 그의 '집착'을 잘 엿볼 수 있다.

> (1926년) 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118만 2,651원이 증가한 435만 6,562원으로 그 사업 중의 중요한 것은 마야 부윤의 위생 제일주의로부터 안출된 하수구 개수 공사요, 그 다음에는 토목사업으로 그 경비 총계가 104만여 원인데 그중 신규사업으로는 관훈동, 인사동의 하수구 개수공사로 총 예산 8만원 중 금년도 예산이 4만원이요 (중략) 전기한 위생사업 중에는 북부 일대에 변소와 쓰레기통이 적음으로 약 천원의 예산으로 그것을 설치케 하리라더라.

위에서 언급한 하수구 개수 공사는 부임한 한 후 곧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해 말 350여만 원 예산으로 4개년 사업으로 부내 하수구 26만 간을 공사하기로 하였다. 인사동·낙원동의 하수도 공사도 포함되었다.[58] 또한 변소와 쓰레기통 설치도 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그의 위생 제일주의 이면에는 조선인에 대한 극심한 경멸이 내포되어 있었고, 이는 도시 위생에서 조선인을 일본인과 차별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성부는 대규모 오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이촌동 수재 이재민 440여 호 3,000여 명이 움막을 짓고 임시로 살고 있는 곳 근처였다. 당시 경성부는 수재민의 이촌동 이전 경비는 예산상의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단지 은사금으로 30원 내외의 보조금을 내어주기로 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3만여 원을 들여 오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59] 또한 우마노 부윤은 개청식도 하지 않은 경성부 신청사에서 전국의 상수(上水) 권위자를 모아 제23회 상수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당시 회의는 사이토 총독,

57) ≪동아일보≫ 1926년 2월 23일.
58) ≪동아일보≫ 1925년 12월 11일.
59) ≪동아일보≫ 1925년 9월 2일.

유아사 정무총감을 비롯하여 전국의 상수 권위자 172명이 모인 대규모 회의였다.[60] 우마노 부윤은 도시연구회 총회에서 북부의 조선인이 "무슨 기성회, 무슨 발전회"니 하며 시가지 개량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조선인을 비난하며, 조선인에게서 수익세를 걷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61] 부협의회에서 살수비 예산을 두고 조선인 지역에는 살수를 하지 않으며 일본인 지역에는 거마가 불편할 정도로 물을 뿌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우마노 부윤은 뜬금없이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조선 사람의 위생 사상이 저급하다는 것을 한참 설명"하기도 하였다.[62] 이런 위생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던 그가 크게 자존심을 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28년 초 장티푸스로 경성에 감염자가 급증하여 사망자 17명, 전염자 437명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 총독부의원장이었던 시가(志賀) 박사가 경성부 수도를 원인으로 지목하자 우마노 부유은 핏대를 세우고 절규하며 그와 논전을 벌이기도 하였다.[63]

물론 위의 〈표 4〉에서 보이듯이 그렇게 요란을 떨던 것에 비해 우마노 부윤 시절의 위생비 지출은 도리어 기존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경성부 전체의 역할이 커지며 위생이 점체 행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떠들썩한 우마노에 비해서 가려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이후 부윤 중에는 그만큼 강하게 위생을 내세운 인물은 찾기 힘들다. 그렇지만 최초의 칙임 부윤으로 부임한 다테 부윤을 통해서 경성부윤에게 위생이란 어떤 의미인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시책이나 활동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존재감이 약했던 다테 부윤이지만, 스스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매우 자신했던 듯하다. 그는 문화시설로 보니 도시 경성은 실로 격세지감이며, 전차와 같은 교통시설이 발달하고 4~5층의 고층 빌딩이 즐비하며, 가로수, 가로등, 네온사인도 많아졌다

60) ≪동아일보≫ 1926년 10월 12일.
61) ≪동아일보≫ 1927년 3월 7일.
62) ≪동아일보≫ 1927년 3월 14일.
63) ≪동아일보≫ 1928년 2월 19일, 3월 19일.

고 기꺼워했다. 또한 더럽고 쓰레기 천지이고 대소변이 아무 곳이나 널려 있던 것이 아스팔트를 깔고 도로를 포장하며, 살수와 소제를 하여 깨끗해졌다고 자부하였다.[64]

(2) 도시계획

1920년대 경성부는 본격적인 도시화의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경성부윤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경성부의 변화가 도리어 경성부윤에게 새로운 역할을 하게 하였고, 그것이 이후 경성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었다.

제4대 경성부윤 요시마쓰는 1923년 1월 1일, 전해에 대해 회고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도 부민의 유력한 인사로써 성립되어 착착 그 조사의 발걸음을 나아가고 있으며 (중략) 지금에 대체의 결료(結了)한 것은 대경성 구성상 실로 흔쾌한 것 (후략)"이라고 평가하였다.[65] 그가 언급한 경성도시계획위원회는 당시 총독부의 경성 시구개수 직할 시행이 계속되던 중이던 1921년 8월 27일 "관민일치(官民一致)에 의해 건전한 도시계획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당시 조선에서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을 내건 최초의 단체였다. 염복규는 이 단체의 조직을 1920년대 경성 도시계획 운동의 본격적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이 단체의 성격을 식민 당국에 대한 일종의 '로비 단체'이자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단체로 보았다.[66] 해당 단체는 최초부터 회장을 두지 않고 미노베(美濃部) 조선은행 총재, 이완용, 요시마쓰(吉松) 경성부윤, 이상 3명의 부회장만 두었다. [67]

도시계획연구회는 도시계획의 확정 시기를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사

64) ≪매일신보≫ 1935년 10월 1일.
65) ≪매일신보≫ 1923년 1월 1일.
66) 염복규, 〈1920년대 京城도시계획운동의 전개와 성격〉 ≪국사관논총≫ 107, 2005.
67) ≪매일신보≫ 1923년 3월 8일.

안을 총독에게 진정하였다.[68]

1. 경성부청사 신축
2. 경성 시구 개정 사업을 급속히 실시
3. 南山麓 주위 도로를 신설
4. 신용산 방수 공사를 실시
5. 한강 이용 설비를 실시
6. 총독부에 도시계획 사업을 관장하는 분과를 설치할 것

이상이 사업은 이후 벌어지는 경성 도시계획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경성부윤 요시마쓰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제5대 부윤 다니 다키마는 요시마쓰에 이어 경성도시계획연구회의 부회장이 되었다.[69]

그리고 요시마쓰는 퇴임 직전인 1923년 2월 경성부 신청사 부지를 정했다. 처음에는 남대문소학교로 내정하였다가 일부 학교조합 평의원과 시민의 반대가 격렬해 지자 구도(工藤)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결국 태평통 매일신보사 부지로 정하였다.[70] 또한 조선 최초 사교기관 조선구락부를 조선호텔 건너편에 신축하기로 하였다.[71] 경성부 신청사는 우마노 부윤 때 완성이 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930년대 들어 이노우에 부윤 역시 도시개발에 주력하였다. 이노우에 부윤은 1933년 경성부의 주요 시정 방향(1932년 12월 28일 열린 정례 회견)으로 경성부의 시구개수(1933년 완성), 1934년부터의 시구 개정안을 새로 수립 예정, 토목 사업으로는 중하수구, 소하수구를 주로 개수, 남산 방면 부유지 계발하기 위한 남산 주회도로의 일부(이태원) 정리 등을 제시하였다.[72]

---

68) ≪매일신보≫ 1922년 5월 13일.
69) ≪매일신보≫ 1923년 3월 11 · 14일, 5월 19일.
70) ≪매일신보≫ 1923년 2월 11 · 25일.
71) ≪매일신보≫ 1923년 2월 21일.
72) ≪동아일보≫ 1932년 12월 29일.

(3) 자력갱생 운동

1930년대 경성부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자력갱생 운동을 들 수 있다. 이는 만주사변 이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동요하는 기층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총독부의 시책을, 도시화의 진전이라는 경성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73]

앞서 살펴보았듯이 1933년 경성부의 주요 시정 방향은 부영버스 매각, 경성부의 시구 개수, 시구 개정안 신규 수립, 중하수구 및 소하수구 개수, 남산 주회도로의 일부(이태원) 정리 등이었다. 여기에 더해 이노우에 부윤은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교화단체의 연합활동을 통해, 또는 각 방면위원들의 연합 활동을 통해 좀 더 힘 있게 활동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74]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맨 마지막에 언급한 자력갱생 운동에 관한 것이다. 1932년 말부터 경성부는 민심작흥 운동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75] 이노우에 부윤은 퇴임 직후 자신의 업적으로 총독부 농산어촌 대한 정신작흥 자력갱생 운동에 적극 협조한 것을 꼽고 있다. 그는 도시 방면은 생활도 밀집적적이고 업무도 잡다하여 단순한 농촌과는 매우 다르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언급하였다. 조금 길지만 도시에서의 정신작흥 운동 실체를 잘 보여주므로 주요 부분을 발췌 인용한다.

> 국민정신작흥주간: (전략) 우리 경성부에서는 조서 환발 기념일을 중심으로 국민정신 작흥 주간을 설정하고 40만 부민의 정신적 총동원을 계획했다. 각 관공서, 군부, 학교, 각종 단체, 각 신문사 정총대 일반 부민의 마음에서 나오는 찬동, 열성적인 협력을, 1933년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신사참배일, 獻老愛幼日, 생활개선일, 극기인고일, 공덕함양일, 건강증진 및 보은감사일, 모두 성대한 정신이 깃든 운동이 각 곳에

73) 이노우에 부윤의 자력갱생 정책을 총독부 시책과 경성부의 도시화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서현주 박사의 제언에 전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74) ≪동아일보≫ 1932년 12월 29일.

75) ≪동아일보≫ 1932년 11월 11일.

서 실시되어 (중략) 민풍 작흥의 실효를 이루기를 염원하고 있다. (후략)

지도항목: (전략) 각 교화단체의 대동단결에 의해 종합적 위력을 발휘할 필요로, 본년(1933년) 2월 교화단체연합회를 창설, 일본 민족의 지대지고한 전통적 정신의 갱생을 목표로 하여 (중략) 그 지도 요령은 1. 국체를 천명하고 국민정신의 작흥에 노력할 것. 2. 사회연대의 의식을 밝히고 공제협력의 미풍을 진흥할 것. 3. 弛緩廢頹의 기풍을 소탕하고 긴장노력의 정신을 振起할 것. 4. 경제생활의 도덕의의를 밝히고 교화의 운용으로써 국민의 실생활에 즉할 것. 5. 의뢰심을 배제하고 극기인고의 수련을 견디고 자력갱생의 발랄한 기력을 기를 것. 6. 생업 개선, 소비 합리화를 도모하고 신흥 갱생 생활의 기본을 확립할 것. 7. 日滿 친선의 정신을 고취하고 공존공영의 실을 거둬 세계 평화의 基調가 되게 할 것 (후략)

진흥 작업 조직: 이 운동은 전 부민 일치협력의 힘으로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화단체연합회는 다시 전 府를 동서남북 및 용산의 5구로 나눠 각 구에 교화구를 두고, 각 교화구에 교화단체연합회에 가맹한 단체원 및 부내 유력자 중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조직한 교화위원회를 두고, 교화강령의 실행기관 지도기관으로 하고 (중략) 각 정동에서 정동회와 연락을 취해 교화의 조직을 우선 단순한 사회조직인 향토 부락에서 실시하고, 그것을 정동에서 전 府로 보급하게 하여 그 교화운동을 전면적으로 하게 하여, 현대 생활의 폐해를 匡濟하고 국민 생활의 실을 거둘 것을 기도한다.

교화운동의 골자: (전략) 정동회에 교화부 또는 교화계를 두어, 敎化常會를 둔다. 즉, 정동민 중 유력자, 예를 들면 그 정동민이 주체가 되어, 매월 정해진 날에 집합하여 양풍미속의 조장생활 개선, 공동심의 함양, 기타 교화의 철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서 교화의 실을 거두고자 노력하고, 혹은 경로회를 개최하거나 주부회를 열고, 또는 위생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기도 하여 서로 협력하여 정신적 경제적 갱생을 꾀한다. (중략) 정동민이 서로 모이면 그 사이에 친교도 생겨 內鮮人 사이의 이해 융합도 가능할 것으로 그 효과는 비상히 클 것으로 믿는다. (중략) 은행회사, 상공단체의 방면에 대해서도 이러한 교화상회의 설치를 종용하여 (후략)

국운 융성에 참여: 요컨대 우리 경성부에서의 교화운동은, 이상의 같은 교화망 아래 조직적 활동의 항구적 기반을 확립하고, 부민의 정신생활, 실생활 및 단체 생활의 훈련을 행해 교화의 실을 거두는 것으로 (후략)[76]

76)≪경성일보≫ 1933년 12월 22 · 23일.

이처럼 경성부에 교화단체 연합회를 두고 각 정동의 정동회와 긴밀한 연락 관계를 두고, 정동회에 교화부(교화계)를 두는 등 상당히 치밀한 교화망을 조직하여, 부민의 정신생활 및 실생활을 변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같은 날 부임한 마쓰모토 마코토(松本誠) 경기도지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마쓰모토 경기도지사는 1909년 도쿄제국대학 정치과를 나와 대한제국 내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조선총독부 서기관, 경기도 내무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1928년 1월 전매국장에 발탁되어 전매제도를 바꿔 판매사업을 직영하였다. 1931년 9월에는 경기도지사가 되었다. 경기도지사 당시 우가키 총독의 자력갱생 운동 방침에 적극 협력하며 지방 행정 쇄신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받았다. 직접 아이치현 헤키카이군을 시찰하고 갱생운동의 진수를 배워 자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면서 리더로서 활약하였으며, 중견 인물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통학교 졸업생 지도에 힘을 기울이고, 직업학교, 농사훈련소를 설치하여 이것이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하였다고 평가받았다.

그런데 마쓰모토의 경력을 보면 이노우에 경성부윤의 이력과 상당히 겹치는 점이 발견된다. 마쓰모토는 이노우에와 함께 같은 해 도쿄제대 정치과를 나왔고 이노우에 경성부윤이 조선연초원매팔회사 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그는 이를 관리하던 조선총독부 전매국장이었다. 또한 이노우에는 마쓰모토 경기도지사와 함께 1931년 9월 23일 경성부윤으로 부임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노우에는 마쓰모토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마이다 정무총감의 지시에 따라 경성전기의 부영화 문제에 대처하고 또 자력갱생 운동에 적극 호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노우에의 적극적인 자력갱생 정책은 만주사변이라는 정세 변화, 총독부의 시책, 경성부의 도시화, 이노우에 부윤의 사적인 인간관계 등이 결합되어 경성부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되었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경성의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던 1920~1933년에 임명된 경성부윤과 그 시기 경성부에 재직한 고등관의 이력을 정리하고, 해당 시기 경성부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경성부윤으로 재직한 이는 제4대 요시마쓰 노리오(吉松憲郎, 1921.8.5~1923.2.23), 재5대 다니 다키마(谷多喜磨, 1923.2.24~1925.6.14), 제6대 우마노 세이이치(馬野精一, 1925.6.15~1929.1.20), 제7대 마쓰이 후사지로(松井房治郎, 1929.1.21~1929.12.10), 제8대 세키미즈 다케시(關水武, 1929.12.11~1930.11.11), 제9대 안도 게사이치(安藤袈裟一, 1930.11.12~1931.9.22), 제10대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 1931.9.23~1933.12.4) 총 7명이었다. 이들은 지방 행정 기관의 책임자로서 상급 기관과 민 사이의 접점에 위치해 있었고, 조선총독부의 시책 변화와 경성부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 시기 경성부윤의 위상은 경성부의 확장과 위상 증대, 총독부의 지방자치 확대, 경성부민의 다양하고 강한 요구 등과 맞물려 급속히 상승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경성부윤을 칙임관으로 하자는 경성부민의 여론이 매우 강해진 것도 이러한 위상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 시기 경성부윤으로 부임한 이들이 한국에 처음 관직생활을 한 때는 1910년 전후, 1919년으로 크게 나뉜다. 그러나 한국에 온 시기적 차이로 인한 정책 차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도리어 이들은 지극히 실무적인 지방 행정 관료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경성부만의 독자적인 정책 목표를 내세우거나 어떤 개인적인 정책 지향을 찾아보기는 힘들며 기존의 경험에 따라 행정을 처리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 행정 관료적 경험은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요구가 있던 경성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리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상의하달적인 경직된 태도는 경성부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정책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적 형태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조선인들과의 마찰은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경성부윤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며 그 역할도 변동하였다. 경성부윤은 단순한 지방 행정 관리자의 역할에서 점차 벗어나, 경기도지사 등 상급 관리자의 지시와 시민의 요구 속에서 휘둘리면서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부과된 책임과 권한 이상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1920~1933년 시기의 경성부 행정기구는 도시의 확장 및 행정 수요에 따라 매우 잦은 개편을 거듭하였다. 고등관의 수는 1921년 이사관 2명, 기사 1명에서 1922년 이사관 3명, 1927년 이사관 4명으로 증원되었다. 특히 이사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성부 행정 기구의 개편 및 행정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이사관은 주로 서무과장, 내무과장, 학무과장, 세무과장 등 실무 행정 부서의 관리자로 임명되고 있었다. 경성부 부이사관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부윤, 군수급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시기 경성부 부이사관(겸직 포함)을 역임한 사람은 총 19명으로, 이 중 6명이 겸직이었다. 정원을 늘리지 않고 주로 조선총독부의 직원(특히 속)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무과장은 한국인이 장기간에 걸쳐 맡았는데, 오두환이 1922~1931년까지 거의 1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서무과장을 역을 맡고 이원보가 이어서 그 자리를 계속하였다. 반면에 핵심 보직인 내무과장, 세무과장, 학무과장은 일본인이 담당하였다. 이를 보면 부의 핵심적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성부의 고등관으로 부기사(府技師) 외에 부토목기사, 부위생기사 등이 있었으며, 조선토목기사가 경성부에서 근무하였다. 이 시기 경성부 부기사(겸직 포함)을 역임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이 중 1명이 겸직이었고, 조선토목기사 2명이 경성부에 근무하였다. 기사는 정원이 1명이었는데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기사가 근무했던 것은 당시 수요가 많았던 경성부의 토목 공사 등의 이유로 겸직만으로는 그 수요를 메울 수 없어 과정원의 방식으로 이를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생을 총괄하는 부위생기사 상당수가 의학박사 또는 의학 전공자였던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 눈에 띄는 경성부의 주요 정책으로는, 총독부의 시정 방침, 예산 배정, 부윤의 발언 및 의지 등을 고려하면 크게 도시 위생, 도시계획, 자력갱생 운동을 손꼽을 수 있다. 당시 도시 위생 문제는 경성부의 급격한 인구 증가 및 도시화와 맞물려 경성부의 주요 현안이 되었으며, 문명을 내세우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시책으로 자주 거론되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역대 경성부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었다. 1920년대 위생과가 별도의 과로 만들어지고, 부기사 중 위생기사가 유달리 많고 또 수준이 높은 것도 위생 정책의 비중을 잘 보여준다. 특히 우마노 부윤은 '위생 제일주의'라고 할 정도로 위생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족 차별적 위생시설로 인해 조선인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며 관민의 마찰이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1920년대 경성부는 본격적인 도시화의 변화를 겪기 시작하며, 더불어 도로 설비, 경성부와 총독부의 신청사 건립 등 도시 계획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경성부 시정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였고, 이를 둘러싸고 각종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밖에 1930년대 초 경성부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자력갱생 운동을 들 수 있다. 이는 만주사변 이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동요하는 기층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총독부의 시책을, 도시화의 진전이라는 경성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성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노우에 부윤의 마쓰모토 경기도지사, 이마이다 정무총감과의 사적인 인간관계 등이 결합되며 경성부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되었다.

제4장

1933~1945년 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이정선(한림대 한림과학원 연구원)

1. 머리말
2. 1933~1945년 경성부윤 및 경성부 고등관의 추이
   1) 경성부윤
   2) 경성부 고등관
3. 1933~1945년 경성부윤의 주요 정책
   1) 부윤 취임 제일성
   2) 주요 정책
4. 맺음말 – 해방 이후

1. 머리말

일제는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부를 경기도의 하부행정기구인 경성부로 격하시켰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성부의 위상은 식민지 조선의 '수도'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그 사무도 보통의 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었다. 이에 경성부를 특별부(시)로 승격시키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1930년대 초반에는 경성부윤이 칙임관으로 승격되었다.[1] 1910년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는 부윤을 주임관(3~9등)으로 임명하게 했는데, 1932년 3월 개정에서 경성부윤은 칙임관(1~2등)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2] 실제로도 당시 주임관이었던 10대 부윤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가 승진 연한을 채운 1933년 9월부로 칙임관(2등)에 승서되었고, 이후 1933년 12월부터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 8월까지 재근한 경성부윤은 모두 처음부터 칙임관으로 임명되었다.[3] 이에 이 글에서는 경성부윤이 칙임관으로 승격된 후 임명된 11~18대 경성부윤과 그 시기 경성부에 재직한 고등관의 이력을 정리하는 한편, 1933~1945년 경성부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염복규,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 참조.

2) ≪조선총독부관보≫ 1932년 3월 30일.

3) 이미 칙임관(1등)이었던 17대 生田清三郎은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경성부윤이 되면서 주임관(3등)에서 칙임관(2등 또는 2등 2급)으로 승진했다. 또한 11대 伊達四雄, 13대 사에키 아佐伯顯, 14대 高橋敏, 15대 矢野桃郎은 경성부윤에 임명되기 전에 이미 주임관이면서 칙임관 대우를 받고 있었다.

2. 1933 ~ 1945년 경성부윤 및 경성부 고등관의 추이

1) 경성부윤

<표 1> 1933~1945년 경성부윤과 그 이력

대수	경성부윤	재근 기간	특기 사항	경기도지사
11대	伊達四雄	1933.12.5~ 1936.5.21	1886년생, 兵庫縣 출신, 東京 제대 법과 졸업 첫 칙임 경성부윤	松本誠 (1931.9.23~1934.11.5)
				富永文一 (1934.11.5~1936.5.21)
12대	甘蔗義邦	1936.5.21~ 1937.7.3	1891년생, 石川縣 출신, 東京 제대 법률과 졸업 조선총독부 시보(1918), 경기도지사로 영전	安井誠一(1936.5.21~1936.10.16)
				湯村辰二(1936.10.16~1937.7.3)
13대	佐伯顯	1937.7.3- 1938.11.9	1893년생, 廣島縣 출신, 中央대학 법과 졸업	甘蔗義邦 (1937.7.3~1940.5.30)
14대	高橋敏	1938.11.9~ 1941.1.24.	1897년생, 宮城縣 출신, 東京 제대 독법과 졸업 평양부윤 역임(1934)	鈴川壽男(1940.5.30~1941.11.19)
15대	矢野桃郎	1941.1.24~ 1942.5.22	1894년생, 東京 출신, 東京제대 법대 정치과 졸업 평양부윤(1936), 부산부윤(1939) 역임	松澤龍雄(1941.11.19~1942.4.7)
				丹下郁太郎(1942.4.7~1942.6.2)
16대	古市進	1942.5.22~ 1945.5.2	1898년생, 石川縣 출신, 東京 제대 법과 졸업 대구부윤 역임(1937)	高安彦(1942.6.2~1943.12.1)
17대	生田淸三郎	1945.5.2~ 1945.6.16	1884년생, 德島縣 출신, 법학원 졸업 통감부 · 대한제국 서기관,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겸 중추원 서기관장 등 역임 후 퇴관(1929). '거물 부윤' 경기도지사로 영전	瀨戶道一 (1943.12.1~1945.6.16)
18대	辻桂五	1945.6.16~ 1945.8.15	1901년생, 岡山縣 출신, 東京 제대 법과 졸업 첫 경성부 부부윤	生田淸三(1945.6.16~1945.8.15)

출처: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이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안용식 편, ≪일제지방관록≫,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2001 ; 안용식 편, ≪조선총독부하일본인관료연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2002-2003 ; 경성일보사, ≪조선연감≫, 1945 ; ≪매일신보≫.

비고: 자세한 이력은 <부록 1-1> 참조.

(1) 11대 다테 시오

다테 시오(伊達四雄)는 1886년 1월생으로, 원적은 효고현(兵庫縣)이다.[4] 1913년에 도쿄제대 법과를 졸업하고, 효고현 내무부에 근무하던 중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효고현에서 군장(郡長)으로 근무하다가, 1921년에 조선총독부 도이사관(경기도 내무부 지방과장 및 심사과장)에 임명되어 조선으로 건너왔다. 1922년 8월에는 도사무관이 되어 평북 재무부장(1922), 충남 경찰부장(1923), 평남 경찰부장(1928), 평북 내무부장(1929), 강원 내무부장(1929), 경북 내무부장(1931) 등을 역임했다. 1933년 12월에 경성부윤에 임명되어서 1936년 5월까지 재직한 후, 경북도지사로 발령되었다. 1938년 9월에 고등관 1등의 경북도지사로서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조선화약총포주식회사(1939), 조선회수자원통제주식회사(1940) 등 각종 국책회사 및 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는 한편, 1943~1944년에는 경성부회 부의장으로도 활약하였다. ≪조선인사흥신록≫에서는 어떤 일에도 굽히거나 의뢰하는 일 없는 호쾌 명랑한 성격을 바탕으로, 지체하는 일 없이 '명랑한 정치, 명랑한 경성부'라는 이상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2) 12대 간쇼 요시쿠니

간쇼 요시쿠니(甘蔗義邦)는 1891년생으로, 이시카와현(石川縣) 출신이다. 1918년에 도쿄제대 법률과를 졸업한 직후, 조선총독부 시보에 임명되어 조선에 건너왔다. 이후 주로 도사무관으로서, 함북 지방계 주임(1919), 평남 재무부장(1924), 강원 경찰부장(1926), 전남 경찰부장(1930), 함남 내무부장(1930), 강원 내무부장(1932) 등을 역임하였다. 1934년에 도사무관에서 물러나 평양세무감독국장이 되었다가, 1936년 5월에 경성부윤에 임명되어 1937년 7월까지 재직하였다. 경성부윤 다음으로는 다시 경기도지사로 영전하여 1940년 5월까지 경성

4) 和歌山縣 또는 神戶市라는 기록도 있다.

부와 관련된 경력을 이어갔다. ≪조선공로자명감≫은 "일하는 데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의 수완"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3) 13대 사에키 아키라

사에키 아키라(佐伯顯)는 1893년생으로, 히로시마현(広島縣) 출신이다. 주오(中央)대학 법과 재학 중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고, 1916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경시청 경부에 임명되었다(1917). 1919년에는 경시로 승진했고, 가라후토청(樺太廳) 지방과장 겸 심의사무관으로서 외지 근무를 했다. 1921년에 일본 본토로 돌아와 후쿠이현(福井縣) 경시(경찰부 보안과장, 공장과장)로 근무하다가, 1923년 4월에 조선총독부 사무관 겸 경찰관강습소 교수에 임명되어 조선에 건너왔다. 이후 도사무관으로서 주로 경찰 방면에 근무하여 충북(1924), 충남(1925), 함남(1928), 평남(1931), 경기(1934) 경찰부장을 역임했고, 1936년 5월부터 경기 도사무관(내무부장)으로 있다가 1937년 7월에 경성부윤에 임명되었다. 1938년 11월에 경성부윤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4) 14대 다카하시 사토시

다카하시 사토시(高橋敏)는 1897년생으로, 미야기현(宮城縣) 출신이다. 1921년에 도쿄제대 독법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함과 동시에, 조선총독부 속(경무국 보안과)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도이사관으로서 강원(1922), 충남(1923) 지방과장, 경기 학무과장(1925) 등을 역임했고, 1927년 도사무관이 되어 충남 재무부장을 거친 다음, 1928년부터는 전매국 사무관으로서 전매국 서무과장, 대구전매지국장, 경성전매지국장 등을 역임했다. 1934년 11월부터 평양부윤으로 재직하다가, 1936년 10~11월에는 조선총독부 사무관 겸 외무사무관에 임명되어 만주국 수도 신경(新京)에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만주국 및 관동군과의 사무 절충에 수완을 발휘하였다. 1938년 7월에는 중국 베이징(北京)에 신설된 조선총독부 출장소의 초대 소장에 발탁됐는데, 5개월 만인 동

년 11월에 경성부윤에 임명되어서 1941년 1월까지 재직하였다. 장인 오노 시로(大野史郎)가 당시 경성부회 부의장이었다.[5] 경북도지사(1941.1~1941.11)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인천 소래염전에 공장을 둔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의 사장(1942) 등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인사흥신록≫에서는 중후하고 원만하면서 말없이 실행하는 인격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5) 15대 야노 도로

야노 도로(矢野桃郎)는 1894년생으로, 도쿄 출신이다.[6] 1919년 도쿄제대 법대 정치과를 졸업했고, 동년 10월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후 11월부터 경시청 경부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1922년 5월에 조선총독부 사무관(경무국) 겸 경찰관강습소 교수에 임명되어 조선으로 건너왔다. 이후 1924년 평남 도이사관(학무과장)을 거쳐, 도사무관으로서 평북(1926), 경남(1928), 충남(1928), 충북(1932), 전남(1935) 재무부장, 경찰부장, 내무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평양부윤(1936), 부산부윤(1939)으로도 경력을 쌓은 다음, 1941년 1월부터 1942년 5월까지 경성부윤으로 재직하다가 퇴관했다. ≪조선인사흥신록≫에 따르면, 칙임으로 부윤이 된 만큼 당당했고 여러 방면에서 두루 관직 생활을 하여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도쿄 출신으로 세련된 인물이어서 어디를 가든 평판이 좋았다고 한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조선마사회 부회장(1943)으로도 활동하였다.

(6) 16대 후루이치 스스무

후루이치 스스무(古市進)는 1898년생으로, 이시카와현 출신이다. 1922년에 도쿄제대 법과를 졸업하자마자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에게 발탁되어, 동년 4월부터 조선총독부 속으로 토목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1924년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함경남도에서 근무하다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5) ≪매일신보≫ 1938년 11월 9일.

6) 愛媛縣 출생인 것으로 보아(≪매일신보≫ 1941년 1월 25일), 도쿄는 원적지였던 듯하다.

교수가 되었다. 이후 경기 도경시(보안과장)를 거쳐, 1928년부터는 도이사관으로서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학무과장으로 근무했다. 1930년에는 조선총독부 사무관이 되어, 상하이, 하얼빈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1932년부터는 도사무관으로서 충남(1932), 전남(1935) 경찰부장, 전북(1936), 황해(1939) 내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1937년 4월부터 1939년 6월까지는 대구부윤으로도 근무했으며, 1941년 8월부터 경기 도사무관(내무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42년 5월 경성부윤에 임명되었다. ≪조선공로자명감≫에서는 일을 빠르고 재치 있게 처리하는 우수한 인재이자 온후한 능력자이면서 호걸 기질까지 갖추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지만, 김성환은 경성부윤 재직시 "관계 유영술(遊泳術)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부회와의 갈등도 심각했던 것 같은데, 부회를 회유하고 부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부회의원 하마다 도라쿠마(濱田虎熊)를 부윤과 동일한 연봉의 부리원(府吏員)으로 등용했다는 것이나, 공습경보가 잘못 울린 데 대해 임시 부회를 급히 소집해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구슬땀을 흘리며 경위를 설명하고 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용의가 있다며 사죄했다는 일화에서 이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결국 후루이치는 1945년 5월에 조선총독관방 사무관으로 전출되었다가 6월에 관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7]

(7) 17대 이쿠타 세이자부로

이쿠타 세이자부로(生田清三郎)는 1884년생으로, 도쿠시마현(德島縣) 출신이다. 1905년에 법학원(주오대학 전신)을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다음, 1906년에 통감부 속이 되어 한반도에 건너왔다. 1907년에는 통감부 서기관, 1908년에는 대한제국 내부 서기관, 농상공부 서기관 등에 용빙되었으며, 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 서기관으로서 식산국 등에 근무했다. 1915년

7) 김성환, 〈 해방전후의 서울시정 -나의 경성부 재직시대- 〉 ≪향토서울≫ 6, 1959, 92~93쪽, 97쪽.

에 조선총독부 사무관이 된 이래 상공과장, 외사과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1923년 평북도지사를 거쳐,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겸 중추원 서기관장(고등관 1등)에 임명되었으며, 1929년 11월에 관직에서 은퇴했다. 그리고 1945년 5월, 환갑을 넘긴 나이에 경성부윤으로 복귀하였다.

조선총독부 내무국장까지 지낸 이쿠타가 경성부윤에 임명된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급이 맞지 않는 인사였다. 이와 같은 '거물 부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데는 후루이치 부윤 시기의 알력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막바지라는 시기도 영향을 미쳤다. 전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민중과 접촉하는 제일선 기관이 "민중을 잘 이끌어 가지고 전력 증강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킨다는 정치력"을 굳세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944년경부터 지사급 면장, 거물 군수 등이 속속 배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신보≫는 이에 백만 인구를 갖는 경성에 거물 부윤이 실현된 것도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기존의 관청은 결재나 처무규정 등으로 인해 "전국은 세 걸음 네 걸음 뛰어나가는데 그에 대처할 사무는 반걸음도 걷지 못하는 폐"가 많았다면서, 이쿠타가 "노련한 수완으로 중요 문제를 물 흐르는 것과 같이 처결하여 전력 증강에 유감"이 없게 하기를 기대했다.[8] 즉, 이쿠타 부윤은 급박한 전황 속에서 정해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총동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기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쿠타는 임명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인 1945년 6월 16일자로 경기도지사로 전출되었다.

(8) 18대 쓰지 게이고

쓰지 게이고(辻桂五)는 1901년생으로, 오카야마현(岡山縣) 출신이다. 1923년에 도쿄제대 법과를 졸업하고 1925년 11월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후, 1927년에 전북 도속이 되어 조선에 건너왔다. 동년 7월에는 전북 도경부에 임명

8) ≪매일신보≫ 1945년 5월 4일.

되었다. 1929년에 도이사관이 되어, 강원 학무과장, 산업과장, 지방과장 등을 역임했고, 1933년에는 함북 지방과장 겸 학무과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1938년부터는 조선총독부 사무관이 되어 척무과장(1939), 이재과장(1941) 등으로 근무하였다. 1942년 11월에는 조선총독부 서기관이 되었고, 1945년 칙령 제63호에 따라 동년 4월 17일부터 조선총독부 서기관으로서 경성부 재근을 명받아 경성부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쓰지는 1945년 5월 2일에 이쿠타가 경성부윤이 됨과 동시에 처음이자 마지막 경성부 부부윤(副府尹)으로 임명되었다.[9] 경성부윤의 칙임관 승격 이후, 경성부는 경성부를 다른 부와 달리 '특별부'로 승격시켜 달라는 운동을 본격화했다. 거대 도시인 경성부를 도가 아니라 총독 직속으로 만들고 하부에 5~7개의 사무구(자치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이었는데, 그와 함께 부부윤을 두자는 계획도 제출되었다. 경성부처럼 인구가 많고 정치적으로도 사무적으로도 안팎으로 일이 많은 곳에서 부윤이 사무 방면까지 총람하기는 무리라서 부정(府政)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일본 본토의 시제(市制)를 모방하여 부부윤을 두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부윤에게 사무 방면을 총괄하게 하고 부윤은 정치 방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한다는 구상이었다. 1933년 6월에는 이러한 부부윤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제도 개정하고 예산도 계상했으며 부부윤은 3등급 사무관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지만,[10] 조선총독부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11] 1945년 5월에 임명된 이쿠타 부윤, 쓰지 부부윤의 조합은 정확히 이러한 구상을 실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로 전출된 이쿠타의 뒤를 이어 쓰지가 경성부윤에 취임하면서, 직제에도 없이 단순한 행정 조치로 설치되었던 부부윤제는 자연히 해소되었다.[12]

---

9) ≪매일신보≫ 1945년 5월 2일.

10) ≪오사카마이니치신문(조선판)≫ 1933년 6월 26일.

11) ≪조선중앙일보≫ 1935년 6월 18일.

12) 김성환, 앞의 논문, 99쪽.

지금까지 살펴본 1933~1945년 사이 경성부윤의 출신과 이력을 종합해보면, 지방행정기관 중 하나인 부로서의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조선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경성부만의 독특한 특징이 모두 드러난다. 일반적인 특징으로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8명의 부윤이 모두 일본인이라는 점이다. 1914년에 기존의 일본인 거류민단을 흡수하면서 부제가 시행된 이래 부윤에는 거의 일본인이 임명되었는데, 개성부 정도가 예외일 뿐이었다. 또한 경성부윤의 취임 당시 연령도 다른 지역의 도지사, 부윤과 대체로 비슷하다. 1944년 9월 현재 조선의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본인 고등관의 연령은 40대가 64.5%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 도지사와 부윤은 총 28명 중 21명이 45~49세 사이였고, 나머지는 40~44세의 도지사, 부윤 각 1명, 50~54세의 부윤 5명이었다.[13] 8명의 경성부윤들도 취임 당시의 나이가 대부분 45세 전후이다. 자진 사퇴한 사에키의 뒤를 이어 만 41세에 취임한 14대 부윤 다카하시가 비교적 젊은 편이고,[14] 이쿠타가 62세의 나이에 17대 경성부윤으로서 관계에 복귀한 것은 그만큼 당시로서도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다.

다음으로 출신지를 보면, 자료에 따라 출생지 또는 본적지를 기록했거나 출신지의 의미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시카와현 출신이 2명일 뿐 나머지는 현당 1명씩이고 지역적으로도 딱히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뚜렷한 공통점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최종 학력과 전공이다. 모두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은 물론이고, 주오대학을 졸업한 사에키와 이쿠타를 제외한 6명은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정치학을 전공한 야노 이외 나머지 7명은 모두 법학을 전공한 것이다. 당시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의 출제 과목이 헌법, 행정법, 경제법 등 법학 위주였던 만큼, 도쿄제대 법학부 졸업생이 시험에 합격해 고위 관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쿄제대는 '관료 양성 기관'이라고 불릴 정도였다.[15] 1944년 9월 현재 조선에 근

13) 안용식 · 김천영, 〈일제말 고급관료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1, 1989, 202~203쪽.
14) ≪매일신보≫ 1938년 11월 10일.
15) 岡本真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 三元社, 2008, 234~240쪽.

무하는 일본인 고등관 중에서도 도쿄제대 출신이 중앙행정기관의 56.3%, 지방행정기관의 30.8%를 차지했다. 하지만 20명의 일본인 부윤 중 도쿄제대 출신은 2명뿐이었는데,[16] 칙임관 시기의 경성부윤에는 대체로 도쿄제대 출신이 임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성부윤의 지위가 다른 지방행정기관에 비해 높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시기 경성부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관료 인생의 대부분을 조선에서 보낸 '조선형 관료'라는 점이다. 대개는 대학 졸업과 거의 동시에 조선에서 관직을 시작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이쿠타는 1900년대에, 나머지 부윤들은 1910년대 말~1920년대 초반에 조선에 왔다. 1945년 이전 일본의 고등문관시험은 자격시험이어서 취직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낮아 일본 본토의 인기 관청에는 들어갈 수 없거나 혹은 선배, 친척, 교수 등의 추천을 받아서 조선을 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식민지에서는 일본인 관료에게 가봉이나 관사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었다. 특히 간쇼는 시보(試補) 출신인데, 시보 제도는 1910년대에 관료를 충원하기 어려웠던 조선총독부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게 일정 기간 사무를 견습시켜서 고등관에 임명하는 독자적인 관료 육성 시스템이었다. 시보 제도는 1920년까지 존속되었고, 시보 출신은 이후 여러 관청을 거치며 종합적인 행정 능력을 갖추고 점차 조선총독부의 중견 관료로 성장했다. 역대 경성부윤 중에서는 10대 이노우에와 12대 간쇼, 경기도지사 중에서는 도미나가 분이치(富永文一), 유무라 다쓰지로(湯村辰二郎)가 시보 출신이었다.[17] 그밖에 고등문관시험 합격 직후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쓰지를 제외하면, 일본에서 관직을 시작한 사람은 11대 다테, 13대 사에키, 15대 야노 부윤밖에 없다. 하지만 야노는 일본에서 1~2년 근무했고, 타 지역 경력이 가장 긴 다테와 사에키도 조선 밖에서는 6~8년가량 근무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1921~1923년경 조선에 건너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때는 미즈노 렌타로(水野

16) 안용식 · 김천영, 앞의 논문, 199쪽, 203~204쪽.

17) 李炯植, 〈補論〉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吉川弘文館, 2013.

鍊太郎) 정무총감이 무단통치기로 불리는 1910년대의 조선총독부 통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경찰을 비롯한 내무 계통의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한 시기였다. 그 당시 일본에서 조선으로 부임해온 관료 중 상당수는 나중에 본토로 복귀했지만 조선에 남아 조선형 관료에 합류한 이들도 있었다.[18] 다테와 사에키, 야노도 이러한 이들로서, 이후 관직 생활의 마지막까지 조선에서 근무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1933년 이후 경성부윤에는 주로 조선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관료로 성장한 인물들이 임명되었고, 그만큼 일본 본토의 정치적 역관계보다는 재조일본인 또는 조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11대 다테 부윤이 경성부회 부의장이 되고 14대 다카하시 부윤의 장인 역시 경성부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등, 경성부윤들이 부임 전후 경성에 생활 근거를 가졌던 모습은 이러한 정황을 방증한다.

2) 경성부 고등관

1933~1945년 사이 경성부의 직제는 1936년 10월을 전후로 하여 크게 두 형태로 나뉜다.[19] 하나는 1920년대부터 이어져온 과 체제로, 1936년 4월의 행정구역 확장을 즈음해 1계 8과제로 개편된 것이 가장 확대된 형태이다. 1936년 3월 30일 〈경성부처무규정〉에 따르면, 이때의 조직은 비서계 및 서무과(문서계·호적계·감사계), 내무과(내무계·회계계·영선계·권업계), 사회과, 학무과, 위생과, 토목과(서무계·공사계·도시계획계), 수도과(서무계·공사계), 세무과(부과계·징수계)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는 경성부에 주임관으로 전임 이사관 및 기사를 둘 수 있게 했는데, 기사는 1명, 이사관은 4명(1927) 또는 3명

18) 李炯植, 위의 책, 98~101쪽.

19) 경성부의 행정조직 및 고등관의 종류에 대해서는, 원영환, 〈경성부 연구 -행정제도와 그 업무를 중심으로-〉 ≪향토서울≫ 38, 1980 ; 서현주, 〈일제하 경성부 행정조직과 운영의 식민지성〉≪향토서울≫ 86, 2014 ; 이 책의 염복규, 〈일제하 경성부윤의 위상 변화〉 등 참조.

(1934)을 두도록 했다. 이 직제는 1936년 10월부터 1과 3부제로 개편되었다. 부윤 아래에 서무과(비서계·문서계) 및 총무부(내무과·감사과·사회과·학무과·위생과·호적과·권업과), 재무부(세무과·회계과), 공영부(수도과·토목과·영선과)를 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과를 부로 폐합하는 동시에 각 계를 과로 승격한 방식이었는데, 경성부로서는 계장을 과장으로 승격함에 따라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과 부장을 이사관으로 할지 사무관으로 할지 등이 문젯거리였다. 결국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는 경성부에 주임관인 전임 사무관 2명, 이사관 2명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총무부장과 재무부장은 사무관, 공영부장은 사무관 또는 기사로 임명하기로 했다.[20] 3부제의 틀은 1945년까지 이어졌지만, 1943년 12월에는 서무과 대신 부윤관방을 신설하고 재무부 대신 민생부를 신설하여 1관방 3부제가 되었다. 이는 노무동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으로, 신설된 민생부 노무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때의 조직은 부윤관방(조사실·서무과·회계과), 총무부(내무과·세무과·징수과·방위병무과·산업과·국민총력과·경제과), 민생부(사회과·노무과·위생과·청소과·직업소개소), 공영부(토목과·도시계획과·수도과·영선과)로 구성되었다.[21]

(1) 이사관

〈표 2〉는 경성부에 임명된 이사관들 중 중앙기구에 속한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사관은 주로 내무과장, 학무과장, 사회과장에 임명되는 경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20) ≪매일신보≫ 1936년 9월 29일, 1935년 6월 18일.

21) ≪매일신보≫ 1943년 12월 2일.

<표 2> 1933~1945년 경성부 일반 이사관과 그 이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이사관 (내무과장)	1933.1~1934.4 1935~1936.10	森武彦	1919.3 경기 도서기 겸 도시학 1936.9 경성부 총무부장 사무취급, 학무과장 겸무
	1936.10~1939.6	柳本朝光	1934.1~1936.10 평남 조선산업주사 1939.6~1943.9 함흥부윤
	1939.8~1940.9	高橋貫右	1937 조선총독부 속(내무국 토목과)
부이사관 (세무과장)	1934	森武彦	1934.9~1935.2 경성부 수도과장 겸무
부이사관 (학무과장)	1934.6~1936.7	藤江嶮一	1932~1934.6 충남 대전군수 1936.7~1942 경남 마산부윤
	1937.5~1938.10 (사회과, 학무과장)	簗瀬末太郎	1936~1937.5 조선총독부 산림사무관 (농림국 임정과) 1938.10~1941.5 황해 해주부윤
	1938.10~1940.2	岡野定乙吉	1938 경북 도속(사회과), 육군 보병 소위 1940.2 경기 도이사관(산업부 산업 제2과) 1941.11 조선총독부 사무관(식산국)
	1940.2~1945	宮野寛	1938.7 경기 시흥군수 1943.6 학무과장 겸 동대문구장
부이사관 (사회과장)	1933.7~1935.4	李源甫 (李家源甫)	1932.1 경성부 서무과장 1935.4 평안북도 참여관 1943.2 중추원 참의(칙임관 대우)
	1935.4~1936.5	權重植 (山本重夫)	1932.2 평북 삭주군수 1933.4 경기 도이사관(산업부 산업과장) 1936.5 경기 개성부윤 1937.11 만주국 간도성 민정청 이사관 (실업과장) 1942.6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1936.5~1937.5	金永祥 (金光浩助)	1932.2 평북 이사관(내무부 산업과장) 1936.9 경성부 재무부장 사무취급
부이사관 (노무과장)	1943.12~1944.7	保尙義	1938.7 황해도 내무부 사회과장 1942.3 직업소개소 사무관 (경성직업소개소장)
	1944.7~?	生田平八	1943.6 경기 도이사관(내무부 토목과)
부이사관 (총력과장)	1944.10~?	井上堅	1940.11 조선총독부 속(이재과)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이사관	1940.9~1943.6 (1941 총무과)	田中俊輔	1938 조선총독부 속(내무국 토목과 겸무) 1943.6 조선총독부 이사관(사정국)
	1944.11~?	西脇權治	1943.8 경기도 경성부 경제과장

출처: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이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안용식 편, ≪일제지방관록≫,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2001 ; 안용식 편, ≪조선총독부하일본인관료연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2002-2003 ; 안용식 · 강만식 편, ≪일제강점기 조선인 관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5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2009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10 ; 경성일보사, ≪조선연감≫ ; ≪매일신보≫.

이때 사회과장은 모두 조선인이었음이 특이한데, 초대 민생부장 김성환(金聖煥)의 회고에 따르면 경성부에서 사회과장은 조선인에게 할당된 자리였다. 경성부에서는 역대로 사회과장에 조선인을 임명했는데, 1936년에 3부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조선인을 재무부장에 임명하는 대신 사회과장에는 일본인을 임명했다는 것이다.[22]

또한 1943년 12월에 노무동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생부에 노무과를 신설한 후 노무과장에 이사관을 임명했고, 역시 이때 신설된 국민총력과의 과장에 오노(小野寺芳雄),[23] 오쿠야마(奥山仙三)[24]에 이어서 1944년 10월에는 이사관인 이노우에(井上堅)를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고등관 배치 방식은 경성부가 이 시기 전시총동원사무를 수행하는 데 주력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경성부는 1936년 이후 행정구역 확대 및 전시총동원사무로 업무가 폭증하자,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 기존의 출장소 대신 5개,[25] 또는 7개의 자치구를 설치하려는 〈경성부구제실시안〉을 추진했다. 경성부는 이를 1942년 7월부터

22) 김성환, 앞의 논문, 90~91쪽, 93~94쪽

23) ≪매일신보≫ 1943년 12월 16일.

24) ≪매일신보≫ 1944년 10월 12일. 오쿠야마는 1920년대 경성부에서 부이사관을 지낸 후,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 촉탁, 명륜학원 강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으므로, 이 역시 이사관급 인사였다.

25) ≪동아일보≫ 1940년 5월 17일 ; ≪매일신보≫ 1940년 5월 20일.

실시하려 했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간소화 방침에 어긋나서 유보되었고, 결국 조선총독부가 증원 없이 기존 관리들을 재배치한다는 조건을 걸고 일본 정부와 절충함에 따라 구제(區制)는 후루이치 부윤 때인 1943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26] 시행 당시에는 출장소를 개편한 용산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및 종래의 직할구역에 신설한 종로구, 중구가 있었고, 연희면이 경성부에 편입된 후 1944년 11월에 마포구가 추가되었다. 구장은 호적, 징세와 같은 일반사무 외에 국민저축, 식량 배급, 총력운동, 방공방호, 금속 회수 등 각종 총동원사무도 담당했는데,[27]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는 구장도 이사관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확인되는 경성부 구장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표 3> 경성부 구장과 그 이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이사관	1943.6~1945.8 (서대문구장)	崔卓 (三和卓)	1936 봉천 일본총영사관 부영사 1942.6 경기 고양군수
	1943.6~1945.1 (동대문구장)	宮野寬	1938.7 경기 시흥군수 1940.2 경성부 학무과장 1943.6 동대문구장 겸임
	1943.6~1944.10 (중구장)	笠井一男	1942.4 조선총독부 이사관(사정국) 1943.6 경성부 내무과장 겸 중구장
	1943.6~? (용산구장)	福島二一	1926.4 조선총독부 통역관
	1943.6~? (영등포구장)	福澤重臣	1940.11 황해 벽성군수
	1943.6~? (성동구장)	市木孝嗣	1941.5 경성부 사회주사(사회과장)
	1943.6~1945.8 (종로구장)	黑木儀壽圭	1939 황해도 안악군수 1942 전북 전주부윤
	1944.11~1945.8	徐世甲 (瑞原世甲)	1940.9 경기도 평택군수 1943.8 경성부 동대문구 부구장 1944.11 경성부 이사관

출처: <표 2>와 동일.

26) 서현주, 앞의 논문, 140~141쪽.

27) 원영환, 앞의 논문, 110~111쪽.

먼저, 1943년 6월에 설치된 7개 구 중 조선인 최탁(崔卓=三和卓)이 구장이었던 서대문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구에는 모두 일본인이 구장으로 임명되었다. 1944년 11월에 추가로 설치된 마포구의 구장은 미와(三和)였다고 하는데,[28] 마포구가 서대문구의 일부 구역을 통합하여 신설되었음을 생각할 때,[29] 서대문구장 최탁이 마포구장을 겸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의 주요 이력을 보면, 부윤·군수 등을 거친 거물급이 적지 않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지방행정을 쇄신·강화하겠다는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国昭) 총독의 의향에 따라, 1943년에는 도지사와 도참여관을 역임한 5명의 '거물 면장'을 시범 임명했고, '읍면장의 심부름꾼'으로 간주되던 구장에도 마을의 지도자로서 봉공할 만한 거물급 인사를 앉히라는 지시를 내렸다.[30] 경성부 구장들의 면면은 정확히 이러한 지침에 부합한다.

그중에서도 미야노(宮野寛)와 가사이(笠井一男)는 현직 경성부 학무과장, 내무과장이면서 구장을 겸임한 것이 특이하다. 이들이야말로 경성부가 기존의 관리를 재배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인지 동대문구와 중구에서는 부구장의 존재가 확인된다. 먼저 미야노가 구장으로 있던 동대문구에는 1943년 8월에 조선인 서세갑(徐世甲)이 부구장으로 임명되었다.[31] 서세갑 역시 부구장이라고는 해도 평택군수로 재직하다가 "관계를 용퇴하고 경성부 모 요직에 전임"한 거물급 인물로,[32] 실질적으로 구장 업무를 수행할 만했다. 그는 이후 1944년 11월에 부이사관이 되었는데, 다소 시차가 있긴 하지만 미야노가 1945년 1월에 부이사관에서 물러남을 볼 때 미야노의 뒤를 이어

28) ≪매일신보≫ 1944년 11월 3일. 원영환, 위의 논문에서는 구가 신설되었을 당시 구장은 모두 일본인이었다고 했는데, 창씨개명한 최탁을 일본인으로 착각한 듯하다.

29) ≪매일신보≫ 1944년 10월 7일.

30) 한긍희, 〈일제하 전시체제기 지방행정 강화 정책 –읍면행정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8, 2000, 236~237쪽.

31) ≪매일신보≫ 1943년 8월 28일.

32) ≪매일신보≫ 1943년 8월 18일.

동대문구장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33] 다음으로 가사이가 구장으로 있던 중구에는 1943년 6월 처음부터 유가와(湯川淸一) 부구장이 함께 임명되었다.[34] 1944년 8월 말에는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던 중구 부구장 자리에 전북 이리읍장이었던 후루카와(古川貞吉)가 임명되었다.[35] 가사이는 맹장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1944년 10월 2일에 사망했는데,[36]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구장을 다시 임명했을 수도 있다.

그밖에 박종훈(朴種勳)이 1936년 8월에 부이사관이면서 서대문구장이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1943년 구제 실시 이전의 구장은 마을에 거주하며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읍면리원(吏員)이었으므로,[37] 이 이력이 사실이더라도 〈표 3〉의 구장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소속을 알 수 없는 1945년 4월의 부이사관 김교홍(金敎鴻=金原明男)은 해방 이후 여러 구청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보아 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재직 기간이 짧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언급만 해둔다.

(2) 사무관

사무관은 1936년 10월, 경성부에 3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각 부의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경성부에는 사무관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일에는 부이사관(내무과장) 모리(森武彦)가 총무부장 사무취급, 부이사관(사회과장) 김영상(金永祥)이 재무부장 사무취급, 부기사(토목과장) 마치다(町田久壽男)가 공영부장 심득에 각각 임명되었다.[38] 또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에 따르면, 공영부장은 사무관 또는 기사로 임명할 수 있었다. 실제로 〈표 4〉와 같이 총무부장과

33) 김성환도 1945년 10월 중구청장에 임명된 서세갑을 '전 동대문구장'으로 기록했다(김성환, 앞의 논문, 109쪽).

34) ≪매일신보≫ 1943년 6월 16일.

35) ≪매일신보≫ 1944년 8월 30일.

36) ≪매일신보≫ 1944년 10월 3일.

37) 한긍희, 앞의 논문, 225쪽.

38) ≪매일신보≫ 1936년 9월 29일.

재무부장, 재무부가 폐지된 1943년 이후에는 총무부장과 민생부장만 사무관으로 임명되었고 공영부장은 기사로 임명되었다.

<표 4> 1936~1945년 경성부 사무관과 그 이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사무관 (총무부장)	1936.10~ 1939.2	松島清	1929.11 인천부윤 1934.11 충북 도사무관(내무부장) 1939.2 조선총독부 사무관(외무과)
	1939.2~ 1941.5	山田繁吉	1935 山形縣 서무과장 1941.5 평양부윤
	1941.5~ 1941.12	杉山茂一	1938.4 청진부윤 1939.6 대구부윤
	1941.12~ 1944.8	千田專平	1941.1 충북 도사무관(내무부장) 1944.8 전남 도사무관(내무부장)
	1944.8~ 1945.8	馬場政義	1941 신의주 세관 세관장 1942.12 충청남도 도사무관(내무부)
부사무관 (재무부장)	1937.5~ 1941.1	金永祥 (金光浩助)	1936.5 경성부 이사관(사회과장) 1936.9 경성부 재무부장 사무취급 1941.1 전북 참여관 겸 도사무관(산업부장)
	1941.1~ 1943.12	崔秉源 (星村宇德)	1934.1 경북 성주군수 1940.2 경남 도이사관(산업부 상공제2과장)
부사무관 (민생부장)	1943.12~ 1945.8	金聖煥 (金平聖煥)	1943.10 함흥세무감독국 사무관 (간세부장 겸 서무부장, 직세부장 겸무) 1945.9 경성부 총무부장 1946.4~1946.6 경성부윤 대리

출처: <표 2>와 동일.

사무관에서 흥미로운 것은 재무부장과 민생부장이 모두 조선인이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민생부장 김성환의 언급대로, 사회부장과 재무부장은 조선인에게 할당되었던 것이다.[39] 당시 총무부장과 공영부장에는 1936년 10월 중에 즉시 외부에서 마쓰시마(松島清)와 조고(長郷衛二)를 데려와 새로 임명했으나, 재무부장에는 1937년 5월에 김영상이 사무관으로서 정식 임명된 것도 흥미롭다.

39) 김성환, 앞의 논문, 90~91쪽, 93~94쪽.

또한 1943년 12월에 재무부가 폐지되고 재무부장 최병원(崔秉源)이 충남 재무부장으로 전출되는 한편, 신설된 민생부장에는 다시 조선인인 김성환이 임명되었다. 그렇다면 경성부는 고등관을 임명해야 하는 중앙기구에 조선인 몫을 하나만 준비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김성환은 이때 후루이치 부윤의 호의로 사회과장에도 조선인(김윤세, 경성부 주사)이 임명되어 유일한 조선인 과장이 되었다고 공치사를 했는데, 조선총독부에서도 '내선일체'의 정신 하에 1941년 11월부터 종래 1명뿐이었던 조선인 과장을 하나 더 늘려서 정용신(=青山信介)을 척무과장에 임명했음을 생각하면,[40] 조선총독부 중앙의 방침에 따른 인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기사

<표 5> 1933~1945년 경성부 기사와 그 이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기사 (토목과장)	1933.4~1936.10	町田久壽男	1928 조선총독부 기사(내무국) 1936.9 경성부 공영부장 심득 1936.10 조선총독부 기사 겸 도기사
부기사 (공영부장)	1936.10~1940.6	長郷衛二	1921 내무성 기사(新潟縣 토목출장소) 1926.7 조선총독부 기사(내무국) 1931.5 함남 도기사 겸임(함남치수사무소장)
	1940.7~1945.4	伴格夫	1928 조선총독부 기사(내무국 토목과) 1935.9 경남 도기사(내무부 토목과장)
	1945.3.30~?	三浦庄之助	1927.4 조선토목기사 1941.11 경기 도기사(내무부 토목과장)
부기사	1940~1940.11.30 (공영부)	桃田喜一	1936~1938 경성부 부수도기사(수도과) 1939 경성부 부토목기사(도시계획과)
	1940~1941 (공영부)	伊藤文雄	1937~1939 경성부 부토목기사 (공영부, 토목과) 1939 · 1941경성부 토목과장

40) ≪매일신보≫ 1941년 11월 20일.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기사		土屋積	1934~1936 경성부 부건축기사(내무과) 1936~1939 경성부 부건축기사(영선과장)
	1940 (총무부) 1941 (총무과)	荻野正俊	1929.11~1939 경성부 부위생기사 (위생과장)

출처: <표 1>과 동일.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부)기사들 중 중요한 인물은 역시 공영부장이다. 그런데 1936년 10월 25일에 경성에 도착한[41] 신임 공영부장 나가사토(長郷衛二)는 1937년 5월에 구미 시찰을 떠났다. 이는 '대경성'의 많은 공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치수 시설을 시찰하기 위한 출장이었다.[42] 그는 1938년 1월에 경성에 돌아와서, 토목사업, 도시 문제, 도시 빈민 문제, 위성도시와 지방계획 등에 대한 시찰 감상을 밝혔다.[43] 1940년 6월에 관직에서 물러난 나가사토를 이어 반(伴格夫)이 공영부장이 되었고, 그가 1945년 3월 신경쇠약을 핑계로 사표를 제출하자 미우라(三浦庄之助)가 후임이 되었다.[44]

그 외에도 부기사는 주로 공영부에 근무하는데, 1933년 10월부터 1942년 2월까지 위생과장으로 재직하는 오기노(荻野正俊)가 총무부·총무과 소속의 부기사로 등장하는 것이 특이하다.

(4) 토목기사, 위생기사, 수도기사, 건축기사, 산업기사

경성부에 재근하는 각종 기사 중 부토목기사가 10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1937년에 시가지 계획 사업이 시작되면서 토목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상황을 반영한다. 소속이 확인되는 인물들은 모두 1936년 10월에 3부제가 시행되기 이

41) ≪매일신보≫ 1936년 10월 26일.
42) ≪매일신보≫ 1937년 4월 1일, 5월 2일.
43) ≪매일신보≫ 1938년 1월 20일.
44) 김성환, 앞의 논문, 95쪽.

전에는 토목과, 이후에는 공영부(토목과, 시가지계획과, 도시계획과) 소속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부위생기사 5명으로, 기본적으로 (총무부) 위생과에 소속되어 있다. 이 중 오랜 기간 위생과장을 지낸 오기노(荻野正俊)는 도쿄제대에서 이질[赤痢]에 관한 박사논문을 썼고, 순화병원장 시이바(椎葉芳彌)는 전염병 권위자로 유명했으며, 구와바라(桑原直德)도 경성제대에서 기생충에 관한 박사논문을 썼다. 이를 통해 부위생기사는 주로 전염병, 기생충 등 도시민에게 확산되기 쉬운 질병에 대처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 1933~1945년 경성부 각종 기사와 그 이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토목기사	1931.7~1934.6	樋口正名	1934.6 경성부 토목공사계장
	1934.10~1938.8 (토목과, 공영부)	小野寺啓治	1934.9 경성부 토목과 공사계장 1936.9 경성부 공영부 토목과 공사계장
	1935~1939.3 (토목과, 공영부, 도시계획과)	梶山淺次郎	1936.9 경성부 공영부 토목과 도시계획계장 1938.4 경성부 공영부 시가지계획과장
	1937~1939 (토목과, 공영부)	伊藤文雄	1939 · 1941 경성부 토목과장
	1937~1939 (토목과)	丹野三郎	1935~1936 경성부 부토목기수
	1937~1940 (토목과, 도시계획과)	山下鐵郎	
	1937~1941	矢野眞鄕	1934.1 경상남도 토목기사(내무부 토목과), 조선토목기사
	1938.4~1939 (도시계획과)	木島榮	1937~1938.3 경성부 부토목기수
	1939 (토목과)	佐藤殖	1932.4 조선총독부 기사(회계과 촉탁) 1936~1938 경성부 사회과, 토목과 공원기수
	1939 (도시계획과)	桃田喜一	경성부 도시계획과장(1939)
부위생기사	1929.11~1939 (사회과, 위생과)	荻野正俊	1933.10~1942.2 경성부 (총무부) 위생과장
	1938~1944 (위생과, 학무과, 순화병원)	渡部主稅	1942.2 경성부 위생과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부위생기사	1931~1939 (위생과)	椎葉芳彌	1931.2 경성제국대학 교수 1931.2~1939 순화병원장 1940 경성부 총무부 촉탁 의장
	1936~1937 (위생과)	桑原直德	1933.5 경성제국대학 의학박사 1937 순화병원 겸직
	1936 (위생과)	古賀國太郎	1933.10 경성부 소제감독장 겸 위생과 주사 1936.9 경성부 총무부 위생과 청소계장
부수도기사	1932.6~1939.12 (수도과)	木代嘉樹	1930 東京 下戶塚町 수도과장 1932.6~1934.9 경성부 부수도기사(수도과장) 1936.9 경성부 공영부 수도과 공사계장
	1934~1939 (수도과, 수원지사무소)	谷口淸三郎	1933 경기도 경성부 촉탁
	1936~1938 (수도과)	桃田喜一	
	1937~1939 (수도과)	村田英一	1926 경성부 수도기수
	1939 (수도과)	廣井治郎吉	
부건축기사	1933~1936.9 (내무과)	萩原孝一	1922.5 조선총독부 기사(총독관방 토목부) 1933 경성부 영선계장
	1934.6~1939 (내무과, 영선과)	土屋積	1936.9 공영부 영선과장
	1937~1939.12 (영선과)	待山正利	1934~1936 경성부 부건축기수(내무과)
부산업기사	1937~1939 (가축시장, 시국총동원과)	松崎又五郎	1925 경기도 경성부 축산기수

출처: <표 2>와 동일.

부수도기사도 5명으로, (공영부) 수도과 소속이다. ≪조선공로자명감≫에서는 이 중 도쿄제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도쿄에서 근무하다 경성부 수도과장으로 부임해온 기요(木代嘉樹)에 대하여 "경쟁자가 거의 없을 만큼의 명수도과 기사"로 명성이 자자한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부민관을 설계한 쓰치야(土屋積)를 비롯한 3명의 부건축기사와 1명의 부산업기사가 있었다.

(5) 기타

일제는 전쟁 말기 생산 확충과 물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를 위해 1945년 2월에는 1944년 칙령 제512호를 전면 개정하여 칙령 제63호 〈대동아전쟁에 즈음하여 각청 직원을 철광, 석탄, 경금속, 선박, 항공기 등 중요 물자의 생산 확충, 주요 식량의 확보, 방위의 철저 강화, 기타 총합 국력의 확충 운용상 긴요한 업무에 임시로 종사하게 하는 건〉을 공포하였다.[45] 〈표 7〉은 이 칙령에 따라 1945년 4월 이후 경성부에서 근무하게 된 조선총독부 고등관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1945년 칙령 제63호에 의한 경성부 재근 고등관과 그 이력

직위	재근 연도	이름	주요 이력
사무관	1945.4.18~? (부윤관방 조사실 주간)	張壽吉	1943.12 조선총독부 사무관(재무국 이재과) 1945.9 경성부 토목부장
	1945.4.18~? (방위부장)	中野休文	1943.12 조선총독부 사무관(농상국) 1945.8 조선총독부 민정관, 경성부 방위부장
이사관	1945.4.18~?	戶之內三郎	1942.1 조선총독부 이사관(학무국)
편수관	1945.4.18~?	森田梧郎	1937.8 조선총독부 편수관(학무국 편집과)
서기관	1945.4.17~1945.5.2	辻桂五	1942.11 조선총독부 서기관(재무국 이재과장) 1945.5.2 경성부 부부윤
	1945.4.27~1945.8.3 (방위부장)	渡邊敏郎	1943.12 조선총독부 서기관(총독관방 문서과) 1945.4 경성부 방위부장 사무취급 1945.5 부사무관 겸임. 경성부 방위부장

출처: <표 2>와 동일.

이들의 경성부에서의 직책 중 '방위부장'이라는 명칭이 눈에 띈다. ≪매일신보≫에 따르면, 경성부는 1941년 7월에 공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위부(防衛部)를 특설하기로 하고 부서를 배정하고 있었다. 방위부에는 총무부, 공무부, 구호부의 3부를 두어, 공무부에서 도로·수도·건물의 수리, 구호부에서 학생들의

45) ≪(일본)관보≫ 1945년 2월 14일.

피난 구호 등을 담당하게 하고, 경성부청에는 본부(本部)를, 각 출장소에는 지부를 둘 예정이었다.[46] 이후 1943~1944년에 방위병무과장,[47] 방위부장,[48] 방위과장[49] 등의 직책명으로 확인되는 후지와라(藤原伊三)는 육군대좌로,[50] 관료는 아니었다. 그러나 1945년 4월에는 칙령 제63호에 의거하여 조선총독부 서기관 와타나베(渡邊敏郎)가 방위부장 사무취급이 되어 경성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5월에 부사무관을 겸임하면서 방위부장에 취임했다. 동년 7월부터는 조선총독부 서기관을 그만두고 부사무관을 전임했으며, 8월에는 역시 칙령 제63호로 경성부에 근무하던 나카노(中野休文)가 뒤를 이어 경성부 방위부장이 되었다. 경성부의 방위 업무가 상설화되는 한편, 조선총독부가 경성부 방위에 힘썼음을 엿볼 수 있다.

2. 1933~1945년 경성부윤의 주요 정책

1914년 부제가 실시된 이래 부윤은 거주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국가의 관리로서, 스스로 부의 행정 방침을 결정 집행할 직책을 가진다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임명제 관료였으므로 자기만의 공약이 따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협조하면서 경성부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입장에 놓이기 쉬웠다. 게다가 1933~1945년 사이의 부윤은 짧게는 한 달 보름(生田清三郎), 길어야 3년(古市進) 간 재직했을 뿐이었으므로, 어떠한 정책을 추진했더라도 임기 내에 결과를 보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46) ≪매일신보≫ 1941년 7월 15일.
47) ≪매일신보≫ 1943년 4월 11일.
48) ≪매일신보≫ 1943년 7월 10일.
49) ≪매일신보≫ 1944년 6월 6일.
50) ≪매일신보≫ 1944년 4월 13일.

먼저 취임 소감이나 첫 훈시 등 '제일성'을 통해 각 부윤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확인한 후, 주요 정책들이 1933~1945년 시기를 통틀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주제별로 종합 서술하기로 한다.

1) 부윤 취임 제일성

1933년 경성부윤에 취임한 관료들은 대개 경성이 조선의 수도라 할 만한 '대경성'임을 의식하면서, 상하 관청의 협력과 부민의 원조를 받아 '총친화협력' 속에 부윤의 직무를 다하겠다는 다소 상투적인 말로 인사를 건넸다. 먼저, 경성부윤이 칙임관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부임한 11대 다테 시오 부윤은 1933년 12월 13일에 경성에 도착해서, 뜻밖에 "반도 문화의 중추지인 수도 대경성"의 행정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화(和)'를 주의로 40만의 부윤으로서 부민 복리를 위하야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정(府政)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면 먼저 '인화(人和)'를 얻어야 하므로, 안으로는 부청 전 직원의 일치협력, 밖으로는 40만 부민의 총친화 애부(愛府) 관념에 의지함으로써 대경성의 진전에 크게 공헌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51] 또한 1936년 4월 1일자로 경성부의 구역이 확장된 직후인 5월에 경북도지사로 발령받았을 때도 대경성이 실현된 초기에 미진한 점들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유감이라면서, '명랑한 경성'을 완성하지 못한 대신 '경북 명랑주의'로 전환하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성부의 구역이 확장된 이후에 부임한 부윤들은 취임하면서 '대경성'에 걸맞는 행정 조직과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12대 간쇼 요시쿠니 부윤은 평양세무감독국장으로 근무하다 1936년 5월 21일에 경성부윤에 임명되었고, 실제 착임한 것은 6월 2일이었다. 간쇼는 다음날인 3일에 "대경성의 진전에 공헌"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성부의 구역이 확장된 직후

51) ≪매일신보≫ 1933년 12월 15일.

에 처음으로 임명된 부윤이었으므로, 확대된 경성부의 장래 행정에 유념하면서 그 진전과 확충을 도모하고 경성이 조선에서 도시의 선구자이자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안으로는 부청 직원의 일치협력과 부민의 애부(愛府) 관념에 입각한 총친화, 총노력을 도모하여 이들의 협력 및 원조를 받고, 밖으로는 상사의 지휘 하에 주어진 직무를 성심껏 수행하겠다는 상투적인 인사말도 빼놓지 않았다.[52] 다만 간쇼는 1년 1개월 정도밖에 재직하지 않았는데, 1937년 7월부터 경기도지사로 다시 3년 가까이 일함으로써 1933~1945년 사이의 경기도지사, 경성부윤 중에서는 가장 오래 경성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 되었다. 지사로 전출됐을 때도 겨우 시작된 시가지계획 등 많은 대사업을 남기고 떠나는 것은 섭섭하지만, "경성부와는 가장 관련이 깊은 경기도이니까 이때까지와 동일한 입장으로 측면적으로 미력을 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53] 또한 7월 9일에 처음으로 경기도지사로서 도청에 등청하면서,[54] 농산어촌의 진흥, 경기도의 일대 생산도시화, 경인일원화라는 3대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중 첫째는 세무감독국, 부청 등 "색다른 관청"에 있다가 부임한 사람으로서 도의 특성에 유의하겠다는 뜻이었고, 둘째는 경기도가 대경성을 아래에 둔 조선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중심지인 만큼 생산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뜻이며, 셋째는 대경성과 인천의 합동발전을 도모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선총독부가 주창한 '만선일여(滿鮮一如)'를 구현하는 데 유감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55]

간쇼의 후임으로 경성부윤에 임명된 13대 사에키 아키라는 전임 부윤을 따라 "대경성의 면목을 일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56] 처음으로 등청한 1937년 7월 9일에 전 직원들을 모아 놓고 훈시하면서는, 간쇼의 취임

52) ≪매일신보≫ 1936년 6월 5일.
53) ≪매일신보≫ 1937년 7월 5일.
54) ≪매일신보≫ 1937년 7월 9일.
55) ≪매일신보≫ 1937년 7월 10일.
56) ≪매일신보≫ 1937년 7월 5일.

사와 거의 똑같이 상사의 지휘 하에 부청 직원의 협력과 부민의 원조를 받아 성심껏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대경성의 도시적 설비 완성을 도모하여 조선 도시의 선구자이자 모범이 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전의 계획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목된다. 경성부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다행히 전임자가 "대경성의 제일보에 당하야 제반 항구적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그 "호적(好適)한 실행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다. 게다가 사에키는 20년 관직 생활 중 16년을 경찰 방면에 종사하고 행정 방면에서는 4년 정도만 근무한 상황이었으므로, 직원들에게도 행정을 잘 알지 못하는 무능한 부윤이 유능한 부윤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했다.[57] 사에키가 계승자를 자처한 이유는 간쇼가 경기도지사가 되어 있음을 의식해서였겠지만, 이러한 자신의 이력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1938년 3월에는 세무, 토목 등 이익과 깊이 관련된 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경성부 수뇌부에서는 특이하게도 "세간의 의혹을 사기 쉬운 자리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배치하고 그 외의 금전과 상관할래야 상관할 수 없는 자리에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을 복무"시킨다는 막무가내식의 새로운 인사행정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58] 그리고 결국 포부를 다 실현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앞으로는 관계 생활을 청산하고 한 개의 평민으로서 새로운 길"을 밟겠다면서 일신상의 사정을 들어 사표를 제출했다.[59]

이후의 부윤들도 기본적으로 '대경성'에 관한 사업들은 계승하였지만, 사에키 부윤 재임 중에 중일전쟁(1937.7)이 장기화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 대 부윤부터는 대개 시국 상황에 대해 언급하거나 일선 기관의 수장으로서 전시총동원 사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운을 띄웠다. 1938년 11월 9일에 중국 북경에서 취임의 명을 받은 14대 다카하시 사토시 부윤은,[60] 경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57) ≪매일신보≫ 1937년 7월 10일.
58) ≪매일신보≫ 1938년 3월 18일.
59) ≪매일신보≫ 1938년 11월 9일.
60) ≪매일신보≫ 1938년 11월 9일.

제일 먼저 시국에 대한 성명으로 경성부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다음 날인 10일이 국민정신작흥 주간 4일째로서, 조서환발기념일인 동시에 시국재인식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다카하시는 중국 무한(武漢) 지역의 함락을 축하하는 한편, 이것으로 끝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동양 평화를 건립해야 할 갱생 지나(支那)를 건설"한다는 최대 목적을 위해 거국일치하여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61] 그리고 1938년 11월 18일, 경성에 온 다카하시는 "경성의 부정에 대하야는 전연 백지"라면서도, 6년 만에 돌아온 경성이 어쩐지 고향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62]

다음 15대 야노 도로 부윤은 1941년 2월 2일에 가족과 함께 경성에 도착했고,[63] 다음 날 부청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한 첫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첫 인상은 주택난과 교통난이었다고 말했다. 그 사이 '백만 부민'을 운위할 정도로 인구가 증가한 만큼 부영 분양주택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계 당국도 자재를 알선하는 데 힘쓰고 있으므로, 먼저 부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아울러 공영이 용인되지 않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 회사와 협의하며 교통난의 전면적 완화를 도모할 생각이었다.[64] 하지만 1942년 5월 15일에 당해년도 경성부 저축목표액 2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저축조합 정비 및 저축 강화에 협조를 요청하는 통첩을 관계 방면에 발한 것을 끝으로[65] 사퇴했다.

후임 16대 후루이치 스스무 부윤은 1941년 8월에 경기도 내무부장에 취임한 이후, 행정의 수완을 발휘해 300만 경기도민의 총후 전시생활체제 확립, 저축보국 운동 전개, 일본어 보급 운동 강화 등에 힘쓴 '명부장'이라는 평을 받았다. 1942년 5월 22일부로 책임이 더 무거운 경성부윤에 임명되자, "백만 부민의 선

61) ≪매일신보≫ 1938년 11월 10일.
62) ≪매일신보≫ 1938년 11월 19일.
63) ≪매일신보≫ 1941년 2월 1일.
64) ≪매일신보≫ 1941년 2월 4일.
65) ≪매일신보≫ 1942년 5월 19일.

두에 서서 멸사봉공"할 생각이며, 부민들은 전쟁의 최후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말고 일치단결하고 또 황민 황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66] 그야말로 경성부에서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주민 동원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었는데, 후루이치는 이후 1945년 5월 2일까지 사실상 마지막 경성부윤으로서 각종 정책들을 추진했다.

다음 17대 이쿠타 세이자부로, 18대 쓰지 게이고 부윤은 임기가 각각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국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와 경성부의 연계, 즉 경성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 구상과 관련되는 말을 남겼다. 1945년 5월에 관직을 떠난 지 16년 만에 다시 경성부윤으로 복귀하게 된 이쿠타는 자신은 "관리로서 부윤이 된 것이 아니"고 부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의 행정을 담당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당시 관청의 정치가 민간의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 부에 대한 의견이나 바람이 있으면 "부민들끼리"라고 생각하고 기탄없이 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성부와 경기도 사이에도 실제 일하는 데 다소 미묘한 관계가 있는 듯하지만, 자신은 관제(官製)보다는 자치기관인 경성부의 행정이라는 데 중점을 두어 구애받지 않고 일할 것이고 전시 하에서 부민의 최저 생활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부민의 협력을 호소했다.[67] 하지만 1개월 반 만에 다시 경기도지사 전출의 명이 내려오자, 이는 소위 말하는 '영전'이 아니고 "경기도와 경성부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 도와 부의 행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받고서 이 직책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가 됨으로써 비로소 경성부윤의 중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성부민에게도 자기를 경성부윤으로 생각하고 계속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하고, 본인도 적어도 경성부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온힘을 다하겠다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68] 도지사로서도 경성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한반도의 심

66) ≪매일신보≫ 1942년 5월 24일.
67) ≪매일신보≫ 1945년 5월 4일.
68) ≪매일신보≫ 1945년 6월 18일.

장을 잡고 있는 중추라면서, 전쟁을 완수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의용대 결성, 근로동원, 식량 수급에 만전을 다할 생각이었다.[69] 뒤를 이어 1945년 6월에 경성부윤으로 임명된 쓰지의 취임사는 따로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가 이쿠타 밑에서 부부윤으로서 경성부의 행정사무를 도맡았음에 비추어 볼 때, 이쿠타 경기도지사, 쓰지 경성부윤의 공조 하에 경기도와 경성부가 일체가 되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매진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2) 주요 정책

(1) 행정구역 확장 및 시가지 계획 사업[70]

경성부는 1920년대부터 행정구역을 확장하려 했지만 실현의 계기를 얻지 못하다가, 경기도가 1931년 궁민구제토목사업의 일환으로 경성에서 동·서·남쪽으로 향하는 4대 교외 간선도로를 부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경성부 도시계획조사위원회는 1933년 말까지 편입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1934년 9월 초에는 그 심사 결과를 조선총독부에 보고하면서, 이와 함께 편입 대상 지역에 송부할 협의안도 완성하였다. 영등포읍회의 반발은 있었지만, 결국 1936년 4월 1일자로 동서, 동남쪽 방면으로의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이 성사되었다.

경성부는 구역 확장을 마치자마자, 1936년 5월에 기존의 도시계획조사위원회를 개편하여 〈경성부시가지계획안〉을 입안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심부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새로 편입한 신부역(新府域)을 집중 개발하려는 구상이었는데, 철도와 연계되는 영등포 및 마포 일부, 청량리 및 왕십리를 대공업지역 혹은 중소공업 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사업은 가로망 부설, 토지 구획 정리, 지역제 제정 등으로 구성되었고,

69) ≪매일신보≫ 1945년 6월 19일.

70)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 2016 참조.

1937년에 제1기 5개년 사업을 시작하자 동년 11월의 추가 편성 예산이 대개 토목 관계였을 정도로 전체 경성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71] 1938년에는 위생과의 청소계와 더불어 토목과의 도시계획계가 과로 승격되어 시가지계획과가 되었고, 뒤에 다시 도시계획과로 개칭되었다.[72] 실제로 사에키 부윤이 간쇼 부윤 때에 수립한 시가지계획을 이어서 실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일전쟁의 발발로 제1기 사업은 예상치 못한 자금난, 자재난, 인력난 속에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간쇼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중에 시행되었으므로, 경기도와 경성부의 이해 협력 하에 추진되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1938년 10월 12일에 열린 '대경성좌담회'였다. 이는 10~12일에 경성에서 개최된 전국도시문제회의에 참석한 도시 문제 권위자들에게 경성의 장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경성도시계획연구회장 다니 다키마(谷多喜磨, 5대 경성부윤)가 마련한 자리였고, 당시 경성부윤 사에키와 경기도지사 간쇼도 참석했다. 이 좌담회에서 조선군 참모 이하라(井原潤次郎)는 일본 본토의 도시는 너무 인접해 있어서 방위하기도 곤란하지만 조선은 아직 곳곳에 대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도시의 건설은 결국 군대에 물자와 숙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특히 조선의 경성과 인천 일대를 군수도시이자 산업도시로 발전시켜주기를 희망했다. 간쇼 도지사 역시 이하라의 말에 찬동하면서 조선에 중공업 지역을 육성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밀집된 일본의 공장을 조선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조선은 수력발전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토지와 임금도 싸고 시가지계획령의 제정으로 공업지구를 매수하는 것 등도 더욱 편리해졌으므로 일본의 중공업 측이 조선에 진출하기에 좋다고 주장한 것이다.[73] 이러한 구상은 간쇼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하

71) ≪매일신보≫ 1937년 11월 21일.

72) 서현주, 앞의 논문, 135쪽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행정사≫, 1997, 210쪽.

73) ≪매일신보≫ 1938년 10월 14 · 15일.

면서 제시한 3대 정책에 포함되는 사항이기도 했다.

이는 다시 194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전쟁의 필요에서 경기도의 구상을 확대시키며 입안한 〈경인시가지계획〉으로 이어졌다. 1940년 1월의 〈경인시가지계획〉은 부평 지구를 군수공업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고, 1944년 1월에 발표된 소사 지구 사업계획은 소사 지구에 경성과 인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주택지와 도로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방공(防空)에 방점을 둔 고도국방도시계획 속에서, 경성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이 형성되어갔다.

(2) 교통난 및 주택난 해결

경성부의 부역 확대와 인구 증가는 각종 도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1941년에 15대 야노 부윤이 취임하면서 언급한 주택난과 교통난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급증 때문에 생겨났다. 경성부의 인구는 1933~1939년 사이에 연평균 3만~4만여 명, 1940년 한 해 동안에만 15만 여명이 증가했던 것이다. 특히 신편입지역에서 인구의 급증이 더 뚜렷했다.

이 중 교통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1933년 4월에 부영버스를 민영화했기 때문에 경성부로서는 부영버스를 인수한 경성전기와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승차 인원의 급증, 차량과 설비 부족에 더하여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38년 7월부터 가솔린이 군수 물자로 통제됨에 따라 버스의 운행 축소로 교통난이 가중되자, 다카하시 부윤 때인 1939년에 전차버스문제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동년 11월에 이 문제를 부윤에게 일임했고, 위원들이 부회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경성 지역 교통난 완화 방안 요구서를 작성하여 부윤의 명의로 경성전기에 발송했다. 하지만 경성전기의 답변이 현실적이지 못하자, 위원회와 부회에서는 교통사업만이라도 반공영(半公營) 또는 반부영(半府營)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했다. 하지만 실현되지는 못했고, 시행된 대책들은 대개 경성전기에 유리한 조건이었으므로 회사의 이익만 늘려주었다. 이

에 1945년까지도 교통 문제 대책에 관한 논의들만 되풀이되었다.[74]

반면 주택 문제는 전시 생산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보존해야 한다는 전쟁 동원의 필요에서, 조선총독부의 방침으로 해결이 시도되었다. 조선의 심각한 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해 1939년 여름에 조직된 조선총독부 주택대책위원회는 남부 지방 가뭄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40년 2월 29일에 첫 회의를 열어 근본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때 제출된 안건이 ① 주택난을 완화할 방책, ② 경성부 내의 주택난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③ 노동자의 주택에 관한 것이었을 만큼, 전국에서도 경성부의 주택난은 가장 심각했고, 주택대책위원회는 경성부에 5,000호를 시급히 신설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다카하시가 부윤으로 있던 당시의 경성부에서는 이에 따라 각 기업과 관공서에서 직원들을 수용할 주택을 각 2,000호, 1,000호씩, 주요 교통회사에서도 공익적 견지에서 1,000호를 신축하고, 여기에 기존에 계획된 1,000호를 합하여 5,000호를 충당할 방침을 세우는 한편, 토지 투기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지 계획 사업으로 주택 지구를 설정하고 공개 분양을 하는 등 경성부와 부윤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기로 했다.[75]

이 사업은 야노 부윤 때인 1941년에 주택영단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조선총독부는 1941년 1월에 주택영단을 설립해 전 조선에 10~20평형의 "생산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무자 및 중류 이하 봉급생활자를 위한 중소주택" 2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동년 8월에 정식 발족한 조선주택영단은 먼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유휴 주택지를 조사했는데, 전국 80만여 평의 건축 가능지 중 72만여 평이 경성부였다. 경성부는 시가지계획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했지만 주택까지 건축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공터가 많았던 것이다. 실제로도 1942년의 도림정(道林町)을 시작으로, 자재난 등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경성부

74) 최인영 · 김제정, 〈1930-40년대 경성지역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대책〉 ≪서울학연구≫ 50, 2013.

75) ≪매일신보≫ 1940년 3월 1일

에서는 1944년까지 영등포 방면의 번대방정 256호, 도림정 719호, 상도정 493호 등 총 1,468호가 완공되었다.[76]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부민의 복리 증진보다는 전시 생산력 확충을 위한 것이었고, 소개(疏開) 정책이 시행된 1945년 4월 이후에 주택영단이 신축하기로 한 500호는 군대막사격의 주택에 불과하였다.[77]

(3) 전시총동원 사무

1937년 중일전쟁 이후의 전쟁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말 그대로 총동원하는 총력전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구성원 전체의 사상과 일상생활까지 전쟁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고, 지방행정기관 역시 주민을 국가의 의사, 활동에 협력하도록 조직하기 위해 힘썼다. 1938년 4월에는 조선총독부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결성하면서 관제 국민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조선연맹의 하부조직으로는 기존 지방행정기관을 단위로 하는 지방연맹(도, 부, 군도, 읍면연맹 등)과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역연맹이 조직되었다. 지방연맹의 장은 각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겸임했으므로,[78] 경성부윤도 당연 경성부연맹의 장이 되었다. 1938년 11월에 취임한 다카하시 부윤 이래 부윤들이 취임하면서부터 일치단결, 멸사봉공, 황도황민 등을 거듭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1938년에는 경성부에 시국총동원과(총무계·경제계·군사계)를 신설하는 동시에, 내무과에도 방공계를 신설하여 전시 총동원 사무에 대처했고,[79] 1940년 10월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지방행정기관과 총력운동의 하부 조직이 표리일체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10호를 단위로 편제하는 애국반의 활동도 본격화되어서, 1940년대 이후 부의 행정은 부민의 정신과 일상생

76) 경성일보사, ≪조선연감≫, 1945, 233쪽.

77) 염복규, 앞의 책, 283~299쪽.

78)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88~92쪽.

79) 서현주, 앞의 논문, 135쪽.

활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해나갔다.[80]

이 중 경성부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식량 문제였다. 1939년의 큰 가뭄으로 조선의 미곡 수확고는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석이나 감소하여, 이 해를 기점으로 조선의 미곡 상황은 과잉에서 부족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절미(節米)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다카하시 부윤은 1939년 9월에 '수도 경성'이 모범을 보여서 "이번 추석은 자숙자제하여 떡 해먹는 것을 솔선하여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81] 또한 1940년 1월에는 식량배급조합을 결성했고, 경기도와 함께 경성부에서 전표제를 시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조선총독부 농림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 이유는 경성부와 같은 대소비지이면서 빈부·문화의 격차가 현격한 곳에서는 1인당 소비량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민들도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급 방법을 급격히 바꾸면 과도기적인 혼란을 초래해 더 심각한 식량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이었다.[82] 이로 인해 경성부가 1940년 5월에 시행한 방법은 매출표에 의한 식량 배급이었다. 즉, 각 가정에서 쌀 보유량, 소비량 또는 미곡상과의 거래 관계를 기록하게 하고, 그를 바탕으로 쌀을 꼭 구매해야 하는 사람에게만 매출표를 발행해줌으로써 미곡의 집중을 막는 통제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생필품 배급 통제는 미곡에서부터 시작되어 1940년 말에는 설탕, 면포 등에 부분적으로 실시되었고, 1941년에는 고무신, 타올, 육류, 세탁비누, 연료, 고추, 유류 등, 1942년에는 기타 생필품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자 '부민 생활 안정, 총력운동 강화, 방공방호의 완벽' 등 3대 목표를 주안점으로 삼았던 경성부는 1942년 10월에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 조정을 담당할 경제과와, 방공방호 또는 징병제 실시에 대비해 병사 관계를 관할할 방위병무과의 두 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후루이치 부윤은 이에 대해 시세의 요구에

80) 김영희,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03, 263~272쪽.

81) ≪매일신보≫ 1939년 9월 25일.

82)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연표≫(하), 2006, 113쪽 ; ≪매일신보≫ 1940년 4월 10일.

절대 부응한 부정 쇄신이라고 설명했다. 1943년 6월 구제 시행 이후에는 생필품 배급 사무를 구로 이관했으며, 총력운동의 말단조직인 애국반이 배급을 전담하면서 '자치통제'를 빌미로 한 전단도 적지 않게 벌어졌다.[83]

(4) 소개 정책

1945년 이후 연합군 B29 폭격기의 일본 본토 폭격이 본격화되자, 조선총독부도 연합군의 한반도 상륙과 소이탄 공습에 대비해 도시 소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이탄으로 시가지 전체가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밀집 지역의 건물을 헐어 광장을 만들고 또 소방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성, 평양, 대구 등 주요 도시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려는 정책이었다.[84] 3월 30일에 이러한 방침이 결정되자 경기도에서는 소개 실행본부를 설치하고 경성부에서는 소개 사업소를 설치하여, 인구의 자발적 소개와 건물의 강제적 소개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후루이치 부윤은 소개는 피난이 아니라 도시 방위이므로, 방공 종사자만 남고 나머지는 "시골에 가서 결전 식량 증산에 힘써야" 한다면서 농경지 등을 알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85] 5월에 취임한 이쿠타 부윤 밑에서 실무를 담당한 쓰지 부부윤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6월 1일에는 경기도와 경성부의 소개 협력회가 소개촉진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미 상당수의 경성부민이 소개되어 간 강원도를 시찰하고 돌아온 쓰지는 소개민들에게 "강원도민으로서 증산과 노무 동원에 협력할 것"을 권장한 것이다.[86] 아울러 건물을 소개해 공지가 된 집터는 장래 도로를 건설할 곳 이외에는 가급적 이웃집에서 개인 간의 매매 형태로 구매할 것을 장려했는데,[87] 이 역시 원래의 주민이 돌아오지 않고 소개지에

83) ≪매일신보≫ 1942년 9월 6일 ; 허영란,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통제 연구〉 ≪국사관논총≫ 88, 2000.

84) 김인호, 〈1945년 경성부 지역 소개정책 연구〉 ≪향토서울≫ 59, 1999.

85) ≪매일신보≫ 1945년 4월 4일.

86) ≪매일신보≫ 1945년 6월 3일.

87) ≪매일신보≫ 1945년 6월 16일.

정착할 것을 전제로 하는 방책이었다.

4. 맺음말 – 해방 이후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이후 조선에 진주한 미군정은 부윤 쓰지 게이고를 비롯한 경성부 일본인 직원을 모두 파면시켰다. 대신 킬러 소좌가 부윤의 역할을 맡으면서 기획경리부장 김창영(金昌永), 총무부장 김성환, 민생부장 김윤세, 토목부장 장수길 등 경성부에 근무하던 기존 조선인 관료들을 중심으로 임시 부장들을 임명하였다.[88] 그 사이 '노련한 수완'과 '정치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경기도지사 이쿠타 세이자부로는 경기도의 일본인 과장들과 주요 공문서를 소각하고 막대한 공금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나눠가진 것이 발각되어 10월에 경찰에 체포되었고,[89] 재조일본인 귀환 지원 등을 원조하기 위해 결성된 경성일본인세화회에서 주로 활동한 것은 퇴관했던 후루이치 스스무였다. 그는 1945년 8월 20일에 결성된 '경성내지인세화회'의 사업부장에 임명되었다가 동년 11월에는 사업부에서 원호부가 독립함에 따라 원호부장이 되었다. 이어 1946년 4월에 회장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가 일본으로 귀환하자 회장이 되어서 업무를 지속하다가, 자신도 동년 12월에 일본으로 돌아갔다.[90] 후루이치는 1947년에 조선사업자회, 구우구락부(舊友俱樂部), 조선인양동포세화회를 합해 설립된 동화협회에도 경기도지사였던 단게 이쿠타로(丹下郁太郎)와 함께 이사에 취임했

88) ≪매일신보≫ 1945년 9월 16일 ; 김성환, 앞의 논문, 109쪽. 신문에서는 민생부장을 '이윤세'로 보도했다. 김성환의 회고에 따르면, 김창영이 부부윤, 김윤세가 후생부장, 장수길이 공영부장이었다.

89) ≪자유신문≫ 1945년 10월 7일.

90)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 논형, 2013, 115쪽, 151쪽 ; 이연식, 〈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9, ???쪽.

고,[91] 1952년에 한일회담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계기로 동화협회가 중앙일한협회로 개칭되자, 여기에도 역시 경성부윤이었던 다테 시오와 함께 이사로 참여했다. 그리고 같은 1952년에 조선 통치 자료의 수집·편찬, 통치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우방협회가 설립되었을 때는 경성부윤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감사로서 간부진에 포함되었다.[92] 한국전쟁으로 부산이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 수도였을 당시 후루이치가 부산에 불쑥 상륙하여 결국 1952년 9월에 국무총리 장택상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는 일대 정치 소동을 일으킨 것도[93] 후루이치의 이 같은 일본 내 활동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조선인 고등관 중에서는 해방 이후에도 관직 생활을 계속한 사람이 적지 않다. 미군정이 일본인 관료를 축출하고 조직을 재편하던 초기에 당시 구장이었던 최탁(종로구), 서세갑(중구)은 그대로 경성부 구청장에 임명되었고,[94] 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김교홍도 경성부의 구청장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후의 행적에서 서울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은 김성환과 김교홍인데, 민생부장이었던 김성환은 해방 후 총무부장, 경성부윤 대리 등을 역임하면서 해방 전후 경성부의 재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회고로 남겼고, 김교홍은 서울시 공익사업국장, 공영국장, 여러 구청장을 역임하다 1956년에 성북구청장에서 운수사업청장으로 발령되었다.[95]

다만 조선인 고등관 중 상당수는 '친일파'라는 오명을 썼다. 최탁은 '악질 경찰'로 유명해서 1949년 반민특위에도 체포되었는데, "서대문구장으로서는 징용, 징병에 결사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정평"이 있는데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법에 따라 준행했을 뿐 "특별히 필사적으로 한 일은 없"다고 변명하였

91) 노기영, 〈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 2006, 147쪽.

92) 이형식, 〈패전 후 귀환한 조선총독부관료들의 식민지 지배 인식과 그 영향〉 ≪한국사연구≫ 153, 2011, 253~254쪽.

93) 김성환, 앞의 논문, 92쪽 ; ≪경향신문≫ 1952년 10월 1일

94) 김성환, 위의 논문, 109쪽.

95) ≪동아일보≫ 1956년 9월 22일.

다.[96] 하지만 2005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1933년 이후의 경성부 고등관 중 사회과장 권중식, 김영상, 이원보, 구장 최탁 4인을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였다. 권중식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현저히 협력하여 1938년에 훈5등 서보장을 받고 1942년에는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으며, 김영상 역시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로 재직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훈6등 서보장을 두 차례나 수여받았던 것이다. 이원보도 조선총독부 관료, 중추원 참의, 외곽단체의 장 등으로서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하고 전시 동원을 선동함으로써, 1928년의 훈6등 서보장을 시작으로 1940년에는 훈4등 욱일소수장까지 수여받았고, 1942년에는 귀족의 예우에 준하는 종4위의 서위까지 받았다. 최탁도 물론 조선총독부 경시, 군수, 봉천 주재 일본총영사관 부영사로 재직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훈6등 서보장, 훈6등 단광욱일장 등을 받은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97] 경성부에서의 관직 경력이 직접적인 결정 근거가 된 사람은 없지만, 일제강점기에 유일하게 조선인에게 허락된 사회과장이나 '거물 구장'에 임명되기까지의 경력들 혹은 그 이후의 활동들은 '친일'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

96) ≪동아일보≫ 1949년 8월 6일 ; 최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반민특위 조사자료).

9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Ⅳ-1, 2009, 608~618쪽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Ⅳ-3, 2009, 427~440쪽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Ⅳ-13, 2009, 642~677쪽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Ⅳ-18, 2009, 493~507쪽.

제2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제1장

일제하 경성부(협의)회의 위상 변화

김제정(경상대 사학과 교수)

1.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2. 1920년대 선거에 의한 경성부협의회 조직
3. 1930년대 의결기관 경성부회로의 변화
4. 전시체제기 경성부회의 '추천선거제'

1.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경성부협의회(京城府協議會)는 1914년에 설치, 운영되었다. 부협의회는 1914년 거류민단(居留民團)을 해체당한 일본인들의 요구에 의해 부윤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것이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거류민단 해체와 그 이후 민단이 내포하던 자치적 권리를 일부라도 포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부협의회의 설립을 요구하였다.[1)]

조선총독부는 1913년 10월 30일 제령 제7호 〈부제(府制)〉를, 1914년 1월 25일 〈부제시행규칙(府制施行規則)〉을 공포하였고, 1914년 4월 1일을 기하여 거류민단 및 거류지 제도의 철폐와 동시에[2)] 부제를 시행하면서 부윤의 자문기관으로 부협의회를 설치하였다. 부협의회 설치의 목적은, 총독부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부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윤의 자문에 응하고, 그 의견을 협정 개진시키기 위하여' 부에 협의회를 두어 부윤 및 관선의 협의회원으로 조직한 것이었다.[3)]

부협의회에 대해서는 부제 제11조에서 제15조에 걸쳐 규정하였다. 먼저 부협의회는 부윤과 협의회원으로 조직하는데, 부협의회의 의장은 부윤으로 하였다. 부협의회원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경성부의 경우 조선에서

---

1) 부제 시행 초기 재조일본인들의 거류민단 해체에 대한 강한 거부 운동은 조선인과 동일한 행정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부협의회 설립 요구는 1910년경 이미 일본에서 자리를 잡게 된 지방자치제도과 그 자치적인 권리를 식민지로의 이주 후에도 '내지인'으로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의식의 표현이었을 것이다(기유정, 〈1920년대 京城의 '有志政治'와 京城府協議會〉≪서울학연구≫ 28, 2007, 9쪽).

2) 부제의 시행에 따라 일본인 거류민단 및 한성위생회는 폐지되었다. 거류민단의 사무 및 권리 의무로서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이 이를 승계하고, 기타는 부가 승계하였다. 한성위생회의 사무 및 권리 의무도 경성부가 승계하였는데, 그 재산 인계액은 토지 21평, 건물 959평이었다(京城府, ≪京城府史≫ 2, 1936, 353~360쪽).

3) 초기 경성부협의회원을 지낸 한상룡은 나중에 "당시 총독부 방침에 따라 경성부청에 협의제도가 설치되고 민간 측에서 회원을 임명하여 정부 자문에 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韓相龍君を語る≫, 1941(김명수 옮김, ≪한상룡을 말한다≫, 2007, 혜안, 137쪽)). 경성부의 자문이 아니라 정부의 자문이라고 말한 것이 특이하다.

가장 많은 16명이었다. 부협의회원은 부의 주민 가운데서 명망과 식견을 갖춘 조선인과 일본인을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임명하였는데, 협의회원은 명예직으로서 그 임기는 2년이었다. 또한 부협의회원으로 그 직무를 태만하거나 체면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이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1910년대 부협의회원은 1920년대 이후와는 달리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도장관이 임명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일본은 1878년(明治 11년) 〈부현회규칙(府縣會規則)〉을 제정하여 부현에 지방의회를 두고 그 의원을 선거로 선출하였다. 이때에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차이가 있었는데, 피선거권자는 만25세 이상의 남자로 그 지역에 본적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지조(地租) 10엔 이상을 납부한 자로, 선거권자는 만20세 이상의 남자로 그 지역에 본적을 두고 지조 5엔 이상을 납부한 자로 정하였다.[4] 제한선거였지만 이것이 일본에서 최초로 시행된 선거였다. 국정선거(國政選擧)에서 처음으로 선거가 시행된 것은 1889년 중의원(衆議院) 선거였다. 만25세 이상의 남자로 직접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경성부협의회가 만들어진 1910년대에 일본에서는, 세부조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일정 연령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선거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제한선거조차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근대적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민도(民度)가 낮다고 하는 조선특수성론을 구실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부협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부의 사무에 관하여 부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는데, 협의회에서 자문할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4) 內閣官報局, ≪法令全書 明治三十年≫, 61~66쪽.

1) 부조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일
2) 세입과 세출을 정하는 일
3) 府債에 관한 일
4) 세입출 예산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한 외에 새로운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
5)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의 설치 또는 처분에 관한 일
6) 제2조 제2항[5]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일
7) 앞의 각호 외에 부윤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한편 1914년 4월 30일에 〈부협의회회의조례〉와 〈부협의회회원비용조례〉를 공포하였다. 부협의회는 부윤이 초집(招集)하고, 초집과 자문 안건은 개회일로부터 3일 전에 고지하도록 하였다. 협의회원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었는데, 단 동일 안건으로 다시 초집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였다. 협의회의 의사는 과반수로 결정하되 가부가 동수일 때는 의장인 부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 〈부협의회회원비용조례〉에서는 부협의회원이 직무에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부협의회원의 비용 변상액은 1일 2원으로 하고 출무(出務) 일수에 따라 해당 월 말일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6]

최초의 경성부협의회는 1914년 4월 7일에 구성되었다. 총원은 16명으로 조선인 8명, 일본인 8명이었다. 최초로 부협의회가 소집된 것은 1914년 4월 20일이며, 경성부청 분실(구 일본인 거류민단 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5) "부의 廢置 또는 경계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 처분을 요할 때에는 도장관은 부윤의 의견을 듣고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그 처분방법을 정한다."

6) 京城府, ≪京城府史≫ 3, 1941, 14~15쪽.

2. 1920년대 선거에 의한 경성부협의회 조직

1910년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시기에 일본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대가 이루어져, 1918년 정당내각이 출범하였고 1925년에는 보통선거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 일본은 기존의 식민통치 방식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식민지 정책에 변화를 모색하였다.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전환이라는 통치 방식의 변화는 향후 지방자치제를 약속한 예비적 단계에서의 지방제도 개정으로 나타났다. 기존 중앙의 행정 업무 중 수도·전기·토목과 같은 일부 부분에 대해 지방이관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의 자치적인 행정 수행과 이에 대한 일정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부에 설치하였던 기존의 자문기구를 도와 지정면으로 확대·설치하고, 협의회원의 선출 방식을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꾸었다.

1920년 7월 29일 부령 제12호에 의해 〈부제〉를 개정하고, 동일자 부령 제102호에 의해 〈부제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부협의회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7]

첫째,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부 행정의 자문기관인 부협의회는 부윤과 협의회원으로 조직하고, 부윤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부협의회원의 정수를 증가시켜 인구 비례에 따라 12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 2만 명 미만의 부는 12인, 2만~5만 명의 부에서는 16인, 5만~10만 명의 부에서는 20인, 10만 이상의 부는 30인의 부협의회원을 둘 수 있게 되었고, 경성부는 30명의 부협의회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둘째, 부협의회원의 선출방식이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뀌었다. 부협의회원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 자의 요건은

7) 姜東鎭,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9, 346쪽.

① 제국신민으로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1년 이상 그 부의 주민이었을 것, ② 총독이 지정하는 부세[8]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하였다. 당시 일본의 유권자가 국세 3엔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에서 부세 연액 5원이라는 조건은 부당한 것이었다.[9]

셋째, 부협의회원은 명예직이고,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보궐선거로 부협의회원이 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다.

넷째, 부윤은 부 행정에 관한 사항 중 부조례의 설정과 개폐, 세입출 예산, 부채(府債), 세입출 예산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한 새로운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 기본재산 등 부재산의 설치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부협의회에 자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만 급시(急施)를 요하여 협의회에 자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자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여 자문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1920년 조선에 처음으로 근대적 선거제도에 의한 지방의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납세액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회의 권한도 여전히 자문기구에 불과했으며, 의장인 부윤에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의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 소집 없이도 의안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의 중에도 부협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후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까지 요구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설치가 식민지에서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써 저항세력을 회유하고 협력세력을 유지, 확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8) 〈부제시행규칙〉 제2조의 2에 의한 府稅는 市街地稅附加稅, 家屋稅附加稅, 建物稅, 戶別稅, 特別戶別稅, 所得稅, 營業稅 7종이다(〈조선총독부 고시 제242호〉 ≪朝鮮總督府 官報≫ 1920년 10월 1일).

9) 1920년 5월 일본의 제14대 총선거의 자격요건은 직접국세 3원 이상을 내는 25세 이상의 남자로 한정한 제한선거였다(신주백, 〈일제의 새로운 식민지 지배방식과 재조일본인 및 '자치'세력의 대응(1919~22)〉 ≪역사와 현실≫ 39, 2001, 40쪽).

그래서인지 초기에는 조선인의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아 1920년 경성부협의회 선거의 투표율이 일본인의 경우 87%였던 데 반해 조선인의 경우에는 58%에 그쳤다. 그러나 점차 조선인들의 관심도 높아져 1923년에는 65%, 1926년에는 73%로 투표율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후보자수도 1920년 12~16명이었던 것이 1923년에는 20명, 1926명에는 31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호별세 신설과 소득세 증가로 1923년 선거부터 부세 연액 5원 이상의 남성 납세자가 증가하여 유권자의 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실제 활동을 통해 본 실질적인 역할은, 첫째, 행정보조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1920년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기존 총독부에서 관리해오던 사업 중 일부를 경성부에 양여하였는데, 그 이관의 관할구역 문제에 부협의회가 조사와 협의 및 결정에 주도적으로 간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압력단체로서의 성격이다. 부협의회는 도로개수, 수도설비, 건축 등과 같은 경성부의 토목사업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압력단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23년의 '경성부 청사 신축기지' 문제였다. 이때 조선인 의원과 일본인 의원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서로 협력하기도, 대립과 갈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3. 1930년대 의결기관 경성부회로의 변화

1930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의 자문기관이었던 도평의회와 부협의회, 지정면협의회가 각각 도회와 부회, 읍회로 명칭이 바뀌고 의결권을 갖게 되었다. 또 면협의회는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지방제도 개정으로 경성부회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물론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부회가 형식상으로나마 의결기관으로 되었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도 커서 투표율이 90%를 넘는 등 이

전과는 또 다른 차이를 보였다.

1930년 12월 1일에 제령 제11호로 〈부제〉가 개정되었고, 12월 29일 부령 제104호로 〈부제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

부에 부회를 두고 의장 및 부회의원으로 이를 조직하며, 의장은 부윤이 하도록 하였다. 이전 부협의회와 달리 부회 의원 가운데 부의장 1명을 선출하고,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했다. 부회의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의원 정원은 각 부의 인구수에 따라 정했는데, 인구 3만 미만인 경우 24인, 3만 이상 5만 명 미만은 27인, 5만 이상 10만 명 미만은 30인, 10만 명 이상은 33인으로 정하였다. 10만 명을 초과하는 부에는 인구 5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의원 3인을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민족별 의원정수에 규정을 두어서 일본인 의원 및 조선인 의원의 수는 어느 쪽도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실제 선거에서의 당선자수는 아래의 〈표 1〉과 같았다.

<표 1> 1930년대 경성부회의원 민족별 당선자수 (단위: 명)

	1931년	1935년	1939년
조선인	18	15	30
일본인	30	33	39
계	48	48	69

부회의원은 이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① 연령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고 1년 이래 부주민이며 ② 1년 이래 조선총독이 지정한 부세 연액 5원 이

10) 손정목,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上)≫, 일지사, 1992, 247~250쪽.

상을 납부한 자는 부회의원의 선거권을 갖도록 하였다. 단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하지 못한 자, 6년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졌던 자, 육해군 군인으로서 현역 중인 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부회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 소속 도 및 해당 부의 관리 및 유급 이원, 판사, 검사 및 경찰관리, 소학교 및 보통학교의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았다.

또한 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특별경제로 책정하여 일반경제와 구분하도록 했다. 이때 교육행정을 담당했던 학교비와 학교조합을 부에 통합시키고 학교조합평의회, 학교비평의회 대신 일본인의원으로서 제1교육부회를, 조선인의원으로서 제2교육부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제1·2 교육부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서 부윤이 맡았다.

부회의 주요 권한은 부례의 개정과 개폐, 세입세출 예산의 결정, 결산보고, 부세·부역현품·사용료·수수료의 부과 징수, 부의 기채(起債)와 관련한 사항, 기본재산과 적립금, 특별회계 등의 중요사안에 관해서 의결하는 것이었다. 또 부의 권한에 속하는 여러 선거(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등), 관청 자문에 대한 답신, 부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의 검열, 사무 관리, 의결의 집행 및 출납 검사, 회의규칙 제정 등 각종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선거권이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의장인 부윤에게는 의회의 의결을 취소하거나 재의결하도록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등 경성부회는 지방의회로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4. 전시체제기 경성부회의 '추천선거제'

전시체제기에 들어서 총독부는 '추천선거제'를 실시하였다. 1943년 2월 17일, 총독부는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회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추천 선거 도

입을 위한 〈부읍회의원 및 면협의회의원총선거지도요강〉을 발표하였다. 이 요강에서 밝힌 추천선거의 실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부윤, 읍·면장이 중심이 되어 지방 유력자의 의견을 취합해서 지방의 '총의'로서 '추천모체의원'을 정한다. ② '추천모체의원'이 의원 후보를 추천한다. ③ 이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한다. 여기서 '추천모체의원'은 지방 유력자 중 '공정하고 인망이 두터워' 부·읍·면민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그 수는 의원 정원의 2분의 1이내로 하였다. 이들이 의원수와 동수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추천 후보자의 자격은 '국체의 본위'에 철저하고 '인격 식견'이 고매하며 '봉공심'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즉 경성부윤이 임명한 경성부 추천모체에서 의원 정수와 동일한 후보를 추천하고 기타 후보들의 출마를 억제하여 추천자들이 당선되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의 '익찬선거'와 연동되어 실시된 것이었다. 또한 식민지 조선과 본국, 조선 내 조선인과 일본인 양자 간의 간극을 전혀 좁히지 않을 경우 일본 제국주의 스스로의 실적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지나치게 괴리를 좁힐 경우 지배 자체가 위협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 일본 제국주의가 안정된 식민지 지배를 지속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것이었다.[11]

1943년 3월 29일자 부령 제4호 〈부제〉 개정으로 부회의원 정원을 감축하였다. 경성부회의원은 종전의 부제대로 하면 69명의 의원을 뽑기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부제에 따라 56명으로 줄었다.

1943년 5월 21일에 경성부회 선거가 실시되어 조선인 24명, 일본인 32명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28명으로 구성된 추천모체에서 의원 정수와 동일한 56명의 후보를 추천하여 이들이 모두 당선되었다. 실제 추천 선거 과정에서 총독부는 추천모체의원 및 의원 후보자를 지배에 협력적인 인물로 제한해서 선정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의회 내에서 일본인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선거 운동과 투표 과정 등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형식상으로는 자

11) 김동명,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지방정치참여 -부(협의)회·도(평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304~306쪽.

유후보자도 허용해 소수가 출마했으나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은밀한 간섭으로 인해 경성부의 경우 모두 사퇴하였다.[12)]

12) 김동명,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식민지 참정권의 전개 -1943년 조선 지방의회의 '추천선거'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73, 2007, 317~318쪽.

제2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제2장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김제정(경상대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2.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
   1) 조선인 부협의회원의 이력
   2) 일본인 부협의회원의 이력
   3) 1910년대 부협의원 이력상의 특징
3.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활동
4. 맺음말

1. 머리말

1914년 4월 1일 식민지 조선에 부제(府制)가 시행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경성부협의회(京城府協議會)가 설치되었다. 원칙적으로 이전에 거류민단(居留民團)이 있던 곳을 부로 지정하였고,[1] 재조일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해체된 거류민단의 대체물로서 부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었다.[2] 부협의회는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나, 선거에 의한 선출이 아닌 임명제였고 그 위상도 결의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에 불과한데다가, 행정기관장인 부윤이 부협의회 의장을 겸직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등 매우 불완전한 지방자치 제도라고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 구성의 특징과 의원을 역임한 인사들의 이력, 그리고 실제 경성부협의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

1910년대 부협의회의 정원은 6~16명이었다. 경성부협의회의 경우 가장 많은 16명이 정원이었고, 항상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되었다.

1910년대 부협의회원의 행정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었다는 점이다. 1920년의 〈부제〉 개정에 따라 이후 부협의회원은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해도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었으나, 1910년대에는 선거가 아닌 관선, 즉 도장관이 총독의 인가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

1) 부제의 실시는 지방행정제도 개편의 일환임과 동시에 조약체제하 공간구조를 대체하는 식민지 공간구조 성립을 의미하였다(박준형, 〈'租界'에서 '府'로 –1914년, 한반도 공간의 식민지적 재편〉 ≪사회와 역사≫ 110, 2016).

2) 기유정, 〈1920년대 京城의 '有志政治'와 京城府協議會〉 ≪서울학연구≫ 28, 2007.

두 번째 특징은 임기이다. 특정 시기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결원이 생겨 새로운 인물을 부협의회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선거에 의해 일정 시점에 전원이 구성되고 보궐 의원의 후임으로 선출되어도 그 잔여임기만을 채우는 1920년 이후와는 달리, 1910년대에는 부협의회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임명 시점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임기가 제각각이었다.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원의 명단과 재임기간은 〈표 1〉과 같다. 모두 23명으로 조선인은 13명, 일본인은 10명이다.

<표 1>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원 명단과 재임기간

	이름 및 재임기간		
조선인	朴齊斌 1914.4, 1916.4(중임), 1918.4(중임)		
	韓相龍 1914.4, 1916.4(중임), 1918.4(중임)		
	趙鎭泰 1914.4, 1916.4(중임), 1918.4(중임)		
	安商浩 1914.4, 1916.4(중임), 1918.4(중임)		
	芮宗錫 1914.4	白完爀 1916.4, 1918.4(중임)	
	金鎔濟 1914.4	閔裕植 1916.4	鄭求昌 1918.4
	兪吉濬 1914.4 사망(1914.9.30)	金漢奎 1915.3, 1917.3(중임), 1919.3(중임)	
	嚴達煥 1914.4 사임(시기불명)	白寅基 1915.3, 1917.3(중임), 중임 여부 불명	
일본인	古城菅堂 1914.4, 1916.4(중임), 1918.4(중임)		
	和田常市 1914.4, 1916.4(중임), 1918.4(중임)		
	山口太兵衛 1914.4, 1916.4(중임), 1918.4(중임)		
	大久保雅彦 1914.4, 1916.4(중임), 1918.4(중임)		
	中村再造 1914.4, 1916.4(중임), 1918.4(중임)		
	原勝一 1914.4, 1916.4(중임), 1918.4(중임)		
	德久米藏 1914.4	執行猪太郎 1916.4 이전 중임(시기불명)	

	이름 및 재임기간	
일본인	兼古禮藏 1914.4	石原磯次郎 1916.4(?) 중임(시기불명)

먼저 조선인 의원들의 변화를 보면, 1914년 4월 초대 부협의회원으로 박제빈(朴齊斌), 한상룡(韓相龍), 조진태(趙鎭泰), 안상호(安商浩), 예종석(芮宗錫), 김용제(金鎔濟), 유길준(兪吉濬), 엄달환(嚴達煥) 등 8명이 선임되었다. 이 가운데 박제빈, 한상룡, 조진태, 안상호 등 4명은 1916년 4월과 1918년 4월에 중임되어 1920년 부협의회가 선거제로 바뀔 때까지 부협의회원을 역임하였다. 한편 유길준은 부협의회원으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14년 9월 30일 사망하였다. 또 엄달환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채 1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였다.

이 두 사람을 대신하여 1915년 3월 김한규(金漢奎)와 백인기(白寅基)가 경성부협의회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들도 계속 연임에 성공하여 1920년까지 부협의회원을 계속하였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중임된 시기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1917년 3월과 1919년 3월이었다.

한편 예종석과 김용제는 단 한 차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었고, 그 자리를 1916년 4월 백완혁(白完爀)과 민유식(閔裕植)이 대신하였다. 백완혁은 1918년 4월에도 연임되어 중임에 성공하였지만, 민유식은 1918년 4월 정구창(鄭求昌)으로 교체되었다.

다음으로 일본인 의원들의 변화를 보면, 1914년 4월 초대 부협의회원으로 고죠 간도(古城菅堂), 와다 쓰네이치(和田常市), 야마구치 타헤에(山口太兵衛), 오쿠보 마사히코(大久保雅彦), 나카무라 사이조(中村再造), 하라 가쓰이치(原勝一), 도쿠히사 요네조(德久米藏), 가네코 레이조(兼古禮藏) 등 8명이 선임되었다. 이 가운데 고죠, 와다, 야마구치, 오쿠보, 나카무라, 하라 등 6명은 1916년 4월과 1918년 4월에 중임되어 1920년 부협의회가 선거제로 바뀔 때까지 부협의

회원을 역임하였다.

도쿠히사와 가네코는 2년의 첫 임기만을 마치고 물러났고, 그 자리는 시교 이타로(執行猪太郎)와 이시하라 이소지로(石原磯次郎)가 대신하였다. 그런데 도쿠히사와 가네코는 모두 용산거류민단 출신의 인사들이었고, 이들을 대신한 시교와 이시하라도 용산 거주민이었다. 이것으로 볼 때 경성부협의회 일본인 의원 8명 중 2명은 용산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3)]

이하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부협의회원의 이력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원을 지낸 인물은 조선인은 13명, 일본인은 10명, 모두 23명으로 숫자는 적지만 지명도는 높은 인물들이었으므로 먼저 각 개인별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1) 조선인 부협의회원의 이력

(1) 박제빈

박제빈(朴齊斌)은 1858년생으로 임명될 당시 56세였다. 본관은 반남으로 전직 고위관리이다. 1874년 정시 병과에 1위로 합격한 후, 승정원 가주서, 홍문관 부수찬·응교를 거쳐 1890년 병조참의, 공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890년대에는 사간원 대사간, 승정원 우부승지, 군무아문 참의, 비서원승을 거쳐 1900년부터 1907년까지 여러 차례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었다. 봉상사 제조, 장례원 소경, 영희전 제조, 전라북도 순찰사에 임명되었다. 1905년 11월에는 이후의 친일행적과는 달리 을사조약 체결을 무효화하고 매국의 적신들을 극형에 처하도록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1907년 승녕부 총리 서리를 맡았다. 이 무렵부터 친일활동에 나서 1907년 대동학회 설립을 발기하고, 이듬해 부회장, 본부총

3)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일본인 의원들은 모두 경성시내(성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주지 안배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조선인 의원의 경우 거주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주지를 안배하여 선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무 겸 경리과장에 선임되었다. 1908년에는 동양협회에 입회하기도 하였다. 합병 후 1910년 10월에 남작 작위를 수여받았다. 그해 6월 중추원 찬의에 임명되어 1921년 4월까지 재임하였고, 1911년 7월 경학원 부제학에 임명되어 1921년 9월 사망할 때까지 재직하였다. 1915년 다이쇼천황 즉위 대례식 및 대상제에 참석하는 조선 귀족 총대로 결정되어 참석한 후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6년 11월 대정친목회 평의원에 선임되었고, 1921년 4월 유도진흥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1921년 4월 중추원 참의에 선임되어 9월 사망할 때까지 재임하였다. 1921년 9월 4일에 사망하였다. 이때 조선총독부는 특별상여금으로 500원을 지급하였다. 작위는 장남 박서양이 승계하였다.

(2) 한상룡

한상룡(韓相龍)은 1880년생으로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부협의회원이 되었다. 이완용과 이윤용이 외숙이다. 일본 유학을 가서 1900년 세이조(成城)학교 보통과를 중퇴하였다. 한상룡은 수많은 회사와 단체에 관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903년부터 한성은행에 근무하였고, 합병 후인 1910년 9월 한성은행 전무취체역에 선임되어 한성은행을 최대의 민간은행으로 성장시켰다. 1923년 이윤용의 후임으로 한성은행 두취(頭取)에 취임하여, 경영 악화로 사임한 1928년까지 역임하였다.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이사 겸 조사부장에 임명되었고, 1918년 조선식산은행 창립위원, 1921년에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부사장,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취체역,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경제단체로는 1915년에는 총독부의 명으로 조선인과 일본인 상업회의소의 통합 작업을 주도하였고, 12월에 경성상업회의소 평의원에, 이듬해 상의원에 임명되었고 1925년에는 부회두(副會頭)로 선출되었다. 1920년 조선실업구락부를 창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1923년에는 회장으로 취임해 약 20년간 재임하였다. 1921년 조선농회 이사 및 부회장에, 1935년 고문에 추대되었다. 1929년 조선미이입제한반대동맹회(朝鮮米移入制限反對同盟會) 위원, 1932년 조선미옹호기성회

실행위원에 추대되었고, 1934년 조선미옹호회 진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밖에 많은 회사와 경제단체에 관여하여 '조선의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라고 불리었다. 사회단체로는 1916년 11월 대정친목회 평의원장, 1919년 경성교풍회 부회장, 1932년 일만중앙협회 부회장에 선출되었고, 1927년 6월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41년까지 네 차례 연임하였다.

1920년 12월 관선 경기도 도평의회원에 임명되어 1941년까지 연임하였고, 1933년 6월에는 경기도회 부의장에 임명되었다. 해방 후에는 별다른 행적 없이 지내다가 1947년 10월 30일 사망하였다.

(3) 조진태

조진태(趙鎭泰)는 1853년생으로 조선인 부협의회원 중 가장 연장자였다. 1875년 무과에 급제한 후 오위장, 방어사와 인동부사를 지냈다. 1895년 관직을 떠나 군부피복회사를 설립했고, 1897년 마차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 이후 조진태도 한상룡과 마찬가지로 각종 회사, 단체에서 이사와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을 거쳐 1925년까지 감사로 활동하였고, 1909년 1월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사장, 1912년 조선상업은행 은행장을 지냈다. 1924년 조선상업은행 부두취로 활동하였고, 1928년 조선식산은행 상담역을 역임하였다. 경제단체로는 1905년 경성상업회의소 설립을 발기하고 10월 의장이 되었고, 1906년 10월 경성상업회의소 회두에 취임하였다. 1915년 통합된 경성상업회의소 평의원에 선출되었고, 1916년과 1919년 부회두에 선임되었다. 1920년 3월에는 조선실업구락부 회장을 맡았다. 사회단체로는 1908년 한성부민회 부회장을 지냈고, 1916년 대정친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2월에는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해 8월까지 재임하였다. 1927년 6월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33년 6월까지 활동하였다. 1933년 12월 17일 사망하였다.

(4) 안상호

안상호(安商浩)는 1874년생으로 직업은 의사였다. 1894년 관립일본어학교, 1902년 자혜의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04년 귀국한 후, 순종의 전의로 있으면서 지석영이 세운 의학교와 동담한의학교(東儋漢醫學校)에서 서양의학을 강의하는 한편, 종로3가에 개인 진료소를 마련하여 의료 활동을 하였다. 1908년 의사연구회를 조직하여 부회장에 선출되었으며, 1915년 오긍선, 박종항 등과 한성의사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선임되었다. 1919년 1월 고종이 사망하자 전의였던 그가 독살설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1927년 12월 31일 사망하였다.

(5) 예종석

예종석(芮宗錫)은 1872년생으로, 대한제국시기부터 1910년대까지 대표적인 친일인물인 자작 조중응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실업계와 사교계의 거물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1894년 전우학교(電郵學校)를 졸업한 뒤, 전우국 주사로 관직에 진출하여 중추원 의관, 관내부 전선사감 등을 지냈다. 1906년 동양용달회사를 설립한 이후 경제계에서 활동하였다. 1911년 남대문시장 관리인, 1918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지주식회사 이사와 사장을 지내면서, 1912년부터 1914년까지 경성상업회의소 정의원을 역임하였다. 통합 이후에는 1919년부터 1923년까지 경성상공회의소 의원을 지냈다. 1919년 북선흥업주식회사를, 1920년 약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1935년 10월부터 1939년 12월까지 조선제사주식회사 취체역과 사장을 역임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중역으로 활동하였다. 사회활동으로는 1908년 한성부민회 창립위원이었고, 1916년 대정친목회를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1942년까지 간사, 이사, 회장 등을 역임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0년에는 조선인 정동총대연합회 회장을, 1924년에는 참정권 청원운동을 주도했던 갑자구락부의 간사로 활동한 이래 1937년까지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후 1949년 8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1955년 5월 12일 사망하였다.

(6) 김용제

김용제(金鎔濟)는 1868년생으로 관리 출신이다. 1894년 1월 경성사범학교 입학하였고, 일본으로 유학해 1897년 게이오의숙 보통과, 1898년 와세다전문학교 정치과를 졸업하였다. 일본 내무성 행정사무견습으로 근무하다가 1899년 5월 귀국하여, 1900년부터 경성사립학교 교사를 지내다가 1904년 2월 궁내부 통신사 전화과 주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궁내부 참서관 겸 문서과장, 어공원 서무과장, 궁내부 참서관 겸 시종원 시종, 궁내부 참서관 겸 내사과장, 제도국 참서관, 제도국 이사를 역임하였다. 퇴직 후 한성부 숭인면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1909년 한성부민회 동부대표, 1911년부터 1914년까지 경성부 숭신면장, 1915년부터 1918년까지 경기도 참사를 지냈다. 1918년 2월 경기도 이천군수에 임명되면서 관직에 복귀하였고, 1921년 충청북도 진천군수, 1923년 괴산군수로 재직하다가 1924년 6월 퇴직하였다.

(7) 유길준

유길준(兪吉濬)은 1856년생으로 개화파의 일원이었다. 1881년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조사시찰단에 참가하여 게이오의숙에서 수학하였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1883년 1월에 귀국하였다. 이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에 임명되어 한성판윤 박영효가 계획한 ≪한성순보≫ 발간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같은 해 보빙사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담머고등학교(Governor Dummer Academy)에서 수학하였다. 갑신정변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자 학업을 중단하고 유럽 각국을 순방한 뒤 1885년 12월에 귀국하였다. 이후 연금생활을 하면서 ≪서유견문≫을 집필, 출판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내각에 참여하여 외아문 참의 겸 군국기무처회의원, 의정부 도헌, 내각총서, 내무협판, 내부대신 등을 역임하였으나,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다. 1907년 고종이 폐위된 뒤 귀국해 흥사단 부단장, 한성부민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경성부협의회원으로 임명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1914년 9월 30일 사망하였다.

(8) 엄달환

엄달환(嚴達煥)은 1866년생으로 강원도 영월 출신이다. 1894년 11월 경성일어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박영효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귀국 후 1901년부터 궁내부 수륜과 주사, 궁내부 교정위원과 예식원 참리관, 예식원 예식관, 궁내부 예식관을 지냈다. 합병 후 1912년 강원도 영월지방금융조합 설립위원, 영월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1913년 강원도 영월군 참사와 경성부 중부장에 임명되었다. 1915년 2월 영월군 참사에, 8월 영월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에 다시 임명되었고, 1920년대에는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 도평의회원을 연임하였고, 1930년 강원도 영월군 영월면장에 임명되어 1936년까지 재임하였다. 경성부협의회원으로서 선임 이전과 이후 모두 강원도 관련 활동에 매진한 매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이밖에 1927년 참정권 청원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협회의 상담역을 맡았고, 1934년 명륜학원 평의원, 1939년 조선유도연합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9) 김한규

김한규(金漢奎)는 1877년생이다. 1898년 관립 한성일어학교를 졸업하고, 1899년 외국어학교 부교관, 1903년 중학교 교관, 1905년 외국어학교 교관을 지냈고, 1906년 관립한성일어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1907년 학부 서기관으로 회계과장을 지냈다. 합병 후 1910년 10월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되었고, 1911년 합천군수를 지냈다. 이후 경제계에 투신하여 1912년 8월 조선상업은행 감사역에 선임되었고, 1915년 11월 한일은행 전무취체역에 취임하여 1929년까지 재직하였다. 1914년 경성상업회의소 조사위원을 맡았고, 통합 후 1915년 경성상업회의소 평의원, 1919년 부회두로 선출되었다. 1920년 12월 민선 경기도 도평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친일단체 활동으로는, 1933년 중추원 참의를 맡아 1936년까지 재임하였고, 1938년 방공단 경기도연합지부 평의원을 지냈다. 1939년 매일신보사와 철도국이 공동 주관한 중지시찰단(中支視察團)의 단장을 맡아 상하이 등

에 주둔한 일본군을 위문하고 대만을 시찰하였고, 1941년 국방헌금 300원을 해군에 헌납하였다. 해방 후 1945년 11월 조흥은행 두취에 취임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10월 5일 사망하였다.

(10) 백인기

백인기(白寅基)는 1882년생으로 33세의 나이로 부협의회원이 되었다. 1900년 이후 탁지부 주사, 혜민원 참서관, 육군보병 참위 등의 관직을 지냈다. 이후 경제계에서 활동하여, 1906년 한성농공은행 감사로, 1907년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이사, 한호농공은행 감사로 활동하였고, 1907년부터 1915년까지 한일은행 전무로 재직하면서 재계의 유력인사로 부상하였다. 1918년 각 농공은행을 합병하여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할 때 종신직인 상담역에 취임하였고, 1919년 조선경제회 이사, 조선농업주식회사 감사와 경성전기주식회사 감사,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취체역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에는 관선 경기도 도평의원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백인기는 전라북도 임실 출신으로 호남의 부호 백남신의 장남이다. 따라서 호남지역 관련 활동도 많이 하였는데, 1907년 호남학회 설립에 참여해 재정부장으로 활동하였고, 1910년에는 부회장을 지냈다. 1921년 7월 조선인산업대회에서는 전라북도 지방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엄달환과 함께 경성부협의회원으로서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1936년 기업 활동을 정리하고 농업경영에 전념하다가 1942년 7월 1일 사망하였다.

(11) 백완혁

백완혁(白完爀)은 1856년생으로 무관 출신이다. 1881년 무과에 급제한 후, 금위영 초관, 훈련원 첨정, 순무영 군관 등으로 재직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1895년 한성피복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활동하였다. 1906년 대한천일은행 취체역, 한호농공은행 은행장에 취임하였고, 1912년 경성융흥주식회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정친목회 평의원,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동양축산흥업주식회

사 취체역, 조선흥업구락부 부회장, 경성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 경성상공협회 상담역 등 각종 회사 및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1928년 한상룡의 후임으로 한성은행 두취에 취임하여 1933년까지 재직하였다. 1938년 1월 12일 사망하였다.

(12) 민유식

민유식(閔裕植)의 출생연도는 파악할 수 없다. 대한제국 이래의 자산가였던 여흥 민씨 일족이면서도 도학자풍(道學者風)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승만 정부 때 농림부장관 등을 지낸 윤영선(尹永善)의 장인이기도 하다. 1900년 이후 시종관, 육군보병 참위, 비서감승 등을 역임하였다. 경성융흥주식회사의 주주, 호서은행 전무취체역, 조선제지주식회사 감사역, 용산권업주식회사의 전무취체역 등 각종 회사의 중역을 역임하였고, 공동무역주식회사, 대동무역주식회사, 조선제사주식회사, 경남광업주식회사 등의 회사 설립에 관여한 대주주였다.

(13) 정구창

정구창(鄭求昌)은 1891년생으로 27세의 변호사로 최연소 부협의회원이었다. 1907년 관립영어학교, 1908년 보성전문학교 법률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12월에 경성지방재판소 판사에 임용되었다. 1913년 관직을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보성전문학교에서 강의하였다. 한성은행 법률고문, 매일신보 법률고문, 조선지주식회사 중역 등을 역임하였다. 1921년 6월 11일 31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2) 일본인 부협의회원의 이력

(1) 고죠 간도

고죠 간도(古城菅堂)는 1857년생으로 오이타현(大分縣) 출신의 의사이자 실업가였다. 1880년 제국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1887년 인천공립병원

장이 되어 조선으로 처음 건너왔다. 7년간 근무 후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1903년 찬화병원(贊化病院)의 원장으로서 경성으로 다시 왔다. 1905년 경성의회(京城醫會) 회장으로 선출되어 1909년까지 역임하였다.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경성기업주식회사, 조선취인소, 조선상업은행 등 각 회사와 은행에 참여하였으며, 1909년 10월 경성거류민단 민장으로 선출되었다. 경성부협의회원을 그만둔 후에는 관선 경기도 도평의원을 지냈다. 1934년 11월 2일 사망하였다.

(2) 와다 쓰네이치

와다 쓰네이치(和田常市)는 1862년생으로 오이타현(大分縣) 출신이다. 1881년 부산으로 건너온 후, 원산으로 이주하여 약종상을 운영하였다. 1883년 인천으로 이전하여 무역상을 겸영하였고, 1886년 경성으로 와서 수입무역상을 시작하였다. 1902년 경성상인동지회(京城商人同志會) 화폐교환소를 창설하여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894년 상업회의소 회두로 추대된 이래 거류민회 총대, 민장대리, 거류민회 의장을 각기 수 차례씩 역임한 대표적인 재경성일본인이었다. 주식회사경성은행 이사, 우에키장유(宇惠喜醬油)주식회사 사장, 경성주식현물취인시장 이사, 실업은행 감사역, 일화목재주식회사 사장, 온양온천주식회사 사장, 히노마루(日の丸)수산주식회사 이사 등 각종 회사의 중역을 역임하였다.

(3) 야마구치 타헤에

야마구치 타헤에(山口太兵衛)는 1865년생으로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출신이다. 1884년 오사카에서 조선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부산지점과 인천출장소를 왕래하였다. 1885년 경성의 하마다상회(濱田商會)에서 근무하다가 1887년 독립하여 수입무역에 종사하였다. 1890년 포목 및 잡화업으로 전업하여 야마구치오복상(山口吳服商)을 설립하였다. 경성거류민회 및 경성상업회의소 창립에 관여하였고, 의원, 총대, 민장, 회두 등을 역임하며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 현재에는 경성전기주식회사 이사, 실업은행 이사, 히노마루(日の丸)수산주식회사 사장,

조선우선주식회사 감사역으로 재직 중이었다. 1934년 12월 10일 사망하였다.

(4) 오쿠보 마사히코

오쿠보 마사히코(大久保雅彦)는 1870년생으로 에히메현(愛媛縣) 출신의 변호사였다. 1889년 9월 영길리(英吉利)법률학교(중앙대학의 전신)를 졸업한 후, 1893년 대언인(代言人) 시험에 합격하고, 법학박사 오카무라(岡村輝彦)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 1902년 고향에서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중의원이 해산되어 버렸다. 1905년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경성변호사조합 설립 후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21년에는 경기도 민선 도평의원에 당선되었다. 1922년 6월 6일 사망하였다.

(5) 나카무라 사이조

나카무라 사이조(中村再造)는 1855년생으로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이었다. 1884년 오사카마루산은행(大阪丸三銀行) 부산지점에 근무하던 중 1886년 은행을 사직하고 경성으로 와서 잡화점과 전당포업을 경영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이를 기회로 토지가옥을 매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청일·러일전쟁 때 군용 용달에 종사하였다. 이후 경성십우합자회사, 경성은행, 히노마루(日の丸)수산주식회사, 만주식산회사를 설립하고 경성은행 두취 등 중역으로 근무하였다. 1889년 경성상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주창하여 설립한 후 부회두, 회두를 역임하였고, 1901년 경성거류민 총대를 폐지하고 민장을 두자 초대 민장으로 추대되는 등 20여 년간 거류민회와 상업회의소의 공직을 지냈다. 1920년까지 경성은행 두취로 근무했으나 조선실업은행이 되면서 고죠(古城菅堂)에 의해 사임하였다. 1926년 사망하였다.

(6) 하라 가쓰이치

하라 가쓰이치(原勝一)는 1856년생으로 야마구치현(山口縣) 출신이다. 일본

에서 소학교 교사, 현청 공무원, 군장을 거쳐 아카마가세키(赤間關, 현 시모노세키)의 시장을 지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1906년 6년여의 시장직을 그만두고 조선으로 건너와 대한근농주식회사(후의 조선근농주식회사)를 창립하고 전무이사에 선임되었다. 1911년 1월 경성거류민단 의원에 당선되었고, 1913년 6월 경성상업회의소 회두로 당선되었다. 대창조(大倉組, 大倉商事株式會社) 경성출장소 상담역, 조선광업회 평의원, 경성취인소 취체역 등을 역임하였다.

(7) 도쿠히사 요네조

도쿠히사 요네조(德久米藏)는 1868년생으로 야마구치현(山口縣) 출신이다. 철도국에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1900년 조선으로 건너왔다. 부산과 대구에서 토목업에 종사하다가 1906년 용산으로 옮겨와 벽돌공장을 매수, 경영하였다. 용산거류민단 의원으로 추대되어 의장이 되었고, 경성거류민단 의원을 지냈다.

(8) 가네코 레이조

가네코 레이조(兼古禮藏)는 1872년으로 니가타현(新潟縣) 출신이다. 1904년 조선으로 건너와 인천에서 식료잡화상을 하다가 용산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양조판매를 본업으로 하면서 식료잡화상을 겸업하였다. 1907년 용산거류민단 의원이 되어 1914년 폐지 때까지 재임하였다. 1910년 일본적십자사 경성지부 협찬원 위원, 1911년 경성상업회의소의 상공위원 및 상임간사를 역임하였다. 1913년 개인적인 사업을 그만두고 우에키장유(宇惠喜醬油)주식회사 전무이사가 되었다. 1916년 12월 용산경성신사 대총대, 1920년 경성학교조합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9) 시교 이타로

시교 이타로(執行猪太郎)는 1870년생으로 사가현(佐賀縣) 출신이다. 1903년 경부철도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경성지점 창고주임을 지내다가 1905년 철도 준공과 함께 사직하고 1906년 용산정미소를 개업하였다. 용산거류민단 의원에 당

선되고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1912년 6월에는 경성상업회의소 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회두에 추대되었다. 용산금융조합 사장, 용산공작주식회사 취체역, 경성곡물신탁주식회사 취체역, 주식회사 조일정미소 상무취체역 등을 역임하였고, 1925년 조선공업협회 감사, 경성곡물상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10) 이시하라 이소지로

이시하라 이소지로(石原磯次郎)는 1864년생으로 교토부(京都府) 출신이다. 일본에서 촌장(村長)으로 약 9년간 재직하면서 각종 단체, 조합, 학교의 장을 역임하였다. 1910년 조선으로 건너와 신용산에 거주하였다. 1914년 실업친화회를 조직하였고, 1915년 어대전(御大典)기념사업으로서 사립신용산유치원과 용산신용조합을 설립하였다. 1920년 관선 경기도 도평의원으로 선출되어 1940년대까지 수차례 중임하였고, 1945년까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며 각종 단체에 관여하였다. 장남이 1930~1940년대 네 차례나 경성부회의원에 당선된 이시하라 겐이치(石原憲一)이다.

3) 1910년대 부협의원 이력상의 특징

이상의 이력을 통해 1910년대 부협의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거물급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도평의원이 있던 1920년대 이후와는 구별되는 특징이었다. 1920년대 이후에는 일류 유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부협의원보다는 도평의원을 했던 데 비해, 도평의회가 없던 1910년대에는 이들이 부협의원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1910년대 부협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 1920년대 경기도 도평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실업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1920년대 이후에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직업은 실업가였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그 비중이 매우 높았다. 아울러 전문직의 비중은 낮았다. 이는 일본이나 1920년대 이후의

경성부 경우와 비교되는 현상이었다. 아직 식민지 조선 사회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유지로 성장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관직 생활을 한 사람이 많다. 오랜 시간 동안 관직 생활을 한 고위 관리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짧게나마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지식인이면 대부분 관리가 되었던 19세기 후반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3.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활동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자료가 부족하여 ≪경성부사≫와 신문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매일신보≫에 나오는 회의 일정과 안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914년 4월 20~22일: 최초의 경성부협의회. 안건은 1. 부협의회회의조례, 2. 府公式條例, 3. 府出張所設置條例, 4. 府協議會會員費用辨償條例, 5. 府吏員定員條例, 6. 府吏員俸給條例, 7. 부세특별세조례, 8. 국세부가세부과징수조례, 9. 부금고사무취급조례 등이었다. 부세 및 금고사무에 관한 부의에 수정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원안대로 가결.[4]
1914년 6월 16일: 1914년도(大正3年度) 경성부예산.[5] 실제 회의가 열렸는지는 불명.
1914년 9월 13~15일: 191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지세, 호세에 관한 안건. 특별호별세는 구간별로 나누어 징세하기로 결정.[6]
1914년 10월 5일: 경성신사 例祭 설행 건.[7]

4) ≪매일신보≫ 1914년 4월 16·21·22·23일. 기사에서 조례 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잡았다.
5) ≪매일신보≫ 1914년 6월 6일, 8월 5일.
6) ≪매일신보≫ 1914년 9월 13·15·16·17일.
7) ≪매일신보≫ 1914년 10월 4·7일.

1915년 4월 16~22일: 부이원정원조례 중 개정의 건, 부이원봉급조례 중 개정의 건, 부이원숙사료지급조례 설정의 건, 府有給吏員退職給與金條例 설정의 건, 부이원사망급여금조례 설정의 건, 부출장소설치조례 중 개정의 건, 공사의 청부물품의 매매대차 및 인부의 공급에 관한 조례 설정의 건, 1915년도 세입출예산의 건 등.[8] 공사의 청부물품의 매매대차 및 인부의 공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예산안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가결. 예산안은 委員附託으로 하여 고죠, 와다, 오쿠보, 한상룡, 백인기, 예종석 등 6명을 위원으로 선정. 이들이 위원회를 열어 협의한 후 이를 전체 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를 취함. 세출에 대하여 원안에서 약 5,600원을 감액시키고 가결.

1915년 8월 14일: 임시부협의회. 임시위생 설비(살수, 공동변소, 하수구 개선 등)와 관련한 예산경정 건. 그대로 가결.[9]

1915년 12월 6일: 아현리묘지의 사용료 및 입찰 규정, 순화원 등의 건.[10]

1916년 5월 25일: 明治神宮御造營奉讚會의 건.[11]

1916년 6월 6일: 임시부협의회. 본년도 예산경정의 건.[12]

1916년 7월 20일: 하수구 개설의 건.[13]

1916년 9월 26~8일: 1. 屠獸場 매수의 건, 2. 1916년도 예산의 추가 및 경정에 관한 건, 3. 전염병예방사무에 관한 급여조례 제정의 건, 4. 名譽府吏員 채용에 관한 건, 5. 경성신사의 用에 供할 부유재산 기부의 건, 6. 정동 내의 공공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정총대를 두는 건의 6건을 자문. 이 중 2와 3의 자문안은 하라, 이시하라, 김한규, 한상룡에 위원부탁하고 나머지는 가결. 27일 위원회를 열고 부탁사항에 대하여 타협을 하고, 28일 본회의에서 가결.[14]

1916년 10월 24일: 京城府起債利子三四支拂追認의 건과 경성부 용산출장소에서 종래 취급하던 민적사무 및 인감사무에 관한 취급을 부로 이전할 건 협의. 11월 3일 立

8) ≪매일신보≫ 1915년 4월 14·16·17·18·20·23일.
9) ≪매일신보≫ 1915년 8월 14·22일.
10) ≪매일신보≫ 1915년 12월 1일.
11) ≪매일신보≫ 1916년 5월 26일.
12) ≪매일신보≫ 1916년 6월 8일.
13) ≪매일신보≫ 1916년 7월 20·22일.
14) ≪매일신보≫ 1916년 9월 27·29·30일.

太子式 당일 단체 봉축에 관한 협의.[15]
1917년 2월 5일: 1916년도 예산의 경정 및 추가예산.[16]
1917년 4월 11일: 1917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17]
1917년 10월 12일: 1. 수익재산결정 건, 2. 기본재산 축적 및 관리규정설정 건, 3. 특별기본재산처분 건, 4. 특별기본재산 설치 및 사용방법, 5. 적립금 설치 및 관리규정 건, 6. 1917년도 경정예산 건 등을 협의하여 원안대로 가결.[18]
1918년 2월 25일: 1917년도 예산 추가 및 경정 건.[19]
1918년 7월 29일: 지하매설물 조사에 관한 예산추가경정 건.[20]
1919년 2월 13일: 1918년도 경정예산을 부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확정.[21]
1919년 3월 31일: 1918년도 경성부세입출예산경정의 건.[22]
1919년 4월 24일: 1919년도 세출입예산안 및 기타 협의사항.[23]
1919년 9월 3일: 임시부협의회. 부이원임시수당증액의 건[24]
1919년 10월 23일: 본년도 예산의 건.[25]

위 사안들 중 부협의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던 사안으로는 1914년 특별호별세 문제, 1916년 하수구 문제, 정동총대 설치 건 등이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부협의회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는 의문이지만, 다른 사안에 비해 긴 시간을 들여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5) ≪매일신보≫ 1916년 10월 25일
16) ≪매일신보≫ 1917년 2월 3·6일.
17) ≪매일신보≫ 1917년 4월 10·12일.
18) ≪매일신보≫ 1917년 10월 11·13일.
19) ≪매일신보≫ 1918년 2월 24일.
20) ≪매일신보≫ 1918년 7월 30일.
21) ≪매일신보≫ 1919년 2월 13 ·15일.
22) ≪매일신보≫ 1919년 4월 2일.
23) ≪매일신보≫ 1919년 4월 25일.
24) ≪매일신보≫ 1919년 9월 3일.
25) ≪매일신보≫ 1919년 10월 25일.

부협의회에 자문하는 안건의 가장 큰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었다.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도 자주 안건으로 올라왔다.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성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이를 경기도에 올려 승인을 받고 이를 부협의회에서 자문하여 가결하면 다시 경기도에 올려 최종승인을 받는 것이었다. 예산안의 경우 부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의원 몇 명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었는데, 이 과정을 '위원부탁(委員附託)'[26]이라 하였다.

또한 세제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시기는 식민통치 초기로 아직 세제가 자리 잡기 전이어서 세제의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관민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1914년의 특별호별세였다. 특별호별세는 시가지세와 함께 1914년부터 부과된 세금이었다. 부협의회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특별호별세는 주가(住家)의 평수에 따라 부과하는데, 5평 이상 10평 미만은 1평당 5전, 10평 이상 30평 미만은 1평당 6전, 30평 이상 50평 미만은 1평당 8전, 50평 이상 100평 미만은 1평당 10전, 100평 이상은 1평당 12전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식 가옥 1칸은 1평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5평 미만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부과하지 않았다.[27]

---

26) '위원부탁'은 예산안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때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차례이다. 먼저 1915년 예산안에 대해 고죠, 와다, 오쿠보, 한상룡, 백인기, 예종석 6명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1916년 9월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전염병예방사무에 관한 급여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 하라, 이시하라, 김한규, 한상룡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매일신보≫ 1915년 4월 20일 ; ≪매일신보≫ 1916년 9월 27일). 그런데 전염병 사무와 관련한 위원회에 의사 출신 부협의회원이었던 안상호와 고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27) 경성부, ≪경성부사≫ 3, 1941, 36~37쪽. ≪매일신보≫ 기사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 "特別戶稅 징수에 관하여 다시 구별 시행하기로 낙착되었다는데 그 구별건을 들은즉 瓦草를 물론하고 소유가옥 5간 이상 10간 미만은 5전, 10간 이상 30간 미만은 8전, 30간 이상 50간 미만은 10전, 50간 이상으로 내지 기백간까지는 12전씩 징수한다는데 可量 소유가옥이 없어서 他人의 가옥에 住接하는 자는 관계가 없고 소유주가 의례 납입한다더라."(≪매일신보≫ 1914년 9월 17일).

그런데 ≪경성부사≫에서는 특별호별세의 논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특별호별세조례의 설정은 처음에 부세특별세조례 가운데 소득세 세목을 설정해 250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었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당시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세목으로 인정하여 이를 삭제했다. 따라서 이를 대신할만한 것으로서 특별세를 설정하고 소득세 삭제에 따른 과세 부담의 불균형을 조절한 것이었다.[28]

애초에는 250원 이상의 소득자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특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경성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신 가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특별호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가옥의 크기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 모두 경제적 상위층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재분배적·누진세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각각의 기준을 살펴보면, 250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특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5평 이상의 가옥주에 대해 특별호별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대상이 훨씬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 최상위층에게 과세를 집중시키지 않고 그 부담을 다수 주민에게 분담시키는 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심의한 경성부협의회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관계 당국이 "당시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세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과세 부담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에 경성부의 경제적 최상위층으로 구성된 경성부협의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문도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1916년 하수구 개설 문제에서도 하수구의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공사비를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여

28) 경성부, ≪경성부사≫ 3, 1941, 36~37쪽.

지출할 것인가의 지출 방법을 주로 협의하였다.

하구수 개설 문제는 1915년 경성부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를 계기로 도시 위생이 문제가 되면서 공론화되었다.[29] 1914년부터 1915년에 걸쳐 경성부에 성홍열과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돌기도 하였다. 이에 경성부뿐만 아니라 총독부에서도 경성부의 위생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성부와 경무부에 의해 준설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본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1915년에 총경비 100만 원의 7개년계속사업으로 경성부의 하수구 개수 계획이 논의되었으나 이때는 재정 문제로 결국 무산되었다.[30]

그러나 경성부의 하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총독부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성부협의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사업비 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총독부 토목국장인 모치지 로쿠사부로(持地六三郎)는, 총 공사비가 160만 원이고 이 중 1917년부터 3개년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제1기에 7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경성부민이 도저히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반액을 국고의 보조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및 부채(府債)로써 충당할 것이라고 하였다.[31] 경성부윤 가네야 쥬(金谷充)도 전체 공사비의 반액은 국고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지방비 및 부비(府費)로써 충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비를 충당하고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더욱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현재의 경성부 재정 상태로 보아 재원을 증세에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29) 경성부, ≪경성부사≫ 3, 1941, 170~175쪽.

30) "경성하수안이 一昨年의 부협의원회에 제출되었을 때는 조사의 불비됨과 부재정의 융통이 도저히 곤란하다 하여 일동이 반대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마침내 동안이 무기연기에 이르렀더니"(≪매일신보≫ 1916년 7월 20일). 이 자료에는 재작년을 의미하는 一昨年, 즉 1914년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 논의된 것은 1915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15년에 경성부협의회에서 하수구 문제를 논의하고 반대하였다는 다른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1915년 경성부에서 하수구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가네야 경성부윤에 따르면 공사 시기와 소요경비 문제에 관한 총독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였다(≪매일신보≫ 1916년 6월 29일).

31) ≪매일신보≫ 1916년 6월 28일.

때문에 30만 내지 40만 원의 부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그 상환방법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수입(府收入)의 자연증수(自然增收)에 의할는지 혹은 경우에 따라 일부(一部)의 증세(增稅)를 단행하여 연부상환(年賦償還)의 재원(財源)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하면서, 만일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민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증세는 절대로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다.[32]

1916년 7월 20일에 경성부 하수구 문제가 경성부협의회에 상정, 논의되었다. 사업의 설계안이 총독부의 3년에 걸친 조사에 의해 마련된 데다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전체 공사는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제1기에는 70만 원, 제2기에는 80만 원을 지출하여 마치기로 되었고, 이번에 부협의원회에 자문한 사항은 그 제1기분에 속한 공사비 70만 원 중 경성부에서 부담할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제1기의 공사비 70만 원 중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를 제외한 금액은 16만 원으로 경성부에서 1917년도부터 매년 4만 원씩 4개년 동안 지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부협의회에 제출된 의안의 지출방법 관한 내용은 위에서 가네야 부윤이 이야기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었다. 기채와 증세를 모두 하지 않고 경성부에서 경영하는 도수장(屠獸場)의 수입 또는 거주민의 증가에 따라 자연히 증수되는 것 등으로 충용하기로 하였다.[33]

이에 대해 일부 부협의회원은, 경성부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방안은 4개년간의 제1기에 대한 것일 뿐이고 제2기에 들어가서는 보조금이나 경성부의 부담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차제에 전체공비 150만 원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일

32) ≪매일신보≫ 1916년 6월 29일.

33) 이에 대한 ≪경성부사≫의 서술은 ≪매일신보≫의 기사와 수치상 차이가 있다. ≪경성부사≫에 따르면, 경성부는 1918년도부터 1922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공사비 60만 3,000원(이 가운데 국고 보조 30만 1,500원, 지방비 보조 7만 5,000원, 부비 부담금 22만 6,500원)을 마련해 매년 12만 600원을 지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부협의회로부터 협찬을 얻었다고 하였다(경성부, ≪경성부사≫ 3, 1941, 540~548쪽).

체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부협의회원 일동이 찬성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당일의 협의의 답신을 마치고 산회하였다.[34]

이후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애초부터 하수계획에 기본이 되는 강우량과 우량유출량에 대한 계산이 결여되어 있었고, 재료비와 임금이 40% 정도 상승하여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설계를 수정해 총 공사비 229만 8,000원의 7개년계속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공사비 충당 방안을 살펴보면, 총공사비 229만 8,000원 가운데 51만 8,000원은 시구개정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하수비로 지출하는 것은 178만 원이었다. 총 경비 178만 원 중 66만 3,000원은 국고, 10만 5,000원은 지방비의 보조를 받기로 하고, 부비 부담금은 101만 4,700원이 되었다. 당초 1916년 부협의회에서 찬성 답신한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부담액이었다. 부비 부담금의 재원은, 하수사업비 4만 5,300원과 최근 7년 동안의 적산액 31만 7,100원, 그리고 일반세입조입액 9만 2,554원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부족액 60만 5,046원은 신규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44만 3,046원을 기채하고 잔액 16만 2,000원은 시가지세부가세와 기타 증세를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결국 기채와 증세라는 방안으로 해결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협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에서는 예산, 세제, 부재정 문제가 주요 사안이 되었다. 부제에 규정된 부협의회 자문 사항 6가지(기타를 제외) 중 부조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일을 제외한 5가지도 모두 예산이나 재정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부협의원들이 납세자들을 대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자문안이 상정되었을 때, 다소 긴 논의를 거치더라도 경성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에서 원안에 수정을 가한 사례는 1915년 예산안 단 한 차례뿐이었다.[35]

---

34) ≪매일신보≫ 1916년 7월 20·22일.

35) 1915년도 세입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출에 대하여 원안에서 약 5,600원을 감액시키

4. 맺음말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정원은 16명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되었다. 1920년대 이후의 경성부(협의)회와 비교했을 때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가 가진 구성상의 특징은, 첫째,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었다는 점, 둘째, 도평의회가 없던 시기라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거물급이 많다는 것, 셋째, 전문직보다는 자산가의 비중이 높고 관직을 경험한 자들이 많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성부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 세제, 부재정과 관련된 것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이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뿐만 아니라 1914년의 특별호별세와 같은 세제의 개편 문제도 주요 안건이었다. 또 경성부의 사업과 관련한 자문도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는 부제에 규정된 부협의회 자문 사항에도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는 경성부협의회의 기능이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원을 구성하는 자산가들이 낸 세금의 용도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한 차례(1915년 본예산)를 제외하고는 모든 안건이 경성부의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고 가결하였다(≪매일신보≫ 1915년 4월 23일).

제2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제3장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최인영(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1. 머리말
2.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
   1) 1920년 선거 현황과 추이
   2) 1923년 선거 현황과 추이
3.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활동
   1) 부협의회의 회의 안건
   2) 주요 안건과 부협의회의 활동
4. 맺음말

1. 머리말

1920년대 지방제도의 개정은 3·1운동으로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문화정치의 일환이었다. 정무총감인 미즈노 렌타로(水野練太郎)는 '현 총독 취임 초에 이를 세운(世運)의 추이에 비추어 크게 재정(諸政)에 쇄신을 가하고자 하야 종래 중앙집권적 시설방침을 개정하고, 지방분권의 실현에 노력하여 우선 장래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할 일을 선명(宣明)하얏도다'[1]라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 7월 29일 조선총독부는 제령(制令) 제12호에 의해 〈부제〉와 총독부령 제102호로 〈부제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내용을 보면 부협의회원의 정원은 12~30명, 임기는 2년에서 3년, 선출방식은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25세 이상의 남자이면서 1년 이상 부의 주민으로 연 5엔 이상의 부세를 납입한 자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주어졌다. 더욱이 부윤은 부협의회 의장을 겸직하면서 막대한 권력을 가지는 등 여전히 불합리한 점이 남아 있었다. 때문에 앞선 담화문에서 '지방자치제도'라는 표현과 달리 1920년대 부협의회는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글에서는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1920년과 1923년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부협의회가 구성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부협의회의 회의 안건과 내용, 이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新地方制에 對하야-水野정무총감담〉 ≪동아일보≫ 1920년 7월 30일.

2.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

1) 1920년 선거 현황과 추이

3·1운동이 일어난 다음해인 1920년, 선거제가 도입된 후 처음 치러진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부협의회원의 민족별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심과 참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선거 현황과 당선자 명단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20년 선거 준비는 경성부의 유권자 조사, 확정, 명부 발간으로 시작되었다. 선거 명부의 표지에는 '부(면)협의회원 선거인 명부'라는 제목과 소속기관, 작성일이 적혀 있고, 내부에는 부세 납입액과 주소, 생년월일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2)]

경성부에서 유권자를 확정하기 전에 발표한 수치는 조선인 3,295명, 일본인 1,738명이었다. ≪매일신보≫는 '조선인의원(鮮人議員)의 대다수를 선출하리라 예측하면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결의권이 없는 고로 의장(議場)에서 조선인측의 의견이 유력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일본인측의 불이익이 되고 또는 부정(府政)에 대하여 지장이 없으리라더라'고 보도하였다.[3)] 이것은 조선인 의원이 많이 선출될 것에 대한 우려였지만, 한편으로 부협의회는 결정권이 없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9월 들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정간된 상태에서 선거 현황은 ≪매일신보≫를 통해서만 전해졌는데, 이때 보도기사는 비밀선거를 하듯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4)] 10월 21일 유권자 명부가 공개된 시점에도 입후보자

---

2) 양식은 뒤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3) 〈選擧資格 調査, 京城府協議會議員〉 ≪매일신보≫ 1920년 9월 26일.

4) 1920년 제1회 경성부협의회 선거 준비과정과 입후보자 상황, 선거 당일의 모습은 당시 ≪동아일보≫(정간 1920.9.26.~1921.1.10)와 ≪조선일보≫(정간 1920.9.5~1920.12.26)가 정간되었기 때문에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 소식은 여러 소문을 기사화하는 데 불과했다.[5] 이는 선거 이틀 전인 11월 18일자 ≪매일신보≫가 선거 후보자를 일본인 18명, 조선인 12명의 총 30명으로 전했지만, 여전히 입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6] 때문에 이 시기 선거 입후보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손정목은 '어떤 개인이 실제로 입후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였으나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득표를 하면 당선자로 하는' 것이 지방제도 개정 후 시행된 첫 선거의 실상이라고 하였다.[7]

선거는 11월 20일 남대문소학교에서 실시되었다. 다음의 〈표 1〉은 1920년 경성부협의회의 선거 현황이다. 후보자는 조선인 16명, 일본인 19명으로 일본인의 참여가 많았다.

<표 1> 1920년 경성부협의회의 선거 현황 (단위: 명)

府	정원	조선인					일본인				
		후보자	당선자	인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	당선자	인구	유권자	투표자
경성	30	16	12	181,829	2,626	1,582	19	18	65,617	2,145	1,860

출처: 朝鮮總督府 內務局, ≪改正地方制度 實施 槪要≫, 1922, 12쪽. 민족별 인구는 경성부,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1932 참조.

〈표 1〉에서 1920년 경성부 인구의 대다수인 조선인과 일본인은 24만 7,446명이다. 이 중에서 유권자 수는 4,771명으로 인구 대비 1.9%의 소수였으며, 투표자 수는 3,442명으로 유권자의 72.1%를 차지하였다. 인구에 비해 유권자 수가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수의 유산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선거였음

5) "今에는 기초준비 중임으로 유권자의 豫選을 일람한 후 승산의 유무를 숙고하는 중이라 云하는 설이 多하고, 일부로 소위 確的한 소문을 종합한 즉"(〈府議員 候補者〉 ≪매일신보≫ 1920년 10월 24일).

6) "아즉 表面에 聲明을 宣하지 아니하고 暗密히 운동하는 자도 有한 듯"(〈京城逐鹿戰, 選擧期日臨迫〉 ≪매일신보≫ 1920년 11월 18일).

7) 손정목,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上), 일지사, 1992, 206쪽.

을 의미한다. 또한 민족별로는 조선인 유권자가 인구대비 약 1.4%, 일본인이 약 3.2%로, 부(府)의 절대다수인 조선인은 전체 유권자의 55%를 차지했다.

더구나 선거 참여율에서도 민족별로 차이가 난다. 일본인의 경우 유권자의 87%가 투표한 데 비해 조선인의 경우 유권자의 60% 정도만이 참여하였다. 이 선거가 3·1운동이 일어난 다음해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조선인의 참여율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선거가 보통선거가 아닌 부세 5원 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참여율이 높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920년 선거에서 당선자는 모두 30명(조선인 12명, 일본인 18명)이었다. 최다 득표자는 219표를 얻은 최한우였고, 최저 득점자는 31표를 얻은 고무라(河村千治郎)였다. 〈표 2〉와 〈사진 1〉을 통해 당선자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20년 경성부협의회 선거 당선자 명단

조선인(12명)					일본인(18명)				
번호	성명	연령	득표	직업	번호	성명	연령	득표	직업
1	崔翰宇	31	219	회사중역 (대동인쇄 취체역)	1	志崎信太郎	52	200	회사중역(志崎組 운영)
2	金錫泰	53	145	회사중역(창문사 전무)	2	肥塚正太	55	194	농업(목축업)
3	元悳常	38	145	전문직(의사)	3	小川勝平	45	188	전문직(변호사)
4	李康爀	37	139	회사중역 (경성製絲 감사역)	4	古城梅溪	61	152	전문직(의사)
5	韓翼教	35	134	회사중역 (한성은행 이사)	5	大和與次郎	50	141	회사중역 (조선운수계산 사장)
6	金奎源	42	131	회사중역 (共同무역 사장)	6	大村百藏	49	135	전문직(기자)
7	方奎煥	34	130	회사중역 (무학주택 경영합자회사 운영)	7	高井建次	38	134	회사중역 (동아상공 취체역)
8	李世賢	27	105	회사중역 (동양물산 지배인)	8	小杉謹八	43	120	회사중역(小杉組 운영)

조선인(12명)					일본인(18명)				
번호	성명	연령	득표	직업	번호	성명	연령	득표	직업
9	劉秉珉	48	85	전문직(의사)	9	新田耕市	39	113	회사중역 (활동사진관大正館 운영)
10	芮宗錫	49	68	회사중역 (조선일보 발행인)	10	三好和三郎	54	99	회사중역 (조선토지경영 취체역)
11	全聖旭	44	65	회사중역 (조선상업은행 지점장)	11	大垣丈夫	60	81	전문직(기자)
12	申章熙	31	35	상업(질옥업)	12	田中半四郎	50	66	회사중역(田中組 운영)
					13	三上 豊	53	50	회사중역 (동대문금융조합 감사)
					14	篠崎半助	39	48	상업(篠崎상점)
					15	安藤 靜	57	47	회사중역 (경성통신사 사장)
					16	秋吉富太郎	60	37	상업(貸家業)
					17	戶部 巖	36	37	상업(인쇄업)
					18	河村千治郎	50	31	상업(운송업)

출처: 1920년 ≪매일신보≫ 참조. 1923년 ≪京城彙報≫, ≪매일신보≫, ≪동아일보≫ 참조.
비고: 1922년 1월 15일 학교조합 의원이기도 한 戶部巖은 봉천으로 전임하면서 사직함.

당선된 의원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20대가 1명(조선인), 30대가 10명(조선인 6, 일본인 4), 40대가 7명(조선인 4, 일본인 3), 50대가 9명(조선인 1, 일본인 8), 60대가 3명(모두 일본인)으로 평균 45세 정도였다. 그러나 민족별 평균 연령은 조선인 39세, 일본인 49세로 10년의 차이가 있었다. 조선인의 대부분은 30~40대로 젊은 편이었지만, 일본인의 경우에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50대 이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조선인의 경우 청년층이 다수 당선된 사실은 역으로 사회 명망층의 참여율이 저조했음을 의미한다.[8)]

8) 당시 조선인 사회 유력층의 선거 인식은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윤치호는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면, 군, 부, 도에서 돈을 모으는 방법에 국한된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고 하였다(김상태, ≪윤치호일기≫, 역사비평사, 2001, 187~188쪽).

직업별로는 회사중역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는 금융, 인쇄, 제사(製絲), 무역, 주택, 언론, 운수 등 업종과 자금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 다음은 전문직이 6명인데, 의사와 기자, 변호사 등 1910년대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준다. 또한 상점과 운송, 질옥(質屋), 대가업(貸家業) 등의 상업 종사자가 5명이었고, 목축업 종사자가 1명 있었다.

1910년대 부협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예종석 1명이었다.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뀐 이후 대부분의 의원이 새롭게 구성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1920년대 경성부협의회가 1910년대와 인적 구성에서 단절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인 당선자 중에는 경성거류민단과 경성학교조합 등에서 활동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먼저 경성거류민단 의원의 경험이 있는 당선자는 오카와(小川勝平), 후로시로 바이케이(古城梅溪), 닛다 고이치(新田耕市), 미요시(三好和三郎), 다나카 한시로(田中半四郎), 아키요시(秋吉富太郎) 등 6명이다. 경성학교조합 의원이었던 당선자는 야마토(大和與次郎), 고스기(小杉謹八),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 다나카(田中半四郎), 고무라(河村千治郎) 등 5명이다. 이외에 상업회의소 의원이었던 다카이(高井建次), 고무라(河村千治郎) 등이 있으며, 조선인으로는 예종석이 있다.[9] 이러한 사실은 경성부협의회에서 경험이 많고 노련한 일본인 의원들이 활동범위를 넓히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1920년 경성부협의회 선거에서 일본인의 관심과 참여율이 두드러졌고, 다수의 일본인 당선자들은 연륜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일본인 협의원을 반드시 조선인보다 다수를 점하게"[10] 하여 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

9) ≪京城日報≫ 1920년 11월 23·24·25일에 실린 新議員 略歷(上)-(下)를 참고하였다.

10) "도평의원과 부와 주요한 면의 협의원에는 일본인 협의원을 반드시 조선인보다 다수를 점하게 하여서 여하한 경우에든지 일본인의원의 의사로써 그 기관의 의사를 作하려 함이니, 이는 조선인의원이 혹시 당국의 제의에 맹종치 아니할 경우에는 한시던지 일본인의원을 조정하여 이를 壓過하려는 세심에서 出함이라"(〈(기괴한 지방제도(3)) 立案의 本意가 邦邊에 在한가〉 ≪동아일보≫ 1920년 8월 26일).

이것이 조선인 부협의회원의 발언권을 최소화하려는 식민당국의 의도였을 것이다.[11]



<사진 1> 1920년 경성부협의회 당선자 모습

출처: ≪매일신보≫ 1920년 11월 22일.

11) 〈(기괴한 지방제도(4)) 立案의 本意가 邦邊에 在한가〉 ≪동아일보≫ 1920년 8월 29일.

2) 1923년 선거 현황과 추이

1923년 제2회 부협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해 1월 경성부의 유권자 수는 전회에 비해 10% 증가한 4만 6,000여 명으로 추정되었다.[12] 경성부는 7월부터 유권자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10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확정된 유권자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시하였다. 이를 두고 ≪매일신보≫는 "어떠한 사람이 과연 선거될 자격이 있고 없음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며, 또는 특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의 권리 유무를 명백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13]하다며 선거를 독려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적극 바라는 사회 분위기였다. ≪동아일보≫는 "대정9년도 선거 당시에는 신제도의 시행 당초가 되어 부민의 부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여 기권자도 상당히 있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아서는 부민의 의사를 완전히 부제 행정에 반영하기 어려움으로 유권자 각위는 선거권을 행사하여 민의를 대표함에 충분할만한 인물을 협의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4]

11월 20일, 제2회 부협의회 선거가 남대문소학교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실시되었다.[15] 다음의 〈사진 2〉는 선거회장의 외관 사진인데, 입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깃발이 다수 눈에 띄어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 후보자 사와다(澤田淸)의 깃발이 크게 보이고, 선거회장 앞에는 천막을 두른 선거사무소도 보인다. 후보자와 참모진은 이 사무소 안에 탁자와 다과상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선거 현황을 관망하며 투표하러 온 사

12) 〈京城府協議 選擧, 有權者 四萬六千餘名〉 ≪매일신보≫ 1923년 1월 11일.

13) 〈京城府協議員 選擧 名簿 製作〉 ≪매일신보≫ 1923년 7월 1일 ; 〈有權者 名簿 縱覽 必要〉 ≪매일신보≫ 1923년 10월 25일.

14) 〈選擧權과 納稅에 對한 關係, 京城府當局者談〉 ≪동아일보≫ 1923년 11월 8일.

15) 〈府協議 選擧日〉 ≪매일신보≫ 1923년 11월 10일.

람들을 접대하느라 분주하였다.[16]



<사진 2> 1923년 선거회장

출처: ≪매일신보≫ 1923년 11월 21일.

이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41명이었다. 이 중 조선인이 21명, 일본인이 20명이었다.[17] 1920년 선거에 비해 후보자는 6명이 증가하였고, 조선인 후보자가 더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선인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도 맹렬해졌다. 다수의 후보자들은 참모와 운동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추진하며 선거 당일 자신의 득표수를 예상하는 여유도 보였다. 이때의 선거운동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호소가 아니라 자신에게 우호적인, 그래서 자신에게 득표해 줄만한 유권자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서 유용하게 활용한 것은 유권자 명부였다. 시내 각 대서소에서는 명부에 나온 유권자의 주소, 성명을 미리 확보, 인쇄하여 판매하였다.[18] 다음의 인용문에서 지난 선거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16) 〈當? 落? 누구는 안심, 누구는 비관〉 ≪매일신보≫ 1923년 11월 21일.

17) "수일 전까지 조선인 후보자 수효는 21명으로 대강 확정된 모양"(〈三日을 隔한 府議 選擧에 候補者는 續々 出現〉 ≪매일신보≫ 1923년 11월 17일). 선거 전날까지도 후보자의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거 당일 최종 조선인 후보자는 21명이었다.

18) "주소와 성명을 알아 기억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이런 기미를 엿본 시내 旭町 일정목 외 代書所(日人經營)에서는 유권자의 주소 성명을 미리 알아가지고 이것을 인쇄하여 일반 후보자에게 파는 터"(〈有權者 名簿 五百券이 팔려〉 ≪동아일보≫ 1923년 11월 18일).

협의원의 수효는 삼십 명인데 후보자로 나타난 사람은 사십일 명이 되어 결국 그 중의 열한 명은 싫던지 좋던지 낙선이 되지 아니하면 못될 형편인 고로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은 저마다 당선이 되어 보려고 혹은 단체의 응원을 청하며 혹은 개인으로 운동하노라 하고 책사와 모사가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죽을 힘을 다하는 광경은 실로 전에 보지 못하던 白熱的 경쟁이 되었으며 (하략)[19]

다음의 〈표 3〉은 1923년 선거 현황이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15명씩 당선되어 동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1920년 선거에서는 조선인이 12명 당선되었던 바 있다.

<표 3> 1923년 경성부협의회 선거 현황 (단위: 명)

府	정원	조선인					일본인				
		후보자	당선자	인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	당선자	인구	유권자	투표자
경성	30	21	15	207,496	4,941	3,249	20	15	76,188	4,361	3,489

출처: ≪동아일보≫, ≪매일신보≫ 참조. 민족별 인구는 경성부,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 1932 참조.
비고: ≪경성휘보≫ 26(1923.12)에는 유권자 9,358명, 기권 2,564명, 투표수 6,738(유효 6,610)표로 총수만 명시되어 두 신문(≪동아일보≫, ≪매일신보≫)을 참고하여 민족별로 정리함.

〈표 3〉에서 경성부의 조선인과 일본인 인구는 28만 3,684명이다. 이에 비해 유권자는 모두 9,302명으로 인구 대비 3.2%에 해당하며, 이 중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는 6,738명으로 72.4%를 차지하였다. 1920년 선거와 비교해 보면, 먼저 유권자 수가 약 2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호별세 신설과 소득세 증가로 연액 5엔 이상의 남성 납세자가 증가한 결과였다.[20] 또한 민족별 투표율도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일본인 투표율은 87%에서 80%로 감소한 반면, 조선인은 60%에서 65%로 증가하였다. 이전 선거에 비해 일본인의 관심이 적어진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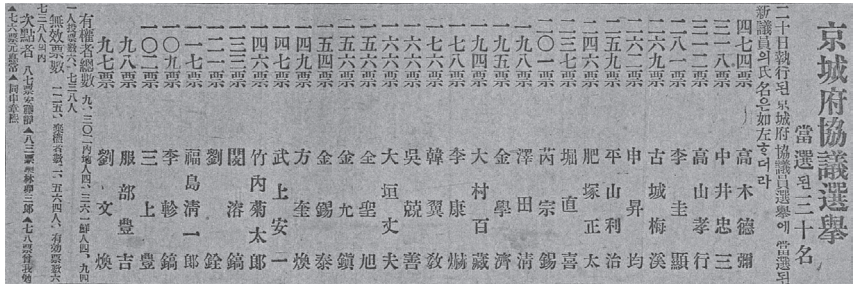
19) 〈四十一名의 運命이 定하든 그날, 府議 逐鹿戰의 喜劇悲劇〉 ≪매일신보≫ 1923년 11월 21일.

20) 1920년 호구수와 비교해 보면, 1920년에는 5만 4,614호(일본인 1만 6,199호, 조선인 3만 7,771호)였는데, 1923년에는 6만 3,863호(일본인 1만 8,936호, 조선인 4만 4,029호)로 16% 증가했다(京城府,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查書≫, 1932, 6쪽) ; 〈京城協議 有權者〉 ≪매일신보≫ 1923년 9월 14일 ; 〈選擧權者 激增〉 ≪동아일보≫ 1923년 9월 14일.

조선인의 경우에는 선거의 호응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선거 당일 오후 7시부터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날 개표장의 방청석에는 후보자의 운동원과 가족이 자리하여 개표 현장을 지켜보았다. 투표된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21] 밤 11시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 30명이 공개되었다. 〈표 4〉에서 최다 득표자는 474표를 얻은 토쿠야(高木德彌)였고, 최저 득표자는 97표를 얻은 유문환이었다.

<표 4> 1923년 경성부협의원 당선자 명단


京城府協議選擧
當選員三十名
二十日執行된 京城府 協議員選擧에 當選된 新議員의氏名은如左ᄒᆞ더라
四七四票 高木德彌
三一八票 中井忠三
三一二票 高山孝行
二八一票 李圭顯
二六九票 古城梅溪
二六二票 申昇均
二五九票 平山利治
二四六票 肥塚正太
二三七票 堀直喜
二〇一票 芮宗錫
一九五票 澤田清
一九四票 金學濟
一九四票 大村百藏
一七八票 李康勉
一七四票 韓翼敎
一六六票 吳兢善
一六六票 大垣丈夫
一六六票 金璟旭
一五六票 金允鎭
一四九票 方奎煥
一四七票 武上安一
一四六票 竹內菊太郎
一三三票 閔鎔溶
一二一票 劉鉉鎭
一〇二票 李軫鎬
九八票 福島清一郎
九八票 服部豊吉
九七票 劉文煥
有權者總數 九、三〇一人 內 男人四、三六一人、女人四、九四〇人
一人投票數 八、七二八人
無效票數 一二五、棄權者數 一、五四八、有効投票數 六七三八人 內
次點者 八十票 安藤助三郎 ▲八三票 栗林卯三郎 ▲七八票 貴我勉 ▲七六票 九鬼紋七 ▲同中途辭

출처: ≪매일신보≫ 1923년 11월 22일.

〈표 5〉에서 당선된 의원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30대가 7명(조선인 4, 일본인 3), 40대가 7명(조선인 6, 일본인 1), 50대가 12명(조선인 5, 일본인 7), 60대 3명(모두 일본인)으로 50대가 가장 많았다.[22] 평균 연령은 약 47세였는데, 조선인 44세, 일본인 51세로 지난 부협의회원의 평균 연령보다 다소 높아졌다. 주목할 점은 조선인 당선자의 연령은 높아진 반면 일본인 연령층은 낮아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최고 연장자는 64세의 후루시로(古城梅溪)였으며, 최연소자는 32세의 민용호로 기록되었다.

<표 5> 제2기 경성부협의회 선거 당선자 명단

21) 〈一喜一悲하든 傍聽席, 엇지할 수 업는 운명의 작란에〉 ≪매일신보≫ 1923년 11월 22일.
22) 일본인 의원 중 연령을 알 수 없는 福島淸一郎은 제외하였다.

조선인						일본인					
번호	성명	연령	구분	득표	직업	번호	성명	연령	구분	득표	직업
1	金錫泰	54	●	154	회사중역 (창문사 전무)	1	古城梅溪	64	●	269	전문직(의사)
2	李康爀	50	●	178	회사중역 (경성製絲 감사역)	2	大村百藏	52	●	194	전문직(기자)
3	韓翼教	38	●	176	회사중역 (한성은행 이사)	3	肥塚正太	58	●	246	상업(우유상)
4	方奎煥	35	●	149	회사중역 (무학주택경영합자 회사 운영)	4	大垣丈夫	63	●	166	전문직(기자)
5	芮宗錫	52	●	201	회사중역 (조선일보 발행인)	5	三上 豊	56	●	102	회사중역(동대문 금융조합 감사)
5	全聖旭	46	●	156	회사중역 (조선상업은행 지점장)	6	高木德彌	60	○	474	회사중역 (朝鮮製綿 취체역)
7	金允鎭	41	○	156	회사중역 (한일은행 지배인)	7	中井忠三	55	○	318	상업(양조업)
8	閔溶鎬	32	○	133	회사중역 (경성흥업신탁 취체역)	8	高山孝行	42	○	312	농업(목축업)
9	李軫鎬	56	○	109	전 관리 (총독부 국장)	9	平山利治	34	○	259	전문직(변호사)
10	劉文煥	50	○	97	전문직(변호사)	10	竹內菊太郎	35	○	146	전 관리 (통감부 철도국)
11	吳兢善	45	○	166	전문직(의사)	11	武上安一	52	○	147	전 관리 (총독부 기사)
12	金學濟	47	○	195	회사중역 (영흥사 취체역)	12	福島清一郎		○	117	회사중역 (용산금융조합이사)
13	劉 銓	41	○	121	회사중역 (경성製絲 취체역)	13	服部豊吉	59	○	98	회사중역(중앙 금융회사 사장)
14	李圭顯	38	○	281	상업 (곡물 무역상, 주류제조업)	14	堀直喜	37	○	237	전문직(변호사)

조선인						일본인					
번호	성명	연령	구분	득표	직업	번호	성명	연령	구분	득표	직업
15	申昇均	45	○	262	회사중역 (한성은행 지배인)	15	澤田淸	50	○	198	상업(요리점)

출처: 1920년 ≪매일신보≫, 1923년 ≪경성휘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참조.
비고: ○는 초선, ●는 재선을 의미함.

직업별로는 회사 중역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는 조선인이 11명으로 다수를 점했다. 이들은 주로 금융 분야에 종사했으며, 제사(製絲), 제면(製綿), 주택경영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문직이 7명이지만, 일본인 의원이 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의사, 변호사, 기자였다. 또한 통감부와 총독부의 전직 관리가 3명, 무역과 양조업, 요리점 등의 상업 종사자가 3명, 목축업 종사자가 2명이었다. 1920년에 이어 1923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의원은 모두 11명(조선인 6, 일본인 5)으로 전체 36%를 차지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의원은 19명이었다(조선인 9, 일본인 10).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사실은 총독부에 출입하는 신문기자단인 청구구락부가 당국에 재선거를 권고하면서 알려졌다.[23] 문제는 선거권이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선거였지만, 남자를 대신해서 여자가 투표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연로한 유권자의 대리로 젊은 사람이 투표하다가 발견"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24] 낙선한 후보자들은 이를 기회로 재선거를 주장했지만, 도키자네(時實) 경기도지사는 "선거에 당하여 부정 위법의 수단이 생겼다 함과 선거의 효력이라는 문제와는 항상 반드시 상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선거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국 낙선자들이 바라던 재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선거 결과

23) 〈府議選擧 無效로〉 ≪동아일보≫ 1923년 11월 27일.

24) 〈府議不正選擧問題〉 ≪매일신보≫ 1923년 11월 28일 ; 〈府議選擧不正投票問題〉 ≪매일신보≫ 1923년 11월 29일.

에 민감한 반응은 분명 1920년의 첫 선거와 달라진 점이다. 그것은 이전 선거에서 "일반 조선인 유권자가 대부분 몰간섭의 태도를 취했던 것"[25]과는 대조적으로, 요리점 회의 등 금품수수가 지적될 만큼 맹렬한 선거운동으로 나타났다.

3. 1920년대 전반 경성부협의회의 활동

1) 부협의회의 회의 안건

(1) 제1기 부협의회 자문안과 내용

부윤은 부 행정에 관한 사항 중 부 조례의 설치와 개폐, 부의 세입출예산 결정, 부채(府債), 세입출 예산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한 새로운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 기본재산 등 부의 재산 설치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부협의회에 자문하였다. 이외에도 부윤의 필요로 부(府)에 관한 사항을 부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었다.[26] 부협의회는 행정기관인 경성부의 자문기관이고, 부협의회원은 부윤의 자문에 응하는 명예직이었다.

정기적인 통상회의는 대체로 3월에 개최하였다. 이때 중요한 안건은 당해 연도 부의 세입출 예산안을 확정하는 일이었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경성부의 부정(府政) 계획이 세워졌다. 이외에도 부윤이 자문을 구하는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부협의회의 간담회가 소집되었다.[27]

---

25) 〈(사설) 府面協議員 改選〉 ≪동아일보≫ 1923년 11월 9일.

26) 〈變改된 지방제도〉 ≪동아일보≫ 1920년 7월 30일 ; 青柳綱太郎, ≪大京城≫, 朝鮮研究會, 1925, 24~25쪽 ; 서현주, 〈朝鮮末 日帝下 서울의 下部行政制度 연구 : 町洞制와 總代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181~182쪽.

27) 〈府協議會 開催〉 ≪매일신보≫ 1921년 3월 15일 ; 〈府協議會 開期〉 ≪매일신보≫ 1921년 3월 16일 ; 〈府協議會 第一日〉 ≪동아일보≫ 1921년 3월 19일.

첫 회의는 1921년 3월 7일 학교조합 회의장에서 임시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부협의회 조례 폐지의 건, 부협의회 규정 설정의 건, 1920년 경성부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의 건, 경성부 수입증지 조례 설정의 건 등이 안건으로 제시되었다.[28] 이어 당해 연도 통상회의는 3월 17일부터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1921년 경성부협의회 통상회의 자문 안 (3.17~3.24)>[27]

제37호 호별세 조례 설정의 건
제38호 국세 및 지방비 부과금 부가세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의 건
제39호 부세 특별세 조례 중 개정의 건
제40호 부리원 조례 설정의 건
제41호 부협의회원 비용 변상 조례 중 개정의 건
제42호 용산 배수 공사비 기채의 건
제43호 貸주택건축비 기채의 건
제44호 용산 배수공사비 계속 年期 및 지출 방법의 건
제45호 시장자금 적립금 설치 및 관리 규정 폐지의 건
제46호 대정10년도 세입출 예산
제47호 금고사무 취급 계약의 건
제48호 일시 차입금에 관한 건

3월 17일 첫날 회의에는 24명의 협의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29] 회의가 공개된 1923년 3월 이전까지 회의내용은 신문을 통해 간단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40~41호, 45호, 48호의 각 의안이 가결되었지만, 제37호 '호별세 조례 설정의 건'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자 5명(田中半四郎, 小川勝平, 전성욱, 이세현, 戶部巖)을 위원으로 선출하여 이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였다.[30]

회의기간 동안 호별세 조례 제정 논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마지막 날인 3월

28) 〈府協議員 會議 제1일〉 ≪동아일보≫ 1921년 3월 8일.
29) "회의를 공개치 아니하는 것이 자기 모순이다"(〈횡설수설〉 ≪동아일보≫ 1923년 1월 9일).
30) 〈경성부협의회, 질문 百出議事 진행난〉 ≪매일신보≫ 1921년 3월 20일.

24일 위원장 다나카(田中半四郎) 협의회원의 보고가 있은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31] 심의 과정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전의 가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경성부의 호별세에 대해서는 연간 1,000원 이상의 소득자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32] 이를 통해 경성부의 세입 예산은 약 32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호별세가 10만 원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33] 또한 '부세 특별세 조례 중 개정의 건'에서는 그동안 현금으로 납부하던 각종 수수료(묘지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과료(過料), 기타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34]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921년에는 총독부에서 관리하던 '수도이관 문제'을 두고 인천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부협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1922년에는 통상회의에 앞서 3월 7일, 경성부 세입출 추가 예산, 수도 운영에 관한 조례 설정과 예산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수도에 관한 운영과 경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한다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정10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추가의 건, 특별회계 설정에 관한 건, 수도급수 조례 설정의 건, 수도 부외(府外) 급수 조례 설정의 건, 경성부 특별회계 수도비 예산, 경성부 특별회계 수도비 예산, 수도비 기채(起債)의 건, 이원(吏員) 조례 중 개정의 건, 봉급 조례 중 개정의 건, 숙사료(宿舍料) 지급조례 중 개정의 건 등이었다.[35] 당시 수도 이관 이후 예산과 운영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해 경성부협의회의 통상회의는 3월 15일부터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대정

31) 〈府協議 最終日〉 ≪동아일보≫ 1921년 3월 26일.

32) 〈주택본위로 소득에 금일 발포할 경성부 신호별세, 1년 소득 천원 이상에만 징수〉 ≪동아일보≫ 1921년 6월 10일.

33) 〈휴지통〉 ≪동아일보≫ 1921년 3월 9일.

34) 〈京城府의 新收入證紙法〉 ≪동아일보≫ 1921년 2월 27일 ; 〈京城府의 協議會〉 ≪매일신보≫ 1921년 3월 9일 ; 〈휴지통〉 ≪동아일보≫ 1921년 3월 9일.

35) 京城府, 〈府協議會〉 ≪京城彙報≫ 5, 1922.3, 20쪽 ; 〈京城府協議會〉 ≪매일신보≫ 1922년 3월 5일 ; 〈京城水道豫算〉 ≪동아일보≫ 1922년 3월 8일.

11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기타 조례에 관한 신설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36]

<1922년 경성부협의회 통상회의 자문 안 (3.15 ~ 24)>

제15호 부세 특별소득세 조례 설정의 건
제16호 부세 특별세 조례 중 개정의 건
제17호 공원사용 조례 중 개정의 건
제18호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제19호 가축시장 사용조례 개정의 건
제20호 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제21호 府吏員 조례 중 개정의 건
제22호 부리원 봉급 조례 중 개정의 건
제23호 경성부 여비지급 조례 중 개정의 건
제24호 부리원 사망급여금 조례 중 개정의 건
제25호 대정11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의 건
제26호 국세 및 지방비 부과금 부가세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의 건
제27호 호별세 조례 중 개정의 건
제28호 府금고 취급 계약의 건
제29호 일시 차입금 차입의 건
제30호 屠獸場 사용료 조례 중 개정의 건

이 회의에서 부의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다만 세입예산 중 시가지세 부가세율의 감소로 세입의 감축이 결정되었다. 시가지세는 도시(시가지) 지역에 대한 국세 과세 세목이고, 시가지세 부가세는 각 도의 도령(道令)에 따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에서 규정한 지방세였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 도세, 부세로서 같은 세목의 시가지세(부가세)로 인해 누층적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었다.[37] 특히 1922년 총독부가 지세를 지가의 천분의 7에서 천분

36) 京城府, 〈府協議會 記事〉 ≪경성휘보≫ 6, 1922.4, 17쪽.
3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재정사≫, 2007, 549~550쪽.

의 9.5의 비율[38]로 개정함에 따라 각종 부가세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협의회는 시가지세 부가율을 본세의 백분의 60에서 50의 비율로 변경하여 부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39]

9월 25일 회의에서는 당해연도 추가 예산의 건과 가축시장 건설지 매수계약의 건, 부유토지(위생실행부 토지건물) 교환의 건,[40] 특별회계 수도비 세입출 예산 추가 경정의 건이 안건으로 제시되었고, 12월 22일에는 간담회를 통해 수도의 동력을 증기에서 전기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였다.[41]

이 해에 주목할 만한 것은 자문기관에 불과한 부협의회를 의결기관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부협의회는 1914년 '부제(府制)' 실시로 부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의원들의 자치조직인 거류민단을 해체하고 부내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일한 행정 지배하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42]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완전한 제도화와 그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일본인 의원들은 부협의회 의결권 확보를 위해 조선인 의원들과 협력하였다.[43]

1923년 신년부터 경성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경성부청 신축지에 관한 안건이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경성부청의 신축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

---

38) 〈시가지세 개정〉 ≪동아일보≫ 1922년 4월 1일.

39) 〈부협의회 종료〉 ≪동아일보≫ 1922년 3월 26일 ; 〈府稅 부가세 증액〉 ≪동아일보≫ 1922년 4월 21일.

40) 위생 실행부 이전 건은 계동 소재 부유지 6,657평 중 약 4,000평을 사립 휘문고등보통학교와 광희문 밖 부지 4,571평 외 3개소 토지 건물과 교환하여 이전하려는 것이었다(〈위생실행부 이전〉 ≪동아일보≫ 1922년 9월 26일).

41) 〈水道 電化 協議〉 ≪동아일보≫ 1922년 12월 23일.

42) 기유정, 〈1920년대 京城의 '有志政治'와 京城府協議會〉 ≪서울학연구≫ 28, 2007, 8~10쪽.

43) 경성부협의회원들은 아리요시(有吉) 정무총감을 만나 '全道 12府의 부협의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치제 시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무총감은 자치제도의 시기는 明言키 불능하다고 답변하였다(〈부협의원 대표 정무총감 방문〉 ≪동아일보≫ 1922년 9월 3일 ; 〈전선 부협의원회 결의권 운동〉 ≪동아일보≫ 1922년 8월 7일 ; 〈부협의원의 결의권 운동〉 ≪동아일보≫ 1922년 8월 9일 ; 〈부협의회 운동〉 ≪동아일보≫ 1922년 8월 11일).

인가의 문제였다. 2월 3일에 열린 부협의회에서 '다수가결'로 남대문소학교 부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논의되자,[44] 이에 대해 "부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당국"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다.[45] 이 문제는 도시발전과 관련한 향후 이권을 일본인에게 넘겨주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선인 부협의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신청사의 부지는 경성일보사를 매수한 자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되었다.[46]

이해 통상회의는 3월 21일에 시작되었다.[47]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회의는 이때부터 공개회의로 전환되었다.[48] 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부협의회원들의 질의 내용과 부윤을 포함한 실무진들의 답변이 신문을 통해 공개되었고, 기자들은 방청기(傍聽記)를 정리하여 회의 내용과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다음은 1923년 3월 회의의 안건이다.

<1923년 경성부협의회 통상회의 자문 안 (3.21~30)>

제6호 대정11년도 세입출 예산 更正의 건
제7호 용산 배수공사비 기채 차입방법 및 상환방법 변경의 건
제8호 부리원 조례 중 개정의 건
제9호 부리원 봉급 조례 중 개정의 건
제10호 부리원 숙사료 조례 중 개정의 건
제11호 부리원 여비 지급 조례 중 개정의 건
제12호 부리원 退隱料 조례 설정의 건
제13호 부리원 유족 부조 조례 설정의 건

44) 〈경성부청 신축장소 略定〉 ≪매일신보≫ 1923년 2월 5일.

45) 〈부청 위치 문제, 부민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당국〉 ≪동아일보≫ 1923년 2월 8일.

46) 〈부청 기지는 京日社에〉 ≪동아일보≫ 1923년 2월 15일.

47) 〈경성부협의회〉 ≪매일신보≫ 1923년 3월 20일 ; 〈금일 협의회에서 부청기지 결정〉 ≪동아일보≫ 1923년 2월 24일.

48) "종래 부협의회는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금회부터 방청을 허락"(〈府協議會に於てる府尹の大正十二年度豫算概說〉 ≪경성휘보≫ 18, 1923.4, 3쪽) ; 〈府協議會 公開, 來三月부터〉 ≪동아일보≫ 1923년 2월 4일).

제14호 퇴직급여 조례 중 개정의 건
제15호 부리원 退隱料 유족 부조료 납부금 조례 설정의 건
제16호 부리원 退隱 및 유족 부조료 납부금의 기금 규정 설정의 건
제17호 가축시장 예비비 기채의 건
제18호 간선도로 개수공사비 계속 年期 및 지출방법
제19호 간선도로 개수공사비 기채의 건
제20호 부세입 증지 조례 중 개정의 건
제21호 부세 특별세 조례 중 개정의 건
제22호 공설시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제23호 府 금고 사무취급 계약의 건
제24호 府 금고 담보규정 개정의 건
제25호 일시 차입금의 건
제26호 대정12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의 건
제27호 특별회계 수도비 기채의 건
제28호 대정12년도 특별회계 수도비 세입출 예산의 건
제29호 기본재산 처분의 건

3월 21일 다니 다키마(谷多喜磨) 부윤은 본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반 경제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긴축주의를 채택했음을 알리며 회의를 시작하였다. 세입에 있어서는 공설시장 점포와 토지사용료, 〈호적령〉 개정에 따른 호적수수료 수입을 신설하고, 세출에는 경비의 팽창을 피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예를 들어 토목비 중 도로 개수 및 수선, 오물처리 사업, 가축시장의 개량, 경비비 증액 등이 포함되었다.[49] 부의 중대한 간선도로의 개선은 동대문~종로~태평통~이촌동 간 4,743칸과 덕수궁~황금정통~광희문 간 1,610칸 등의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오물소제비는 오물을 신속히 수거하기 위해 종업원을 증가시키고 종사원의 배치를 고려하여 전년보다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북부와 남부에 대한 지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방규환 의원은 북

49) 〈府協議會に於ける府尹の大正十二年度豫算概說〉 ≪경성휘보≫ 18, 1923.4, 3~4쪽.

부의 인구가 남부보다 많기 때문에 배출되는 오물의 용량도 많은데, 부 위생과에서는 오물처리 마차를 남부에 많이 배치한다고 지적하면서 남북 균등의 시설을 요망하였다.[50] 이에 대해 코시카와(越川) 위생주임이 "북부는 상업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물이 적다"고 답변하자, 다시 방규환 의원은 "북부 주민은 조선인이 대부분인데 야채, 기타 식료품의 원료가 발생하는 오물[塵芥]이 남부보다 많음은 누구라도 시인하는 바인즉 지금의 답변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재차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경성 도시개발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북부의 차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이에 대한 조선인 의원의 항의성 질의에 부의 실무자가 이를 무시하며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1]

이처럼 제1기 경성부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부정(府政)에 협력하기도 했지만 민족별 갈등을 표출하는 공론장이 되기도 했다. 의원들은 총독부의 직영사업이던 수도를 이관 받는 문제에서 서로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갔지만, 경성부 신청사의 장소 선정에서는 압도적으로 일본인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조선인 의원은 식민지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2) 제2기 부협의회 자문안과 내용

1923년 11월의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자들은 경성전기의 독점적 사업을 부영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두고 찬반론을 펼쳤다. 다니(谷) 경성부윤이 "부민의 부담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든지 재론될 여지가 있었다.[52]

---

50) 〈경성부협의회 제4일〉 ≪매일신보≫ 1923년 3월 28일 ; 〈경성부협의회 제8일〉 ≪매일신보≫ 1923년 4월 1일 ; 〈부 예산안 토의 제8일〉 ≪동아일보≫ 1923년 4월 1일.

51) 기유정, 앞의 논문 2007, 16쪽.

52) 〈電氣事業 移營論이 新選 부협의원 간에 논의중〉 ≪매일신보≫ 1923년 12월 2일 ; 〈電氣의 府營問題〉 ≪동아일보≫ 1923년 12월 3일.

<1924년 경성부협의회 통상회의 자문 안(3.22~4.8)>[53]

1. 대정12년도 세입출 예산 추가의 건
2. 府吏員 조례 중 개정의 건
3. 부리원 봉급 조례 중 개정의 건
4. 부리원 숙사료 지급 조례 중 개정의 건
5. 경성부 여비지급 조례 중 개정의 건
6. 府稅 특별세 조례 중 개정의 건
7. 국세 및 지방세 부가세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의 건
8. 경성부 간선도로 개수공사비 계속 연한 및 지출방법 설정의 건
9. 경성부 간선도로 개수공사비 기채의 건
10. 경성부 가축시장 사용조례 개정의 건
11. 대정13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의 건
12. 부 금고 사무 취급계약의 건
13. 일시 차입금의 건
14. 경성부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의 건
15. 뚝도수원지 동력변경 변경비 계속연한 및 지출방법 설정의 건
16. 뚝도수원지 동력변경 기채의 건
17. 수도배수관 布設替 공사비 기채의 건
18. 대정13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수도비 세입출 예산의 건
19. 권리 포기의 건

1924년의 통상회의는 3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회의 첫날 방청석에 (서부) 이촌동 주민들이 참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결의권도 없는 협의원"[54]들 뿐만 아니라 총독부와 경성부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이촌동 제방 문제를 진정한 바 있다. 이촌동은 1920년 큰 홍수로 침수된 지역이었다. 함께 침수된 용산 일대에는 제방과 방수공사가 한창이었다. 이 제방은 용산의 철도공장과 서부이촌동을 경계로 축조되었고, 이촌동은 제방 밖으로 제외되었다. 이에 따른 이촌

53) 〈諮問案 內容〉 ≪京城日報≫ 1924년 3월 21일.
54) 〈府議雜觀〉 ≪동아일보≫ 1924년 3월 24일.

동 주민들의 진정에 대해 총독부는 이촌동 주민들을 이주시킬 방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55]

3월 24일 열린 부협의회에서 이촌동 문제는 지역차별의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당연히 유전과 방규환 등 조선인 의원들이 "수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중요한 것은 오무라(大村), 다케우치(竹內) 등 일본인 의원까지 나섰다는 점이다.[56] 오무라 하쿠조(大村百藏) 의원은 용산거류민단장을 역임한 인물이었고, 다케우치(竹內菊太郎) 의원은 용산치수회의 상임위원이었다. 이들의 발언은 용산지역의 주민대표라는 정체성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에 고무된 주민들은 부협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원들은 방규환, 다케우치(竹內)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총독부 당국을 방문하도록 했다.[57] 결국 이 문제는 의원들의 중재로 총독부가 경비 1만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58] 이렇게 부협의원들은 이촌동 제방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운동에 동참하였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경성부의 제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확보의 방안으로 경성전기의 부영화 논의가 되풀이되었다. 경성부의 발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은 시급한 문제이긴 했다. 호리(堀) 의원은 독점사업을 부영으로 해야 한다며 "경성부 30만 부민의 요망으로 백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루시로(古城)와 히라야마(平山) 의원도 부정조사회(府政調査會)를 조직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59] 이를 계기로 경성부는

---

55) 김영미, 〈동민운동의 주체분석 2: 이촌동〉 ≪동원과 저항≫, 푸른역사, 2009, 187~196쪽.

56) 〈남북차별을 攻駁〉 ≪동아일보≫ 1924년 3월 26일 ; 〈재작일 부협의회〉 ≪동아일보≫ 1924년 3월 28일.

57) 〈이촌동의 최후 진정, 주목할 토목비의 장래〉 ≪동아일보≫ 1924년 3월 30일.

58) 〈해결되지 못한 해결, 이촌동에 1만원, 방침도 없이 돈 만원만 떼어 놓고 어떻게든지 말막음이나 할 계획〉 ≪동아일보≫ 1924년 4월 19일 ; 김영미, 앞의 논문, 193쪽 ; 김종근, 〈일제하 京城의 홍수에 대한 식민정부의 대응 양상 분석 :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한국사연구≫ 157, 2012, 300~304쪽.

59) 〈府의 財源으로 電車府營主張〉 ≪동아일보≫ 1924년 3월 26일 ; 〈경성부의 제2일〉 ≪매일신보≫ 1924년 3월 26일.

도시개량비를 투입하여 전기사업의 부영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60]

이러한 의회석상의 논의와 달리 ≪동아일보≫는 일본어를 못하는 조선인 의원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내보냈다. 회의를 참관한 기자는 "일본말 모르는 조선인 대표가 있는 모양이다. 일본말 모르는 양반을 대표로 시인하고도 왜 통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 내지인들이 하는 노름판에 내지말도 모르면서 뛰어든 까닭을 알 수 없다"면서 "조선인 대표들은 그저 꿀먹은 벙어리모양으로 한마디도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으니"라며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61]

1925년 부협의회는 3월 24일 의장인 경성부윤이 개회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19명의 의원이 출석하였다.

<1925년 경성부협의회 통상회의 자문 안 (3.24 ~ 4.8)>[62]

1. 간선도로개수비 계속연기 및 지출방법 변경의 건
2. 간선도로개수공사비 충당채 차입금 상환 방법 변경의 건
3. 대정13년도 세입출 예산 변경의 건
4. 제2기 하수 政修費 계속 年期 및 지출방법의 건
5. 제2기 하수개수공사비 충당을 위한 기채의 건
6. 대정14년도 이후 마포동에 마포시장 설치 건
7. 대정14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의 건
8. 대정14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수도비 세입출 예산의 건9. 부 금고 취급을 위한 조선상업은행과 계약체결의 건 (외 3건)

부협의원들은 부윤의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입출 예산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간선도로의 개수, 하수 공사, 채석장의 부영문제, 명치정 도서관 부지 불하, 오물소제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펼쳐졌는데, 그 중 채석장의 부영문제가 주목된다. 동대문 밖 숭인면의 채석장은 원래 민간에서

60) 波多江千代藏, ≪京城府電氣瓦斯事業之公營に就て≫, 1931, 4쪽.

61) 〈府議 雜觀〉 ≪동아일보≫ 1924년 3월 24일.

62) 〈京城府協議會〉 ≪경성일보≫ 1925년 3월 25일 ; 〈京城府協議會〉 ≪동아일보≫ 1925년 3월 25일.

경영하던 것인데 1918년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총독부가 직접 운영했으나 1923년부터는 총독부와 경성부가 공동으로 경영하였다.[63] 이때 경성부는 석산(石山) 채굴권과 이에 따른 토지건물 및 기구 일체를 총독부로부터 무상 양여 받아 채석장을 직영하려 했다.[64]

1925년 1월 15일, 경성부는 총독부와의 협의를 거쳐 2월 1일부터 단독으로 채석장 운영하게 된다.[65] 이에 앞서 1월 31일 부윤은 부협의회를 소집하여 채석장 관련 예산안을 자문하였다.[66] 하지만 이 문제는 통상회의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거론되었는데, 이때 히라야마(平山) 의원은 채석장을 독점으로 운영하면 그에 따른 폐해가 속출한다며 반대하였다.[67] 하지만 부윤은 부청사 신축에 다수의 석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석재 가격의 조절이 필요하므로 채석장을 부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68] 이 문제는 의장인 부윤의 의지대로 통과되었다.

7월 8일에는 경성부 신탄 소채시장의 서린동 설치, 종로공설시장의 폐지, 경성부청사 신축비 연기와 지출방법 변경, 노량진과 뚝섬 수원지의 동력을 증기에서 전기로 변경[69]한다는 안건과 (을축년) 대홍수로 인한 수해비 세입출 예산 추가 경정을 위한 간담회가 소집되었다.[70] 8월 29일에는 수해복구와 관련한 부협의회가 있었고, 10월 15일에는 대정14년도 세입출 예산 추가, 경성운동장 사용

63) 〈재작일 부협의회〉 ≪동아일보≫ 1924년 3월 28일 ; 〈경성부의 제2일〉 ≪매일신보≫ 1924년 3월 26일.

64) 〈石山 採掘權은 京城府의 直營으로〉 ≪동아일보≫ 1924년 8월 6일.

65) 〈東門外 採石場, 경성부에서 단독으로 경영〉 ≪매일신보≫ 1925년 1월 23일 ; 〈採石場 府所有로 決定〉 ≪매일신보≫ 1925년 1월 23일.

66) 〈府協議員會 開催〉 ≪동아일보≫ 1925년 1월 28일.

67) 〈採石場の府營, 民業壓迫にはならぬと…府尹答へる, 京城府協議會(第三日)〉 ≪경성휘보≫ 1925년 3월 27일.

68) 谷府尹, 〈大正十四年度京城府豫算編成方針概要〉 ≪경성휘보≫ 42, 1925.6, 2쪽.

69) 〈전력공급은 금강전기회사 동력설비에만 6개월이 걸려〉 ≪매일신보≫ 1925년 12월 18일.

70) 〈부협의회 개회〉 ≪매일신보≫ 1925년 7월 7일.

료, 여비지급 규정 중 개정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다.[71] 10월 15일 개장식을 한 경성운동장은 조선신사 진좌식 축하경기와 함께 일반에 개방되었다.[72]

1926년 경성부협의회는 2월 27일부터 개최되었다. 첫날 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18명이었고, 다음의 자문안 4호부터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2월 20일 임시회의에서는 자문안 제1호 대정14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추가 건, 제2호 인천수도 노량진 수원지 동력변경 계속 연기 및 지출방법 변경, 동 수원지의 전력수급에 관한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와 계약체결 동의 건, 제3호 일용품시장 부지 차입 건 등이 가결되었다.[73][74]

<1926년 경성부협의회 통상회의 자문 안(2.27~3.16)>[74]

제4호 부리원 봉급조례 중 개정 건
제5호 부세특별세 조례 중 개정 건
제6호 助興稅 조례 중 개정 건
제7호 屠獸場 조례 중 개정 건
제8호 오물소제비 계속비 설정 건
제9호 오물소제비 충당채 차입 건
제10호 부 금고 사무취급계약 체결 건
제11호 일시차입금 건
제12호 경성부 특별회계 폐지 건
제13호 대정15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건
제14호 공사 청부, 노력 공급 및 물건의 매매, 貸借에 관한 조례 중 개정 건
제15호 대정15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추가 건
제16호 경성운동장 사용 조례 중 개정 건
제17호 공설일용품시장 사용 조례 중 개정 건

이 회의에서 경성전기의 부영화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었다. 첫날 회의는 예

71) 〈경성부협의회 來15일 개최〉 ≪매일신보≫ 1925년 10월 4일.
72) 〈京城運動場 使用規定〉 ≪경성휘보≫ 1925년 10월 7일.
73) 〈京城府協議會 臨時會〉 ≪경성휘보≫ 51, 1926.3, 24~25쪽.
74) 〈京城府協議會 通常會〉 ≪경성휘보≫ 51, 1926.3, 25~26쪽.

산 심의에 앞서 전성욱 의원이 "경전문제로 전시민이 맹렬이 경전의 횡포를 부르짖"[75]음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미 1922년에 부내 전차를 부영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1924년에도 전차사업의 부영화 주장이 부협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76] 1926년 들어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문제가 공론화된 것을 계기로 3월 1일 부협의회에서 의원들은 전기사업 부영에 대한 경성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물었고, 부윤은 "적당한 시기"에 해결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77] 3월 5일 또다시 터져 나온 경성전기 부영화 논의에서 "도시계획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전차 부영문제"가 경성부의 재원을 풍부하게 해줄 방편이라는 의원들의 주장에 회의장은 맹렬한 기세로 달아올랐다. 결국 부윤은 간친회에서 논의하자며 회의를 마무리해버렸다.[78] 하지만 다음날 회의에서 경성전기의 세금 증액 문제는 다음과 같이 재론되었다.

> 의원 측으로부터 말하기를 경전은 전차로 수입이 매년 170만원에 달하고 전등으로 280만원에 달하고 와사로 30만원에 달하여 매년 수입이 410만원에 달하는데 이 세금은 너무 적으니 더 오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경전문제로 민론이 분분하며 또 모든 폭리 죄상이 신문지상으로 폭로된 이때에 세금을 가벼이 부가하는 것은 결국 부까지 의심 아니할 수 없으니 경전을 부영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올리라고 이곳저곳에서 의론이 빗발치듯.[79]

하지만 총독부의 규정 이상으로 증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경성부의 입장 표명에 분위기는 진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1930년대 들어 경성부협의회

75) 〈경전 문제는 동감이나〉 ≪매일신보≫ 1926년 3월 1일.

76) 〈電車府營問題〉 ≪동아일보≫ 1922년 8월 21일 ; 〈부의 재원으로 전차부영 주장〉 ≪동아일보≫ 1924년 3월 26일.

77) 〈京城府協議會 제1일〉 ≪매일신보≫ 1926년 3월 1일 ; 〈전기부영은 이때가 절호기〉 ≪동아일보≫ 1926년 3월 3일.

78) 〈전차부영문제로 의장은 일시 騷然, 결국 간친회에서 의논키로〉 ≪매일신보≫ 1926년 3월 7일.

79) 〈京電增稅問題로 白熱的 大舌戰〉 ≪매일신보≫ 1926년 3월 8일.

가 의결기관인 경성부회로 바뀐 직후 재가열되었다.

1926년 경성부협의회는 3월 16일에 종료되었다. 당해 예산안과 그에 따른 안건 이외에도 화원정 공설시장 건축문제, 부리원 봉급 인상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80] 의원들은 도로가 불완전해 사고가 잦은 청계천변 도로 개수를 질의했지만, 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81] 또한 방규환 의원이 남부에 비해 북부 종로에 쓰레기가 쌓여 있음을 두고 이는 인부들의 잘못이 아닌 감독의 불찰이라며 부 당국을 비난했고,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같은 부민인데 차별은 무엇?"이라며 민족차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82]

이처럼 제2기 부협의회에서는 경성부의 발전 방향과 속도에 따른 갈등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생활터전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활동도 진행되었다. 민족차별로 부각된 이촌동 제방 문제에서 조선인 의원들은 지역대표를 자청한 일본인 의원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펼쳤고, 도시계획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경성전기의 부영화에 힘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경성부의 직영사업이 된 숭인면 채석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쳐 자문기관의 한계를 드러냈다.

2) 주요 안건과 부협의회의 활동

(1) 상수도 이관 문제

1920년 개정된 지방제도의 취지에 따라 그동안 총독부에서 관리하던 수도, 전기, 토목 등의 사업 중 일부를 지방 행정기관에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되었

80) 〈화원정 시장문제 벽두부터 설전〉 ≪매일신보≫ 1926년 3월 1일 ; 〈일사천리로 의안 가결〉 ≪매일신보≫ 1926년 3월 3일 ; 〈통과된 예산, 수정한 대로 모두 통과〉 ≪매일신보≫ 1926년 3월 18일.

81) 〈위험한 청계천변도 예산이 없어 못 넓힌다〉 ≪매일신보≫ 1926년 3월 5일 ; 〈위험한 청계천 도로를 급속히 개수하라〉 ≪동아일보≫ 1926년 3월 6일.

82) 〈동일한 경성 내에 소제도 남북차별〉 ≪매일신보≫ 1926년 3월 6일 ; 〈조선인 차별은 불가〉 ≪동아일보≫ 1926년 3월 6일.

다.[83] 이것은 지방의 자치적인 행정 수행과 일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1921년 경성부는 부협의회를 소집하여 상수도 이관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때 논의의 핵심은 경기도에 있는 노량진 수원지의 배속 문제였다.[84] 원래 노량진 수원지는 인천의 상수도 공급을 담당하였고, 경성의 상수도는 뚝섬 수원지에서 공급되었다.

그러나 뚝섬 수원지의 물만으로는 경성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노량진 수원지에서 부족분만큼 추가 공급을 받고 있었다. 당시 노량진 수원지는 인천에 공급하고도 여유가 있었다.[85] 총독부에서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업이 이관되면서 노량진 수원지의 관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인천부에서는 경성부가 노량진 수원지를 관리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실행의원(부협의원, 학교평의원, 상업회의소 평의원 등)들이 당국에 진정하는 한편, 시민들도 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86]

1921년 5월부터 총독부, 경기도청, 경성부 등 관계 당국의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7월 18일 소집된 경성부협의회에서 수도 이관 문제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을 선출하였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루시로(古城梅溪), 위원에는 다나카(田中半四郎), 오가키(大垣丈夫), 오무라(大村百藏), 고에즈카(肥塚正

83) "경성수도를 비롯하여 지방의 수도문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어 혹은 총독부의 직접 경영 운영사업의 성질상 국유사업으로 경영할 것이 아니오, 각기 소관되는 부 혹은 면의 단체가 경영하는 것이 적당하다"(〈수도사업은 府面의 경영으로〉 ≪동아일보≫ 1921년 5월 18일).

84) 〈수도 이관 비밀 토의〉 ≪동아일보≫ 1921년 5월 24일.

85) "경성 수도의 현상으로 보면 뚝섬수원지의 물만으로 도저히 시내에서 소비되는 물을 대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수도로 말하면 인천부민들이 충분히 사용하고도 오히려 나머지 물이 있어서 매일 경성의 수통으로 보조하는 물의 분량이 12만 입방척 내지 15만 입방척이나 되는 터"(〈수도문제의 핵심은 오직 인천 수돗물은 경성에 보조할지 말지가 문제일 뿐〉 ≪동아일보≫ 1921년 6월 5일).

86) 〈수도문제로 시민대회, 인천시민들과 경성부의 경쟁〉 ≪동아일보≫ 1921년 6월 2일.

太), 전성욱, 이강혁, 한익교, 원덕상, 방규환 등이었다.[87] 7월 19일 위원들은 사이토(齋藤) 부윤, 사와무라(澤村) 제1과장, 아키타(秋田) 경기도 수도과장과 함께 노량진 수원지와 뚝섬 수원지를 시찰하고, 7월 22일 부협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에는 첫째, 노량진 수원지는 인천부에 이관하는 대신 경성부에 급수하기 위해 공사 중인 송수관을 완성하여 경성부에 설비를 양여할 것, 둘째, 인천부에 잉여 상수도에 한하여 1일 28만 입방척을 경성부에 송수해 줄 것 등이 포함되었다.[88] 사이토(齋藤) 경성부윤은 이 결의문을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요시마츠(吉松) 인천부윤은 경성부가 제시한 28만 입방척을 절대량으로 계산하지 말고, 설비 확장 이후 노량진 수원지의 안전 급수량에 따라 그 이분의 일을 보급하겠다고 하였다.[89] 이에 따라 8월 5일 부협의회에서 "(노량진) 수원지의 실제 급수능력의 반분(半分)으로 수정할 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90]

이처럼 수도 이관 문제는 총독부의 결정에 따라 경성부와 인천부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었고, 경성부협의회는 조사와 협의,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부협의회가 부정(府政)에 간여하며 행정보조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91]

(2) 경성부청사 신축기지 문제

1910년대 논의되어 왔던 경성부청사의 신축문제는 192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경성부청사는 일본영사관과 이사청으로 사용되다가 1910년부터 사용되었다. 이후 부의 사무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족으로 1914~1915년 두 차례에 걸쳐

87) 〈수도이관 문제〉 ≪동아일보≫ 1921년 7월 20일.

88) 〈경성 태도 결정, 인천에 수도 이관 승인〉 ≪매일신보≫ 1921년 7월 23일.

89) 〈수도 이관 문제〉 ≪동아일보≫ 1921년 8월 4일.

90) 〈수도 이관 문제, 5일 경성부협의회 가결〉 ≪동아일보≫ 1921년 8월 6일 ; 〈수도 이관 문제 해결〉 ≪매일신보≫ 1921년 8월 8일.

91) 기유정, 앞의 논문, 2007, 11~13쪽 참고.

증축되었지만, 집무의 불편함은 여전하였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히 납세 시기에는 매일같이 수백 명의 납세자가 드나들고, 민적 등 주민을 상대하는 부서는 항상 부민의 출입이 잦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방 하나조차 없어 특히 동절기라든가 우천 시에는 이들 출입자나 대기자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민적·주민·묘지·화장 관련 부서는 제일 불편한 위치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외부에서 온 사람은 접수처를 좀처럼 찾기 어려웠고, 복도는 좁기만 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늘어나는 부 사무에 어울리는 영구적인 대청사를 조만간 건축할 필요가 대두했다.[92]

위의 인용문은 1914년 부제 시행이 2년 지난 1916년의 상황이다. 이 무렵 신축예산 60만 원으로 신청사 건축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1919년에도 야마가타(山縣) 정무총감, 우사미(宇佐美) 내무부장관, 마쓰나가(松永) 도장관, 가나야(金谷) 부윤 등이 모여 재차 논의했지만[93] 해결하지 못했다.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된 것은 1922년이었다. 이해 5월, 경성도시계획연구회[94]의 총회에서 '경성부청사 신축 촉진의 건'이 가결되었고,[95]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성부청사 신축 실행위원에 다카하시 아야노스케(高橋章之助), 다카야마(高山孝行), 원덕상, 한익교, 후로시로(古城梅溪), 야마토(大和與次郎), 사토(佐藤虎次郎) 등 7명이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원덕상, 한익교, 후루시로(古城梅溪), 야마토(大和與次郎) 등 4명의 경성부협의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9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국역 경성부사≫ 3, 2014, 319쪽.

93) 長尾仟, 〈京城府廳舍新築の追憶〉 ≪朝鮮と建築≫ 5-10, 1926.10, 10쪽.

94) 이 기관은 정무총감 水野練太郎과 관민유력자 300여 명이 회원으로 구성된 반관반민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손정목, 〈京城府 廳舍 건축〉 ≪日帝强占期 都市社會相硏究≫, 일지사, 1996, 567~568쪽 ; 박세훈,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 ≪서울학연구≫ 15, 2000, 182~188쪽.

95) 〈都市計劃會 決議〉 ≪매일신보≫ 1922년 5월 3일.

은 아리요시(有吉) 총감을 방문하는 한편 총독을 비롯한 총독부 당국에 진정하여 찬성을 얻어냈다. 하지만 이것은 경성부가 청사 터를 방매하여 건축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비용도 부 당국에서 조달하라는 조건부 허가였다.

이에 따라 경성부청사의 신축 후보지가 부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1923년 2월 3일 개최된 부협의회에서 후보지로 대관정, 경성일보사 뒤편 공터(국유지), 남대문소학교 등이 거론되었다. 이 중 대관정 일대는 토지의 요철이 심해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이 예상되어 제외되었다.[96] 결국 신축기지는 다수의 일본인 의원들에 의해 남쪽의 일본인 상업지대에 가까운 남대문소학교로 결정되었다.

경성부청사 신축기지가 중요한 이유는 경성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였고, 이는 곧 경성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었다. ≪동아일보≫는 "명년도에 총독부청사가 경복궁 내에 준공이 되어 이전이 되게 되면 목하의 종로통과 태평통이 경성시가의 간선이 될 것은 명료한 사세(事勢)"이며, "경성의 중심이 될 남대문 밖보다 (중략) 경성의 상주적 세력 중심지가 될 북부방면에 시민생활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청사를 정함이 가(可)"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남대문 밖은 경성부의 현관인데, 생활의 중심이 되는 부청을 현관에 위치시키려는 속셈은 결국 일본인의 생활과 장래 발전을 위한 것이냐며 강하게 반대하였다.[97] 이렇게 경성부청사 신축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조합에서도 반대를 표명하자, 결국 경성부는 경성일보사 뒤로 변경하게 되었다.[98]

이 과정에서 조선인 의원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원덕상 의원은 남대문 쪽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찬성한 남대문 쪽으로 연구하려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답을 회피했고, 이세현도 "남대문편이나 경성일보사 뒤로나 각각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어느 쪽이 꼭 좋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라며 애매한

96) 田中半四郎, 〈新築が具體化するまでの經緯〉 ≪朝鮮と建築≫ 5-10, 1926.10, 34쪽.

97) 〈(사설) 京城府廳의 位置 問題〉 ≪동아일보≫ 1923년 2월 9일.

98) 〈府廳基地는 京日社에〉 ≪동아일보≫ 1923년 2월 15일.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 "아주 훨씬 북부로 들어와서 현재 재판소 자리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의견을 덧붙였다.[99]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그 과반 대다수가 일본인측 의원이 점령하여 소수 조선인측 의원은 그 의사를 관철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강조하였다.[100] 이처럼 부협의회의 운영은 일본인 본위로 흘러가 시설의 균형과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

4. 맺음말

1920년 〈부제〉 개정 이후의 경성부협의회는 정원 30명, 임기 3년, 선출직으로 구성되었다. 이때의 선거는 납세액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부협의회의 권한이 여전히 자문기관에 머물렀으며 의장인 부윤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더욱이 3·1운동 직후 첫 선거가 있었기 때문인지 조선인의 참여율은 높지 않았는데, 1920년 선거의 투표율은 일본인이 87%였던 데 비해 조선인은 60%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당선 비율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인이 18명, 조선인이 12명으로 동수의 균형이 깨졌다. 1910년대 부협의회가 조선인과 일본인 각각 8명씩 동수를 이룬 것에 비해 일본인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선출된 일본인 의원은 거류민단과 학교조합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았지만, 조선인 의원은 대부분 30~40대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인 명망층의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조선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1923년 선거에는 65%가 참여하였고, 당선자의 연령층도 40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때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15명씩 당선된 점이 주목된다.

1920년대 초반 부협의회는 비공개로 2년간 운영되었다가 1923년부터 일반에

99) 〈府의 態度 軟化〉 ≪동아일보≫ 1923년 2월 9일.

100) 〈(사설) 府面協議員의 改選〉 ≪동아일보≫ 1923년 11월 9일.

공개되었다.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주민의 선거로 구성된 부협의회가 비공개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배제한 채, 식민당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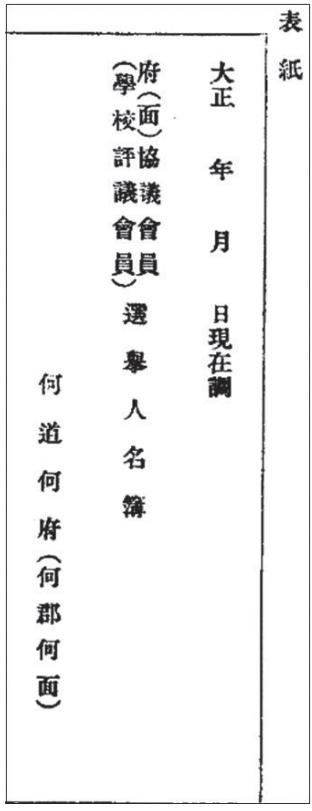
이 시기 경성부협의회의 중요한 활동은 부의 예산을 심의·결정하고, 부 조례를 설치·개폐하며, 부의 재정에 관여하는 것 등이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일 외에도 호별세의 부과방식 변경, 시가지세 부가세율 감소 등의 세제 개편도 중요한 안건이었다. 특히 1922년 총독부가 시가지세 비율을 증가시키자 부협의회는 '부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율의 감소를 가결시켰다. 하지만 시가지세는 '소유 가옥이나 토지'[101]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가세율의 감소는 결국 부협의회원을 포함한 자산가들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경성부협의회는 부 당국의 행정보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1920년 지방제도의 취지로 총독부에서 관리하던 사업 중 일부를 경성부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관 범위 등의 문제에 부협의회가 조사와 협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음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인 본위의 압력단체로의 기능도 하였다. 이는 부협의회가 경성부청사 신축기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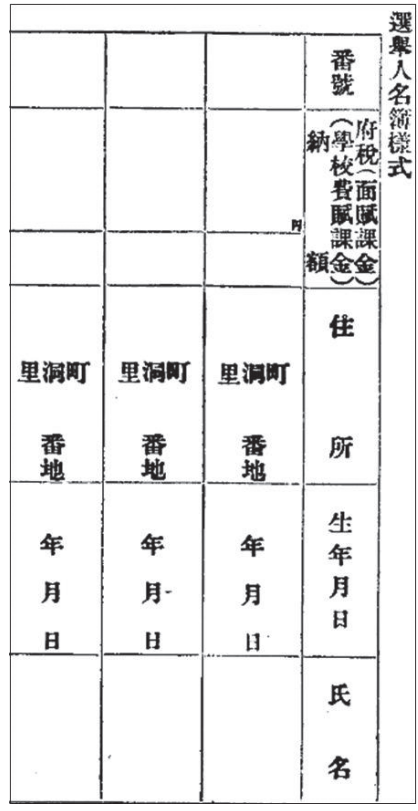
101) 〈今月內에 四十萬圓, 경성부민이 내일 세금총액〉 ≪동아일보≫ 1922년 10월 20일.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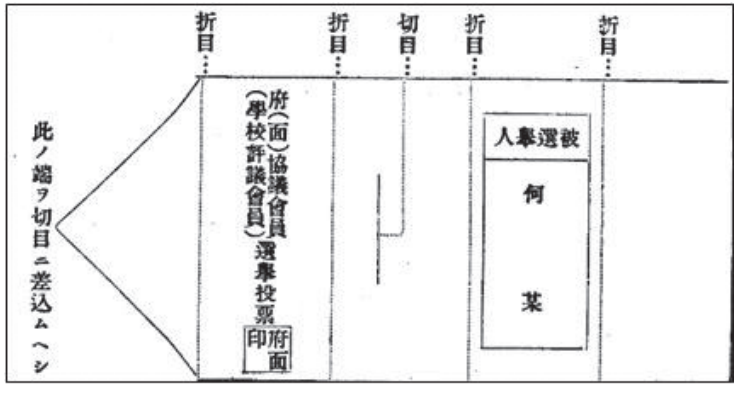
<그림 1> 선거인 명부 표지



<그림 2> 선거인 명부 양식



<그림 3> 투표용지



제2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제4장

1920년대 후반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전영욱(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박사수료)

1. 머리말
2. 1920년대 후반 경성부협의회의 성립
   1) 선거와 당선자 현황
   2) 주요 부협의회원의 이력
3. 1920년대 후반 경성부협의회의 주요 활동
   1) 회기별 자문안과 '자문'의 의미
   2) 주요 활동 - 공익질옥 설치를 중심으로
4. 맺음말

1. 머리말

1920년대의 '지방제도'는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문화정치'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의 핵심은 1910년대에 존재했던 부협의회 등의 자문기관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물의 선출 방식을 관선에서 민선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1920년 7월 29일 제령 제12호로 〈부제(府制)〉가 개정되었다.[1] 이에 따르면 "부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부(府)에 협의회를 두어야" 했고(11조), "협의회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했다(13조). 선거라는 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공직자'의 개념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로써 조선인과 일본인은 지역 또는 민족, 더 나아가서는 계급의 이해관계를 끌어안고 협력하거나 대립하면서 정치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2]

이 글에서는 192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부협의회 선거와 그에 따라 선출된 경성부협의회원의 일면, 또한 부협의회의 활동을 다룰 것이다.[3] 각각의 선거는 당시 경성부가 진행하고 있던 정치·경제·사회적 사안과 거기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조선인·일본인 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무대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형태는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협의회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부협의회는 경성부의 행정조직이었을 뿐 아니라 조선인·일본인 사회가 경성부를 향해 활용했던 '압력단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 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

1) 같은 날에 제령 13호도 공포되는데, 이는 〈면제〉에 관한 개정이었다.

2) 기유정은 이런 상황을 '유지정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기유정, 〈1920년대 京城의 '有志政治'와 京城府協議會〉 ≪서울학연구≫ 28, 2007 등을 참고. 〈부제〉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변화와 이것이 부협의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 책의 김제정, 〈1910년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참고.

3) 이후 본문에서 사용하는 부협의회는 모두 경성부협의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2. 1920년대 후반 경성부협의회의 성립

1) 선거와 당선자 현황

(1) 1926년 선거와 당선자

이 시기 이루어진 부협의회 선거를 정리하기 전에 우선 〈부제시행규칙〉의 여러 내용 중에서 '선거'와 관련된 규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4] 부협의회의 정원은 부(府) 인구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경성부의 경우는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은 30명이었다.[5]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관련되어서는 "제국신민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며, 연령 25세 이상의 남자, 1년 동안 부(府)주민이었으며, 그 부(府)에서 조선총독이 지정한 부세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할 때에 그 府의 협의회원의 선거권을 가지고 (후략) (2조의 2)"라는 내용과 "협의회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그 부의 협의회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2조의 3)"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부세의 납부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다. 체납자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2조의 2). 이 때문에 선거기간마다 연체된 부세를 납부하려는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줄을 이었고, 경성부도 이 기준을 강력하게 적용하였다. 다만, 관료나 경찰·검사·신직(神職)·승려·소학교 및 보통학교의 교원 등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었다(2조의 5). 투표는 1인 1표, 무기명으로 진행되었다(2조의 8).

---

4) 조선총독부령 제102호 〈부제시행규칙〉(≪조선총독부관보≫ 1929.7.29).

5) 정원은 5가지 기준에 의해 차등이 주어졌다. 인구 2만 미만의 부는 12명, 2만 이상 3만 미만의 부는 14명, 3만 이상 5만 미만의 부는 16명, 5만 이상 10만 미만의 부는 20명, 10만 이상의 부는 30명이었다(제2조).

선거 당일의 실질적인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유권자만 가질 수 있었다. 이 명부는 선거기일 30일 전부터 매일 부청(府廳)의 선거인명부 관계자가 열람하며 채워 넣어야 했으며, 최소 3일 전에는 확정되어야 했다(2조의 5).[6] 일단 1926년 선거 때의 상황만 살펴보자. 이 시기 ≪선거인명부≫는 1926년 10월 21일부터 종람(縱覽)이 시작되었다. 당시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경성부의 유권자는 일본인 4,615명, 조선인 4,641명으로 도합 9,256명이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1〉이다.

<표 1> 1926년 경성부협의회 선거 당시 경성부의 인구와 유권자

조선인			일본인		
인구	유권자	유권자/인구	인구	유권자	유권자/인구
220,312	4,641	2.1%	81,559	4,615	5.6%

대략 10월 초부터 1926년 11월의 선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경성휘보≫에서는 이 선거를 "현저히 증가한 조선인 유권자도 이미 상당한 훈련을 거쳐 선거에 관한 사상이 발달"했으며, "미증유라 일컬어질 수 있는 격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7] 이러한 분위기는 선거운동을 보도한 당시의 일간지 등을 통해서도 잘 느낄 수가 있다. 흔히 "축록전(逐鹿戰)"으로 표현되던 선거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부협의회원 자체가 "부(府) 행정에 참여하는 명예직이자 부민의 대표자"[8]로서 경성의 조선인·일본인 유력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권자회'의 존재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후보의 권리는 규정에 맞는 사람 누구나 가질 수 있었다. 그러

6) 1926년 선거의 ≪명부≫ 열람은 10월 21일부터 시작되었다(〈府議戰の皮切り 選擧人名簿の閱覽〉 ≪경성일보≫ 1926년 10월 22일(석간)).

7) ≪京城彙報≫ 1926년 12월, 51쪽.

8) 〈朝鮮人側有志の躍起を序幕戰に〉 ≪京城日報≫ 1926년 10월 19일(석간).

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단체, 특정 회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유력자들이 모인 후, 거기에서 '공인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이런 방식의 후보자 선정은 "이상선거(理想選擧)"를 위한 것으로 강조되었는데, "총독부 연회에 초대나 받아가는 것을 공직자의 천직으로 알며 (중략) 소중한 부협의회 석상에는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9]으로 여기는 일부 부협의회원들을 후보 단계부터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상선거"는 조선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선거의 길잡이이기도 했다.[10]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재작 11일 시내 모처에서 상업회의소 副두취 한상룡, 학교비평의원 방태영, 도평의원 원덕상, 부협의원 전성욱, 부협의원 예종석, 동민회 간사 조병상, 부협의원 신승균, 부협의원 장두현, 학교비평의원 송달섭 씨 등 유지 제씨가 (중략) 이번 부협의원 개선에는 자기네가 발기인이 되어 각 방면의 동지를 모은 후 (중략) 대경성의 참스러운 행복과 삼십만 부민 (중략) 대표가 될 만한 사람 15인을 理想候補로 선출을 한 후, 이에 제씨는 출마할 생각이 비록 없더라도 기어코 간청을 하여서라도 출마케 한 후, 끝까지 결백한 선거운동을 일으켜 부협의회의 대혁신을 도모키로 한다고 한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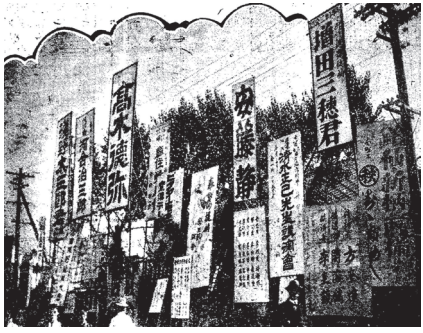
이는 부협의회의 선거 구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역시 "부세 연액 5원 이상을 내는 남성" 유권자는 경성부의 전체 인구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1〉 참고). 때문에 표의 집중은 당선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는 조선인이나 일본인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소위 '지반(地盤)'이라고 불리는 표밭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에 후보 등록을 시도하였고, 선

9) 〈大京城의 福利爲해 府議員理想選出運動〉 ≪매일신보≫ 1926년 10월 13일.

10) 〈理想選擧運動에 對하야〉 ≪매일신보≫ 1926년 10월 16일.

11) 〈十四日公會堂에서 理想候補를 推薦〉 ≪매일신보≫ 1926년 10월 13일 ; 다음의 기사도 참고할 수 있다. 〈府議選擧에 就하야〉 ≪매일신보≫ 1926년 11월 11일.

거기일 전에 어느 정도의 표를 확보했는지 미리 예상하고는 했다.[12] 예를 들어 오가키(大垣丈夫)는 자신의 지반이었던 태평통과 하세가와쵸(長谷川町)에 후지무라(藤村忠助)가 새롭게 입후보하는 바람에 "전부(全府)의 산표(散票)"를 모으려는 목적으로 "입후보 이유서"를 발표했다.[13] 또한 나리마츠(成松綠)는 다카야마(高山孝行)의 지반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표를 확보했다.[14]



<사진 1> 1926년 부협의회원 입후보자들의 입간판 (舊경성부청 앞)

출처: ≪경성일보≫ 1926년 11월 7일.



<사진 2> 1926년 부협의회원 입후보자들의 입간판 (남대문 근처)

출처: ≪경성일보≫ 1926년 11월 12일.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부협의회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또는 출마시키고자 하는 유력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졌다. 유력 일간지 중, 특히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는 거의 날마다 후보자들의 인물됨과 포부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쏟아

12) 다만, 이러한 선거 예측이 언제나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민용호나 방규환은 당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각각 7위, 29위로 당선되었다. 두 사람의 낙선을 예상한 기사로 〈改選期를 압헤두고 始作된 選擧運動〉 ≪동아일보≫ 1926년 10월 5일 참고.

13) 〈朝鮮人側有志の躍起を序幕戰に〉 ≪경성일보≫ 1926년 10월 19일(석간).

14) 〈朝鮮人側有志の躍起を序幕戰に〉 ≪경성일보≫ 1926년 10월 19일(석간). 한편 地盤 확보의 중요성은 실제로 이 시기 선거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별다른 지반 없이 개인자격으로 입후보한 이들은 단지 '1표'를 얻는데 그친다. 이에 대해서는 〈표 2〉 참고.

냈다. "공평한 중재역",[15] "조선의 대(大)장로",[16] "열변의 기술가",[17] "충량한 편달자(鞭撻者)"[18] 등의 수사가 사용되었다. ≪매일신보≫는 조선인 후보자 중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의 소감과 포부를 소개했다.[19] 후보자 개개인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안도(安藤靜)는 거의 매일 자전거로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표를 호소했다. 사와다(澤田淸)는 경성요리옥 조합장답게 '일류요정의 여장(女將)'을 운동원으로 두고, '도시락'을 돌리며 유권자를 설득했다. 또한 이 기간 부내의 요리점은 후보자의 유권자 접대로 인해 언제나 만원이었다고 한다.[20] 부내 곳곳에는 후보자들의 입간판이 세워졌으며(〈사진 1-1〉 및 〈사진 1-2〉 참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선거인명부≫가 누설되는 부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21]

이렇게 치열한 선거운동을 거친 후 11월 20일에 남대문공립소학교에서 3번째 경성부협의회 선거가 진행되었다. 오전 8시에 개장한 투표장에는 야마토쵸(大和町)에 사는 니시자키(石崎幸次郎)란 사람과 아사히쵸(旭町)에 거주하는 우치다(內田繁由)란 사람이 최초로 방문했으며, 마지막 투표자는 창신동에 사는 이치호(李致浩)였다.[22] 최종 투표수는 7,200표로 마감되었다.[23] 후보자는 모두 52명으로 이 중 조선인이 31명, 일본인이 21명이었다(〈표 2〉 참고).[24] 다만, 〈

15)〈京城府協議の候補者(1)〉 ≪경성일보≫ 1926년 11월 3일(조간).

16) 〈京城府協議の候補者(3)〉 ≪경성일보≫ 1926년 11월 5일.

17) 〈京城府協議の候補者(5)〉 ≪경성일보≫ 1926년 11월 7일.

18) 〈逐鹿者들(3)〉 ≪매일신보≫ 1926년 11월 4일.

19) 192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에 걸쳐 총 19회에 걸쳐 연재되는 〈逐鹿者들〉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20) 〈府議選擧運動으로 市內料理店大滿員〉 ≪매일신보≫ 1926년 11월 12일.

21) 〈有權者名簿を謄寫して漏泄〉 ≪경성일보≫ 1926년 11월 9일.

22) 〈京城府協議會員總選擧〉 ≪京城彙報≫ 60, 1926.11, 51쪽.

23) 최종 표수는 ≪경성일보≫에서는 7,700표로, ≪경성휘보≫에서는 7,200표로 집계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후자를 따랐다.

24) 〈京城府協議會員總選擧〉 ≪京城彙報≫ 60, 1926.11, 51~52쪽

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선인 후보자 중에는 13명이 1표씩만을 얻었는데, 이들은 지반(地盤)을 바탕으로 한 '공인후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본인에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후 서술에서는 이 13명을 제외한 39명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표 2> 1926년 경성부협의회 선거의 후보자와 당선자

	성명(재선/초선)	당락	민족	생몰년도	직업	득표(순위)
1	山崎鹿藏 (초)	●	日	1879~?	상업(금융), 회사중역	310(1)
2	高木德彌 (재)	●	日	1863~?	상업(잡화상), 회사중역	307(2)
3	淺野太三郎 (초)	●	日	1872~?	상업(일용잡화), 회사중역	295(3)
4	鄭完圭 (초)	●	朝	1896~?	회사중역	277(4)
5	朴榮根 (초)	●	朝	1887~?	전 관리, 전문직(교육),회사중역	252(5)
6	肥塚正太 (재)	●	日	1866~?	농업(축산업), 회사중역	250(6)
7	閔溶鎬 (재)	●	朝	1892~?	회사중역, 상업(서적)	248(7)
8	河合治三郎 (초)	●	日	1874~?	전 관리, 회사원, 회사중역	244(8)
9	增田三穗 (초)	●	日	1872~1933	상업(가구판매업), 회사중역	231(9)
10	大村百藏 (재)	●	日	1872~?	전문직(언론), 회사중역	225(10)
11	成松綠 (초)	●	日	1880~?	전 관리, 회사중역	215(11)
12	大垣丈夫 (재)	●	日	1861~1929	회사중역, 전문직(언론)	211(12)
13	韓萬熙 (초)	●	朝	1896~1941	회사원, 회사중역	208(13)
14	小林藤右衛門 (초)	●	日	1869~1929	상업(중매업, 용달업),회사중역	203(14)
15	宋達燮 (초)	●	朝	1887~1940	전 관리, 전문직(교육), 회사중역	203(14)
16	李恒鍾 (초)	●	朝	1885~?	전문직(교육), 회사원	200(16)
17	藤村忠助 (초)	●	日	1875~?	회사중역, 회사원	191(17)
18	李東善 (초)	●	朝	1893~?	회사중역	190(18)
19	池田長次郎 (초)	●	日	1878~?	상업(질옥업, 미곡상 등), 회사중역	183(19)

	성명(재선/초선)		당락	민족	생몰년도	직업	득표(순위)
20	李升雨	(초)	●	朝	1889~1955	회사중역, 전문직(변호사)	179(20)
21	芮宗錫	(재)	●	朝	1872~1955	전 관리, 회사중역, 전문직(언론)	173(21)
22	李仁用	(초)	●	朝	1886~?	전 관리	167(22)
23	澤田清	(재)	●	日	1867~1933	상업(음식점)	165(23)
24	寺尾猛三郎	(초)	●	日	1870~?	회사중역	164(24)
25	金思演	(초)	●	朝	1896~1950	회사중역	162(25)
26	安藤靜	(전)	●	日	1887~1940	전 관리, 전문직(교육), 회사중역	160(26)
27	武上安一	(재)	●	日	?~?	전 관리	159(27)
28	三上豊	(재)	●	日	1868~?	전 관리, 회사중역	154(28)
29	方奎煥	(재)	●	朝	1889~?	상업(약재), 전문직(교육, 금융), 회사중역	149(29)
30	富井實太郎	(초)	●	日	1877~?	상업(의류), 회사중역	136(30)
31	李弘鍾	(초)	×	朝			136
32	李康爀	(재)	×	朝			135
33	崔翰宇	(초)	×	朝			134
34	李圭顯	(재)	×	朝			133
35	金錫泰	(재)	×	朝			119
36	申應熙	(초)	×	朝			113
37	鹿住榮八	(초)	×	日			56
38	竹內菊太郎	(재)	×	日			50
39	大喜多筆一	(초)	×	日			21
40	黃永順	(초)	×	朝			1
41	金聖煥	(초)	×	朝			1
42	朴壯遠	(초)	×	朝			1
43	權容喆	(초)	×	朝			1

	성명(재선/초선)	당락	민족	생몰년도	직업	득표(순위)
44	安奭鎬 (초)	×	朝			1
45	高善弼 (초)	×	朝			1
46	李濟元 (초)	×	朝			1
47	李須鎭 (초)	×	朝			1
48	曹春成 (초)	×	朝			1
49	文光玉 (초)	×	朝			1
50	李漢龍 (초)	×	朝			1
51	白榮三 (초)	×	朝			1
52	李三辰 (초)	×	朝			1

비고: 1. 낙선자에 대한 생몰년도, 직업은 표시하지 않았다. 2. 安藤靜은 1920년에 부협의회원이 되었다가 1926년에 다시 입후보하였기 때문에 '전 부협의회원'이란 의미로 (전)을 부기하였다. 3. 입후보자의 당락 및 득표수와 순위는 ≪경성휘보≫ 제60호(1926.11)의 해당 정보를 참고하였으며, 생몰년과 직업 정보는 이 책 말미에 첨부한 <부록 2-2> '경성부(협의)회 의원 주요 경력'을 참조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 현황만을 놓고 살펴보자. 조선인은 18명이, 일본인은 21명이 입후보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현역 부협의회원의 출마가 적었다. 39명의 후보 중에 부협의회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하 '무경험자'로 약칭)은 24명으로 약 62%를 차지했고, 부협의회원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하 '유경험자'로 약칭)은 15명으로 약 38%였다(안도(安藤靜)는 현역 부협의회원은 아니지만, 1920년부터 1923년까지 부협의회원을 역임하였다).[25] 이를 다시 민족별로 구분하면 조선인은 후보자 18명 중 12명이 처음으로 입후보하여 약 67%를 차지하였고, 일본인은 후보자 21명 중에 13명이 처음으로 입후보하였다. 비율로는 약 62%이다.

이러한 사정은 자연스럽게 당선자의 추이와 연결된다. 개표 결과 조선인 12명, 일본인 18명이 당선되었는데, 조선인은 후보자 중에 67%가 당선되었으며, 일

25) '부협의회의 경험'이 출마의 경험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다소 거친 표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서술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무경험자' 혹은 '유경험자'라고 표현하겠다.



<사진 3> 득표 1위로 당선된 야마자키 부부와 그의 지지자들
출처: ≪경성일보≫ 1926년 11월 21일.

본인은 86%가 당선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선자 중 초선이 19명이고, 재선(安藤靜 포함)은 11명이다. 이를 민족별로 구분하면 조선인은 초선 의원이 9명으로 12명이라는 당선자 총수와 대비하면 그 비율이 매우 높고, 일본인은 10명이 초선 의원으로 과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를 후보자 추이와 관련시킨다면 조선인의 경우 12명의 '무경험자' 중 9명이, '유경험자' 6명 중 중 3명이 당선되었다. 일본인은 '무경험자' 12명 중 11명, '유경험자' 9명 중 8명이 당선되었다. 일단, 조선인과 일본인의 유경험자 대비가 3 대 8이라는 점은 부정(府政)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인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경험자의 민족별 대비가 9 대 11이라는 점은 향후 부협의회에서 조선인 초선 의원과 일본인 초선 의원 사이에 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차이는 조선인 당선자와 일본인 당선자의 연령대이다. 조선인들은 대체로 30~40대의 인물들이다. 최고 연장자인 예종석(1872년생)을 제외하고, 대체로 1880년대 중후반부터 1890년대 사이에 태어난 인물들이 많다. 이런 지점은 조선인 유력자에게 부협의회원 자체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오가키(大垣, 1861년), 다카키(高木, 1863년), 고에츠카(肥塚, 1866년), 미카미(三上, 1867년) 등을 비롯해 대체로 50~60대 인물들이 많고, 1887년생이 가장 젊었다. '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관련하여 일본인 유력자 풀이 이미 성숙되어 있는 반면에 조선인 유력자 사회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부협의회는 '나이 많은 일본인 유력자 18명'과 '나이 적

은 조선인 유력자 12명'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는 이 구분선은 부협의회의 기능이 이미 주어진 지배·피지배 관계에 세대 관계가 더해진 상태에서 작동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의 발언권이 조선인보다 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부협의회원 당선자들은 각기 목표와 의도가 달랐다. 예를 들어 이항종(李恒鍾)과 송달섭(宋達燮)이 후보 시절 밝힌 포부를 보자.

> 이항종: 부협의회라는 것은 결의기관이 못되고 자문기관인 까닭에 물론 부협의원의 의견대로 실현이 되리라고는 할 수 없으나 부윤도 의원 측이 절대 반대하는 것은 고압적으로 감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략)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일방의 이권문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가장 공평한 태도로 33만 부민의 대표적 두뇌를 가지고 부정을 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의 머리에는 내지인이나 조선인도 두지 않으며 경성부를 동서남북으로 가르지 않고자 합니다.[26]
>
> 송달섭: 허허 이놈의 세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중략) 때문에 금년도 출마를 안하려고 한 것을 新舊의 권고에 이기지 못하고 부득이 끌려나왔는데 아마도 위태위태합니다. (중략) 포부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당선이 된다면 사실이 생기는 대로 모두 쫓도록 하겠습니다.[27]

이 눈에 보이는 차이는 부협의회를 대하는 태도 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영역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2) 1929년의 선거와 당선자

1929년 선거 역시 직전의 선거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이 선거가 "도시자치제의 실현을 보게 되기 쉬우리라는 관측" 아래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8] 이미 1929년 중반부터 부협의회 아래의 정식기구처럼

---

26) 〈逐鹿者들 (3)〉 ≪매일신보≫ 1926년 11월 4일.

27) 〈逐鹿者들 (4)〉 ≪매일신보≫ 1926년 11월 5일.

28) 〈府議改選期臨迫과 猛烈한 逐鹿戰 開幕〉 ≪매일신보≫ 1929년 10월 15일.

여겨지던 '부협의회원 간담회'에서 '자치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요소로서 〈조선지방선거취체규칙〉도 제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부협의회가 여전히 자문기관에 머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선거에 임하는 조선인·일본인 유력자들의 태도는 이전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다. 대략 10월 중순을 전후로 해서 시작되는 선거운동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었다.

선거운동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전과 유사했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후보자들은 부세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서라도 유권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29] 집집마다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했고, 출마 지역의 이익을 위한 공약을 설파하거나[30] 부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었다. 후보자의 연설회도 주된 유세 방법이었다.[31]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는 지반을 둘러싼 후보자들 사이의 관계도 여러 형태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안도(安藤靜)의 지반이었던 야마토쵸(大和町)에서는 제분업에 종사하는 마츠모토(松本淸次郎)가 새로운 후보로 부상했다.[32] 또한 홍필구(洪必求)의 운동원이었던 임흥순(任興淳)이 직접 출마를 선언하면서 양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반의 변경이나 확장, 이동 역시 두드러지게 벌어졌다.[33]

이 시기 선거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협의회가 의결기관으로 정비될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에서 후보자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미리 인정받고 싶어 했기 때문인 듯하다. 더불어 1929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조선지방선거취체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은 용납되기 어려웠다.[34] 잠시 이 〈취체규칙〉의 공식적인 제정 이유를

29) 〈府協改選期臨迫과 府稅滯納者整理〉 ≪매일신보≫ 1929년 10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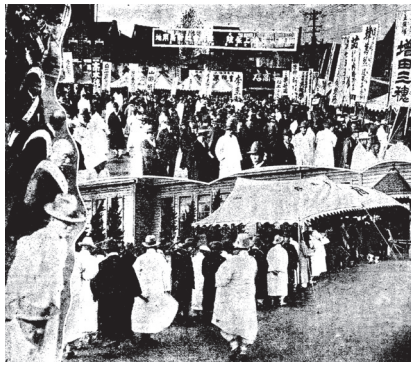
30) 〈猛烈한 前哨戰開始와 候補者의 暗中活躍〉 ≪매일신보≫ 1929년 10월 27일.

31) 〈府協議會員戰 日和見候補多數 府協議員候補立會演說會〉 ≪경성일보≫ 1929년 11월 5일(석간).

32) 〈實戰に入った府協議會員戰〉 ≪경성일보≫ 1929년 10월 27일(석간).

33) 〈京城府協議戰漸く實戰に入る〉 ≪경성일보≫ 1929년 10월 30일(조간).

34) 〈府協議會員選擧漸く迫る〉 ≪경성일보≫ 1929년 10월 26일(석간).



<사진 4> 1929년 부협의회 선거(좌: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후보자들 / 위: 후보자 사무실 앞의 풍경 / 아래: 투표를 기다리는 경성 주민)

출처: ≪경성일보≫ 1929년 11월 21일.

보면, "본 제도(선거제도: 인용자 주) 시행 이래 10년을 거쳐 이제 제도 운용에 대한 훈련을 쌓았고, (중략) 선거 경쟁이 점차 심해지자 그 사이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기게 되어 (중략)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없게 될 우려"가[35]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92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성 지역에서 공직에 진출하려는 유력자들의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26년의 선거 때, 당시 경성부윤이었던 우마노(馬野精一)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요리를 먹인다던지, 전차 값이나 인력거 값을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빈번하다며, "선거취체령"이 필요함을 역설한 적이 있었다.[36] 게다가 1926년 선거에 입후보한 조선인 유력자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런 행위가 상당히 당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나는 껍질로만 사람을 친해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해마다 운동을 할 때는 나를 위해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 5, 600명씩이나 되어 당선은 틀림없을 줄 알았더니 결국 개표일에 가서 본 즉, 내 술 먹고 날뛰던 사람들이 모두 남에게 투표를 하고 마라버리니 낙선이 아니 될 수 있습니까.[37]

〈취체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죄가 되는 조건"[38]과 그 통제 권한이 명확해졌

35) 朝鮮總督府, ≪朝鮮地方選擧取締規則解說≫, 1929.

36) 〈有權者買收는 無論非紳士의 行動, 선거운동도 숙련하야진 이 때이니 選擧法制定이 必要〉 ≪매일신보≫ 1929년 11월 12일.

37) 〈逐鹿者들 (4)〉 ≪매일신보≫ 1926년 11월 5일.

38) 〈府協議員改選と選擧取締方針〉 ≪경성일보≫ 1929년 10월 31일(석간).

다. 부윤은 선거 관리자로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경찰 관리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제2조). ≪선거인명부≫ 위조나 허위신고를 통한 유권자 권리 획득 또는 후보자의 유권자 접대, 대리투표 등의 부정행위에는 징역, 금고, 벌금과 같은 확실한 처벌 규정이 등장하였다(제7~제14조). 더구나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 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었다(제15조).[39] 조선총독부에서는 내무국을 통해 선거감시원을 파견하여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자 했다.[40] 1929년의 선거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진 5> 1929년 부협의회 선거의 투표 장면
출처: ≪매일신보≫ 1929년 11월 21일.

선거기일과 장소는 이전 선거와 동일하게 11월 20일 남대문소학교였다. "입후보자 측도, 또한 유권자 측도 이상한 긴장으로 이를 맞이했지만, (중략) 다행히 평온하게 시종(始終)한 것은 (중략) 장래 조선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는 전도에 비추어 축하를 금할 수 없다"는 표현은 자문기관의 마지막 선거 평가로 주목할 만하다.[41] 유권자 수는 모두 10,559명이었는데, 이 중 일본인은 5,889명, 조선인은 4,670명이었다. 직전의 선거와 비교했을 때 조선인 유권자는 별로 변동이 없는 반면에 일본인 유권자가 거의 1,000명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선거의 총 득표수는 7,944표였다. 〈표 3〉는 후보자와 당선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39) 〈朝鮮地方選擧取締規則〉 ≪조선총독부관보≫ 제825호, 1929년 9월 30일.
40) 〈內務局에서 各地로 選擧監視員派遣〉 ≪매일신보≫ 1929년 11월 20일.
41) 〈京城府協議會員總選擧〉 ≪경성휘보≫ 99, 1929.12, 34쪽.

<표 3> 1929년 경성부협의회 선거의 후보자 및 당선자

연번	성명(재선/초선)	당락	민족	생몰년도	직업	득표(순위)
1	森秀雄 (초)	●	日	1893~?	회사중역	859(1)
2	濱田虎熊 (초)	●	日	1890~?	전 관리, 전문직(변호사)	402(2)
3	田端俊純 (초)	●	日	1872~?	상업(여관업)	347(3)
4	洪必求 (초)	●	朝	1892~?	상업(직물상), 회사중역	330(4)
5	吳珽煥 (초)	●	朝	?~?	상업(전당포)	318(5)
6	中村郁一 (초)	●	日	1880~?	전문직(교육), 전 관리, 회사원, 상업(신문판매업)	295(6)
7	韓萬熙 (재)	●	朝	〈표 2〉 참조		288(7)
8	高木德彌 (재)	●	日	〈표 2〉 참조		277(8)
9	李圭顯 (전)	●	朝	1886~?	상업(곡물상 및 주료제조업), 회사중역	255(9)
10	曺秉相 (초)	●	朝	1891~1978	회사중역((주)한양택시 사장, (주)경인기업 사장)	253(10)
11	李仁用 (재)	●	朝	〈표 2〉 참조		242(11)
12	金錫晉 (초)	●	朝	1896~?	기타	241(12)
13	松本淸次郎 (초)	●	日	1882~?	상업(제분업)	231(13)
14	金思演 (재)	●	朝	〈표 2〉 참조		223(14)
15	李升雨 (재)	●	朝	〈표 2〉 참조		222(15)
16	增田三穗 (재)	●	日	〈표 2〉 참조		194(16)
17	李圭復 (초)	●	朝	?~?	회사중역	194(17)
18	塚崎兼作 (초)	●	日	1882~?	상업(음식점, 貸家業)	190(18)
19	武上安一 (재)	●	日	〈표 2〉 참조		188(19)
20	田中半四郎 (전)	●	日	1871~1935	회사중역	185(20)
21	藤井貫一 (초)	●	日	1876~?	상업(금융업), 전 관리	182(21)
22	成松綠 (재)	●	日	〈표 2〉 참조		178(22)

연번	성명(재선/초선)	당락	민족	생몰년도	직업	득표(순위)
23	肥塚正太 (재)	●	日	〈표 2〉 참조		172(23)
24	山田禎輔 (초)	●	日	1875~1934	회사중역	167(24)
25	中崎茂三 (초)	●	日	1885~?	상업(식료 및 잡화판매)	155(25)
26	尹宇植 (초)	●	朝	1890~?	전 관리, 회사중역	151(26)
27	任興淳 (초)	●	朝	1895~1971	회사중역	147(27)
28	富井實太郎 (재)	●	日	〈표 2〉 참조		142(28)
29	竹內菊太郎 (전)	●	日	1889~?	전 관리	131(29)
30	藤村忠助 (재)	●	日	〈표 2〉 참조		126(30)
31	芮宗錫 (재)	×	朝			125
32	蘇玉英 (초)	×	朝			116
33	白石巖 (초)	×	日			113
34	藤本治兵衛 (초)	×	日			108
35	內田與平 (초)	×	日			50

비고: 1. 낙선자에 대한 생몰년도, 직업은 표시하지 않았다. 2. 李圭顯은 23년에 부협의회원이 되었다가 26년에는 낙선하였고(<표 2> 참고), 田中半四郎은 20년에, 竹內菊太郎은 23년에 부협의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다시 입후보하였기 때문에 '전 부협의회원'이란 의미로 (전)을 부기하였다. 3. 입후보자의 당락 및 득표수와 순위는 ≪京城彙報≫ 제99호(1929.12)의 해당 정보를 참고하였으며, 생몰년과 직업 정보는 이 책 말미에 첨부한 <부록 2-2> '경성부(협의)회 의원 주요 경력'을 참조할 수 있다.

〈표 3〉에서 드러나듯이 일단 한 자리 수의 득표를 얻는 조선인이 사라짐으로써 조선인의 선거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후보자는 총 14명으로 후보자 총수의 40%를 점했고, 일본인은 21명의 후보자를 내어 60%를 차지했다. 또한 이 선거에도 '유경험자'보다는 '무경험자'가 더 많이 입후보하였다. 35명의 후보 중에 후자는 20명으로 약 67%를, 전자는 15명으로 약 33%를 차지했다. 여기에 민족이라는 변수를 더해보자. 조선인은 후보자 14명 중 8명이 처음으로 입후보하여 약 57%에 비율을 보였다. 일본인은 후보자 21명 중에 12명이 이에 해당되는데, 비율로는 마찬가지로 약 57%를 차지했다. 당시

한 신문에서 새롭게 입후보하는 인물이 이전보다 많다며 "신(新)경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42] 실감날 정도의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싶다.

그렇다면 후보자 현황과 당선자 현황 간의 관계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 개표 결과 조선인은 12명, 일본인은 18명이 당선되어 민족별 격차는 개선되지 않았다. 조선인은 14명의 후보 중 12명을 배출하여 약 86%의 수치를 보였고, 일본인은 21명 중 18명이 당선된 것으로 당선자 비율은 똑같이 약 86%이다. 이를 민족별로 구별하면 조선인의 경우 전체 당선자 12명 중에 7명이 초선으로 약 58%를 점해 1926년보다 낮아졌다. 일본인 초선 의원은 18명 중에 9명이었다. 이를 다시 후보자 추이와 결부시킨다면, 조선인은 8명의 '무경험자' 중에 7명이, 6명의 '유경험자' 중 5명이 당선되었으며, 일본인의 경우 12명의 '무경험자' 중 9명이, 10명의 '유경험자' 중 9명이 당선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잠시 민족별 격차를 차치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초선이 16명이고, 재선(李圭顯 및 田中半四郎, 竹內菊太郎 포함)이 14명으로 양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의결기관 직전의 부협의회에서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의 상호작용이 활발했을 개연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일본인의 경우 50~60대에 해당되는 인물이 13명으로 여전히 높은 연령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모리(森秀雄)나 하마다(濱田虎熊)처럼 30~40대 인물도 공직에 등장했다. 재조일본인 사회의 유력자 집단이 서서히 개편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인은 최고령자였던 예종석이 낙선했고, 당시 나이 44세였던 이인용과 이규현이 최고령자가 되었다. '나이 많은 일본인 유력자 18명'과 '나이 적은 조선인 유력자 12명'이라는 1926년 부협의회의 구도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씩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다소의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1920년대 후반, 두 차례의 부협의회는 민족별·세대별 격차가 확실히 중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

42) 〈府協議戰槪況〉 ≪경성일보≫ 1929년 11월 7일(석간).

2) 주요 부협의회원의 이력

지금까지 1926년과 1929년의 경성부협의회 구성 과정 및 그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어떤 인물들이 식민지 조선의 정치 무대에 새롭게 등장했는지를 살펴보자.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인물의 이력 전체를 개관할 것이다. 이는 부협의회원 활동과 그 전후를 연결함으로써 각각의 이력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총 49명에 해당되는 인물군을 이 절에서 전부 다루기는 어렵다. 구성원 전체의 간략한 이력은 이 책 말미에 첨부한 〈부록 2-2〉 '경성부(협의)회 의원의 주요 경력' 을 참고하되, 이 절에서는 부협의회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거나 식민지 조선을 무대로 한 다양한 활동들이 비교적 선명한 인물들을 추려 정리하도록 하겠다. 해당 인물은 김사연, 이승우, 한만희 등 조선인 3명과 고에즈카(肥塚正太), 고바야시(小林藤右衛門), 다나카(田中半四郎) 등 일본인 3명이다.

(1) 일본인 부협의회원

고에즈카(肥塚正太, 1866년생, 山口縣 출신)는 1920년 제1기 경성부협의회부터 1931년 경성부회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당선된 인물이다. 제3기 및 제4기 부협의회 내에서는 가장 연령이 많은 축에 속하여 여러 의안의 위원장을 맡아 현안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반영했는지 세간에서는 "경성에서의 활약이 대단"하고 "여러 차례 위원장을 맡아 부정(府政)을 그르치지 않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43]

1894년에 동경수의학교(東京獸醫學校)를 졸업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1908년 조선에 건너와서 (주)조선축산을 창립했다. 1910년에 사장을 사임한 뒤,

43) 〈府議戰場に出馬の面々(10)〉 ≪경성일보≫ 1929년 11월 12일(조간).

봉래정(蓬萊町)에 동아목장(東亞牧場)을 설립하였는데, 비슷한 시기 동대문금융조합장으로 활동한 흔적도 있다. 1912년 1월에는 경용우유판매소(京龍牛乳販賣所)를 설립하는 데 관여하고, 전무이사로 활동했다.

1917년 경성학교조합의원에 당선된 것을 계기로 '공직'에 진출하였다. 1923년 7월에는 경성가축회사창립위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44] 1926년 당시에는 조선축산협회 상무이사이기도 했다. 1928년 8월에는 정무총감이 회장으로 있는 금융제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1929년에는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 이사를 역임했다.[45] 부(협의)회에서도 요직을 맡아 1931년 2월에는 경성부 공영사업조사회 제1부(전기와사에 관한 조사) 위원장을,[46] 1931년 11월에는 경성부회 부의장에 선임되기도 한다.[47] 이후 1933년 5월에는 경기도회 의원에 관선으로 당선되었으며, 1935년부터 1938년에 걸쳐 경기도 내무부 지방과 촉탁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1937년 8월에는 경기도산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48] 1938년 7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경기도연맹 이사를 역임했다. ≪조선지축산(朝鮮之畜産)≫(1911) 등의 저서가 있고,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나 ≪국민총력(國民總力)≫ 등의 잡지에 여러 편의 글을 기고했다.[49]

고바야시(小林藤右衛門, 1869년생, 奈良縣 출신)는 비록 부협의회원 경력이 제3기 단 한 차례에 불과한데, 이는 1929년 7월에 사망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는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상당한 유력자로 평가받았다. 1906년 조선에 건너오기 전에 청일전쟁에 징집되어 훈8등으로 제대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일본에서는 우치군(宇智郡) 서기나 나라현(奈良縣) 속(屬) 등의 관직생활

44) 〈가축회사창립협회〉, ≪동아일보≫ 1923년 7월 3일.

45) 〈府議戰場に出馬の面々(10)〉 ≪경성일보≫ 1929년 11월 12일(조간).

46) 〈四公營事業 調査委員選定〉 ≪동아일보≫ 1931년 2월 7일.

47) 〈京城府會副議長은 肥塚正太氏〉 ≪동아일보≫ 1931년 11월 12일.

48) 〈京畿道産業調産委員會委員 氏名은 如左함〉 ≪동아일보≫ 1937년 8월 11일.

49) 그가 기고한 글로는 〈朝鮮の農業と畜産に就て〉 ≪朝鮮及滿洲≫ 206, 1925.1 ; 〈朝鮮農村の畜産化〉 ≪朝鮮及滿洲≫ 208, 1925.3 ; 〈神樣を探ねて〉 ≪警務彙報≫ 346, 1935.2 등이 있다.

을 했지만, 조선에서는 주로 용달업과 신탁업, 토목건축청부업 및 중개업에 종사했다. 1908년에 일본인 상업회의소 의원에 당선되면서 일본인 사회의 유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황해도에서 소림약산금광(小林樂山金鑛)을 경영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고바야시는 상당히 다방면의 사업에 종사했다. 예를 들어 1919년 9월에는 인천미두취인소에서 중매업을 시작하면서 환복중매점(丸福仲買店)을 개업하였다. 1921년 2월에는 어업도 시작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일반 무역업이나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만산공사(滿産公司)의 감사로 활동했다. 1923년부터 1929년에 걸쳐서는 (주)대정석분공업(大正石粉工業)의 사장으로 활동했고, 1927년에는 (주)조선신탁(朝鮮信託)의 감사로도 활동했다. 또한 1929년에는 (주)경성비료(京城肥料) 사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조선광업계의 공로자"라는 평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로 광업에 몰두하였다. 1916년 4월에 〈광업령〉이 시행되자 ≪조선공론(朝鮮公論)≫에서는 당국자와 광업가 일반의 의견을 게재하는 지면을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조선광업자를 구제"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50] 세간에는 "사립재판소장"으로 불릴 정도로 중재를 잘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51]

다나카(田中半四郎, 1871년생, 京都府 출신)는 동경 세이죠학교(成城學校)에서 수학하다가 와후츠법률학교(和佛法律學校)에 전입하여 졸업하였다. 이후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하여 나라현(奈良縣) 속(屬)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1904년까지 대장성 및 사법성, 회계검사원의 속(屬)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1904년 9월 문부성으로 전임하면서 동년 10월에 중앙기상대 조선파견원이 되어 인천 소재 임시관측소 서기로 근무한 것이 조선에 오게 된 계기이다. 1913년 1월 경성거류민단 의원에 당선되자 동년 4월에 관직을 사직했다. 이후 조선토목조(朝鮮土木組)를 창립하고, 그 주임으로 활동하면서 토목건축청부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1920년 부협의회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이후 1929년과 1931년에

50) 小林藤右衛門, 〈朝鮮鑛業界の功勞者を救濟すべし〉 ≪朝鮮公論≫ 4-5, 1916.5.

51) 〈京城府協議の候補者(1)〉 ≪경성일보≫ 1926년 11월 3일.

부(협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공직에 있는 동안 도시계획연구회를 창립하는 데 공헌하였다.[52] 1925년 3월에는 경성교육회 평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53] 1931년 2월에는 경성도시계획연구회 간사로 활약했다. 1931년 11월에 경성부회 의원을 사직하였는데,[54] 이는 당시 그가 경성소방조두(京城消防組頭)로서 소방조 및 경성소방협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1932년 4월, 예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55] 1932년 1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56] 1935년 6월 17일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선인 부협의회원

김사연(金思演, 1896년생, 서울 출신)은 1924년 경성부학교비평의원에 선출된 것을 계기로 공직에 진출하여 1926년 부협의회 선거 때 전체 25위로 당선되었다. 이후 1929년과 1931년 두 차례에 걸쳐 재선에 성공하였고, 1933년에 경기도회 의원으로 관선(官選)된 이후 1937년과 1941년에도 경기도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20년대 중반에 최초로 공직에 진출한 이래 해방 이전까지 계속 자문기관 혹은 의결기관에 몸담을 수 있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1926년의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1926년에 당시 31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후의 활동 역시 매우 정력적이었다.

1896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916년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 예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했다고 한다. 이후 한일은행에 취직하여 1924년까지 감사 및 부지배인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에는 경성부 산하 도시계획연구회의 특별위원에 위촉되기도 했으며, 1929년 열린 조선박람회

52) 〈都市計委員訪府〉 ≪동아일보≫ 1921년 7 월 29일.
53) 〈京城教育會〉 ≪동아일보≫ 1925년 3월 31일.
54) 〈田中半四郎氏 辭職願을提出〉 ≪동아일보≫ 1931년 11월 7일.
55) 〈田中半四郎 有罪로决定〉 ≪동아일보≫ 1932년 4월 13일.
56) 〈田中半四郎에 三年執猶言渡〉 ≪동아일보≫ 1932년 12월 9일.

의 경성협찬회 상담역으로도 활동했다. 1933년 5월에는 조선공론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1935년 5월까지 운영했다. ≪조선공론≫(1933년 6월호)에 밝힌 "조선인의 진정한 목소리를 내지 및 내지인에게 소개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생각한다"는[57] 내용이 그의 활동상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34년 6월에 처음으로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고, 1940년과 1943년에 걸쳐 재선임되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적이었다. 1934년 2월에는 조선대아세아협회 설립 발기인에 참여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시중회(時中會)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1937년 7월에는 경성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에 임명되었고, 1938년 7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1938년 9월에는 조선방공협회 경기도연합지부 평의원에 선임되었다. 또한 1939년 4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參事)에 위촉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경성상공회의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2월에는 (주)남만방직 감사역에 선임되기도 한다. 1940년 6월에는 경성경제통제협력회(京城經濟統制協會)에 가입했고, 1941년에는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발기인에 참여하였다. 1942년에는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으로 활동했다. 1943년 11월에는 임시육군특별지원병익찬회 동대문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44년 9월 경기도상공경제회 설립위원에 선출되었으며, 11월 조선상공경제회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1945년에는 조선총독부 경제안정대책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6월에는 대의당(大義黨) 위원에 선출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1949년 8월에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석방된 바가 있다. 1950년 9월 20일에 사망하였다.[58]

식민지 시기 연구에서 이승우(李升雨, 1889년생, 충북 진천 출신)는 1926년부터 1935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부(협의)회원으로 활동한 이력보다 변호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변호하기도

57) 김사연, 〈朝鮮公論社長に就任して〉 ≪朝鮮公論≫ 1933년 6월호. 25쪽.

58) 단, 어떤 기록에서는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고 되어 있다(한일비교문화연구센터, 〈해제〉 ≪조선공론 총목차·인명색인≫, 어문학사, 2007, xii).

했다. 1921년 10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파견원으로 체포된 나상필(羅相泌)과 윤교병(尹喬炳) 등을 변호했으며, 1925년 10월에는 ≪조선일보≫ 필화사건으로 구속된 신일용(辛日鎔)을 변호했다. 또한 1927년 10월에는 조선공산당·고려공산청년회의 고윤상(高允相)과 권오설(權五卨)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법조인으로서의 이력은 매우 화려했다. 1910년에 대동전문학교 법과와 1917년 일본 쥬오대학(中央大學) 법과를 졸업했고, 1918년에는 일본 사법성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19년 4월에 경성변호사회 평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시작으로 1921년 10월에는 조선변호사협회 창립이사로 활동했으며, 1923년 5월에는 조선변호사협회 평의원이 되었다. 1924년 4월에는 경성조선인변호사회 상의원(常議員), 다시 1926년 4월에는 경성조선인변호사회 부회장, 1927년 5월에는 경성조선인변호사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1939년 12월에는 경성지방법원 인사조정위원에 위촉되었으며, 1941년 7월에는 국방보안법 및 치안유지법 지정변호사에 위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일' 행적 역시 확실했다. 1931년 11월에 단군신전봉찬회 이사로 활동했고, 1936년 6월에는 중추원 주임관 대우 참의에 임명되었다. 1936년 11월에는 조선인징병제실시요망운동 발기인회에 참석하였고, 1938년 2월에 조선지원병제실시축하회 실행위원이기도 했다. 1938년 7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상무이사 및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연맹 이사, 국민정신총동원 경성부연맹 이사,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경성지부장으로 활동했다. 1940년 10월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에 선임되었다. 1955년 8월 27일 사망했다.

한만희(韓萬熙, 1896년생, 서울 출신)는 동경 젠슈대학(專修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한 엘리트였다.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드물게 거의 모든 교육과정을 거친 인물이었다. 1911년 3월 경성부 교동공립보통학교 졸업했으며, 1911년 4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13년 4월에는 도쿄에 있는 사립 게이카상업학교(京華商業學校) 예과 2학년 편입했다가 1916년 2월에 중퇴한다. 젠슈대학 경

제학부에 입학한 것은 1916년 9월로서 1917년 7월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에는 조선에 돌아와서 회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은행에 정착한다. 1919년 12월 (주)조선상사(朝鮮商事) 서기를 시작으로 1920년 4월에는 (주)조선제사(朝鮮製絲) 서기, 1920년 6월에는 한성은행 서기로 근무하였다. 1921년 2월부터 1925년 6월에 걸쳐서는 한성은행 경성부 본정지점 지배인 대리로 일했으며, 1921년 4월에는 경성부 종로금융조합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1926년 부협의회 선거 당선을 계기로 '공직'에 진출했는데, 당시의 나이가 불과 31세로 부협의회원 중 최연소였다. 이후 1929년에도 당선되었으며, 1930년 4월에는 경기도평의회에 민선으로 당선되었다. 1931년 경성부회 선거에서는 낙선하지만, 1933년 5월에 다시 경기도회의원에 관선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에 복귀했다. 이후 1935년과 1939년에 걸쳐 부(협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회사원으로 공직에 진출하여 상당히 성공한 경우인데, 공직에서 매우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1935년 5월에는 경성부회 제2특별경제재원조사위원회 위원이었으며, 1936년 2월에는 경성부 위생조사위원회 위원, 1936년 5월에는 경성부 도시계획조사위원회 위원, 1936년 6월에는 경성부회 제2교육부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찾아볼 수 있다. 1937년 7월에 경성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에 임명되면서 관직에 진출했고, 1938년 10월에는 주임관대우 촉탁보호사가 되었다. 1939년 7월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 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1941년 4월 2일에 사망하였다.

3. 1920년대 후반 경성부협의회의 주요 활동

1) 회기별 자문안과 '자문'의 의미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1920년대의 부협의회는 부윤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실 '의결권의 부재'는 1920년대 전반에 걸쳐 모든 부협의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시했던 주제이기도 했다. 어쨌든 부협의회에서는 〈부제〉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즉 ① 부(府)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사항과 ② 부(府)의 세입출예산에 대한 사항, ③ 부채(府債)에 관한 사항, ④ 세입출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항, ⑤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기금 등의 마련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 제2조 제2항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59] ⑦ 기타 부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자문을 할 수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1920년대 후반 부협의회의 일정과 자문안을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 4> 1920년대 후반 부협의회의 활동과 자문안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6	11	29	부협의회	참석 27 결석 3 (寺尾, 민용호, 방규환)	▶ 부윤의 사업 설명	
	12	25	부협의회임시회		▶ 요배식 기타 임시비 지출 안건	
1927	1	7	부협의회	참석 26 결석 4	▶ 제1호 〈京城府債整理公債條例設定ノ件〉 ▶ 제2호 〈昭和 원년도 경성부세 입출예산 추가경정의 건〉 ▶ 제3호 〈府 청사 신축에 따라 좌기와 같이 창고신축과 移轉 공사시행을 위해 계속비 전년도까지의 지출 잔액(경찰서 청사, 경찰서 부속家 및 交番所 신축비) 중에서 府 청사 신축비 제6목 설비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 제4호 〈조선토지조사기념유종회에 석재를 기부하는 건〉	

59) 제2조 제2항은 "부의 廢置 또는 경계 변경의 경우에 재산처분이 필요할 때는 도 장관은 부윤의 의견을 듣고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그 처분방법을 정한다."이다.)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7		24		참석 28 결석 2	▶ 제35호 〈대정 1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을 별지와 같이 추가하고자 한다〉	
		29		참석 21 결석 9 (淺野, 정완규, 박영근, 大村, 한만희, 池田, 예종석, 澤田, 寺尾)	▶ 제5호 〈昭和 원년도 경성부세 입출예산 추가경정의 건〉 ▶ 제6호 〈소화 2년도 조례 제1호 府尹有整理地를 매각할 때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는 건 중 개정의 건〉	
	3	8	부협의회 (제1일)		▶ 제7호 〈昭和 원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경정의 건〉	
	3	8	부협의회 (제1일)		▶ 제8호 〈경성부 간선도로 개수공사비 繼續年期 및 지출방법 중 변경의 건〉 ▶ 제9호 〈同上 기채방법 중 변경의 건〉 ▶ 제10호 〈경성부 계속비 오물소제비 지출방법 중 변경의 건〉 ▶ 제11호 〈同上 기채방법 중 변경의 건〉 ▶ 제12호 〈경성부 수도확장공사비 繼續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의 건〉 ▶ 제13호 〈同上 공사비 충당기채의 건〉 ▶ 제14호 경성부 묘지 및 葬齋場 신설비 繼續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의 건〉 ▶ 제15호 〈同上 충당기채의 건〉 ▶ 제16호 〈기본재산처분의 건〉 ▶ 제17호 〈국세 및 지방세 부가세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의 건〉 ▶ 제18호 〈경성부 호별세 조례 설정의 건〉 ▶ 제19호 〈경성부 특별영업세 잡종세 조례 설정의 건〉 ▶ 제20호 〈경성부 납세 장려 조례 설정의 건〉 ▶ 제21호 〈경성부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3	8	부협의회 (제1일)		▶ 제22호 〈昭和 2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의 건〉 ▶ 제23호 〈부외급수의 건〉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7		9	부협의회 (제2일)		▶ 제8호~15호 제1독회	
		10	부협의회 (제3일)		▶ 제7호~제23호 제1독회	
		11	부협의회 (제4일)			
		12	부협의회 (제5일)			
		13	부협의회 (제6일)			
		14	부협의회 (제7일)			
		15	부협의회 (제8일)			
		17	부협의회 (제9일)		▶ 제7호~제23호 제2독회	
		18	부협의회위원회		▶ 제7호~제23호	
		21	부협의회위원회		▶ 제18호	
		25	부협의회		▶ 제7호~제23호	
		?	부협의회		▶ (긴급자문) 제29호〈昭和 원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추가의 건〉	
	4	8	부협의회	참석 17 (山崎, 河合, 藤村, 武上, 澤田, 三上, 大垣, 이인용, 安藤, 富井, 이승우, 김사연, 한만희, 成松, 淺野, 肥塚, 增田) 결석 13	▶ 제30호〈昭和 2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경정의 건〉	
	5	17	부협의회	참석 17 (山崎, 河合, 藤村, 武上, 三上, 이동선, 安藤, 富井, 이승우, 김사연, 이항종, 한만희, 小林, 淺野, 민용호, 肥塚, 增田) 결석 13	▶ 제31호〈소화 2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의 건〉 1. 전선공직자대회 접대비 2. 夜間金庫係員詰所 신설비 3. 호적부 보수비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7	6	6	부협의회	참석 22 결석 8 (高木, 정완규, 大垣, 小林, 이항종, 藤村, 이동선, 寺尾, 방규환)	▶ 제32호 〈昭和 2년도 부세 호별세 부과등급표준 및 부과액 결정의 건〉 ▶ 제33호 〈昭和 2년도 부세 호별세 각인별 부과등급 결정의 건〉 ▶ 제34호 〈昭和 2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의 건〉 제1독회	
		7 ~	부협의회위원회		▶ 제33호에 대한 위원회	-비밀회의 -위원회종료일자 미상.
		14	부협의회	참석 21 결석 9 (高木, 정완규, 大垣, 小林, 이동선, 池田, 예종석, 寺尾, 방규환)	▶ 제33호에 대한 위원회(위원장 비총) 수정안 검토 ▶ (긴급자문) 제35호 〈소화 2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의 건〉	
	8	19	부협의회	참석 16 (山崎, 河合, 武上, 방규환, 池田, 이동선, 이인용, 安藤, 富井, 이승우, 김사연, 이항종, 한만희, 成松, 肥塚, 增田) 결석 14	▶ 제36호 〈昭和 2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의 건〉	
		?	부협의회	참석 24 결석 4 (송달섭, 방규환, 이항종, 정완규)	▶ 제37호 〈昭和 2년도 경성부 세출예산 추가의 건〉 ▶ 제38호 〈부외급수 허가의 건〉 ▶ 제39호 〈昭和 2년도 경성부세 호별세 부과액 경정의 건〉	-재적인원이 28명으로 변경됨. -제39호는 비밀회의로 진행됨.
	9	2	부협의회		▶ 조선박람회 준비를 위한 협의	
	11	5	부협의회		▶ 제37호 〈昭和 2년도 경성부 세출예산 추가의 건〉 ▶ 제38호 〈부외급수 허가의 건〉 ▶ 제39호 〈昭和 2년도 경성부세 호별세 부과액 경정의 건〉 ▶ 소화 원년도 경성부 세입출 결산 제시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7	12	2	부협의회	참석 22 결석 6 (송달섭, 이동선, 高木, 이항종, 小林, 박영근)	▶ 제40호 〈경성부에서 수산시장을 설치경영하는 건〉 ▶ 제41호 〈경성부 수산시장 사용조례 설정의 건〉 ▶ 제42호 〈경성수산주식회사 발기인 총대가 府경영 수산시장에서 영업을 하길 바란다는 출원에 대한 동의의 건〉 ▶ 제43호 〈경성부 계속비 오물소제비 지출방법 변경의 건〉 ▶ 제44호 〈소화2년도 경성부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	
		3	부협의회위원회		▶ 제40호~42호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 肥塚正太)	위원 이승우, 방규환, 김사연, 成松, 大村, 安藤
		5		참석 18 (藤村, 武上, 방규환, 三上, 池田, 예종석, 安藤, 富井, 이승우, 김사연, 정완규, 한만희, 成松, 淺野, 大村, 민용호, 肥塚, 增田) 결석 10	▶ 제40호~42호에 대한 위원회 보고 (원안 가결) ▶ 제43호~44호	
1928	2	13		참석 19 결석 9 (藤村, 이인용, 예종석, 이승우, 정완규, 小林, 淺野, 大村, 增田)	▶ 제1호 〈소화 2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의 건〉	
	3	9	부협의회 (제1일)	참석 25 결석 3 (송달섭, 정완규, 大村)	▶ 제3호 〈경성부 간선도로개수공사비 繼續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의 건〉 ▶ 제4호 〈경성부 오물소제비 繼續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의 건〉 ▶ 제5호 〈昭和 2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경정의 건〉 ▶ 제6호〈府 청사 신축비충당채 상환방법 변경의 건〉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8	3	9	부협의회(제1일)	참석 25 결석 3 (송달섭, 정완규, 大村)	▶ 제7호 〈경성부승합자동차비 특별회계 설정의 건〉 ▶ 제8호 〈경성부승합자동차비 충당기채의 건〉 ▶ 제9호 〈경성부승합자동차 사용조례 설정의 건〉 ▶ 제10호 〈경성부승합자동차 車輛減價鎖却 자금적립규정 설정의 건〉 ▶ 제11호 〈昭和 3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승합자동차비 세입출예산의 건〉 ▶ 제12호 〈府 吏員조례 중 개정의 건〉 ▶ 제13호 〈府 吏員봉급조례 중 개정의 건〉 ▶ 제14호 〈경성부여비지급조례 중 개정의 건〉 ▶ 제15호 〈府 吏員 숙사료지급조례 중 개정의 건〉 ▶ 제16호 〈경성부 기본재산 축적 및 관리규정 중 개정의 건〉 ▶ 제17호 〈경성부 수산시장 설비 매수비 충당기채의 건〉 ▶ 제18호 〈경성부 사회관 사용조례 설정의 건〉 ▶ 제19호 〈경성부 수도확장공사비 繼續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의 건〉 ▶ 제20호 〈경성부 수도확장공사비 충당기채의 건〉 ▶ 제21호 〈경성부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의 건〉	
	3	9	부협의회 (제1일)	참석 25 결석 3 (송달섭, 정완규, 大村)	▶ 제22호〈부외 급수의 건〉 ▶ 제23호 〈昭和 3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의 건〉	
		10	부협의회 (제2일)	참석 26 결석 4	▶ 제3호~6호 및 22호의 제1, 2독회 ▶ 제7호~ 15호의 제1독회	
		12	부협의회 (제3일)	참석 25 결석 3	▶ 제7호~15호의 제1독회	
		13	부협의회 (제4일)	참석 25 결석 3	▶ 제16호 ~23호의 제1독회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8		14	부협의회 (제5일)	참석 23 결석 5	▶ 제23호 중 세출경상부 제1관~제6관의 제1독회	
		15	부협의회 (제6일)	참석 23 결석 5	▶ 제23호 중 세출임시부 제2관~제10관의 제1독회	
		16	부협의회 (제7일)	참석 20 결석 8	▶ 제23호 중 세출경상부 제7관 이하 및 세출임시부 제11관의 제1독회	
		?	부협의회 (제8일)	참석 22 결석 6	▶ 제23호 중 세출경상부 경비비 등 ▶ (긴급) 도시계획법 및 시가지건축물법 제정 의견서(총독 제출) 채택	
		19	부협의회 (제9일)	참석 22 결석 6	▶ 제22호〈부외 급수의 건〉 ▶ 제1독회 종료	
		26	부협의회위원회		▶ 심의 완료	
	3	30	부협의회		안건 미상	
	6	8~14	부협의회		안건 및 회차 미상	
	9	22	부협의회		▶〈昭和 3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경정의 건〉 ▶〈경성부직업소개소 노동자숙박실 사용조례 설정의 건〉 ▶〈부외 급수의 건〉 ▶〈昭和 2년도 경성부 세입출결산 제시의 건〉	
1929	3	20	부협의회 (제1일)		▶〈경성부 특별세 수익세조례설정의 건〉 ▶〈경성부청사신축비 충당기채 상환방법 변경의 건〉 ▶〈昭和 3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 경정의 건〉 ▶〈경성부 제2회 공채조례 설정의 건〉 ▶〈경성부 정리공채 이율 6분 5리 이상의 부채이월상환비 충당기채의 건〉 ▶〈昭和 4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승합자동차비 세입출예산의 건〉 ▶〈경성부 승합자동차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번호 미상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9	3	20	부협의회 (제1일)		▶〈경성부 승합자동차비 충당 기채의 건〉 ▶〈경성부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설정의 건〉 ▶〈경성부 공익질옥조례 설정의 건〉	번호 미상
	3	20	부협의회 (제1일)		▶〈경성부 공익질옥비 충당기채의 건〉 ▶〈昭和 4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공익질옥비 세입출예산의 건〉 ▶〈부 금고사무취급조례 중 개정의 건〉 ▶〈국세 및 지방세 부가세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의 건〉 ▶〈부세특별소득세조례 폐지의 건〉 ▶〈부세 제한 외 부과 조례 설정의 건〉 ▶ 제17호〈경성부 특별세 수익세 조례 설정의 건〉 ▶〈묘지 및 화장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경성부 도로 撒水 보조조례 설정의 건〉 ▶〈경성시구개수공사비 繼續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의 건〉 ▶〈경성시구개수공사비 충당기채의 건〉 ▶〈소주택 신축비 충당기채의 건〉 ▶〈경성운동장 설비비 충당기채의 건〉 ▶〈용산출장소 청사신축비 충당기채의 건〉 ▶〈서대문공설시탄소채시장 설치의 건〉 ▶ 제26호〈昭和 4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의 건〉	번호 미상
	3	20	부협의회 (제1일)		▶〈昭和 4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의 건〉 ▶〈부외 급수의 건〉 ▶〈경성부 계속비 오물소제비 충당기채 상환방법 변경의 건〉 ▶〈昭和 4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의 건〉 ▶〈昭和 4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의 건〉	번호 미상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9		22	부협의회 (제2일)		*승합자동차(부영버스)와 공익질옥에 대해 부협의회원들의 질문이 집중됨.	
		23	부협의회 (제3일)		▶〈공익질옥조례 설정의 건〉 제1독회 *〈소주택 신축비 충당기채의 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25	부협의회 (제4일)	참석 17	▶〈경성운동장 설비 충당기채의 건〉 ▶〈특별회계 공익질옥비 세입출예산의 건〉 ▶〈시구개수공사비 繼續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의 건〉 ▶〈용산출장소 청사신축비 충당기채의 건〉 ▶〈서대문공설시탄시장 설치의 건〉 ▶ 제26호〈昭和 4년도 세입출예산〉 심의	
	3	26	부협의회 (제5일)		▶ 제26호〈昭和 4년도 세입출예산〉 심의	
		27	부협의회 (제6일)	참석 15	▶ 제26호〈昭和 4년도 세입출예산〉 심의	
		28	부협의회 (제7일)	참석 17	*조선박람회 기부금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음.	
		29	부협의회 (제8일)	참석 16	▶ 제17호〈경성부 특별세 수익세 조례 설정의 건〉	大村百藏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개설
		30	부협의회(제9일)			안건 미상
	4	1	부협의회위원회			비밀회의
		2	부협의회위원회		▶ 조선박람회 기부금 및 경성협찬회 보조금 심의	비밀회의
		5	부협의회위원회			비밀회의
		9	부협의회위원회			비밀회의
		10	부협의회위원회			비밀회의
		11	부협의회위원회		*위원회 종료	
			부협의회 (제10일)	참석 15	*경성부영승합자동차에 관련된 안건 상정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9		13	부협의회 (제11일)	참석 15	*3월 20일 심의를 시작한 31개의 중 〈경성부 특별세 수익세 조례 설정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자문안에 대해 議了.	
	4	19	부협의회		*광희문 밖 토지매도사업에 관한 도로 2개 선 신설의 가부를 협의(일명 신당리 토지매매 문제).	
		30	부협의회		*광희문 밖 신당리 토지매도에 관한 안건 검토(昭和 4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추가의 건).	
	5	3	부협의회	참석 12 (流會됨)	*신당리 토지매도에 관한 안건의 찬성파인 12명만 참석하여 유회(流會)됨.	
		6	부협의회		*신당리 토지매도에 관한 안건	
	6	7	부협의회		▶ 제32호 〈昭和 4년도 부세, 호별세 부과등급표준 및 부과액 결정의 건〉 ▶ 〈昭和 4년도 부세, 호별세 각인별 부과등급 결정의 건〉은 위원회를 열어 검토하기로 함(위원장 肥塚)	
		8	부협의회위원회		▶ 〈昭和 4년도 부세, 호별세 각인별 부과등급 결정의 건〉 *위원회 종료	비밀회의
		10	부협의회위원회			비밀회의
		11	부협의회위원회			비밀회의
		12	부협의회위원회			비밀회의
		13	부협의회위원회			비밀회의
		14	부협의회위원회			비밀회의
	6	15	부협의회		▶ 〈昭和 4년도 부세, 호별세 각인별 부과등급 결정의 건〉	
	8	3	부협의회	참석 16	▶ 제17호 〈경성부 특별세 수익세 조례 설정의 건〉(肥塚正太를 새롭게 위원장으로 선출했음을 보고) *경성협찬회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9		5	부협의회위원회		▶ 제17호 〈경성부 특별세 수익세 조례 설정의 건〉(위원장 肥塚正太)	
		6	부협의회위원회		▶ 제17호 〈경성부 특별세 수익세 조례 설정의 건〉(위원장 肥塚正太)	
		7	부협의회위원회		▶ 제17호 〈경성부 특별세 수익세 조례 설정의 건〉(위원장 肥塚正太)	
		8	부협의회위원회		▶ 제17호 〈경성부 특별세 수익세 조례 설정의 건〉(위원장 肥塚正太) *위원회 종료	
		9	부협의회		▶ 제17호 〈경성부 특별세 수익세 조례 설정의 건〉 가결	
		16	"부협의회원간담회"		*경성부 사회사업과 관련된 위원 선출(肥塚正太, 이승우, 藤村忠助, 김사연, 寺尾猛三郎)	
	8	29	"부협의회원간담회"		*舊부청사 부지 매각의 건	
	9	6	부협의회		▶ 제34호 〈경성부승합자동차차량감가쇄각자금적립규정 중 개정의 건〉 ▶ 제35호 〈同 규정에 의한 적립금 처분의 건〉 ▶ 제36호 〈同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정지의 건〉 ▶ 제37호 〈昭和 4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승합자동차비 세입출 예산 추가경정의 건〉 ▶ 제38호 〈昭和 4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공익질옥비 세입출 예산 추가경정의 건〉 ▶ 제39호 〈경성부 특별영업세 잡종세 조례 중 개정의 건〉 ▶ 제40호 〈경성부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의 건〉 ▶ 제41호 〈昭和 4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추가의 건〉 ▶ 제42호(?) 〈부외 급수의 건〉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29		27	부협의회	참석 13	▶ 제43호 〈昭和 4년도 경성부 일반경상임시비 추가경정의 건〉 ▶ 제44호 〈昭和 4년도 예산 추가경정의 건〉(경상비)	
	9	29	부협의회			
	12	9	부협의회	참석 30	부윤의 인사 및 기념촬영	개선 후 최초
					▶ 〈昭和 4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추가의 건〉 ▶ 〈昭和 4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공익질옥비 세입출 예산 추가경정의 건〉 ▶ 〈공채상환기금적립규정의 건〉 ▶ 〈부외 급수의 건〉	
		17	부협의회위원회		▶ 〈공채상환기금적립규정의 건〉(위원 조병상, 김사연, 임흥순, 성송록, 竹內菊太郎, 濱田虎熊, 中村郁日)	
		20	부협의회위원회			
		28	부협의회위원회			
1930	3	3	부협의회	참석 29	▶ 〈공채상환기금적립규정의 건〉 ▶ 〈昭和 4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추가경정의 건〉 ▶ 〈경성시구개수충당기채의 건〉"	
		24	부협의회 (제1일)	참석 29	*예산 개요 설명과 질문 ▶ 〈부청사 신축비 충당채 상환방법 변경의 건〉 ▶ 〈오물소제비 충당채 상환방법 변경의 건〉 ▶ 제9호 〈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 〈昭和 5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승합자동차비 세입출예산〉 ▶ 〈昭和 5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공익질옥비 세입출예산〉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30	3	24	부협의회 (제1일)	참석 29	▶〈경성부 제2기 하수개수공사비 繼續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의 건〉 ▶〈경성부 제2기 하수개수공사비 충당채 借入시기 중 변경의 건〉 ▶〈경성부 수도확장공비 繼續年期 및 지출방법 중 수지계산표 수입 부분 변경의 건〉 ▶〈수도확장공사비 충당기채 요항 중 변경의 건〉 ▶〈묘지 및 화장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위생시험수수료조례 설정의 건〉 ▶〈소독 및 환자 수송수수료조례 설정의 건〉 ▶〈경성부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의 건〉 ▶〈경성운동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경성부 사회사업 기금설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건〉	
					▶〈부청사 신축비 충당채 상환방법 변경의 건〉 ▶〈오물소제비 충당채 상환방법 변경의 건〉	
		26	부협의회 (제3일)		▶ 제9호 〈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27	부협의회 (제4일)		▶ 제9호 〈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3	28	부협의회 (제5일)		▶ 제9호 〈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29	부협의회 (제6일)		▶ 제9호 〈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31	부협의회 (제7일)		▶ 제9호 〈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4	2	부협의회 (제8일)		▶ 제9호 〈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4	부협의회 (제9일)		*이하 부협의회(제1일)에 제시된 안건을 참고할 것.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30			부협의회			
		5	부협의회위원회			
		7	부협의회위원회			
		8	부협의회			
		9	부협의회			
		10	부협의회			
		11	부협의회			
		12	부협의회위원회			
		15	부협의회위원회			
		16	부협의회위원회			
		17	부협의회위원회			
		18	부협의회위원회			
		19	부협의회위원회			
	4	21	부협의회위원회		*이하 부협의회(제1일)에 제시된 안건을 참고할 것.	
		22	부협의회			
		31	부협의회		▶제27호〈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의 건〉 ▶제28호 〈昭和 5년도 경성부 특별회계승합자동차 차비 세입출예산 추가경정의 건〉 ▶제29호 〈변상금 채권 포기에 관한 건〉 ▶제30호 〈부외 급수 허가의 건〉	
		6	부협의회		▶〈昭和 5년도 부세 호별 부과등급표준 및 부과액 결정의 건〉 ▶〈昭和 5년도 부세 호별세 각인별 부과등급 결정의 건〉	
			부협의회위원회			
		7	부협의회위원회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30		9	부협의회위원회			
		10	부협의회위원회			
		11	부협의회위원회			
		12	부협의회위원회			
		13	부협의회위원회			
		16	부협의회			
	6	23	부협의회		▶〈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추가경정의 건〉 ▶〈동대문공설시탄소채시장의 위치, 면적 및 설비 변경의 건〉 ▶〈동대문공설시탄소채시장 부지 차입의 건〉 ▶〈舊아현리 묘지 및 화장장 두 곳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에 따르는지에 대한 건〉 ▶〈부외 급수허가의 건〉	
		25	부협의회위원회			
		26	부협의회위원회			
			부협의회			
	11	10	부협의회		▶〈수익세 조례의 건〉 ▶〈舊부청사 부지 일부 매각의 건〉 ▶〈분뇨매도단가의 건〉	
1931	1	16	부협의회		▶〈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경정의 건〉 ▶〈부외 급수의 건〉	신임부윤 주관
		28	부협의회		▶〈경성부 특별영업세, 잡종세 조례 중 개정의 건〉 ▶〈경성부 청사 신축비 충당기채 상환방법 변경의 건〉 ▶〈昭和 5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경정의 건〉 ▶〈경성시구개수비 충당채 기채의 건〉 ▶〈昭和 5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공익질옥비 세입출예산 추가의 건〉 ▶〈공익질옥비 충당채 기채의 건〉 ▶〈부외 급수의 건〉	
		3	부협의회위원회			
		4	부협의회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31		11	부협의회 (제1일)		▶ 부윤의 昭和 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강령 설명 및 일반 질문	
		12	부협의회 (제2일)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출경상부 제1관의 제1독회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출경상부 제2관의 제1독회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출경상부 제3관의 제1독회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출임시부 제1관의 제1독회	
		13	부협의회 (제3일)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출경상부와 세출임시부에 속하는 총 11개 관의 제1독회	
		14	부협의회 (제4일)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출경상부와 세출임시부에 속하는 총 14개 관의 제1독회	
		16	부협의회 (제5일)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출경상부와 세출임시부에 속하는 총 18개 관의 제1독회	
		17	부협의회 (제6일)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입임시부 및 세출경상부와 세출임시부에 속하는 총 31개 관의 제1독회	
			부협의회 (제7일)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입경상부 제1관의 제1독회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입경상부 제2관의 제1독회 ▶ 제53호 〈순화원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제1독회 ▶ 제54호 〈경성부 가축시장 사용조례 개정의 건〉 제1독회	

연도	월	일	회의	참석 / 결석	자문인(번호) 및 의제	비고
1931			부협의회 (제7일)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입경상부에 속하는 총4개 관의 제1독회 ▶ 제55호 〈묘지 및 장제장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제1독회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입경상부와 세입임시부에 속하는 총11개 관의 제1독회 ▶ 제52호 〈경성시구개수비 충당 채 기채의 건〉 제1독회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입임시부 제11관의 제1독회	
	3				▶ 제51호 〈昭和 6년도 경성부 세입출 예산〉 중 세출경상부 제38관의 제1독회 ▶ 제54호 〈특별회계승합자동차비 세출 예산〉 ▶ 제50호 〈昭和 6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공익질옥비 세입출 예산〉	
		19	부협의회위원회		*위의 자문안을 참고할 것.	
		20	부협의회위원회			
		22	부협의회위원회			
		23	부협의회위원회			
		24	부협의회위원회			
		25	부협의회위원회			
		26	부협의회위원회			
		27	부협의회위원회			
		28	부협의회위원회			
		30	부협의회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기의 자문안은 부협의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각년도 예산안 검토를 제외하더라도 꽤 다양한 내용으로 포진되어 있다. 또

한 전체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특징이 나타나는데, 해가 갈수록 부협의회의 소집 회수와 기간이 늘어나고 제출되는 자문안이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안의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개최가 잦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제'의 도입이 고조되는 분위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192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지역정치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연도별로 논의된 자문안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1926년에는 선거 직후인 11월 29일에 최초의 부협의회가 열려 부윤의 사업 설명과 인사가 있었다. 1927년에는 간선도로의 개수, 수도확장공사, 호별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관련 조례, 묘지 및 화장장 설치, 부립도서관 사용조례, 어시장 설치와 사용조례, 오물소제비와 관련된 자문안 등이 제출되었다. 더불어 부 신청사의 부설에 사용된 충당채의 상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도 확인된다. 비록 "부협의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만큼 회의는 싱겁기가 짝이 없"다는[60] 식의 비판이 상시 나왔으나 참여한 부협의회원들의 질문이 언제나 형식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방규환은 예산 편성에 사회사업이 경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고, 나리마츠(成松綠)는 향후 실시될 '자치제'에 대한 부윤의 복안을 묻기도 했다.[61] 또한 〈호별세조례〉의 개정안과 관련된 한만희의 질문은 세간으로부터 "금번 개회 이래의 대걸작"으로 평가되기도 했다.[62]

1928년에는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문안이 제출되었고, 자연스럽게 부협의회에서의 논의도 활발해졌다. 수도확장공사, 간선도로의 개수, 오물소제비 등처럼 전년도에 이어 논의되는 것 외에도 경성부승합자동차와 관련된 자금 및 조례, 부 이원(吏員)의 봉급·여비·숙사료와 관련된 조례, 경성부의 기본재산

60) 〈沒常識·無定見 府財源은 城壁을 헐어 石材를 팔자는 모일인의 몰상식〉 ≪매일신보≫ 1927년 3월 10일.

61) 위의 같음.

62) 〈營業稅決定前에 附加稅額決定何故 대답에 궁한 과장의 회피〉 ≪매일신보≫ 1927년 3월 12일.



<사진 6> 1928년 부협의회를 방청하는 인력거꾼
출처 : ≪매일신보≫ 1928.3.14.

관리규정, 사회관 사용조례, 직업소개소 노동자숙박실 사용조례 등이 자문안으로 새롭게 제출되었다. 특히 총 21건의 자문안이 제출된 3월의 부협의회가 주목되는데, 이 시기 부 당국과 부협의회 간에 갈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승합자동차의 부영(府營)을 둘러싼 논의이다. 2일차였던 3월 9일에 이 논란이 시작되었으며,[63] 3일차에는 방청하던 인력거꾼의 반대로 혼란을 겪었다가 4일차에 비로소 가결되었다(〈사진 5〉 참고).[64] 이밖에 호적등본이나 수도확장 등을 둘러싸고도 작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제8일차에 총독에게 〈도시계획법 및 시가지건축물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도 특징적이다.

1929년에도 많은 자문안이 제출되었다. 특별세 수익세조례 설정, 부청사 신축비 충당기채 상환방법, 승합자동차 사용조례, 공익질옥 설치와 관련된 안건들, 경성시구개수공사, 소주택 신축, 서대문공설시탄채소시장, 수입증지조례 개정 등과 관련된 자문안이 제출되었다. 특히 이때는 1920년대 최고의 부정비리사건으로 거론되는 '신당리부유지매각사건'과 공익질옥 설치가 주된 논의사항으로 다루어지면서 매우 격렬한 공방이 나타난다.[65]

'신당리부유지매각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1930년에는 주로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다른 때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3월과 4월, 6월에 집중적으로 소집되었으며, 대개 예산 긴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63) 〈當局怠慢攻擊에 認可遲延이라 辨明 京城府協議會의 제2일〉 ≪매일신보≫ 1928년 3월 12일.

64) 〈긴장된 의장 써스안 논쟁 인력거군반대로 일파란 경성부의회 제3일〉 ≪매일신보≫ 1928년 3월 14일 ; 〈甲論乙駁後 써스案 可決 경성부의회 제4일〉 ≪매일신보≫ 1928년 3월 15일.

65)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정은 김동명, 〈식민지 조선에서의 부협의회의 정치적 전개〉 ≪한일관계사연구≫ 43, 2012 참고.

둘러싸고 벌어졌다. 3월에 열린 부협의회 때부터 이러한 논의 지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예산 긴축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이루어졌던 3월 24일 이후, 경성부가 긴축을 핑계로 청계천 개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문제제기가 홍필구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66] 이는 한강통과 의주통의 개수문제나[67] 사직공원 개수 문제[68] 등을 둘러싸고 경성부가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한다는 논란으로 번지기도 한다. 소방수 수당문제나 변호사 및 의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현 거주지 조사비, 전기부영화 문제 등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논의들이 보이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밖에 이전 연도에 이어서 부 청사 신축비나, 오물소제비, 승합자동차비, 공익질옥비 등이 논의되었고, 제2기 하수개수공사, 위생시험수수료조례, 소독 및 환자 수송수수료조례, 경성운동장 사용조례, 사회사업 기금설치 및 사용방법, 동대문공설시탄채소시장 등과 관련된 새로운 자문안이 제출되었다.

1931년에는 5월에 예정된 부회선거를 앞두고, 비록 다른 해보다 짧은 기간이지만 의결기관으로 변환을 대비한 당해의 예산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밖에 특별영업세, 잡종세 조례 개정, 부 청사 신축비 상환방법, 경성시구개수비, 공익질옥비, 순화원 사용조례 개정, 가축시장 사용조례 개정, 묘지 및 장재장(葬齋場) 사용조례 개정 등이 자문안으로 제출되었다. 또한 부협의회 내에 공영사업조사회가 설치된 것을 따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회는 같은 해 2월에 총 4개 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고에츠카(肥塚正太)를 위원장으로 하여 전기 및 와사에 관한 조사를, 제2부는 토목교통에 관한 조사를, 제3부는 다나카(田中半四郎)를 위원장으로 두고 위생수도에 관한 조사를, 한만희를 위원장으로 둔 제4부는 산업·사회사업·기타를 조사하였다.[69] 아래 〈표 5〉는 이를 정리

66) 〈淸溪川改築에 대한 당국의 성의를 논란 경성부의 제3일〉 ≪매일신보≫ 1930년 3월 28일.
67) 〈한강통개수문제로 조, 일 부의등 격전〉 ≪매일신보≫ 1930년 3월 29일.
68) 〈社稷公園改修와 塔洞公園 이관 문제 경성부의 제5일〉 ≪매일신보≫ 1930년 3월 30일.
69) 〈公營事業調査會 부서위원을 결정, 간담회의의 결과〉 ≪매일신보≫ 1931년 2월 5일.

한 것이다.

<표 5> 공영사업조사위원회 현황(1931년 2월 3일 현재)

	위원장	위원	비고(31년 부회선거 전까지의 활동)
1부 (전기 및 와사)	肥塚正太	森秀雄, 한만희, 濱田虎熊, 藤井貫一(혹은 藤村忠助), 中村郁一, 成松綠, 竹內菊太郎, 임흥순, 김사연, 이승우, 이규복	2월 16일, 2월 23일, 3월 2일, 3월 9일, 3월 16일 회의 진행.
2부 (토목, 교통)	최초 유보	이규복, 濱田虎熊, 조병상, 藤井貫一, 田端俊純, 成松綠, 오정환, 김사연, 塚崎兼作, 武上安一	2월 20일, 2월 27일, 3월 16일 회의 진행. *2월 20일 회의에서 成松綠을 추대
3부 (위생, 수도)	田中半四郎	森秀雄, 富井實太郎, 김석진, 홍필구, 조병상, 山田禎輔, 竹內菊太郎, 윤우식, 增田三穗	2월 24일, 3월 3일, 3월 5일, 3월 9일, 3월 26일 회의 진행.
4부(산업, 사회사업, 기타)	한만희	中崎茂三, 高木德彌, 홍필구, 藤村忠助, 松本淸次郎, 中村郁一, 윤우식, 이승우, 田中半四郎	2월 28일, 3월 18일 회의 진행.

출처: ≪매일신보≫ 1931.2~3월 기사.

비고: 1부 위원 중 藤井貫一(혹은 藤村忠助)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藤井安助를 누구의 오기로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상으로 연도별 부협의회의 논의 안건과 성격을 정리하였다. 다양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내용은 지면상 모두 거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 부협의회에서 다룬 대개의 안건에는 소위 '공적' 관점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특권층이었던 부협의회원들이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 위에서 '공적'인 것들을 건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영역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정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중'에 의한 '직접지배'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이 때문에 이들은 소수 집단에 의해 구성되고 있었음에도 특정 집단의 특수한 이익이 아닌 소위 '공적' 쟁점을 테마로 활동할 수 있었다"[70]는 정리를 소개해 두기로 한

70) 기유정, 앞의 논문, 2007, 27쪽.

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공적'인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71]

또한 주지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부협의회원의 실질적인 활동이 서서히 부협의회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20년대의 부협의회원들은 1910년대와는 달리 민선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조선인 또는 일본인 '유력자 사회'의 요구 사항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경성부의 현안에 대한 식견을 끊임없이 요구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 부협의회원들은 부윤이 공식적으로 소집하는 〈통상회〉 외에도 간담회(懇談會), 다화회(茶話會) 등의 자체적인 모임을 수시로 가지면서 부정(府政)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했다. 또한 경성부가 조직한 도시계획연구회나 조선박람회협찬회, 자치제도연구회 등도 부협의회원들의 실질적인 활동 무대로 기능했다. 예를 들어 1927년에 "내지에 있는 각 대도시와 같이 경성을 대도시로 만드는 사업"의[72] 비용을 충당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수익세는 도시계획연구회가 주축이 만든 것이었다.[73] 또한 1930년부터 강력하게 대두하기 시작한 승합자동차의 부영 중지결의 역시 간담회의 논의를 거쳐 제기되었다.[74] 간담회는 부윤의 무능을 질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75] 다화회에서는 '자치제'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제도연구회를 조직하기로 협의하거나[76] 부윤의 임기에 관련된 의견을 합의하여 총독에 진정

71) 이에 대해서는 이병례, 〈일제하 전당포 운영실태와 공익 개념의 한계〉 ≪사림≫ 46, 2013과 전영욱, 〈일제시기 경성의 '공설질옥' 설치〉 ≪서울학연구≫ 54, 2014 등 참고.

72) 〈府尹의 自由에 맛길 京城府受益者稅內容〉 ≪매일신보≫ 1927년 2월 26일.

73)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염복규, 〈일제하 도시지역정치의 구도와 양상 - 1920년대 京城 市區改修 이관과 수익세 제정 논란의 사례 분석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 2011 참조.

74) 〈府營 ≪버스≫成績不良 經營中止決議說〉 ≪매일신보≫ 1930년 3월 13일. 이에 대해서는 최인영, 〈1928~1933년 京城府의 府營버스 도입과 그 영향〉 ≪서울학연구≫ 29, 2007 참조.

75) 〈續出하는 不祥事로 府尹訪問코 問責 부협의원간담회의 결과로〉 ≪매일신보≫ 1930년 7월 3일.

76) 〈自治制度研究委員〉 ≪매일신보≫ 1927년 10월 5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77]

한편 부협의회의 공적 관점이 무엇인지, 실체적·역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논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경성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것의 삭감, 확충, 보전 등을 요구했던 부협의회의 논의가 특히 중요할 것이고, 경성부가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과 그 사업을 둘러싼 민족·계급적 입장 등도 당시의 논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지면에서 이를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논의 사항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 외의 사항은 추후의 연구를 위해 1926~1931년에 걸쳐 제·개정 또는 폐지된 경성부 조례를 일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표 6> 경성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1926~1931)

조례(호)	공포일	제목
제5호	1927년 5월 4일	경성부호별세조례
제6호	1927년 5월 12일	경성부국세및지방세부가세부과징수조례 개정
제7호	1927년 5월 17일	경성부도서관사용조례 개정
제8호	1927년 6월 13일	경성부납세장려조례
제9호	1927년 7월 7일	경성부특별영업세 잡종세 조례
제1호	1928년 1월 6일	경성부수산시장이용조례
제2호	1928년 4월 18일	경성부승합자동차이용조례
제3호	1928년 4월 18일	경성부여비지급조례 개정
제4호	1928년 4월 18일	부리원숙사료지급조례 개정
제5호	1928년 4월 18일	부리원조례 중 개정
제6호	1928년 4월 18일	부리원봉급조례 개정
제8호	1928년 5월 23일	경성부사회관이용조례

77) 〈府尹의 異動頻數는 府政上支障不少〉 ≪매일신보≫ 1930년 11월 20일.

조례(호)	공포일	제목
제1호	1929년 1월 21일	경성부직업소개소 노동숙박실 사용조례
제2호	1929년 4월 26일	부금고 사무취급 조례 개정
제3호	1929년 5월 10일	경성부 제2회 공채 조례
제5호	1929년 5월 17일	부세특별득세조례 폐지
제6호	1929년 5월 29일	경성부도로철수보조조례
제7호	1929년 6월 1일	경성부승합자동차이용조례 개정
제8호	1929년 6월 4일	국세 및 지방세 부가세 부과징수 조례 개정
제9호	1929년 6월 7일	부세제한 외 부과 조례
제10호	1929년 7월 1일	경성부묘지 및 화장장 이용 조례 개정
제11호	1929년 10월 15일	경성부수입증지조례 개정
제12호	1929년 10월 21일	경성부특별영업세잡종세조례 개정
제13호	1929년 12월 20일	경성부 公益質屋 조례
제1호	1930년 6월 6일	경성운동장이용조례 개정
제2호	1930년 6월 8일	조흥세조례 개정
제3호	1930년 6월 12일	위생시험주수료조례 개정
제4호	1930년 6월 20일	묘지 및 화장장이용조례 개정
제5호	1930년 6월 23일	경성부수입증지조례 개정
제6호	1930년 6월 25일	소독 및 환자 이송수수료 조례
제1호	1931년 4월 1일	경성부 제1부 특별경제공사 청부 노력 공급 및 물건 매매대차에 관한 조례
제2호	1931년 4월 1일	경성부 제1부 특별경제금고사무취급조례
제3호	1931년 4월 1일	경성부 제2부 특별경제금고사무취급조례
제4호	1931년 4월 1일	경성부 제2부 특별경제공사 청부 노력 공급 및 물건 매매대차에 관한 조례
제5호	1931년 4월 1일	부리원봉급조례 개정
제6호	1931년 4월 16일	경성부 제1부 특별경제호별세조례

조례(호)	공포일	제목
제7호	1931년 4월 16일	경성부 제1부 특별경제호별세조례
제8호	1931년 4월 16일	경성부 제2부 특별경제가옥세부가세조례
제9호	1931년 4월 21일	경성부특별영업세잡종세조례 개정
제10호	1931년 5월 5일	묘지 및 장재이용조례 개정
제11호	1931년 5월 7일	순화원이용조례 개정

2) 주요 활동 - 공익질옥 설치를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절에서는 1929년에 제출된 다양한 자문안 중에서 소위 '공익질옥'을 둘러싸고 벌어진 부협의회와 경성부 간의 논전(論戰)을 살펴볼 것이다.[78] 이는 1929년 부협의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였다. 당시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문안은 9호부터 12호까지 총 4개였는데, 〈경성부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설정의 건〉, 〈경성부 공익질옥조례 설정의 건〉, 〈경성부 공익질옥비 충당기채의 건〉, 〈소화(昭和) 4년도 경성부 특별회계 공익질옥비 세입출예산의 건〉이 그것이다. 당시 질옥(質屋, 전당포)은 경성의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높은 이자율·불안정한 유질(流質)기한 등으로 인해 빈민의 일상생활을 매우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도 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성부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가지고 오면서 빈민을 포섭하고, 이를 위해 1920년대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사회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공익질옥의 부영(府營)화를 추진하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사설 질옥업자 간의 조정을 필요로 했다. 1929년 부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오정환이 유력한 전당포업자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더

78) 이 부분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병례, 앞의 논문, 2013 ; 전영욱, 앞의 논문, 2014 ; 이승일, 〈일제 식민지 조선의 전당과 공설질옥〉 ≪동아시아문화연구≫ 60, 2015.

불어 당시 부협의회가 경성부 주민들에게 일종의 '공적기관'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사설 질옥(전당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경성부의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전략) 공설질옥 설치가 내정되자 경성질옥조합, 경성전당포조합, 용산질옥조합은 민업압박이라며 설치 반대운동을 일으키고, 부협의원에게 同案 통과 저지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었다. 현 부협의원에게 본년 10월이 임기 만료이고, 改選되며, 질문(하는 이의) 다수는 각 町의 유력자인 관계로 선거 지반 등 때문에 부의원의 대부분은 공설질옥 설치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 (후략)[79]

또한 1929년과 1930년에 걸쳐 경성부의 예산 운용이 긴축에 가까웠던 점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몇몇 조선인과 일본인 부협의회원들은 공익질옥의 설치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관련 회의는 1929년 3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의장은 부윤을 대신하여 내무과장인 요시무라(吉村傳)가 맡았고, 주요 발언자는 이케다(池田長次郎), 안도(安藤靜), 이승우, 김사연, 한만희, 방규환, 나리마츠(成松綠), 고바야시(小林藤右衛門), 데라오(寺尾猛三郎), 오오무라(大村百藏)였다. 세밀하게 본다면 경성부의 자문안에 대한 부협의회원들의 입장은 완전히 반대하거나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들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조선의 상황'을 거론했다. 예를 들어 고바야시는 "지금 조선의 상황에서 당장 1개를 설치하더라도 아무런 공익적 효과를 낼 수 없고", '부족한 예산'을 거론하면서 이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회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한 이들은 '민업압박'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다. 이때 질옥(전당포)조합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이케다는 〈공설질옥조례〉의 수정을 제기했는데, 이때 그는 '공익'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조합과 교섭

79) 〈庶民にそむいて公益質屋に反對の府議〉 ≪京城日報≫ 1929년 3월 25일.

해야 함을 제창하였다. 김사연은 사설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가장 공평한 장소"가 어딘지를 질문하였다. 방규환의 경우는 '공익'을 위해 원안을 철회하라고까지 비판하였다.

비록 반대의 입장이 수용되어 공익질옥의 설치가 철회되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이 가지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성부를 비롯한 식민권력이 내세운 명분, 즉 '조선의 실정'에 맞는 사회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한다는 논리가 공격받은 것은 그들이 부협의회와 사회가 생각하는 '공익'의 개념을 잘 포착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공익이라는 가치를 전유하고자 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의미를 지닌 채 공익질옥은 설치되었다. 특히 자문안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성부 공익질옥조례 설정의 건〉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제3조와 제23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경성부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경성부공익질옥조례〉는 1929년 12월 20일에 경성부조례 제13호로 공포되었다. 부칙을 포함해 총 25개 조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府는 부내 거주자인 소액 소득자에 대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공익질옥을 경영한다. 단, 부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접면 거주자에 대해서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공익 전당포의 명칭 및 설치 장소는 부윤이 고시한다.
제2조	의류, 가구, 침구, 기타 동산이면서 확실하고 정당한 것에 한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윤이 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 또는 보관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거절할 수도 있다.
제3조	자금의 대부 금액은 전당잡힌 質物에 대해 부윤이 평가한 가격의 10분의 7 이하로 하고 1인(口) 금 5원 이내, 1세대 금 20원 이내로 한다.
제4조	대부 이율은 월 1푼 5리로 하고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단, 1개월에 미달한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는 1개월로 하고 16일 미만일 때는

반월로 계산한다.

제5조 ① 流質 기한은 전당 계약의 성립일부터 4개월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당잡힌 자[質置主]의 자진신고[申出]에 의거해 부윤은 유질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도 있다.

② 전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유질 기한 연장을 승인받고자 할 때는 그 借受金 전액에 대한 당월까지의 이자를 완전히 갚을 것[完濟]을 요한다.

제6조 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씨명, 직업을 명확히 하고 전당잡힐 물품[入質物]을 제시하여 부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전당물이면서 유실물 또는 도난품일 때는 경찰관의 요구에 의거해 잃어버린 자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한다.

제23조 전당물 및 장부는 비밀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4조 본 공익 전당포의 업무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단, 매달 20일 및 4대 국경일[四大節]은 휴업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1920년대 후반 부협의회의 성립 과정, 주요 부협의회원들의 이력, 부협의회에서의 논의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자문기관'이라는 위상은 분명 이 시기 유력자들의 활동에 하나의 제약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부협의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한 제약만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부협의회원들은 이미 여러 번 민선으로 선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구성원도 부협의회를 통해 일종의 '정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게다가 역설적이지만, 식민지 경험의 축적 또한 조선인·일본인 유력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입지를 보전하거나 확산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했을 것이다. 여기에 점차 '도시'

로서 완결성을 갖춰가고 있는 경성의 사정,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발생, 〈조선지방선거취체규칙〉으로 대변되는 선거 제도의 정비, '자치제'의 예고 등과 같은 변수들이 이 시기 부협의회와 그 구성원들을 휘감고 있었다. 단순히 자문하는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경성부 역시 그렇게 취급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시기 부협의회의 성립과 활동은 조선인과 일본인 유력자 간의 정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사이에 사회가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2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제5장

1930년대(1931~1939) 경성부회의 구성과 활동

고태우(연세대 사학과 박사수료)

1. 머리말

2.1930년대 경성부회 선거와 당선자 현황

1) 1930년 부제 개정

2) 1931년 선거와 당선자 현황

3) 1935년 선거와 당선자

4) 1936년 증원선거와 당선자

3. 1930년대 경성부회의 회의 추이와 주요 안건

1) 회의 구성 및 진행 과정

2) 1930년대 경성부회의 시기별 회의 추이

3) 주요 의제

4. 맺음말

1. 머리말

그동안 식민지 지역정치, 도시사의 전개에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부협의회원 내지 부회의원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에 관해서는 식민통치의 풀뿌리 수행자, 친일협력세력 또는 제한적이지만 지역정치의 한 구성원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조선인 또는 재조일본인 어느 한 쪽(특히 조선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거나, 부(협의)회 전개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특정 사례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막상 부(협의)회의 활동 과정에서 부(협의)회원들의 행위가 어떠한 맥락과 이해관계에서 이뤄지는지에 관해서도 여전히 분석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선인 및 일본인 전체 부(협의)회원을 조망하며 식민지 정치사, 도시사를 겨냥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1)]

위 문제의식 아래 이 글은 식민지 조선의 중심지 경성에 초점을 맞추고 1930년대 부회 석상을 오르내린 부회의원들에 주목한 것이다. 1930년 12월 지방제도가 개정되면서 부제(府制)도 바뀌었다. 기존의 자문기관이었던 부협의회가 의결기관인 부회로 개편되면서 부 조례 제정과 세입출 예산안의 결정, 부세 징수, 특별회계 등에 대한 의결권, 부 사무에 관한 검열 등 부회는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비와 학교조합 등 교육행정의 영역도 부로 귀속되면서 부회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부회 위상의 증대는 도시 지역 유력자층의 정치적 욕구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하였고, 부회의원직을 둘러싼 선거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한편으로 1930년대는 식민지 공업화, 일제의 전쟁 수행과 결부되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안이 부회에서 논의되고 의결 과정을 거쳤던 시기이다. 이러한 점이 1920년대 부협의회와 대비되는

1)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홍순권의 연구는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친 부산과 동래 지역의 조선인과 일본인 부(협의)회의원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1930년대 이후 부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1930년대 경성부회의 선거 과정과 선출된 부회의원 개개인의 인적 사항, 이들을 구성원으로 한 부회 회의의 기본적인 추이 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선행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으나,[2] 여기서는 전체 선거 과정(1931, 1935, 1936년)[3]과 부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에서 밝혔거나 다루지 못한 선거와 인물에 대한 기본 사항을 대폭 수정·보완하고, 부회의 회의 추이를 밝힘으로써 경성부회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과제를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적어도 부회의원이 어떠한 이들이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이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식민지 정치사 및 행정사, 도시사 연구에 기초 작업으로서 일정한 의의는 가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2. 1930년대 경성부회 선거와 당선자 현황

1) 1930년 부제 개정

1930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의 자문기관이었던 도평의회와 부협의회, 지정면협의회가 각각 도회와 부회, 읍회로 명칭이 바뀌고 의결권을 갖게 되었다. 또 면협의회는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뀌었다. 부회제도와 관련해서는 1930년

2)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손정목,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上)≫, 일지사, 1992 ; 김동명, 〈1931년 경성부회 선거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2, 2005 ; 김제정, 〈제3장 경성부회·부협의회와 서울의 유지들〉 ≪서울 2천년사 26 경성부 도시행정과 사회≫, 서울역사편찬원, 2015 등이 있다.

3) 1939년 선거에 관해서는 이 책의 양지혜, 〈전시체제기(1939~1945) 경성부회의 구성과 활동〉 참조.

12월 1일 제령 제11호로 〈부제〉가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12월 29일 부령 제104호로 〈부제시행규칙〉도 바뀌었다.[4] 〈부제〉와 그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먼저 부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회는 의장과 부회의원으로 조직하고 의장은 부윤이 되도록 했다(부제 제7조). 명예직인 부회의원의 임기는 기존 부협의회원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제11조). 이전 부협의회와 달리 부회의원 가운데 부의장 1명을 선출하고,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했다(제19조). 의원 정원은 각 부의 인구수에 따라 정했는데, 인구 3만 미만인 경우 24인, 3만 이상 5만 미만은 27인, 5만 이상 10만 미만은 30인, 10만 이상은 33인으로 정했다. 10만 명을 초과하는 부에는 인구 5만이 늘어날 때마다 의원 3인을 증가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민족별 의원정수에 규정을 두어서 일본인과 조선인 각각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제8조). 이때 부 인구수는 ≪조선총독부관보≫를 기준으로 했다(시행규칙 제2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독립생계를 영위한 지 1년 이상이면 해당 부 주민이 되었고, 그 주민 가운데 부세 연 5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정했다. 단,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못한 자, 6년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어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은 자, 현역 육해군 군인 등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부제 제9조). 피선거권의 경우 소속 도 및 당해 부의 관원과 유급관원, 판사, 검사 및 경찰관원,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규정을 두었다(부제 제10조).

---

4) ≪조선총독부관보≫ 昭和 제1074호, 1930년 12월 1일 ; ≪조선총독부관보≫ 昭和 제1197호, 1930년 12월 29일.

5) 그 내용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상세히 정리한 바 있어 다음을 참조했다. 손정목, 앞의 책, 1992, 247~250쪽 ; 홍순권, 〈일제시기 '부제'의 실시와 지방제도 개정의 추이〉 ≪지역과 역사≫ 14, 2004.

또한 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특별경제로 책정하여 일반경제와 구분하도록 했다(제55조). 이때 교육행정을 담당했던 학교비와 학교조합을 부에 통합시키고 학교조합평의회, 학교비평의회 대신 일본인의원으로서 제1교육부회를, 조선인의원으로서 제2교육부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제1·2 교육부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서 부윤이 맡았다(부제 제57조).

부회는 여러 의결 권한을 지녔다. 부 조례의 설치 및 개폐, 세입출 예산안 결정, 결산보고, 부세·부역현품·사용료·수수료의 부과 징수, 부의 기채(起債)와 관련한 사항, 기본재산과 적립금, 특별회계 등의 중요사안을 의결했다(부제 제13조). 또 부의 권한에 속하는 여러 선거(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등), 관청 자문에 대한 답신, 부 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의 검열, 사무 관리, 의결의 집행 및 출납 검사, 회의 규칙 제정 등 각종 권한을 가졌다(부제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그러나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이 있었고, 의장이 의회의 의결을 취소하거나 재의결하도록 할 수 있는 등 부회의 각종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점에서 여러 한계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었다.

2) 1931년 선거와 당선자 현황

1931년의 선거는 지방제도 개편으로 부회가 의결기관이 된 뒤 처음 실시된 선거였다. 당시 선거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선거제도의 변화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1929년 9월 총독부령 제28호로 제정된 〈조선지방선거취체규칙〉은 선거절차를 비교적 뚜렷이 독립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규였는데, 1931년 3월에 조선총독부령 제21호(1931. 4. 1 시행)[6]로 수정이 가해졌다.

개정의 골자는 입후보제의 확립이다. 곧 개정 규칙에서는 "부회의원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타인을 의원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

6) ≪조선총독부관보≫ 昭和 제1262호, 1931년 3월 24일.

는 자"는 선거관리자(부윤)에게 선거일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부윤은 이 사항을 즉시 고시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다.[7] 또 위 두 경우의 후보자와 추천자가 선거운동자를 선임할 때는 곧바로 운동자의 주소와 이름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고, 미리 신고한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했다(제4조 2~4). 이전까지는 입후보제가 분명치 않아 선거가 거듭될수록 선거운동이 격해지고 입후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암암리에 운동하여 당선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신고를 통해 선거운동을 관리 단속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8]

입후보 이외에 선거는 어떤 절차에 입각해서 이뤄졌을까? 선거는 1인 1표의 무기명투표제였다. 〈부제시행규칙〉에 따르면 선거의 전반적인 사항은 부윤이 관장했다. 부윤은 선거일 50일 전 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했고(제5조), 선거 30일 전부터 7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해야 했다(제6조). 이 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최종판을 확정하도록 했다(제8조). 또 부윤은 선거일로부터 적어도 7일 전에는 선거장소와 투표 일시, 선출할 의원수를 고시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시를 통해 투표분회를 설치할 수 있었다(제11조). 투표분회는 부윤이 지정한 관리가 담당했고, 부윤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 2~4명의 선거입회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제12조). 선거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도지사가 당선을 취소할 수 있었다(제24조).

새로 개정된 지방제도가 4월 1일부로 시행됨과 동시에 1931년 경성부회 선거도 시작되었다. 4월 1일 당일부터 입후보하는 이들이 대거 등장했다. 첫날부터 조선인으로는 조병상(曹秉相), 홍필구(洪必求) 등 23명, 일본인 측에서는 하마다 도라쿠마(濱田虎熊), 야마나카 다이키치(山中大吉), 모리 요이치로(森井與一郎) 등 16명이 후보 신청을 할 정도로 선거 열기는 뜨거웠다.[9] 이전 선거 때처럼

---

7) 고시가 의무가 됐기 때문에 입후보자가 발생할 때마다 각 신문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8) 손정목, 앞의 책, 242~243쪽 ; 姜再鎬, ≪植民地朝鮮の地方制度≫, 東京大学出版会, 2001, 243쪽.

9) ≪매일신보≫ 1931년 4월 2일.

경성부는 선거장소를 남대문소학교로 결정했고, 규정에 따라 4월 21일 오전 9시부터 선거인명부를 일반에 열람했다.[10] 또 부청에서는 5월 9일 선거인심득(유의사항)과 투표 순서에 관한 사항을 대중에게 발표했다.[11] 투표 3일 전인 5월 18일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으며, 최종 후보자수는 조선인 29명, 일본인 44명으로 총 73명이었다.[12] 경성부회의원 정원 수는 이전 부협의회의 30명에서 늘어난 총 48명이었는데, 정원 대비 후보자 수가 25명이 초과된 것이다.

선거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비롯하여 자신의 정견과 공약을 발표하는 연설회, 유권자를 직접 맞닥뜨리는 호별 방문, 입간판 설치 및 신문광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연설회는 후보 진영의 합동연설회인 '입회연설회'와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단독 연설회인 '정견발표 독연회' 등의 형태로 이뤄졌다.[13] 여러 신문은 각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소개하고 당선 예측보도를 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유권자 쟁탈전이 점점 백열(白熱)해졌고, "선거계는 난마와 같이 어지러"웠다.[14]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와 운동원들의 호별 방문이 더욱 활발해졌고, 유권자들은 대문간에 늘어선 운동원들의 성화와 '잔소리'에 몸을 피해 다니는 형편이었다.[15]

선거 열기는 투표일인 5월 21일까지 이어졌다. 선거장인 남대문소학교 부근은 각 후보 휴게소와 간판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오전 6시 정각이 되어 선거인 출입구가 개방되자 새벽부터 기다리던 수백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쇄도하기 시작했다. 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유권자들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 선거장 입구에는 장사진이 펼쳐졌다. 부근 남대문 일대는 구경꾼, 운동원 등으로

10) ≪매일신보≫ 1931년 4월 9·22일.

11) ≪경성일보≫ 1931년 5월 10일 ; ≪매일신보≫ 1931년 5월 10일.

12) ≪경성일보≫ 1931년 5월 19일 ; 金子南陽 編, ≪朝鮮地方自治制度施行記念 京城府會議員選擧錄≫, 1931, 9쪽.

13) 김동명, 앞의 논문, 2005, 202~205쪽 참조.

14) ≪매일신보≫ 1931년 4월 25일, 5월 10일.

15) ≪매일신보≫ 1931년 5월 19일.

인파가 너울거려 사람이 들끓었다고 한다.[16]



<그림 1> 1931년 경성부회선거 투표 장면
출처: ≪경성휘보≫ 117, 1931.5.



<그림 2> 선거 당일 입후보자 대기소
출처: ≪경성휘보≫ 117, 1931.5.

<표 1> 1931~1936년 경성부회의원 선거의 투표 결과 (단위: 명, %)

구분	시행일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1차	1931.5.21	14,849	7,907	22,756	18,497			81.3	
2차	1935.5.21	13,340	7,432	20,772	16,980			81.7	
증원	1936.9.20	13,164	9,050	22,214	5,753	4,493	10,246	43.7	49.7

출처: ≪경성휘보≫ 117, 1931.5, 32쪽 ; ≪경성휘보≫ 165, 1935.6, 35~36쪽 ; ≪경성휘보≫ 180, 1936.9, 26~27쪽

선거 결과를 보면, 〈표 1〉에서 보듯이 총 유권자 수는 총 2만 2,756명에 일본인 1만 4,849명(65.3%), 조선인 7,907명(34.7%)였으며, 전체 투표자 수는 1만 8,497명으로 81.3%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또한 전체 의원 정원 수 48명 중 당선자가 조선인 18명(37.5%), 일본인 30명(62.5%)이었다. 총 73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조선인이 29명(40%), 일본인은 44명(60%)이었던 점에서 당선율에서 민족별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16) ≪매일신보≫ 1931년 5월 22일.

<표 2> 1931년 경성부회의원 선거 당선자 현황

이름	생몰	연령	득표	재선여부	직업	학력	지방의회 경력
森秀雄	1893~?	39	727	◎	회사원 (경성전기주식회사)	도쿄제대 법과	부협(29) 부회(31)
波多江千代藏	1873~?	59	652		전 총독부관리 (통신, 우편소장)		부회(31,35) 도회(37)
馬場鞆	1872~1939	60	503		회사중역 (福德無盡 사장), 전 총독부관리	日本대학	부회(31,35) 도회(34보궐, 37)
山中大吉	1901~?	35	462		변호사	中央대학 법과	부회(31,35,39,43)
藤田爲與	1896~1941	36	427		변호사, 전 총독부 관리(경찰)	日本대학	부회(31,35)
梁在昶	1885~1968	47	417		회사중역(조선생명 상무이사), 전 군수	경성학당	부회(31,35,39,43)
寺田榮	?~1936	38	417		변호사, 전 검사	교토제대 법학부	부회(31)
濱田虎熊	1890~?	42	406	◎	변호사, 전 총독부 관리	소학교	부협(29) 부회(31,35,39) 도회(33)
森安敏暢	1891~?	41	400		변호사, 전 총독부관리(경찰)		부회(31,35,39,43) 도회(41)
鄭求瑛	1894~1978	38	378		변호사, 전 총독부 검사	관립한성외국어학교, 경성전수학교	부회(31) *선거규칙 위반 유죄 판결
菅總治	1895~?	37	372		의사(병원 부원장)	도쿄의학전문학교	부회(31,35)
石森久彌	1891~?	41	352		언론인 (조선공론사 사장)	明治대학 중퇴	부회(31,43) *33년 조선신문사 취체역 취임으로 부회의원 사임
秋山督次	1887~1936	45	349		회사중역(토목청부업)		부회(31) *재임중 '경성토목 담합사건'으로 유죄 판결
森井與一郎	1880~1939	52	330		변호사, 전 총독부 관리(철도)	關西대학 법과	부회(31)
藤村忠助	1875~?	57	328	◎	언론인(경성일보)		부협(26,29) 부회(31,36)

이름	생몰	연령	득표	재선여부	직업	학력	지방의회 경력
中村郁一	1880~?	52	311	◎	신문판매업, 전 교사, 전 총독부관리(재판소, 법무국)	佐賀縣師範學校	부협(29) 부의(31,35,39,43) 도의보궐(38)
任興淳	1895~1971	35	296	◎	농업, 요리업	보성중학교	부협(29) 부회(31,39) *선거규칙 위반 유죄 판결
田中半四郎	1871~1935	61	294	◎	토목청부업		부협(21,29) 부회(31)
加納一米	1890~?	43	293		언론인 (조선경제신보사장)		부회(31,35,39,43)
肥塚正太	1866~?	66	288	◎	우유업(동아목장)		부협(26,29) 부회(31) 도회(관선33)
石原憲一	1890~?	42	288		농업, 언론인(京城日日新聞)		부회(31,35,39,43)
大梅健治	1885~?	47	286		자영업(대나무파이프)	高等小學敎 졸업 후 私塾에서 수학	부회(31,35,39)
尹宇植	1890~?	40	286	◎	상업(잡화상), 전 총독부 관리	도쿄부립농림학교	부협(29) 부회(31,35)
近藤秋次郎	1893~?	39	280		회사중역 (조선잠사 상무취체역)		부회(31,35,43) 도회(33)
寶諸彌七	1875~?	57	278		자영업(사법대서), 전 총독부 관리(경찰)		부회 (31,35,39)
松本清次郎	1882~?	50	278	◎	회사중역(제분업)		부협(29) 부회(31)
白石巖	1873~1938	59	274		운수업, 인력거대부업	福岡修猷館에서 수학	부회(31,35) 도회(37)
增田三穗	1872~1933	60	269	◎	상업(가구제조판매업)		부협(26,29) 부회(31) 도회(33)
金思演	1896~ 1950	36	268	◎	회사중역(조선물산주식회사)	일본게이오대학 예과 중퇴. 경성고보 졸업	부협(26,29) 부회(31) 도회(관선:3 3,37,41)
塚崎兼作	1882~ ?	50	267	◎	음식업		부협(29) 부회(31)

이름	생몰	연령	득표	재선여부	직업	학력	지방의회 경력
洪必求	1892~?	38	265	◎	지주, 자영업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일어부	부협(29) 부회(31,35,43) 도회(37)
茅野留藏	1885~?	47	263		여관업(대동여관)	사립 大同義塾 졸업	부회(31)
杉市郎平	1869~?	63	260		저술업, 회사원	법학원(中央대학 전신)	부회(31,35,39) 도회보궐 낙선(38)
吳珽煥	?~?	42	259	◎	전당업, 전 총독부 관리(군수)		부협(29) 부회(31)
朴疇明	1899~?	33	254		양조업(불로釀酒상회)	경성공업전문학교 중퇴, 사립휘문의숙	부회(31,35,39,43) 도회(41)
李弘鍾	1891~?	41	252		변호사, 전 판사	경성전수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	부회(31,35,39,43)
朴準鎬	1884~1936	48	249		교육가(동성상업학교장), 전 총독부 관리(재판소 서기)	경성전수학교	부회(31,35)
曾我勉	1864~?	68	248		건축설계업, 전 우편소장	메이지법률학교 졸업(1892)	부회(31,39)
金圭瓚	1893(?)~?	38	246		언론인 (간도일보 조선지사장)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부회(31)
大村百藏	1872~?	62	246	○	언론인, 회사중역(京城中央物産(株) 사장)		도평(26) 부협(20,23,26) 부회(31)
李圭復	?~?	36	244	◎	회사원(대륙고무회사 감사역)	메이지대학 중퇴	부협(29) 부회(31)
曺秉相	1891~1978	39	244	◎	회사원	선린상업학교, 교토제대	부협(29) 부회(31,35,39,43) 도회(33)
李升雨	1889~1955	38	239	◎	변호사	중앙대학 법과	부협(26,29) 부회(31,35)
成松綠	1880~?	52	233	◎	회사원		부협(26,29) 부회(31,35)
劉承復	1897~?	34	231		회사원 (태평생명보험회사)	경성고등공업학교	부회(31,35) 도회 낙선(37)
芮宗錫	1872~1955	49	228	○	회사중역(경성현물주식회사 감사)		부협(26) 부회(31)

이름	생몰	연령	득표	재선 여부	직업	학력	지방의회 경력
金在泳	?~1932	38	221		지주, 교육가		부회(31)
金錫晉	1896~?	34	206	◎	지주	메이지대학 법과	부협(29) 부회(31)

출처: ≪경성일보≫ 1931년 5월 22일(호외) ; 이 책의 <부록 2-2> 경성부(협의)회 의원의 주요 경력.
비고: '재선 여부'의 ◎는 이전 선거인 1929년에 이어 재선된 경우, ○는 1929년이 아닌 그 이전에 당선 경력이 있는 경우를 뜻함.

선거에 당선된 인물 현황은 위의 〈표 2〉와 같다(상세한 이력은 〈부록 2-2〉 경성부(협의)회 의원 주요 경력 참조). 당선 당시 평균 연령은 45.9세이며, 조선인은 39.1세, 일본인은 50세로 일본인이 더 나이가 많았다. 최연소는 김사연으로 31세, 최고령은 소가 쓰토무(曾我勉)로 68세였다. 30대는 18명, 40대 14명, 50대 9명, 60대 7명이며, 조선인 의원이 더 젊은 것은 당선자 18명 중 30대가 12명, 40대가 6명인 것에서 잘 드러난다.

득표수에서는 최고 727표(森秀雄), 최저 206표(金錫晉)로 차이가 크다. 그러나 대체로 200표대가 3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300표대는 7명, 400표대는 6명, 500표 이상은 3명이다. 고득표자 상위 10명 중 8명은 일본인이, 저득표자 하위 10명 중 8명은 조선인이 차지하여 고득표자에서 일본인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7)]

1929년 부협의회원 선거에 이어 1931년 선거에서도 재선된 인물은 총 19명(조선인 9명, 일본인 10명)이었다.[18)] 종래 정원 30명 가운데 19명이 재선된 셈으로 그 비율은 63.3%에 이르렀다. 민족별로 살펴볼 때 1929년 당선된 12명의 조선인 의원 중 9명이, 일본인의 경우 18명 중 10명이 1931년에도 당선되어서 조선인 의원의 재선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의 경우 전·현직과 여러 분야 겸직 중 무엇을 택할 것이냐 등 분류 기준

17) 이상 선거 결과는 김동명, 앞의 논문, 208쪽 참조.

18) 단, 후술하듯이 竹內菊太郎은 차점자였다가 1931년 11월 4일 田中半四郎의 사퇴로 의원직을 계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직을 우선 기준으로 하면 사장(회사중역)이나 자영업자 17명, 회사원 11명, 변호사 9명, 언론 계통 4명(石森久彌, 藤村忠助, 加納一米, 石原憲一), 교육 계통 2명(朴準鎬, 金在泳), 지주 2명, 기타 3명(의사 1명, 우편소장 1명, 사법대서 1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19] 잘 알려진 대로 선거권이 납세액에 따라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위 당선자들도 회사중역 등 자본가나 변호사 등 고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직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독부 관리(판·검사, 경찰, 군수, 우편소장 등) 출신이 일본인 10명(波多江千代藏, 馬場部, 藤田爲與, 森井與一郎, 寶諸彌七, 曾我勉, 濱田虎熊, 森安敏暢, 中村郁一, 寺田榮), 조선인 6명(尹宇植, 朴準鎬, 梁在昶, 吳珽煥, 鄭求瑛, 李弘鍾)으로 총 16명이 있었다.

학력이 확인되는 이는 30명인데,[20] 조선인이 18명 중 15명이 밝혀진 것에 비하여 일본인의 경우 30명 중 15명으로 절반 정도만 학력이 확인된다. 조선인의 경우 일본유학 6명(대학 중퇴 포함), 전문학교 3명, 관립외국어학교 3명으로 고학력자가 다수를 이룬다. 일본인의 경우 초창기 '일확천금'을 꿈꾸며 조선에 건너온 이들이 많았던 점[21]을 고려할 때, 오랜 기간 동안 학력이 아닌 다른 경제력이나 사회자본을 통해 지지기반을 다져온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19) 이는 김동명이 회사경영 또는 자영업 19명, 회사원 11명, 변호사 9명, 농업(지주) 5명, 기타 4명으로 산정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김동명, 앞의 논문, 209쪽). 가장 큰 차이는 선행 연구에서 회사경영 또는 자영업자에 포함시킨 언론 계통 4명을 따로 분류한 것이다. 선거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들 언론인들을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에서이다. 또 지주를 2명만 산정한 것은 石原憲一을 언론계로, 金在泳을 교육계로, 任興淳을 자영업(요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기 지주이면서 회사 중역을 맡거나 교육사업에 종사한 이들이 많았다. 또 회사원과 회사경영의 범주도 다소 불완전할 수 있다. 상무이사나 지배인을 회사경영자로 봐야 할 것인지 회사원으로 볼 것인지 김동명의 경우도 불완전하며, 또 여러 회사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회사원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자로의 정체성을 가졌던 경우도 많았다.

20) 일본인 5명에 대한 학력을 추가로 확인했다. 濱田虎熊(소학교), 中村郁一(佐賀縣師範學校), 大梅健治(高等小學教 졸업 후 私塾에서 수학), 白石巖(福岡修猷館에서 수학), 茅野留藏(사립 大同義塾 졸업).

21) 다카사키 소지 지음, 이규수 옮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참조.

이밖에 특이사항을 꼽으면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구영(鄭求瑛)과 임흥순(任興淳)은 〈조선지방선거취체규칙〉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은 상고심까지 제기하면서 부회 활동을 계속했다.[22] 당초 최고표로 당선된 일본인 의원 모리 히데오(森秀雄)와 조선인 의원 김석진(金錫晉)은 기소되지 않았다.[23] 한편 부의장으로 선출된 다나카 한시로(田中半四郎)는 1931년 11월 4일 갑자기 부회의원직을 사퇴하여 1932년 3월 다케우치 기쿠타로(竹內菊太郎)가 선거의 차점자로서 의원직을 계승했다.[24]

사퇴의 이유는 곧바로 밝혀졌는데, 조선소방협회 기부금 횡령이 그 이유였다.[25] 다나카는 또한 1932년 경성토목담합사건에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경성토목담합사건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선자인 아키야마 도쿠지(秋山督次)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26] 두 사람 모두 토목청부업자이면서 소방조를 세력 기반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선자 가운데 이시하라 겐이치(石原憲一)는 1910년대 두 차례(1916, 1918)

---

22) 정구영은 〈조선지방선거취체규칙〉 규정에 따라 1932년 3월 3일부로 부회의원 당선 무효가 되었다(≪경성휘보≫ 126, 1932.3, 5쪽). 손정목은 부회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봤으나, 상고 기간이었던 1932년 초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3) 손정목, 앞의 책, 1992, 280쪽 ; ≪동아일보≫ 1931년 6월 11일, 7월 26일, 8월 19·20·30일, 9월 6일, 12월 15·18일 ; ≪매일신보≫ 1931년 8월 18일 참조.

24) ≪경성휘보≫ 126, 1932.3, 5쪽. 다케우치는 1904년 소학교를 졸업한 뒤 철도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철도대대에서 종군했고 조선철도국 직원이 되었다. 1905년에 임시 군용철도 서기에서 1907년에 통감부 철도관리국 사무관보로 승진했다. 1912년에는 철도국 부참사 고등관이 되었다. 1910년 용산거류민단 의원, 1913년 경성거류민단 의원을 역임했다. 1915년 철도국 퇴임 후에는 광업, 농업, 상업에 종사했다(朝鮮新聞社 編, ≪朝鮮人事興信錄≫,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1935, 550쪽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근현대인물자료(http://www.koreanhistory.or.kr)).

25) ≪동아일보≫ 1931년 11월 7일, 1932년 1월 30일, 1932년 4월 13일, 1932년 12월 9일. 이 횡령사건은 다나카가 오랫동안 소방조 조두직을 지내면서 소방조를 자신의 '사조직'과 같은 세력 기반으로 삼은 점에서도 유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염복규, 〈日帝下 京城 지역 소방 기구의 변화 과정과 활동 양상〉 ≪서울학연구≫ 49, 2012, 42~45쪽 참조.

26) ≪동아일보≫ 1932년 7월 4일 ; ≪매일신보≫ 1932년 7월 4일 ; ≪京城土木談合事件 高等法院判決書≫, 1936.

부협의회원을 지내고 경기도평의원을 지낸 이시하라 이소지로(石原磯次郎)의 장남으로 대를 이어 경성부회 석상에 올랐다.

한편 48명 가운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인물이 2명이다. 김재영(金在泳)은 병환으로 자택에서 요양하다 1932년 11월 21일 사망했다. 마스다 미호(增田三穗) 역시 병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1933년 8월 20일 하직했다.[27]

3) 1935년 선거와 당선자

1935년 제2회 경성부회선거는 1931년의 양상과 대체로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선거사무는 유권자 조사를 위해 1934년 10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 유권자명부는 선거 약 한 달 전인 1935년 4월 20일에 완성되었다. 일반인은 이튿날부터 7일간 명부를 열람했다.[28] 또 같은 날인 4월 21일부터 입후보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한 달간에 걸친 '축록전(逐鹿戰)' 끝에 5월 21일 선거일이 도래했다. 투표장소는 1931년과 마찬가지로 남대문소학교였다. 당시 선거 입회인은 총 4명으로 조선인과 일본인 각기 2명이었다(賀田直治, 元悳常, 井上主計, 吳兢善).[29]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가 진행되었고, 개표는 오후 8시 40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반까지 이어졌다.

선거 결과,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총 유권자 수는 총 2만 772명에 일본인 1만 3,340명(64.2%), 조선인 7,432명(35.8%)이었으며, 투표자 수는 1만 6,980명으로 81.7%의 투표율을 보였다.[30] 유권자 수가 1차에 비해 줄었고, 상대적으로 조선인의 비율이 약간 높아진 점(34.7% → 35.8%), 투표율은 1차에 비해 거의 비슷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유권자 수가 1931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세금제도

27) ≪경성휘보≫ 135, 1932.12, 24~25쪽.
28) ≪동아일보≫ 1935년 4월 16일(조간).
29) ≪동아일보≫ 1935년 5월 18일(석간).
30) ≪경성휘보≫ 165, 1935.6, 35~36쪽.

의 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 64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조선인은 23명(35.9%), 일본인은 41명(63.1%)이었고, 당선자는 정원 48명 중 조선인 15명(31%), 일본인 33명(69%)으로, 입후보자수와 비교하면 일본인의 당선인이 많은 편이었다.



<그림 3> 1935년 선거회장 모습
출처: ≪경성휘보≫ 166. 1935.7.

당선자와 그들의 직업 및 학력, 주요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 3〉과 같다(상세 이력은 〈부록 2-2〉 경성부(협의)회 의원 주요 경력 참조).

<표 3> 1935년 경성부회의원 선거 당선자 현황

이름	생몰	득표	재선여부	직업	학력	지방의회 경력
曺秉相	1891~1978	541	◎	회사원	선린상업학교, 교토제대	부협(29) 부회(31,35,39,43)
古川敬介	1884~?	478		회사원, 전 철도국 관리	山口고등상업학교	부회(35,39)
姜昌熙	1894~?	449		회사중역 (운수업-철도)	善隣商業學校	부회(35,39,43)
內田鯤五郎	1888~?	412		광산업, 전 총독부 관리(광업)	東京帝國大學 工科	부회(35,39,43)
壹岐幸義	1897~?	406		의사	京城醫學專門學校	부회(35,39)
加藤好晴	?~?	400		기타, 전 경찰(경시)		부회(35,39,43)
波多江千代藏	1873~?	400	◎	전 총독부관리 (통신, 우편소장)		부회(31,35) 도회(37)
尹宇植	1890~?	387	◎	상업(잡화상), 전 총독부 관리	도쿄부립농림학교	부협(29) 부회(31,35)
洪必求	1892~?	374	◎	지주, 자영업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부협(29) 부회(31,35,43) 도회(37)
山中大吉	1901~?	371	◎	변호사	中央대학 법과	부회(31,35,39,43)

이름	생몰	득표	재선 여부	직업	학력	지방의회 경력
森安敏暢	1891~?	370	◎	변호사, 전 총독부관리(경찰)		부회(31,35,39,43) 도회(41)
朴疇明	1899~?	370	◎	양조업 (불로釀酒상회)	경성공업전문학교 중퇴	부회(31,35,39,43) 도회(41)
間島梅吉	1876~ 1943	368		상업	三重中學校 졸업	부회(35,39)
南條晟	1890~?	368		변호사, 전 경찰	熊本師範學校	부회(35,39,43)
大野史郎	1879~?	354		예비역 군인	육군사관학교	부회(35)
本田建義	1882~?	353		의사(병원장)	日本醫學校, 도쿄제대 의학부 選科, 베를린대 약학박사, 의학박사	부회(35)
赤荻與三郎	?~1941	352		상업(요리점), 전 군인	東京成城中學校, 千葉陸軍教導團	부회(35)
朴準鎬	1884~ 1936	335	◎	교육가(동성상업학교장), 전 총독부 관리 (재판소 서기)	경성전수학교	부회(31,35)
韓萬熙	1896~ 1941	332	○	회사중 (한성은행 지배인, 중앙양조 전무)	동경 전수대학 경제학부 (1919)	부협(26,29) 부회(35,39) 도회(관선33)
庄司秀雄	1887~ 1942	327		교육자, 전 총독부관리	宮城縣 사범학교	부회(35,39)
金應純	?~?	321		목재상		부회(35,39)
梁在昶	1885~ 1968	314	◎	회사원(조선생명 상무이사), 전 군수	경성학당	부회(31,35,39,43)
大梅健治	1885~?	309	◎	자영업(대나무파이프)	高等小學教 졸업 후 私塾	부회(31,35,39)
劉承復	1897~?	305	◎	회사원 (태평생명보험회사)	경성고등공업학교	부회(31,35) 도회 낙선(37)
菅總治	1895~?	304	◎	의사(병원 부원장)	도쿄의학전문학교	부회(31,35)
近藤秋次郎	1893~?	304	◎	회사중역 (조선잠사 상무취체역)		부회(31,35,43) 도회(33)
片岡喜三郎	1883~?	302		교육자	千葉縣立師範學校	부회(35)
中村郁一	1880~?	297	◎	신문판매업, 전 교사, 전 총독부관리	佐賀縣師範學校	부협(29) 부회(31,35,39,43) 도의보궐(38)

이름	생몰	득표	재선 여부	직업	학력	지방의회 경력
加納一米	1890~?	282	◎	언론인 (조선경제신보사장)		부회(31,35,39,43)
上杉直三郎	1886~?	282		언론인(경성일보), 전 경성부 관리		부회(35,39,43)
白石巖	1873~ 1938	277	◎	운수업, 인력거대부업	福岡修猷館에서 수학	부회(31,35) 도회(37)
古城龜之助	1873~?	270		상업(약품,의료기), 금융업	早稻田專門學校 政治科	부회(35)
濱田虎熊	1890~?	266	◎	변호사, 전 총독부 관리	소학교	부협(29) 부회(31,35,39) 도회(33)
馬場鍈	1872~ 1939	265	◎	사장, 전 총독부관리	日本대학	부회(31,35) 도회(34보궐, 37)
成松綠	1880~?	259	◎	회사원		부협(26,29) 부회(31,35)
寶諸彌七	1875~?	258	◎	사법대서, 전 총독부 관리(경찰)		부회(31,35,39)
石原憲一	1890~?	246	◎	농업, 언론인(京城日日新聞)		부회(31,35,39,43)
芮興洙	1893(?)~?	246		용달업		부회(35,39,43)
李弘鍾	1891~?	242	◎	변호사, 전 판사	경성전수학교	부회(31,35,39,43)
桂基資	1882~?	241		광산업, 전 총독부 관리	東京私立法政大學	부회(35)
朴勝城	?~?	232		회사중역, 전 총독부관리		부회(35,39,43)
關根金作	1879~?	221		상업(가구상)	竹林義塾, 陸軍獸醫學校	부회(35,39)
上原誠治	1894~?	218		상업		부회(35,39)
藤田爲與	1896~ 1941	217	◎	변호사, 전 총독부 관리(경찰)	日本대학	부회(31,35)
李升雨	1889~ 1955	208	◎	변호사	중앙대학 법과	부협(26,29) 부회(31,35)
韓相喆	1895~?	195		회사원 (조선화재해상보험)		부회(35,39) 31년 낙선
杉市郎平	1869~?	188	◎	저술업, 회사원	법학원 (中央대학 전신)	부회(31,35,39) 도회보궐 낙선(38)

이름	생몰	득표	재선 여부	직업	학력	지방의회 경력
梅林卯三郎	1881~?	186		변호사	東京제대 법학부	부회(35,39,43)

출처: 이 책의 <부록 2-2> 경성부(협의)회 의원의 주요 경력.
비고: '재선 여부'의 ◎는 이전 선거인 1931년에 이어 재선된 경우, ○는 1931년이 아닌 그 이전에 당선 경력이 있는 경우를 뜻함.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43명만 놓고 볼 때 49.4세이다. 1931년 선거의 45.9세를 고려하면 의원 평균 연령이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소장층의 진입이 적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봐도 30대는 4명, 40대 19명, 50대 13명, 60대 7명으로 1931년에 비해 30대보다 40~50대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점도 확인된다(30대는 37.5% → 9.3%, 40~50대는 47.9% → 74.4%). 민족별 의원의 평균 연령은 조선인은 48.5세, 일본인은 51.6세로 1931년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나이가 더 많았다. 그러나 1931년 조선인 평균이 39.1세였던 것에 비하면 1935년의 조선인 의원의 연령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최연소는 모리 야스 도시오(森安敏暢)로 37세, 최고령은 스기 이치로베(杉市郎平)로 67세였다.

당선자의 평균 득표수는 312.5표, 최고 득표수는 541표(曺秉相), 최저는 186표(梅林卯三郎)였다. 100표대 3명, 200표대 18명, 300표대 20명, 400표대 6명, 그리고 500표대가 1명으로 200~300표대에 대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고득표자 상위 10명 중 4명에 조선인이 차지했고, 하위 득표자 10명 중 4명이 조선인, 6명이 일본인으로 1931년 선거 때보다는 당선자 득표수에서 비교적 민족 차이가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선거에 이어 1935년에 재선된 인물은 총 25명(조선인 9명, 일본인 16명)으로 재선율은 52.1%이었다. 1931년의 같은 수치 63.3%에 비하여 기존 의원의 탈락률이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은 1931년에 당선된 18명 중 9명이, 일본인은 30명 가운데 16명이 1935년에도 당선되어 민족간 재선 비율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직업의 경우 현직을 기준으로 하면 사장 또는 자영업자 17명(조선인 5명, 일본

인 12명), 회사원 9명(조선인 6명, 일본인 3명), 변호사 8명(조선인 2명, 일본인 6명), 언론 계통 3명(일본인 3명), 교육 계통 3명(조선인 1명, 일본인 2명), 의사 3명(일본인 3명), 지주 1명(조선인 1명), 기타 4명(모두 일본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업 분포에서는 대체로 지난 선거 때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전 1931년의 경우처럼 전직 가운데 총독부 관리(판·검사, 경찰, 군수, 우편소장 등) 출신이 일본인 16명(古川敬介, 內田鯤五郎, 加藤好晴, 波多江千代藏, 森安敏暢, 南條晟, 大野史郎, 赤荻與三郎, 庄司秀雄, 中村郁一, 上杉直三郎, 濱田虎熊, 馬場蔀, 寶諸彌七, 桂基資, 藤田爲與), 조선인 5명(尹宇植, 朴準鎬, 梁在昶, 李弘鍾, 朴勝城)으로 총 21명이나 된다는 점도 확인된다.



<그림 4> 1935년 제2회 경성부회의원 당선자

출처: ≪매일신보≫ 1935년 5월 23일.

학력의 경우 조선인이 15명 중 11명, 일본인은 33명 중 23명의 학력이 확인되

어 총 34명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인의 경우 일본유학 4명, 전문학교 수준 4명, 관립외국어학교 1명으로 대체로 고학력자들이다. 일본인은 제국대학 출신 3명을 포함해 대학 및 전문학교의 고등교육을 받은 이가 12명, 사범학교 출신 4명을 포함한 중등교육을 받은 이가 8명, 기타 소학교 등 초등교육을 이수한 이는 3명으로 집계된다.

위 당선자 가운데 동성(東星)상업학교 교장 박준호(朴準鎬)는 재임 도중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1936년 9월 위암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결원에 대해 부회에서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31] 한편 앞서 이시하라 가문(石原磯次郎-石原憲一)처럼 대를 이어 경성부(협의)회의원을 지낸 의원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예흥수(芮興洙. 1935·1939·1943년 당선)는 일찍이 초대 부협의회원으로 총 5회(1914·1920·1923·1926·1931)에 걸쳐 당선된 예종석(芮宗錫)의 둘째 아들이다.[32] 두 인물을 합하면 총 8선으로 부자가 경성부회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4) 1936년 증원선거와 당선자

이듬해인 1936년 9월에는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경성부회 증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경성부 안팎의 인구 증가가 이뤄지면서 종전 행정구역과 기구로는 부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조선총독부는 1936년 4월 1일 경성부 인근 1읍 8면 71개 리와 5개 리의 일부를 편입하는 행정구역 확장을 실시했다. 이에 경성부의 관할 면적이 36.18㎢에서 136㎢로 약 3.7배가 늘어났고 인구도 약 4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증가했다.[33] 부역이 확장되면서 부회의원 증가도 필요했다.

---

31) ≪매일신보≫ 1936년 9월 20·24·30일.

32) 두 사람 관계는 ≪매일신보≫ 1912년 10월 30일 기사 참조..

33) 서현주, 〈제1장 경성부의 조직과 행정〉 ≪서울 2천년사 26 경성부 도시행정과 사회≫, 서울역사편찬원, 2015, 47쪽.

이에 따라 〈부회의원 증원선거 특례에 관한 건〉(조선총독부령 제32호)과 〈경성부 선거분회 설정에 관한 건〉(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12호)이 발포되었다.[34]

전자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선거분회의 명칭과 그 구역, 각 선거분회에 배당할 의원수를 정해야 했고(제1조), 선거인 주소에 따라 소속 선거분회가 결정되었으며, 선거인명부는 선거분회마다 작성되어야 했다(제2조, 제3조). 또 부윤은 일본인이나 조선인 수가 각기 1/4 이하가 될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족별 당선자수를 정해야 했다(제4조). 또 후자의 규정에 의해 경성부 선거분회의 명칭과 구역, 선거분회에 배당할 의원수가 결정되었다. 이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1936년 경성부회 증원선거 선거분회 및 소속 구역

분회 명칭	배당의원 수	소속 구역
중부선거분회	6	구 경성부 구역 일원
동부선거분회	3	城北町, 梨泰院町, 漢南町, 普光町, 鑄城町, 東氷庫町, 西氷庫町, 苧芝町, 敦岩町, 新設町, 龍頭町, 安岩町, 鍾岩町, 祭基町, 淸涼里町, 回基町, 里門町, 徽慶町, 典農町, 踏十里町, 沙斤町, 馬場町, 杏堂町, 鷹峰町, 金湖町, 下往十里町, 上往十里町, 新堂町, 玉水町
서부선거분회	3	阿峴町, 大峴町, 老姑山町, 滄川町, 東橋町, 延禧町, 新村町, 奉元町, 北阿峴町, 弘濟町, 弘智町, 新營町, 付岩町, 新孔德町, 孔德町, 鹽里町, 土亭町, 龍江町, 大興町, 新水町, 舊水町, 立石町, 新井町, 賀中町, 倉前町, 上水溢町, 下水溢町, 汝矣島町, 唐人町, 西橋町, 合井町, 望遠町
영등포선거분회	3	銅雀町, 黑石町, 本洞町, 鷺梁津町, 上道町, 番大方町, 新吉町, 道林町, 永登浦町, 堂山町, 楊坪町, 楊花町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36년 6월 27일 ; <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 ≪경성휘보≫ 180, 1936.9, 24쪽.

위에서 보듯이 의원 증원 수는 총 15명이었다. 기존 경성부역의 중심지인 중부선거분회를 비롯하여 확장된 구역을 중심으로 서부·동부·영등포선거분회가

34) 각각 ≪조선총독부관보≫ 昭和 제2788호, 1936년 5월 2일 ; ≪조선총독부관보≫ 昭和 제2836호, 1936년 6월 27일.



<그림 5> 남대문소학교 중부선거분회 개표장 모습
출처: ≪경성휘보≫ 166. 1935.7.

설치되었다. 경성부는 8월 21일부터 선거인명부를 각 선거분회마다 따로 일반에 열람시켰다. 각 선거분회별로 최종 입후보자수는 중부의 경우 11명(일본인 8명, 조선인 3명), 동부 5명(일본인 2명, 조선인 3명), 서부 6명(일본인 1명, 조선인 5명), 영등포 7명(일본인 3명, 조선인 4명)으로 총 29명(일본인 14명, 조선인 15명)이었다.[35] 본래의 경성부 지역인 중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선인 후보자 숫자가 더 많다. 이는 새롭게 경성부로 편입된 지역이 기존의 경성부 지역보다 조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1936년 9월 20일이었고, 선거회장은 중부선거분회의 경우 남대문공립심상소학교, 동부의 경우 경성부동부출장소(인현공립보통학교 내), 서부분회는 아현공립보통학교, 영등포분회는 경성부영등포출장소에 설치되었다.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가 끝난 동부, 서부, 영등포 각 선거분회에서는 중부선거회장으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그곳에서 개표가 시작되었다. 개표는 이튿날 오전 8시에 시작되어 오후 3시 반에 종료되었다.[36] 선거분회별 투표 결과 및 당선자는 다음의 〈표 5〉, 〈표 6〉과 같다.

<표 5> 1936년 증원선거 분회별 투표 결과

선거 분회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		
	조선인	일본인	합계	조선인	일본인	합계	조선인	일본인	합계
중부	7,845	12,444	20,289	3,400	5,159	8,559	44.3	41.4	43.1

35) 〈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 ≪경성휘보≫ 180, 1936.9, 24~25쪽.
36) 〈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 ≪경성휘보≫ 180, 1936.9, 25~26쪽.

선거 분회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		
	조선인	일본인	합계	조선인	일본인	합계	조선인	일본인	합계
동부	488	366	854	427	267	694	87.5	73.0	81.3
서부	451	97	548	410	83	493	90.0	85.6	90.0
영등포	266	247	523	256	244	500	96.2	94.9	95.6
계	9,050	13,164	22,214	4,493	5,753	10,246	49.6	43.7	46.1

출처: <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 ≪경성휘보≫ 180, 1936.9. 27쪽.

새롭게 경성부로 편입되는 분위기가 반영된 탓인지 기존의 선거구라 할 수 있는 중부에 비해 서부와 동부, 영등포의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모든 선거구에서 일본인보다 조선인의 투표율이 상회하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

<표 6> 1936년 증원선거 분회별 당선자

선거분회	당선자(주소)
중부	韓相億(경성부 관철정 31), 姜永皓(경성부 종로 5정목 75), 伊藤東作(경성부 본정 2정목 11), 山田眞一(경성부 남미창정 9), 國友尙謙(경성부 돈암정 240), 藤村忠助(경성부 삼판통 244)
동부	李昌業(경성부 청량리정 산10), 朴元信(경성부 한남정 486), 不破三平(경성부 상왕십리정 711)
서부	車相鎬(경성부 아현정 210-3), 康容杓(경성부 上水溢정 21), 長谷川和三郎(경성부 신공덕정 63)
영등포	金泰濮(경성부 영등포정 570), 木下榮(경성부 흑석정 산5-36), 鈴木文助(경성부 신길정 22)

출처: <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 ≪경성휘보≫ 180, 1936.9, 26~27쪽.

당선자를 보면, 중부선거분회는 6명 중 조선인 2명, 일본인 4명이, 동부와 서부는 모두 조선인 2명과 일본인 1명, 영등포의 경우 조선인 1명과 일본인 2명이 당선되어 전체로 보면 15명 가운데 조선인 7명, 일본인 8명이 당선되었다. 또 당선자 주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점으로 볼 때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입후보

자의 기반이 선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선자 15명의 주요 인적사항은 아래의 〈표 7〉과 같다(상세 이력은 〈부록 2-2〉 '경성부(협의)회의원 경력 조사' 참조).

<표 7> 1936년 경성부회 증원선거 당선자 현황

이름	생몰연도	직업	학력	주요 경력	지방의회 경력
姜永晧	1890~?	전문직 (化成學校 교원), 측량사	韓英書院,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 양성소	사립化成學校 교원.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근무. 1922년 이래 경기, 경상도, 충북 지정측량사무 승인 받음. 1930년 경성부 지정측량사무 승인받아 종사(~34).	부회(36,39)
康容杓	1890~?	교육계 (養正고보 서무주임)	普成高等普通學校	賀中町 · 上水溢町 · 下水溢町 총대. 養正고보 서무주임, 龍江公立보교 학무위원.	부회(36,39)
康容杓	1890~?	교육계 (養正고보 서무주임)	普成高等普通學校	高陽郡학교비평의원 당선. 고양군龍江面협의원 2차례 당선. 京江物産(株) 이사(42). 해방 후 1946년 3월 기미독립선언기념전국대회 준비위원회, 마포정연합회장, 1948년 총선거 당시 마포구선거위원.	부회(36,39)
國友尙謙	1876~?	전 총독부 관리 (경무국 경무과장)	和佛法律學校	재판소 서기 근무, 1901년 警視廳 순사, 1903년 경부. 1906년 통감부 경부로 임명되어 조선에 옴. 1909년 경시로 승진해 평양경찰서장이 됨.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경시(10~17), 경무총감부 · 경무국 경무과장(17~27). 1927년 고등관2등으로 퇴직. 耕業社(株) 대표(42)	부회(36,39)
金泰濮	1888~1947	회사중역	早稻田大 경제과 수학	금융조합, 경성방직 등 근무. 영등포면협의회원(26,29), 영등포읍회의원(31). 시흥청년회장, 시흥국방의회 부회장, 시흥군학교비평의회원 지냄. 영등포세무서소득조사위원, 경성중앙도매시장개설조사위원, 소방조 소두 등 다수의 공직 활동. 京忠버스(주) 이사, 중앙주조(주) 감사, 豊林철공소 이사, 경성철공공업조합이사 등 지냄. 중추원참의(42) 등 여러 단체에서 친일협력활동.	도평 (민선27,30) 도회 (관선33,37) 부회 (36,39,43)

이름	생몰연도	직업	학력	주요 경력	지방의회 경력
藤村忠助	1875~?	전문직 (언론인. 경성일보)		1894년 조선에 와 인천일본인상업회의소 서기 지냄. 1904년 韓國勸農會 창립해 사장 겸 지배인. 이후 京城日報社 인천지국장, 이사, 경리부장 겸 영업국장 거쳐 지배인이 됨. 경성學校組合議員 지냈고, 滿洲實業(株)대주주(23), 京城水産(株)이사(29~37), 京城郊外軌道(株)이사(31) 등 여러 회사 경영에 참여.	부협(26,29) 부회(31,36)
木下榮	1887~?	회사중역 (토건업, 부동산업)	東京 外國語學校 영어과, 京城專修學校 러시아어 수학	1911년 동향인 토건계의 거두 志岐信太郎의 志岐組에 입사해 大連, 京城, 東京 등에서 근무. 1921년 朝鮮天然氷(株) 지배인. 志岐工業(株) 및 朝鮮天然氷(株) 이사. 그 외 여러 회사 대표로 재직. 1931년부터 明水臺 일대 약 30만평의 토지 경영(明水台土地經營(주) 사장). 黑石町總代. 黑石里靑年會 고문, 京城柳河人會 간사장, 제국비행협회 임원 등 공공 부문에도 여러 활동.	부회(36,39)
朴元信	1889~?	농업 (지주)	교토제대 의과대학 선과	교토제대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무료진료에 종사. 1924년 한지면 한강청년회 대표간부. 여러 학교의 평의회원, 면협의회원, 학무위원, 고양군 漢芝面長, 사립漢南學校長 등 여러 공직 지냄. 여러 차례 재해의연금, 기부금 납부. 해방 후 1945년 서울시 고문관에 임명.	부회(36,39)
不破三平	1876~?	회사중역, 전 관리 (세무)		1907년 한국정부의 초빙으로 조선에 와 總稅務司廳과 총독부 탁지부 세관과 근무. 1919년 퇴관 후 北鮮開拓(株) 전무. 1926년 興業無盡會社 지배인(이후 이사). 1935년 漢芝面協議員 당선. 이밖에 共益商事(株)대주주, 松鳴觀光(株) 이사 · 대주주, 第一水産(株) 이사 지냄.	부회(36,39)
山田眞一	1881~?	요식업	東京府立 第一中學校	해군 군속으로 러일전쟁 종군. 1917년(?) 조선에 와 경성구락부 창설, 경영. 총독부 식당, 경성제대 본부식당,대학병원 앞 昭五(總)食堂, 조선신궁 경내 南山亭 등 경영. 朝鮮活動寫眞(株) 대주주, 松鳴觀光(株) 이사.	부회(36) *선거법 위반 벌금형

이름	생몰연도	직업	학력	주요 경력	지방의회 경력
鈴木文助	?~?	회사중역		1919년 영등포로 와서 1920년 京城窯業(株) 창립, 지배인. 1933년 京城煉瓦會社 창립, 대표사원. 京畿道煉瓦工業組合대표, 京城밸러스(合資) 중역 · 대주주. 永登浦面협의회, 北面協會員 지냈고, 여러 기부활동과 영등포지역운동 진정활동 주도. 영등포 부근 文化村 건설.	부회(36,39)
伊藤東作	1889(?)~?	상업		골동상, 만년필상, 악기상. 1936년 본정 2정목에서 스키야키 식당 개업. 같은 해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당선. 이토우商會(合資)사장, 朝鮮製藥(合資) 지배인. 1945년 당시 군인원호회조선본부 이사 지냄.	부회(36,39)
李昌業	1896~?	회사중역(운수업)		조선보병대 상등병으로 경기도 경관을 지냄. 1921년 총독부로부터 우량청년단장으로 발탁되어 일본 및 경남 농업시찰. 1933년 이후 城東發展會 부회장, 청량리교풍회장, 淸凉町荷主運輸組 대표. 지역 소방사업에 활발히 활동. 해방 후 신한운수사 대표	부회(36,39,43)
長谷川和三郎	1881~?	상업(석탄상)		16세에 오사카의 한 상점에 취직, 1897년 대만지점이 설치되자 대만에서 근무. 1905년(?) 사직하고 조선으로 옴. 남대문시장 부근 노점잡화상 시작, 그 뒤 점포 열고 美匠재료 및 石炭商 시작. 1912년 京義線 金村 金陵里에 석탄제조장을 시작으로 황해, 함남에 공장 설립. 長谷川石灰工場 대표, 朝鮮海洋社(주) 이사, 고양군 龍江面協의원 등 지냄.	부회(36)
車相鎬	1894~?	전 관리(우편소장)	私立大東法律專門學校	1921년 太光親睦會 경성 아현리에서 조직. 1926년 고양군농회 특별의원, 1930년 아현공보 교우회장, 1931년 동교 학무위원, 1932년 총독부 우편소장(~36). 1936년 서대문금융조합 감사, 老姑山莊住宅經營(株) 감사 등 취임. 아현정제1구총대.	부회(36,39,43)
韓相億	?~1939	변호사		1931년 정동총대로서 경성전기부영기성회 위원, 1936년 변호사로 조선변호사회 중견으로 활동.	부회(36)

〈표 7〉에서 확인되는 점은 우선 당선자의 태어난 해가 1875년에서 1896년에 분포하고 있듯이 당선자 연령이 대체로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이르렀다. 15명 중 9명의 학력이 확인되며, 제국대학이나 대학 출신이 2명, 전문학교 1명, 나머지는 고등보통학교 등 중등학교 출신으로 추정된다. 학력이 확인되는 인물이 절반 정도인 점, 그중에서도 중등교육을 받은 인물이 다수인 점에서 1935년 선거 당선자에 비해 고학력자의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 회사 사장 및 자영업(석탄상·요식업·잡화상·운수업), 학교 직원, 우편소장, 측량사, 변호사 등 다양했으며, 1931년이나 1935년에 비하면 변호사나 의사, 교사 등 전문직 비율이 훨씬 줄어들었다.

당선자들의 이력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특히 새롭게 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당선자들 가운데 면협의회원, 정동총대 등 공직을 역임했거나 일찍부터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해온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서부지역의 경우 강용표(康容杓)는 총대와 용강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고양군학교비평의원, 용강면협의원 등을 지냈다. 하세가와 와사부로(長谷川和三郎)는 강용표와 함께 용강면협의원 경험이 있다. 차상호(車相鎬)는 자신의 거주지인 아현리에서 태광친목회를 조직하는 등 청년운동에 가담했고, 아현공립보통학교 교우회장 및 학무위원, 고양군농회 특별위원, 총대, 그리고 아현리우편소장을 역임했다. 동부의 경우 박원신(朴元信)은 지역에서 무료진료 봉사와 기부금 납부 등을 통해 인망을 쌓았고, 한지면 한강청년회 간부, 여러 학교의 평의회원, 면협의회원, 한남학교장, 한지면장 등 여러 공직을 두루 지냈다. 후와 산페이(不破三平)는 영지면협의회원에 당선된 바 있다. 또 이창업(李昌業)은 일찍이 청년활동 경험이 있고, 자신의 본거지인 청량리에서 성동발전회 부회장, 청량리 교풍회장, 청량정하주운수조 대표를 지내면서 지역 소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등포지역의 경우 김태집(金泰潗)은 영등포면협의회원 및 읍회의원, 시흥청년회장, 시흥국방의회 부회장, 시흥군학교비평의회원 등을 지냈고 소방활동에도 적극 가담했다. 기노시타 사카에(木下榮)는 명수대 일대에 광범위한 토지 경영을 벌인 유력자로서 흑석

정총대, 흑석리청년회 고문 등 자신의 거주지에서 공직을 지냈다. 스즈키 분스케(鈴木文助)는 영등포면협의회, 시흥군 북면협의회원을 지냈고 영등포 부근에 문화촌(文化村)을 건설했으며, 영등포를 위한 지역운동, 기부 및 진정활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으나, 대체로 일찍부터 지역사회운동을 발판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인망을 얻거나 재력을 확보한 인물들이 당선된 것이다.

당선자 가운데 자신의 임기를 못 채운 인물도 있었다. 야마다 신이치(山田眞一)는 그의 부인과 선거원들이 모두 선거취체규칙을 위반하여 1937년 2월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원을 선고 받고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37] 그는 항소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이듬해 2월 10일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다.[38] 한편 변호사로 증원선거에서 당선이 된 한상억(韓相億)은 1939년 3월 3일 자택에서 사망하여 의정활동을 계속하지 못했다.[39]

3. 1930년대 경성부회의 회의 추이와 주요 안건

1) 회의 구성 및 진행 과정

경성부회의원들은 정기부회(통상부회)와 임시부회에 참여해 의정활동을 펼쳤고, 간담회나 여러 기념식에 참가했다. 이들의 활동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부회라고 할 수 있다. 그 부회활동을 규정한 것이 〈경성부회회의규칙〉이었다. 이 규칙은 제1기 경성부회가 성립하고 두 번째 부회인 1931년 6월 24일에 '경성

37) ≪경성일보≫ 1937년 2월 16일(석) ; ≪매일신보≫ 1937년 2월 16일. 매일신보 기사에는 山下眞一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38) 〈京城府會議員當選無效의 件 報告〉 ≪昭和十二年度 京城府一般經濟關係書綴(3-3)≫(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3257), 1937.

39) ≪동아일보≫ 1939년 3월 4일.

부회의규칙 설정에 관한 위원장 보고 건'이 가결되면서 제정되었다.[40] 총 9장 50조로 구성된 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의는 의장이 시작과 종료를 선언하고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제1조). 의원석에는 번호를 붙였고, 의원 석차는 선거가 끝난 뒤 처음 갖는 회의에서 추첨에 따라 정해졌다. 의사 중에는 의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의석번호를 부르는 것으로 했다(제2조, 6조, 27조). 회의에는 부윤(의장)과 그 위임을 받은 부의 과장이나 계장 등 의사에 참여하는 자의 좌석, 그리고 방청인석을 별도로 설정하도록 했다(제3조).[41] 또 회의에는 정족수가 정해져서 출석의원이 개회시각에 이르러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의장은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 다시 출석의원 수를 조사하고, 그래도 정족수에 채워지지 않을 때는 유회(流會)를 통고하게 하였다. 회의 중 퇴석자로 인해 정족수가 모자랄 때도 마찬가지였다(제5조).[42]

회의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먼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임무를 대신하는 부의장은 의원 가운데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했다. 선거 결과 투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채택했다(제12~13, 15조). 또 부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었는데, 상임위원은 부 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를 검열하고 사무 관리, 의결의 집행 및 출납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상임위원의 정수는 12명, 임기는 1년이었으며, 일본인 및 조선인위원 숫자가 모두 위원정수의 1/3 이하가 되지 않도록 했다(제37~38조).[43] 특별위원은 의안의 심사를 부탁하기 위해 회의 출

40) 〈京城府會〉 ≪경성휘보≫ 118, 1931.6. 28쪽.

41) 일반인은 위원회를 제외한 일반회의를 방청할 수 있었다. 회의를 방청할 때는 부청 담당자에게 먼저 숙소와 성명을 신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정신이상자'나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방청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 장내에서는 외투,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할 수 없고 흡연이 불가능했으며, 방청인은 방청석을 벗어나 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제44, 47~50조).

42) 정족수가 이 회의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통상 의원 정원의 과반수일 경우 회의가 성립했다.

43) 상임위원 정수는 1936년 경성부역 확장에 따른 증원선거 이후 1936년 10월 22일 회의규칙 개정안이 발의, 11월 4일에 가결되어 15명으로 늘어났다(≪경성휘보≫ 182, 1936.11,15~17쪽).

석의원 가운데 선임하는 역할을 맡았다(제39조). 각 위원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통리하고 검열, 검사 또는 심사 안건에 관한 경과 및 결과를 부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제40~41조).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되었다(제43조).

부회의 일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의사는 세 번의 독회를 거쳐 결정했는데, 때에 따라 의장은 회의에 자문하여 독회를 생략할 수 있었다. 제1독회에서는 의안에 대한 질의 및 가부를 의논한 뒤 제2독회의 개회 여부를 정했다. 특별위원회 등 위원에 부탁된 의안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의 보고를 거쳐 의안을 결정했다. 제2독회에서는 의안의 각 조 또는 각 관을 심의하고 결정했다. 의안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제2독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 전부에 관한 가부를 의결했다(제19~23조). 의원이 정해진 의안 외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3인 이상 연서한 의견서안을 의장에 제출하도록 했다. 의장은 의견서안 또는 의견의 제출이 있을 때 이를 회의에 자문하는 것으로 했다(제26조). 안건의 채결은 기립의 방법과 과반수를 원칙으로 했고, 필요할 때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의 방법을 따를 수 있었다. 채결 순서는 반대를 우선 물었고,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원안에 앞서 수정안을 먼저 채결하도록 했다. 의장에 있는 모든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야 했다(제32~33, 36조).[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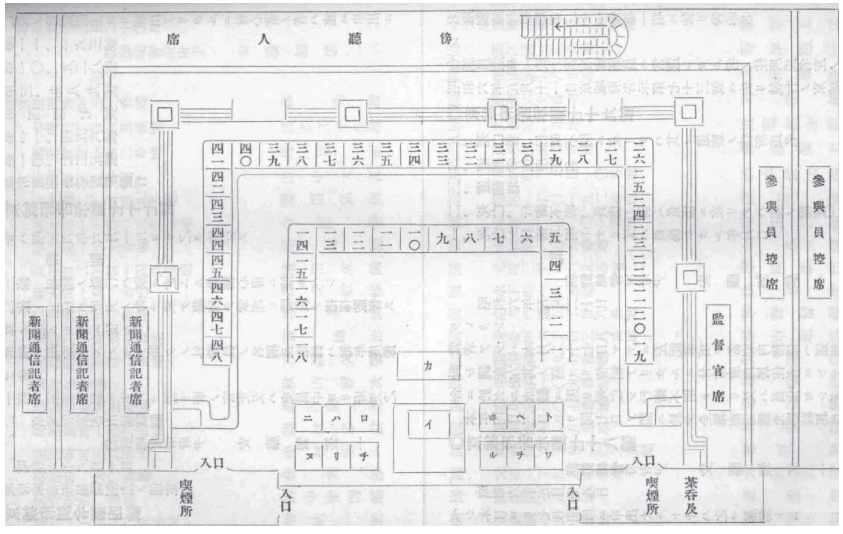
이러한 규칙에 입각하여 경성부회가 구성되고 일반 회의가 진행되었다. 구성과 관련하여 1930년대 부의장과 통상부회상임위원장, 제1·2교육부회 상임위원장 구성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44) 〈京城府會會議規則〉 ≪경성휘보≫ 118, 1931.6, 29~33쪽 ; 〈京城府會會議規則〉 ≪朝鮮公論≫ 220, 1931.7, 102~106쪽.

<표 8> 1931~1939년 경성부회 임원 구성

회기	제1기(1931~1935)				제2기(1935~1939)			
선출 시기	1931.6	1932.6	1933.7	1934.7	1935.6	1936.6	1937.6	1938.6
부의장	田中半四郎(~1931.11)→肥塚正太				大野史郎			
부회 상임위원장	增田三穗	波多江千代藏	森井與一郎	大村百藏	近藤秋次郎	山中大吉	菅總治	李弘鍾
제1교육부회 상임위원장	成松錄	濱田虎熊	中村郁一	曾我勉	濱田虎熊	加納一米	中村郁一	庄司秀雄
제2교육부회 상임위원장	金思演	曺秉相	洪必求	尹宇植	李升雨	韓萬熙	李弘鍾	韓萬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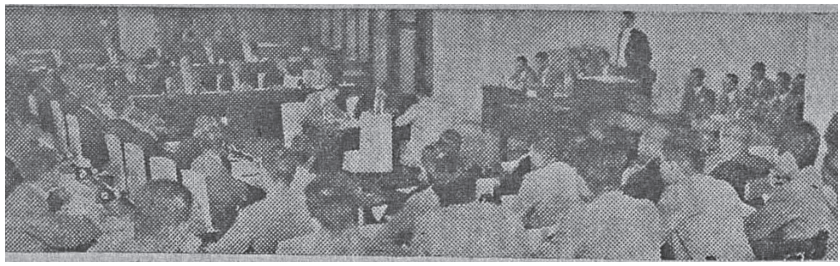
출처: ≪경성휘보≫ 117, 1931.5, 32~36쪽 ; ≪경성휘보≫ 130, 1932.7, 27~28쪽 ; ≪경성휘보≫ 143, 1933.8, 36쪽 ; ≪경성휘보≫ 154, 1934.7, 42쪽 ; ≪경성휘보≫ 165, 1935.5, 36~39쪽 ; ≪경성휘보≫ 178, 1936.7, 19쪽 ; ≪경성휘보≫ 189, 1937.6, 34~35쪽 ; ≪경성휘보≫ 200, 1938.7, 23~25쪽.



<그림 6> 경성부회 회의장 의석 배치도

출처: ≪경성휘보≫ 166, 1935.7.

부의장과 통상부회 상임위원장은 1938년의 상임위원장 이홍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 의원이 차지했다. 이 직위들이 선출직임을 고려할 때 민족별로 경성부회 내 일본인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던 점, 조선인 의원은 소수파였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년 임기의 각 상임위원장은 제2기 제2교육부회의 한



<그림 7> 1935년 제2기 최초의 경성부회 회의장

출처: ≪경성휘보≫ 166, 1935.7.

만희 이외에 회기 내에 중임한 경우는 없고, 각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고르게 안배되어 선출되었다.[45]

각 임원들은 경성부회 내 중진급이거나 이후 중진급 의원으로 성장해갔다. 부의장의 경우 초선(1935) 의원으로 선출된 오노 시로(大野史郎)를 제외하면 횡령사건으로 일찍 의원직을 사퇴한 다나카 한시로는 2선(1929·1931), 고이즈카 쇼타(肥塚正太)는 5선(1920·1923·1926·1929·1931)이었다. 부회 상임위원장의 경우 초선(1931)인 모리 요이치로(森井與一郎)를 제외하면 마스다 미호(增田三穗)는 3선(1926·1929·1931), 하타에 지요조(波多江千代藏)는 2선(1931·1935. 선출 당시 초선), 오무라 햐쿠조(大村百藏)는 4선(1920·1923·1926·1931), 곤도 아키지로(近藤秋次郎)는 3선(1931·1935·1943), 야마나카 다이키치(山中大吉)는 4선(1931·1935·1939·1943), 스가 소지(菅總治)는 2선(1931·1935), 이홍종은 4선(1931·1935·1939·1943)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제1교육부회의 경우 선출 당시 초선이었던 소가 쓰토무(曾我勉)는 2선(1931·1939), 쇼지 히데오(庄司秀雄)는 2선(1935·1939)이었고, 나리마쓰 로쿠(成松錄)는 4선(1926·1929·1931·1935), 하마다 도라쿠마(濱田虎熊)는 4선(1929·1931·1935·1939), 나카무라 이쿠이치(中村

45) 물론 이 과정이 의원 상호간에 우호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부의장 선거나 상임위원장 사이의 민족간 또는 의원 내부의 갈등도 존재했다(≪매일신보≫ 1937년 5월 29일 ; 春沼水地, 〈京城府會を衝〉 ≪朝鮮公論≫ 291, 1937.6, 38~42쪽 참조).

郁一)는 5선(1929·1931·1935·1939·1943), 가노 이치베(加納一米)는 4선(1931·1935·1939·1943)이었다. 제2교육부회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김사연 3선(1926·1929·1931), 조병상 5선(1929·1931·1935·1939·1943), 홍필구 4선(1929·1931·1935·1943), 윤우식 3선(1929·1931·1935), 한만희 4선(1926·1929·1935·1939), 이홍종 4선이었다. 이들 임원진은 다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며 1930년대 경성부회 내 중심 인물이 되었다.

한편 부회 일정은 가장 중요한 예결산과 관련하여 1년 단위로 진행되었다. 흔히 통상부회로 불린 정기부회에서는 매년 3월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중심으로 한 제반 안건을 처리했다. 매년 4월에는 이전 연도[46] 경성부 세입출 결산에 대한 보고 심의와 해당 연도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등급 및 가옥의 종별 가옥세 등급부과율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부회 이외에 제1교육부회와 제2교육부회에서는 각기 일본인과 조선인 관련 교육예산을 심의했다. 또 상임위원회의 역할인 부 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 검열은 수시로 이뤄졌는데, 매년 11~12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이 사안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다음 해 3월 통상부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밖에 각종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부정(府政)과 관련한 제반 안건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일들이 통상 이뤄지는 의회 일정이었다.

보기로 1935년 3월에 열린 정기부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47]

> 3월 9일(토)~11일(월) 일반질문 *10일(일) 기념일 휴회
> 12일(화) 예산관계 외 의안 및 예산관계 의안 1독회 *13일(수) 휴회
> 14일(목)~16일(토) 제1독회 *17일(일) 휴회
> 18일(월)~23일(토) 위원회 *21일(목) 春季皇靈祭 휴회, 24일(일) 휴회
> 25일(월) 제2, 3독회 *4월 12일(금) 결산안건 처리 및 폐회

46) 2년 전 회계연도 예산 및 추가예산 집행이 완료된 회계를 뜻한다. 예를 들면 1933년 4월 부회에서는 1931년도 결산보고 및 승인이 이뤄졌다.

47) ≪매일신보≫ 1935년 3월 10일 ; ≪경성휘보≫ 162, 1935.3, 44~48쪽 ; ≪경성휘보≫ 163, 1935.4, 44~45쪽.

3월 9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4월 12일에 정기부회가 진행되었다.[48] 일반질문 일정이 2일, 당해 연도 예산을 중심으로 한 제반 안건에 대한 제1독회 4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일정이 5일, 여러 안건에 대한 제2, 3독회가 1일에 이르는 일정이었다. 이러한 순서는 1930년대 줄곧 거의 동일하였다.

2) 1930년대 경성부회의 시기별 회의 추이

경성부회 제1, 2기 통상부회에서 다룬 안건을 시기별로 소개하고 그 대략적인 논의 추세를 살펴보았다.[49]

<표 9> 1932년 경성부회 통상회의(정기부회) 안건(1932.3.16.~3.19, 3.22~3.26)

보고 제1호 소화 6년도 경성부의 세입출 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출 결산의 건
의안 제2호 경성부청사 신축비 充當債 상환방법 변경의 건
의안 제3호 府外급수의 건
의안 제4호 소화7년도 경성부세입출예산의 건
의안 제5호 소화7년도 경성특별회계 승합자동차비 세입출 예산의 건
의안 제6호 소화7년도 경성특별회계공익질옥비 세입출예산의 건
의안 제7호 경성시구개수비 충당채 기채의 건
의안 제8호 소화7년도 경성부 호별세 등급 및 부과액 결정의 건
의안 제9호 경성부 호별세 조례 개정의 건

48) 보통 3월에 정기부회 일정이 모두 끝나지만, 이 해는 예외적으로 의제30호 '1933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 결산 및 각 특별회계 세입출 결산보고 건'만 처리되지 못하여 특별위원회가 마련되어 논의한 끝에 4월 12일에 본 안건이 처리되면서 정기부회가 종료되었다.

49) 논의 안건 전부를 파악하는 데는 자료 관계상 한계가 있다. 정기부회뿐만 아니라 임시부회에서 다뤄진 안건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기부회에 비해 임시부회의 경우 안건 제목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산일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은 점(심지어 정기부회의 경우도 안건제목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당해연도에 경성부 예산 결정에서 정기부회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정기부회의 사례를 대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필요에 따라서 해당연도의 회의 추세를 언급했다. 안건 내용은 우선 ≪경성휘보≫를 조사했고, ≪매일신보≫, ≪경성일보≫ 기사, 국가기록원 회의록 기록을 통해 내용을 보충했다.

의안 제10호 경성부 부가세 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11호 경성부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
의안 제12호 경성부 부외급수조례 개정의 건
의안 제13호 경성부 폐기물특별수거 수수료 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14호 경성부 도수장 사용료조례 개정의 건
의안 제15호 경성부 승합자동차 사용조례 개정의 건
의안 제16호 마포시장 위치 기타 변경의 건
의안 제17호 마포시장부지 차입의 건(예산 외 의무부담)
의안 제18호 경성부 제2회 공채상환기금 적립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19호 수도개량 및 확장준비금 적립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20호 경성부 기본재산 축적 및 관리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21호 경성부 금고사무취급 은행담보조례 설정의 건

출처: ≪경성휘보≫ 127, 1932.4. 35~36쪽 ; ≪매일신보≫ 1932년 3월 13일.

지방제도 개편 이후 경성부회 최초의 통상회의는 3월 16일 오후 2시 부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경성부회는 1931년 후반기에 출범하여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논의의 핵심은 후술하는 것처럼 경성전기가스부영문제였다. 1932년에 들어 부영화 열기는 부영화에 대한 '대안' 연구로 옮겨가고 있던 상태였고, 의원 내부의 강·온 양파의 대립 와중에 1월 21일 부회에서 부영화 대안을 결정했다. 이로써 2월 15일부로 경성부가 부영준비위원회 사무를 폐지함으로써 경성부회 내에서의 부영화 논의는 중단되었다.[50] 그러나 3월 통상부회가 열리자 부영화의 여진도 계속되었다.

회의 개최 첫날부터 부영파였던 이시하라 겐이치(石原憲一) 의원은 전기가스 공영문제에 대해 부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를 논박했다. 이튿날에는 지노 도메조(茅野留藏) 의원이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淸) 부윤이 정무총감의 압력을 받고

50) 오진석, 〈1930년대 초 전력산업 公營化運動과 京城電氣〉 ≪사학연구≫ 94, 2009, 201~206쪽.

부영안의 상정을 거부한 일[51]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청하자 부윤이 거부했고, 이에 여러 의원이 부회의 결의권을 모욕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성전기 서무과장출신 '경전파' 모리 히데오 의원은 부윤의 행동을 비난하는 논박을 중지시키며 부영화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무마시키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부영화를 강하게 내세운 부영파와 대립한 '조사파'에서는 부영파의 부윤에 대한 공세가 강해지자 부영문제가 아닌 다른 질문을 제기하면서 부영문제를 더 이상 의제화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등 부회의장은 혼선을 거듭했다.[52] 이 문제는 제3일에 '중립파'이자 4선(부협의회 포함) 의원이었던 오무라 햐쿠조(大村百藏)에 의해 정리되었다. 부윤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고 "부회의 결의를 유린하고 조선 지방자치 운용에 일대 오점과 암영을" 드리운 것이지만, 이미 대세가 정해진 상태에서 전기문제를 더 이상 거론치 말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의 찬성이 있어 더 이상 전기가스 부영화문제는 부회 석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53]

부영화 논의는 부회 석상에서 사라졌지만, 1932년 후반부의 의회 석상에서는 부영문제의 대안을 둘러싼 의원 내부의 대립이 벌어졌다. 경성전기 측에서는 부영 대안의 반대급부로 100만 원을 경성부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논란 끝에 7월 26일 부회에서 부의 적립금으로 축적시키기로 정해졌는데, 이후 여러 차례 의원 간담회를 거쳐 이 기금의 일부인 50만 원으로 경비진료소(輕費診療所)를 설립하기로 정해졌다.[54] 이 과정에서 일부 일본인 의원 사이에서 경성부

51) 이에 관해서는 ≪동아일보≫ 1931년 12월 19~24일 ; ≪매일신보≫ 1931년 12월 20~24일 기사 참조.

52) ≪중앙일보≫ 1932년 3월 18일 ; ≪매일신보≫ 1932년 3월 18·19일.

53) ≪중앙일보≫ 1932년 3월 20일 ; ≪매일신보≫ 1932년 3월 20일. 이후 4월 13일 부회 때 몇몇 의원들이 부윤에게 앞으로 부민 의사를 존중해 선처해달라는 식으로 요청했고, 1931년 12월 21일에 제출한 〈전기가스공영인가신청의견서〉는 철회되었다(≪매일신보≫ 1932년 4월 15일).

54) 〈府會並常任委員會〉 ≪경성휘보≫ 131, 1932.8, 17쪽 ; 〈委員會並懇談會〉 ≪경성휘보≫ 134, 1932.11, 18쪽 ; 〈府會並常任委員會〉 ≪경성휘보≫ 135, 1932.12, 22쪽.

일본인 시민이 조선인 시민보다 수효가 적기 때문에 혜택이 적다고 하여 반대했고, 경성의사회, 용산의사회, 한성(漢城)의사회 등 경성시내 세 의사회에서 경비진료소의 유료환자 진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정총대 가운데서는 일부 일본인 정총대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대다수 정총대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 문제를 놓고 11월 21일 "방청객이 쇄도하여 입추의 여지가 없는 대만원"의 성황을 보이는 가운데 부회의장 문이 열렸고, 최종적으로는 11월 29일 부회에서 경비진료소 설립이 가결되었다.[55]

1933년 정기부회는 3월 9일 개회하여 3월 31일에 종료되었다. 1933년도 예산안 및 그 부대안건 이외에 수도요금 인하와 보수공사 문제, 가로수 식수 및 가로등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56] 특별히 논란이 된 문제는 없었으나, 이 해에는 통상부회에 앞서 3월 7일 임시부회를 개회하고 부영승합자동차 양도를 만장일치 가결했다.[57] 경성부영버스는 1920년대 경성의 팽창에 대응해 1928년 4월 사업을 개시한 사업이었는데, 전차와 운행노선이 겹치면서 수송량과 가격 경쟁에서 전차를 이길 수 없었고, 지나친 사업규모 확대로 인한 사업비의 적자 폭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경성부회에서는 여러 차례 의원 간담회를 가져 협의한 끝에 경성전기주식회사에 부영버스를 양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58] 이로써 1933년 4월 1일부터 부영버스 영업은 경전버스로 바뀌어 계속되었다.

---

55) ≪매일신보≫ 1932년 10월 29일, 11월 21일 ; ≪中央日報≫ 1932년 11월 2·9·17·21일.

56) 〈會議狀況〉 ≪경성휘보≫ 138, 1933.3 ; 〈會議狀況〉 ≪경성휘보≫ 139, 1933.4 ; ≪매일신보≫ 1932년 3월 11·13·15·16·17일.

57) 〈會議狀況〉 ≪경성휘보≫ 138, 1933.3, 35~36쪽.

58) 부영버스사업에 관해서는 최인영, 〈1928~1933년 京城府의 府營버스 도입과 그 영향〉 ≪서울학연구≫ 29, 2007 참조.

<표 10> 1934년 경성부회 통상회의(정기부회) 안건(1934.3.9.~3.29)

의안 제2호 경성부청사 신축비 충당채 상환 방법 변경의 건
의안 제3호 경성부 축산장려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4호 경성부 사회사업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5호 경성부 기본재산축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의 건
의안 제6호 경성부 위생시설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7호 소화9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의안 제8호 소화9년도 경성부 부민병원비 특별회계 세입출예산의 건
의안 제9호 소화9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세입출예산의 건
의안 제10호 경성부 吏員급여기금 설치 및 사용방법과 운용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11호 경성부 제4회 い호 공채 상환기금적립금 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12호 경성부 부가세조례 중 개정의 건
의안 제13호 공사의 청부, 勞力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대차에 관한 조례 중 개정의 건
의안 제14호 소독 및 환자수송조례 중 개정의 건
의안 제15호 경성부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의 건
의안 제16호 수수료조례 개정의 건
의안 제17호 경성부 특별영업세 잡종세 조례 중 개정의 건
의안 제18호 경성부 상품권 발행세 조례 설정의 건
의안 제19호 명치정 공설일용품시장 폐지의 건
의안 제20호 공설일용품시장 설치의 건
의안 제21호 안국동 공설柴炭시장 폐지의 건
의안 제22호 돈의동 공설시탄시장면적 변경의 건
의안 제23호 동대문 공설시탄蔬菜시장 면적 변경의 건
의안 제24호 예산외 의무부담의 건(오물처분장 용지 관계)
의안 제25호 예산외 의무부담의 건(경기도비 기부관계)
의안 제26호 재산처분의 건(蠶島수원지 보수공사비 관계)
의안 제27호 예산외 의무부담의 건(蠶島수원지 보수공사비 관계)
의안 제28호 재산처분의 건(수산시장 냉장고 개축비 관계)
의안 제29호 예산외 의무부담의 건(수산시장 냉장고 개축비 관계)
의안 제30호 재산처분의 건(묘지임시비 관계)
의안 제31호 토지매각처분의 건(명치정 소재 토지)
의안 제32호 토지 및 건물매각처분의 건(신당리 소재 토지 급 건물)
의안 제33호 적립금 조입 처분의 건(부민관 신영비 관계)

의안 제34호 토지무상양도의 건
의안 제35호 경성시구개수비 기채의 건
의안 제36호 경성부 제3기 하수개수비 기채의 건
의안 제37호 소화7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급 각 특별회계 세입출 결산
의안 제38호 부유지 대부 건
의안 제39호 기채 건(流送설비비 관계)
의안 제40호 소화8년도 경성부 세입출예산 추가 건
의안 제41호 토지교환 건
中央卸賣市場法 同樣의 법령제정에 관한 의견서(濱田虎熊 외 30명 제출)

출처: ≪경성휘보≫ 150, 1934.3. 31~32쪽 ; ≪경성휘보≫ 151, 1934.4. 63~64쪽 ; ≪매일신보≫ 1934년 3월 7일 ; 1934년 3월 15일.

1934년 통상부회는 3월 9일부터 29일까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총 16일 동안 개회되었다. 부회에서는 예산심의 이외에 첫날부터 경성부청 관리의 공금 횡령문제, 경성시 분뇨처리문제, 청계천 도로폭 확장 문제, 새로 태어난 일본 황태자의 명명식을 기념하는 부민봉축회 준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된 논제는 경성시 분뇨(시뇨)처리와 관련한 것이었다.

분뇨처리문제는 첫째로 오물소제비에 관한 것이다. 인구 증가에 따라 분뇨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 수량은 감소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한 지출이 증가되는 현상이 의원들에게 포착된 것이다. 둘째, 오물을 운반하는 부영마차를 최근 회사 내분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성비료회사로 이관하려 하는 점이다. 셋째, 부영마차 임금이 시중 민간의 마차 임금보다 고가로 빌려오는 까닭과 그 마차의 차량세까지 감해주는 문제였다. 넷째, 분뇨탱크를 분뇨처리를 청부한 비료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부가 나서서 탱크를 설치하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59]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회의장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부 당국에 대해 의혹을

59) ≪동아일보≫ 1934년 3월 17일(조간).

제기하였다. 분뇨를 취급하는 경성비료회사의 내분이 부 재정상에 미치는 영향 여부, 비료회사의 관선취체역이 부영마차를 이용해 서대문 부근 분뇨를 사적으로 반출을 꾀해 사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 회사 전무가 현금을 지참하고 부윤을 방문해 시뇨 업무 불하를 청탁했다는 소문, 분뇨가 농민에게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문제, 분뇨운반 마필을 평판이 나쁜 비료회사에 불하 경영케 하려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질문전이 전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국에서는 '내분은 경미한 사건'이라든가, 비료회사 내분이 부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대답을 회피하기 바빴고, 여러 의혹을 부정했다. 또 당국자의 답변이 불분명한 가운데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경성부윤이 의장으로서 서둘러 폐회를 선언하며 수습하는 일도 벌어졌다.[60]

결국 이러한 질문 공세가 계속되고 분규가 거듭되는 가운데 경성사회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3월 29일 통상부회 마지막 날에 문제의 부오물반출마(府汚物搬出馬) 폐지안이 철회되었다.[61] 이후 9월 20일 임시부회에서는 스가 소지(菅總治) 외 34명의 의원이 〈오물소제법과 같은 형태의 법령 제정 방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만장일치 가결되는 등 경성부회 내에서 오물처리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62] 많은 안건이 대체로 부 당국이 정한 대로 독회도 생략한 채 통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당시 부회석상에서 이와 같은 분뇨운반처리문제는 상당히 파장이 큰 의제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부회 내외의 압력으로 인해 안건이 철회되는 몇 안 되는 사례로서, 부회 활동을 단순히 관치 중심의 거수기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63]

---

60) ≪京城日報≫ 1934년 3월 13·14·17일(조간) ; ≪매일신보≫ 1934년 3월 14·17·18·19일.

61) ≪京城日報≫ 1934년 3월 30일(조간) ; ≪매일신보≫ 1934년 3월 31일.

62) 〈會議狀況〉 ≪경성휘보≫ 157, 1934.10, 44쪽.

63) 이밖에 통상부회 기간인 3월 28일 濱田虎熊 외 30명은 〈中央卸賣市場法과 같은 형태의 법령 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가결시켰다(〈府會通常會〉 ≪경성휘보≫ 151, 1934.4, 63~64쪽). 중앙도매시장은 실제로 1937년 신설되기에 이른다. 이런 사례도 부회의 성과라면 성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회 석상에서의 논란과 달리 이 시기에는 부회의원의 출석률과 관련한 비난이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 언론지상에 동시에 등장했다. 보기로 부회 2일째인 3월 12일에는 출석의원이 26명이었는데, 회의 중에 두 명이 의장을 떠나서 정족수에 미달하여 회의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9일째인 20일에도 회의 중에 자리를 비운 의원이 있어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중단된 일이 있었다. 다른 날에도 사정은 비슷하여 과반수인 24명을 겨우 넘는 정도가 많았다. 결석뿐만 아니라 회의시간에 늦어 부회가 30분 이상 늦게 시작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부회 제4일인 13일에는 23명만 출석하여 의장으로부터 유회(流會)가 선언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매일신보≫에서는 '부회여묵(府會餘墨)'이란 코너를 마련해 경성부회의 출석률 저하와 회의 참여가 부족한 의원, 공부하지 않고 언변만 늘어놓는 의원, 의석에 앉아서 "타기(惰氣) 만만하게" 자는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3월 17일 기사부터는 당일 회의에 어떤 의원이 결석했는지 실명까지 기재하기에 이르렀다.[64]

회의 출석률 저조는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1934년 정기부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까닭은 부회 제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의원들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하루 4원씩 일당이 지급되었는데, 이 제도가 매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세비(歲費)제로 바뀌면서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하면서도 1년에 250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65]

세간의 비난이 커지자 부회의원 사이에도 불평이 많아졌고, 의원 내부에서도 출석을 독려하거나 결석할 경우 미리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의장도 의장석에서 출석자와 결석자 이름, 결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자를 보고하는 등 반성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66]

---

64) ≪경성일보≫ 1934년 3월 13일(조간) ; ≪매일신보≫ 1934년 3월 14·15·17·22일.

65) 〈府會餘墨〉 ≪매일신보≫ 1934년 3월 16일.

66) ≪경성일보≫ 1934년 3월 16일(조간) ; ≪매일신보≫ 1934년 3월 16일.

<표 11> 1935년 경성부회 통상회의(정기부회) 안건(1935.3.9.~3.25, 4.12)

의제4호 소화10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5호 소화10년도 경성부 부민병원비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6호 소화10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7호 吏員조례 중 개정 건
의제8호 경성부吏員봉급조례 중 개정 건
의제9호 경성부여비지급조례 중 개정 건
의제10호 吏員숙사료지급조례 중 개정 건
의제11호 이원퇴은료, 퇴직급여금, 사망급여금, 유족부조료조례 중 개정 건
의제12호 경성부 특별영업세, 잡종세조례 중 개정 건
의제13호 경성부 특별토지평수割조례 설정 건
의제14호 가옥세부과에 관한 종별등급과 부과율 결정 건
의제15호 묘지 및 葬齋場사용조례 중 개정 건
의제16호 경성부 수수료조례 중 개정 건
의제17호 경성부 소독 및 환자수송수수료조례 중 개정 건
의제18호 경성부 屎尿汲取수수료조례 설정 건
의제19호 경성부 이원급여기금설치 및 사용방법과 운용조례 중 개정 건
의제20호 경성부 제5회 ㅣ호공채 상환기금적립조례 설정 건
의제21호 공익사업시설자금적립금 繰入 건
의제22호 경성부 부민관신영비계속비 지출방법 변경 건
의제23호 제3기 하수개수비계속비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 건
의제24호 전염병원개축비계속비 설정 건
의제25호 특별기본재산 처분 건
의제26호 예산외 의무부담 건
의제27호 경성시구개수비 충당채 건
의제28호 제3기 하수개수비충당채 기채방법 변경 건
의제29호 전염병원개축비충당채 건
의제30호 소화8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결산 및 각 특별회계 세입출 결산보고 건
의제31호 토지매각처분면적 변경 추가 건
의제32호 府外 급수 건

출처: ≪경성휘보≫ 162, 1935.3. 44~48쪽 ; ≪경성휘보≫ 163, 1935.4. 44~45쪽.

제1기 경성부회의 마지막 정기부회는 3월 9일부터 25일, 그리고 4월 12일 사

이 8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분뇨급취료(糞尿汲取料)조례 찬반 문제, 선거기간 중 호별방문 문제, 부리원(府吏員)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경성부 내 수도전에서 지렁이가 나오는 일이 발생하여 수도 관리에 대한 질문도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분뇨급취료조례 문제(의제18호)의 경우, 이 조례가 실시되면 증세로 인해 하층 시민을 착취하는 것이 되어 부에서 이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안건은 결국 상하층 계급문제와 공공성 문제를 야기했지만 가결되었다.[67]

한편 선거기간 호별방문 문제는 지노 도메조(茅野留藏) 외 30명이 제출한 〈조선지방선거 취체에 관한 의견서〉가 상정되면서 논의되었다. 이는 곧 다가올 1935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선지방선거취체규칙〉에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피력한 것이었다. 호별방문으로 인한 선거위반사건 등 부정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항목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했다. 가노 이치베(加納一米)는 경성부가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에서, 윤우식(尹宇植)은 아직 선거사상이 보급되지 못한 조선에서는 호별방문이 필요한 것으로 그 금지가 시기상조라는 점을, 유승복(劉承復)은 호별방문으로 인한 부정은 운동원의 실책으로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반대했다.[68] 이 문제는 부회에서 결의되어 총독부에 제출되었는데, 총독부는 각 도의 의견을 구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확인한 뒤 종래대로 호별방문을 금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69]

이밖에 3월 25일에는 고이즈카 쇼타(肥塚正太) 외 26명이 제출한 〈경성부 행정구역확장 건〉의 의견서와 지노 도메조 외 35명이 제출한 의견서 〈경성부윤교

67) ≪매일신보≫ 1935년 3월 10·12·25일 ;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2일 ; ≪경성휘보≫ 163, 1935.4, 44~45쪽.

68) ≪경성일보≫ 1935년 3월 12일(조간) ; ≪매일신보≫ 1935년 3월 12일.

69) ≪매일신보≫ 1935년 3월 17일.

제비증액 건〉이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70]

한편 1935년 후반기에는 5월 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경성부회가 열렸는데, 이때 제기된 안건 중 특징적인 것은 경성부역 편입 문제와 전염병 문제였다. 우선 전자의 경우 9월 4일 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임시부회는 경성시가지계획에 대한 총독부 자문안에 경성부가 답신안을 작성, 결의하는 자리였다. 하타에 지요조(波多江千代藏)와 하마다 도라쿠마, 양재창(梁在昶) 등 의원들은 경성부 측의 답신안에 대하여 경성의 수원지가 있는 둑도면(纛島面)이 제외된 이유를 질문하며 그곳이 제외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경성부 토목과장의 답변이 있은 뒤 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갔다. 9월 6일 다시 부회가 개최되어 경성부회에서는 자문 답신서에 둑도면 14개리 중 한강 건너편의 잠실리와 신천리를 제외한 12개리를 시가지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부기한 원안 찬성의 답신서를 총독부에 보냈다.[71]

10월 14일 부회에서는 전염병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당시 〈의제61호 소화10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추가 건〉이 상정되었다, 이 안건 중 전염병원 및 전염예방비 예산과 관련하여 제1독회에서 하타에 지요조를 필두로 스가 소지, 하마다 도라쿠마, 유승복, 나카무라 이쿠이치(中村郁一) 등 여러 의원이 전염병 예방에 대한 선전이나 방역활동에 대한 경성부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때는 경성부청 공중식당 종업원 가운데 환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 더욱 논란이 가중되었다. 이 안건은 질의가 속출했지만 결국 가결되었다.[72]

---

70) 〈會議狀況〉 ≪경성휘보≫ 163, 1935.4, 44~45쪽.

71) ≪매일신보≫ 1935년 9월 5·7일. 경성 행정구역 확장과 관련해서는 염복규,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113~123쪽 참조.

72) ≪매일신보≫ 1935년 10월 16일 ; 〈京城府會狀況〉 ≪경성휘보≫ 170, 1935.11, 27쪽.

<표 12> 1936년 경성부회 정기부회 안건(1936.3.12.~3.28)

읍면 廢置 및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읍면유재산 처분에 관한 답신 의결 건

의제2호 소화11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2호-2 소화11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추가 건
의제3호 소화11년도 경성부 부민명원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4호 소화11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5호 경성부회의원 費用辨償조례 중 개정 건
의제6호 경성부吏員조례 중 개정 건
의제7호 경성운동장사용조례 중 개정 건
의제8호 경성부소독 및 환자수송수수료조례 중 개정 건
의제9호 경성부 특별호별세조례 폐지 건
의제10호 경성부 호별세조례 폐지 건
의제11호 경성부 부세제한외 부과 조례 폐지 건
의제12호 경성부 부가세조례 개정 건
의제13호 경성부 특별영업세조례 중 개정 건
의제14호 경성부 助興稅조례 중 납기 개정 건
의제15호 경성부 제3기 수도확장공사비계속비 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 건
의제16호 남산주회도로개수비계속비 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 건
의제17호 기채 건(제3기 수도확장공사비충당채)
의제18호 기채 건(남산주회도로개수공사비충당채)
의제19호 기채 건(임시하수개수비충당채)
의제20호 기채 건(묘지 改葬 및 시설비 충당채)
의제21호 기채 건(경성시구개수비충당채)
의제22호 소화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출 결산보고 건
의제23호 府有토지 賣却代처분 건
의제24호 경성부 특별세 토지평수割 부과사업 및 增課건물 결정 건
의제25호 소화10년도 경성부 부민병원비특별회계 세입출예산 추가 경정 건
의제26호 소화10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추가 건
의제27호 屠獸場사용조례 중 개정 건
의제28호 경성부吏員봉급조례 중 개정 건
의제29호 경성부여비지급조례 중 개정 건
의제30호 경성부용산출장소조례 중 개정 건
의제31호 경성부임시특별세조례 설정 건

의제32호 경성부영등포시장사용조례 설정 건
의제33호 경성부農糧대부 및 관리조례 설정 건
의제34호 금고사무취급조례 중 개정 건
의견서안 2건

출처: ≪경성휘보≫ 175, 1936.4. 43~46쪽.

제2기 경성부회의 첫 통상부회는 1936년 3월 11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부회는 경성부역 확장이 조선총독부령 제8호(1936.2.14)로 공포되어 시행날짜가 4월 1일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부역 확장에 따른 '대경성' 건설을 위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팽창되고 여타 신규 사업안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안건 심의가 진행된 것이다.[73]

회의에서 주로 논점이 된 사안은 공익질옥 부정 대부 문제, 구역 확장으로 인한 기존 읍면 직원 채용과 자질 문제, 전염병 감염 대책으로서 순화원(順化院) 시설 개선 문제, 시내 청소 및 감독 문제, 부립도서관 및 공원, 중앙시장 등 사회시설 증설 문제, 분뇨급취료 철폐 문제, 남산주회도로와 청계천도로개수문제 등이었다.[74] 이 가운데 청계천도로개수문제는 남산주회도로 부설과 함께 언급되면서 주로 조선인 의원과 일본인 의원 사이에 갈등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제12일이자 폐회일인 3월 28일에는 부회의원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서 2건이 가결되었다. 하마다(濱田虎熊) 의원 외 27명이 제출한 〈청계천 개수에 관한 의견서〉, 하마다 의원 외 32명 의원이 제출한 〈둑도시가지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의

73) 물론 1930년대 후반 이후 '대경성' 도시 개발이 일본인과 대자본 중심의 사업, 전시체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식민권력의 독단주의에 입각한 도시 하층민에 대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한계는 선행 연구가 지적한 바이다(김백영, ≪지배와 공간 –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427~433쪽 참조).

74) ≪매일신보≫ 1936년 3월 12·14·17·18·20·21· 24·25일.

견서〉가 그것이다.[75]

1936년 9월에는 앞서도 봤듯이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증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부회의원 숫자도 63명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새로운 인물이 충원되면서 여러 의견서가 제출되는 등 이전에 비해 부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36년 마지막 부회였던 1936년 11월 4일에는 하마다 의원 외 29명이 발의한 〈경성부회회의규칙 중 개정 건〉, 시라이시 이와오(白石巖) 의원 외 30명이 제출한 〈전임학무과장임명방법 건〉, 김태집(金泰潗) 의원 외 41명이 제안한 〈노량진영등포간 경전버스 임전(賃錢) 인하〉 의견서가 제출, 가결되었다.[76]

<표 13> 1937년 경성부회 정기부회 안건(1937.3.11.~3.29)

의제4호 소화12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5호 소화12년도 경성부 부민병원비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6호 소화12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7호 소화12년도 경성부 농량자금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8호 소화11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추가 건
의제9호 경성부 시가지계획특별세조례 설정 건
의제10호 경성부 隣保館진료부 사용조례 설정 건
의제11호 경성부 吏員조례 중 개정 건
의제12호 경성부 屠場사용조례 중 개정 건
의제13호 위생시험수수료조례 중 개정 건
의제14호 경성부 소독 및 환자수송수수료조례 중 개정 건
의제15호 順化院사용조례 중 개정 건
의제16호 경성부 묘지 및 葬齋場 사용조례 중 개정 건
의제17호 경성부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 건
의제18호 경성부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건
의제19호 경성부 공사의 청부, 勞力 공급 및 물건 매매대차에 관한 조례 중 개정 건

75) 〈京城府通常府會〉 ≪경성휘보≫ 175, 1936.4, 44~45쪽

76) 〈京城府會〉 ≪경성휘보≫ 182, 1936.11, 15~18쪽.

의제20호 경성부 공익질옥조례 중 개정 건
의제21호 경성부 남산주회도로개수비계속비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 건
의제22호 경성부 시가지계획사업비계속비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 건
의제23호 경성부 屎尿流送설비비계속비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 건
의제24호 기채방법 변경 건(남산주회도로개수비 충당 건)
의제25호 기채 건(淸掃分室 이전개축비 충당채)
의제26호 기채 건(가축시장부지 구입비 충당채)
의제27호 기채 건(屠場부지 구입비 충당채)
의제28호 기채 건(경성부시가지도로개수비 충당채)
의제29호 기채 건(경성부 하수개수비 충당채)
의제30호 기채 건(경성부 중앙卸賣시장 신설비 충당채)
의제31호 기채 건(시뇨유송설비비 충당채)
의제32호 기채 건(일용품시장 증개축비 충당채)
의제33호 기채 건(수도설비개량증설비 충당채)
의제34호 기채 건(부민병원 증축비 충당채)
의제35호 경성부수산시장에 대한 시장규칙 제8조의 영업 동의의 건
의제36호 토지매각처분의 건(본정 1정목 소재 토지)
의제37호 기본재산을 공공용 재산에 편입의 건(남산주회도로부지)
의제38호 도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면제의 건
의제39호 소화10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보고 건
의제40호 편입 읍면 및 특별회계 소화10년도 세입출 결산보고 건
의제41호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부담금조례 설정 건
의제42호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설정 건
의제43호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 건
의제44호 소화12년도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 건
의제45호 기채 건(제1토지구획정리비 충당채)
의견서 제출 건 (신설정경마장 이전 건)
의견서 제출 건 (산업박람회 개설 건)
의견서 제출 건 (乞食保護求請 건)
의견서 제출 건 (구호법 및 모자보호법 발포 건)
의견서 제출 건 (新한강 및 운하 개착 건)
의견서 제출 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간선도로공사비에 대한 국고보조 건)

출처: ≪경성휘보≫ 187, 1937.4. 30~33쪽 ; ≪매일신보≫ 1937년 3월 10일.

1937년 통상부회는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총 19일 동안 개회되어, 이전보다 기간이 늘었다.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격증했고 신규사업도 늘었다. 이에 의안 수도 50건에 육박하게 되었다. 주요 논의된 사안은 시가지계획특별세 설정, 보건위생과 관련하는 청계천 개수 및 오물[屎尿] 유송설비, 가축시장 및 도수장 이전, 중앙도매시장 신설 및 일용품시장 증개축, 사회사업과 관련한 부민병원 확장 및 인보관 신설과 훈련원 장재장의 신설, 계속사업으로서 수도 및 토목공사 등이었다.[77] 각종 기채 건이 많은 점, 토지구획정리비와 관련한 특별회계, 토지 매각 관련 건 등이 여러 건인 점에서[78] 부역 확장을 동반한 경성시가지계획 사업이 모색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회의원들이 주도하여 제출한 여러 의견서도 특징적이다. 이들 역시 대체로 '대경성 건설', 경성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신설정경마장 이전 건〉은 부역 확장 이후 전 부역에 대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적용되는데, 토지구획 정리 차원에서 경마장을 이전할 필요성을 당국에 피력하기 위해, 〈신(新)한강 및 운하 개착 건〉은 수해 방지를 통한 '대경성 건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간선도로공사비에 대한 국고보조 건〉 역시 부역 확장 과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를 위해 제출된 것이다. 이밖에 부제 시행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견서로 〈산업박람회 개설 건〉이, 도시 미관 확보라는 명분으로 〈걸식보호구청(求請) 건〉, 사회사업으로서 〈구호법 및 모자보호법 발포 건〉 등이 제출되었다.[79]

---

77) ≪매일신보≫ 1937년 3월 10·12일 ; 〈京城府通常府會〉 ≪경성휘보≫ 187, 1937.4, 25~26쪽.

78) ≪매일신보≫ 1937년 3월 27일.

79) 〈京城府通常府會〉 ≪경성휘보≫ 187, 1937.4, 30~33쪽 ; 〈京城府會〉 ≪경성휘보≫ 189, 1937.6, 28~33쪽.

<표 14> 1938년 경성부회 통상회의(정기부회) 안건(1938.3.15.~3.29)

의제35호 소화13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36호 기채의 건(교부금 충당)
의제37호 기채의 건(방공방호시설비 충당)
의제38호 경성부중앙卸賣시장신설비 충당채 기채요항 변경 건
의제39호 경성부하수개수비 충당채 기채요항 변경의 건
의제40호 경성부 제3기수도확장비 충당채 기채요항 변경의 건
의제41호 경성부 원북면 하천부담금 충당채 기채요항 변경의 건37
의제42호 경성부 원북면 하천부담금 충당채 기채요항 변경의 건
의제43호 소화12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추가경정 건
의제44호 경성부 중앙卸賣시장신설비계속비 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 건
의제45호 경성부 시가지계획사업비계속비 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의 건
의제46호 경성부제3기수도확장비계속비 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의 건
의제47호 경성부 수산시장조례 설정 건
의제48호 경성부 수산시장수수료조례 설정 건
의제49호 경성부 수산시장냉장고사용조례 설정 건
의제50호 경성부 공설일용품시장사용조례 설정 건
의제51호 경성운동장사용조례 중 개정 건
의제52호 경성부 吏員조례 중 개정 건
의제53호 경성부 吏員봉급조례 중 개정 건
의제54호 폐기물특별수거수수료조례 중 개정 건
의제55호 토지 교환 건
의제56호 府有건물 매각처분 건
의제57호 府有토지 매각처분 건
의제58호 府有土砂 무상양여 건
의제59호 부가세과율 결정의 건
의제60호 시가지계획특별세 세율결정 건
의제61호 공설일용품시장 사용료 결정 건
의제62호 농량대부 이율 결정 건
의제63호 가축시장 사용료 결정 건
의제64호 土地坪數割 부과사업 결정 건
의제65호 소화13년도 경성부 부민병원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 건

80) ≪경성휘보≫ 원문에는 의제41호와 42호 내용이 같아 오기로 보인다.

의제66호 소화13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 건
의제67호 소화13년도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 건
의제68호 소화13년도 경성부 농량자금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 건
의제69호 경성부 임시특별세조례 폐지 건
의제70호 경성부 영등포시장사용조례 폐지 건
의제71호 경성부 수산시장사용조례 폐지 건
의제73호 府有토지 대부 건
의제75호 도난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의 건경성시가지계획 가로 중 일부 변경 자문에 대한 답신의결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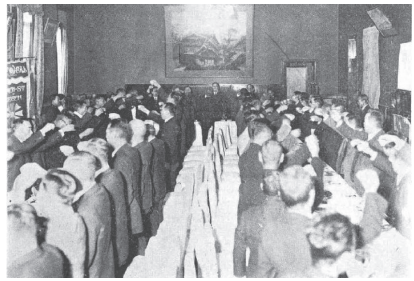
출처: ≪경성휘보≫ 197, 1938.4. 32~41쪽 ; ≪매일신보≫ 1938년 3월 30일.

1938년의 통상부회는 3월 15일부터 29일 사이에 12일 동안 개회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경성부의 제1토지구획정리비, 하수개수비, 제3기수도확장비, 시가지계획특별세, 시가지계획 가로 변경 건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안, 각종 사회시설과 관련한 안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정기부회에서 특별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한 의견서는 〈동부방면 전화료가설료의 통제에 관한 건〉이나 〈동부방면 전차임(電車賃) 통제에 관한 건〉,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지역결정 건〉과 같이 부역 확장 과정에서 새롭게 부역에 편입된 지역을 개발하여 경성부 전 구역의 도시계획을 통일적으로 완비해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81]

이와 함께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대륙침략이 노골화하는 과정도 부회 석상에서 확인된다. 1937년 12월 11일 부회에서는 부회 종료 후 중국 난징 함락을 기념하는 전승축하연을 벌였다. 난징 침공으로 난징대학살이 일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38년 3월 15일 통상부회 개회에 앞서 오노 시로(大野史郎) 의원으로부터 각지 전투에서 개선한 장군 및 재중국 '황군(皇軍)' 장병들에 대해 부민을 대표한 사전(謝電) 발송의 안이 가결되었고, 전몰장병에 대

81) 〈京城府會〉 ≪경성휘보≫ 199, 1938.6. 49~50쪽 ; ≪매일신보≫ 1938년 5월 8일.

한 묵도가 진행되었다. 또 한만희(韓萬熙) 의원은 육군특별지원병제도 확립과 개정 교육령 제정에 대한 관계 방면에 감사 전보를 보내자는 동의를 구해 이 역시 가결되었다.[82] 또한 위 의안 제37호처럼 방공방호시설비 충당을 위한 기채 안건이 성립된 점, 정기부회에 앞서 1938년 1월 22일 부회에서 가결된 의제 11호의 경우 〈중일전쟁[支那事變]으로 종군한 군인 및 군속에 대한 부세 감면, 납세연기 등에 관한 조례 설정 건〉이라는 점에서 전시체제 상황이 농후해지고 있는 양상을 읽을 수 있다.[83]



<그림 8> 난징 함락 기념 전승축하연을 벌이는 부회의원들(1937.12.11)
출처: ≪경성휘보≫ 196, 1938.12·3 (합본호)

이 해에 부회 석상에서 논란이 된 사안은 대표적으로 경성수산시장 부 직영문제를 꼽을 수 있다. 부 직영문제는 1월 25일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어 가결되고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본금 75만 원의 경성수산주식회사가 3월 31일부로 시장영업권이 해소되고 회사도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의 이사이자 부회의원인 후지무라 쥬스케(藤村忠助)와 가노 이치베(加納一米) 의원은 부 직영의 불필요함을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표출했지만, 다수결로 부 직영이 결정되었다.[84] 의사 안건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82) ≪경성휘보≫ 197, 1938.4, 37쪽.

83) 3월 24일 회의에서 부 당국에 대해 曹秉相 의원이 시간 극복, 생업보국 운동은 정신적 시설이나 정신작흥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고 비판한 것도 부회석상에서 전시체제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던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매일신보≫ 1938년 3월 25일).

84) ≪매일신보≫ 1938년 1월 27·28일.

<표 15> 1939년 경성부회 통상회의 안건(1939.3.15.~3.31)

의제11호 소화14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12호 기채 건
의제13호 기채 건
의제14호 기채 건
의제15호 기채 건
의제16호 기채 건
의제17호 기채 건
의제18호 기채 건
의제19호 경성부 중앙卸賣(도매)시장 신설비 충당기채 요항 변경 건
의제20호 경성부 시가도로개수비 충당기채 요항 변경 건
의제22호 소화13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추가경정 경
의제23호 경성부 중앙卸賣(도매)시장 신설비계속비年期(연한) 및 지출방법 변경 건
의제24호 경성부 屎尿유송 설비비 계속비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 건
의제25호 경성부 시가지계획사업비계속비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 건
의제26호 경성부 防空細道路개수비계속비年期(연한) 및 지출방법 설정 건
의제27호 경성부 중앙卸賣(도매)시장 사용조례 설정 건
의제28호 경성부 중앙卸賣(도매)시장 특수설비 사용조례 설정 건
의제29호 경성부 중앙卸賣(도매)시장 鮮魚部 수수료조례 설정 건
의제30호 경성부 중앙卸賣(도매)시장 선어부 냉장고 사용조례 설정 건
의제31호 경성부 오물수거 수수료조례 설정 건
의제32호 경성부 가축시장 사용조례 중 개정 건
의제33호 경성부 납세장려조례 중 개정 건
의제34호 경성부 금고사무취급 은행담보조례 중 개정 건
의제35호 토지 매각처분 건
의제36호 토지를 제2부 특별경제로 유상 組替 건
의제37호 토지를 제2부 특별경제로 무상 組替 건
의제38호 토지 유료대부 건
의제39호 토사무상양여기간 연장 건
의제40호 건물 및 부속구조물 매각처분 건
의제41호 건물 및 구조물 매각처분 건
의제42호 구조물 매몰처분 건
의제43호 건물 무상양도 건

의제44호 경성부 중앙卸賣(도매)시장 설치에 관한 건
의제45호 花園町공설시장 위치면적설비 변경 건
의제46호 부가세율 결정 건
의제47호 시가지계획특별세율 결정 건
의제48호 중앙卸賣(도매)시장 사용료 결정 건
의제49호 중앙卸賣(도매)시장 특수설비사용료 결정 건
의제50호 공설일용품시장사용료 결정 건
의제51호 가축시장사용료 결정 건
의제52호 소화14년도 경성부 부민병원비 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53호 소화14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54호 소화14년도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55호 소화13년도 경서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갱정 건
의제56호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계속비 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 건
의제57호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사업 충당기채 요항 변경 건
의제58호 소화14년도 경성부 제2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
의제59호 소화13년도 경성부 농량자금 특별회계 세입출예산 추가 건
의제60호 府債 繰上상환 건
의제61호 경성부 농량대부 및 관리조례 폐지 건
의제62호 경성부 수산시장 폐지에 관한 건
의제63호 영등포가축시장 폐지 건
의제65호 소화13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예산 추가 건
의제66호 경성부 중앙卸賣(도매)시장 鮮魚部 영업 직영에 관한 건
의제67호 경성부 중앙卸賣(도매)시장 靑果 도매영업에 관한 건

출처: ≪경성휘보≫ 210, 1939.5. 52~56쪽.

제2기 경성부회의 마지막 정기회의였던 1939년에는 도시의 건설, 부민의 후생, 부민 체위의 향상 및 건강 증진 문제, 각종 토목사업의 진전, 위생시설 정비, 방공(防空) 강화, 정회(町會)의 운용, 제반 사회사업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1938년에 비해 체위 향상과 건강 증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85] 정회 운용이

85) 4월 28일 임시부회에서는 하마다 의원 외 13명이 〈조선에 결핵예방법 및 보건소법과 같은 법령 시행 방법 건〉을 의견서로 제출해 가결되기도 하였다(≪경성휘보≫ 210, 1939.5, 56쪽).

라는 주민동원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된 점,[86] 의안 제26호와 같이 방공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고 있는 점, 출정군인 유가족에 대한 주택 건설안이 논의되고 그 예산이 통과된 점[87] 등에서 중일전쟁이 장기화하며 전시 총동원체제기로 접어든 시기 변화를 부회석상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경성부회에서 경성부를 조선의 '병참기지'로서 지칭하고 있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88]

한편 전시체제기 경성부의 증대되는 역할과 이에 동반되는 예산 격증, 인구 증가 등은 경성부회 내에서 '특별부제' 실시를 요청하는 배경이 되었다. 4월 14일 부회에서는 하마다(濱田虎熊) 외 45명이 〈경성부에 대한 특별한 부제 제정에 관한 건〉을 제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규모 면에서 제국 내 사실상 '7대 도시'가 되고, 재정 면에서는 경기도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는 경기도의 감독을 받는 하급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고, 경성부를 총독부 직할로 하고 결의기구로서의 기능도 확충하는 등 특별부제 실시를 총독부 당국에 요청한 것이다.[89]

3) 주요 의제

(1) 경성전기가스 부영문제[90]

제1기 경성부회 석상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의제는 경성전기사업 부영문제였다. 당시 전기는 이미 도시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었고, 경성지역은 말

86) 일제시기 정·동회 관련 연구로는 서현주, 〈朝鮮末 日帝下 서울의 下部行政制度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영미, ≪동원과 저항 - 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푸른역사, 2009, 1~2장 참조.

87) ≪매일신보≫ 1939년 3월 28일.

88) ≪경성휘보≫ 210, 1939.5, 47쪽.

89) ≪경성휘보≫ 210, 1939.5, 56~57쪽.

90)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다. 이하 내용은 김제정, 〈1930년대 초반 京城지역 전기사업 府營化 운동〉 ≪한국사론≫ 43, 2000 ; 오진석, 앞의 논문 ; 김제정, 앞의 논문, 2015, 147~153쪽을 참조해 정리한 것이다.

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경성전기주식회사는 전기사업을 독점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전기요금 인하운동에서부터 근본적으로는 전기사업 부영화운동을 추진했다. 더구나 경성전기의 독점영업기한이 가스가 1932년 6월, 전기가 1933년 1월에 만료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1930년대 초반 부영화운동이 치열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아래에서 공영화는 경성부회의 결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경성부회가 부영화운동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1931년 선거유세 과정에서부터 부회의원 후보자들은 전기사업 공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자들은 부 재정 문제와 부민 부담 경감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전기사업 공영화를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31년 의회석상으로 옮겨갔다. 당시 공영화 문제를 둘러싸고 부회의원은 여러 세력으로 나뉘었다.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영업기한 만료를 기해 즉각 부영화를 실시하자는 '부영파'와, 부영에는 찬성하지만 조사기관을 설치해 부영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파', 부영에 반대하는 '경전파', 그리고 소수지만 중립을 지키는 '중립파' 등으로 분화한 것이다. 부회에서는 주로 부영파와 조사파의 대립이 뚜렷했다. 1931년 7월 2일 부영파의원 27명은 〈전기 및 와사(瓦斯)사업 부영 의견서〉를 부윤에게 제출했고, 조사파 14명은 7월 3일 〈전기 및 와사사업 공영에 관한 조사위원회 설치의견서〉를 제출했다.[91]

전기 부영화 요구는 경성부회 이외에 정동총대 측에서도 있었다. 경성부내 조선인정동총대연합회는 7월 6일 임시총회를 열어 부영 찬성을 결의하고 부윤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7월 26일에는 일본인 정동총대연합회에서도, 그 다음날에는 용산 측의 정동총대연합회에서도 부영촉진을 결의했다. 조선인과 일본인 측 정동총대연합위원회는 7월 30일 합동회의를 개최해 경성전기와사부영기성회를 조직했고, 7월 31일 부영취지서를 발표했다. 또 기성회는 8월 2일 부민대

91) ≪매일신보≫ 1931년 7월 3·4일.

회를 개최하고 총독과 정무총감을 방문하는 등 식민당국에 진정활동을 펼쳤다. 그 이전에 조선인 정동총대연합회는 조선인 부영파 부회의원 10명과 회동하여 공동전선을 형성했고, 부영파(즉단파)와 조사파를 초대해 부회의원 사이의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92]

8월 8일 경성부회가 열리고 부영파와 조사파 각각의 건의안이 상정되었다. 경성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부회에 쏠려 있었던 만큼 경성부회가 생긴 이후 최초로 일반에 방청권이 발부되었다. 혹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회의장 분위기는 토론과정에서 상호 비방이 빗발치고 개인의 기밀까지 폭로되는 등 "육탄전까지도 일어날 험악한 형세"였다.[93] 먼저 부영파는 전기가스사업은 공익사업인데 영리회사가 독점하여 폐단이 많으니 부민 복리를 위해 부영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수방법으로 일본의 사례가 있고 부영의 경우 채산성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사파는 원칙적으로 부영을 찬성하지만, 부영의 가부는 조사회를 설치해 충분히 연구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항목은 경성전기의 경영과 매수의 경제성 문제, 전기사업의 국책상 문제, 전기국영론의 대두와 부영의 방향, 총독·통감의 의견, 부내 상공업자들에 대한 경성전기 매수의 영향, 관계 부읍면과의 연합경영 등등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갔고, 다수파인 부영파의 의견서가 찬성 31표, 반대 16표를 얻어 통과되었다.[94]

이후 경성부회에서는 9월 2일 〈경성부전기 및 와사사업 부영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을 통과시켰고, 부회의원 25명이 준비위원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총독부는 1931년 10월 열린 조선전기사업조사회의 답신 내용을 토대로, 12월 17일 부영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무총감 성명을 발표했다. 부영파 의원 중 14명은 의원직 사퇴까지 불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부영화는 불가능

92) ≪매일신보≫ 1931년 8월 5일.

93) ≪매일신보≫ 1931년 8월 10일.

94) ≪경성일보≫ 1931년 8월 9일 ; ≪매일신보≫ 1931년 8월 5·9·10·11일.

해졌고, 1932년 부영화운동은 경성전기주식회사가 경성부에 100만 원을 기부하고 전기요금을 향후 인하한다고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기부금은 경비진료소와 부민관 건립에 사용되었다.

경성전기 부영화운동 과정에서 부회의원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 있었던 점은 지적해두고 싶다. 부회의원이 크게 두 파로 나뉜 배경에는 부의장선거와 제2부 교육회의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도 있었지만,[95] 부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경성전기(경전)의 저항이 컸다. 경전은 자사의 서무과장 모리 히데오(森秀雄)와 법률고문 데라다 사카에(寺田榮)를 부회의원에 당선시켰고, 이들을 발판으로 부회 내에 '경전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 자신에 우호적이었던 이시모리 히사야(石森久彌)와 다나카 한시로(田中半四郎) 등을 통해 부영파와 갈등관계에 있던 김사연 등 조선인 의원들을 포섭할 수 있었다. 결국 이들이 기반이 되어 '조사파'가 성립될 수 있었다.[96]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이해관계와 그들의 발언 및 활동의 상관관계를 좀 더 깊이 고민해볼 여지를 남긴다.

(2) 청계천 개수문제[97]

1930년대 중반 경성부회 석상에서 논란이 된 안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청계천 개수문제를 꼽을 수 있다. 청계천은 조선시대 이래로 자주 범람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일제시기에 들어와서도 식민권력은 청계천 정비에 신경을 쓰지 않아 하천 바닥이 거의 지면 높이에 근접할 정도에 이르렀다. 당시 청계천

95) 이 와중에 조선인 의원 가운데 김사연과 조병상의 대립이 격해졌고 "완전한 당파적 심리가 쌍방에 움돗기 시작"했다고 한다(≪매일신보≫ 1931년 7월 3일).

96) 오진석, 앞의 논문 참조.

97) 이하 내용은 염복규, 〈식민지시기 도시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민족적 대립의 정치' - 경성부(협의)회의 '청계천 문제'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8, 2013 ; 김제정, 〈제3장 경성부회·부협의회와 서울의 유지들〉, 앞의 논문, 2015, 153~159쪽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변에는 인가가 밀집하면서 하천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오물과 배설로 인해 오염문제가 심각했다. 천변 뚝방도로가 노폭이 좁아 낙상사고가 빈번했던 것도 청계천 일대의 문제였다. 따라서 청계천 정비 문제는 식민지시기 초기부터 경성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으며, 1920년대 이래 부협의회 석상에서도 논의되던 의제였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의 청계천 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과는 그 양상을 달리했다. 계기는 1934년 6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이었다. 이는 경성에서도 시가지계획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의 추진과 예산 투입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청계천 정비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36년 부회에서는 이 청계천 개수문제가 논란이 되며 민족간 대립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논란이 된 이유는 1936년 경성부 사업 내용 중 남산주회도로 개수 공사비 75만 원의 기채 계획이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었다. 경성부는 청계천 정비를 시가지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입안하려고 한 것에 비해 남산주회도로 개수는 별도 사업으로 선정해 시가지계획에 '앞서' 시행하려 했다. 남산주회도로는 일본인 유산층이 중심이 된 경성도시계획연구회 등에서 1920년대 초부터 남산 남쪽 산기슭의 고급주택지 개발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부설을 주장했던 것이다. 연구회 측의 입장은 이 지역을 주택지로 개발해 재원을 얻고자 하는 경성부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렸다. 그러나 경성 전체의 도시계획을 놓고 볼 때 청계천과 같은 문제는 놔두고 부민 다수 생활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부설하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특혜'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청계천 개수와 남산주회도로 문제는 부회 석상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다. 경성부윤이 명목상의 중립만 지킨 채 남산주회로 부설 예산의 일부를 청계천 정비 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의원 사이의 대립은 그치지 않았다. 1936년 3월 23일 경성부회 석상에서는 청계천 문제라든지 부정(府政) 문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던 한만희, 박준호 등 조선인 의원과, 가노 이치베(加納一米), 쇼지 히데오(庄司秀雄) 등 일본인 의원 사이에 정면충돌이 발생했

다. 청계천과 남산주회도로 문제로 논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쇼지가 청계천 문제만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한만희가 분개하며 "감정에 흘렀다"는 것은 "너무나 조선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언사"라고 하자, 조선인 의원들 사이에는 "동감! 동감!"하는 소리가 연발했다. 이로써 장내 공기는 한층 험악해졌다.[98]

결국 이 문제는 경성부회에서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거쳐 의원 전원 명의로 경성부윤과 경기도지사, 조선총독에게 제출할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의견서 내용은 청계천 정비를 시가지계획사업에 포함시킨다는 이전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지만, 부회 석상에서의 논란과 의견서 제출은 경성의 여론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경성부 사업 진행에 어느 정도 압력을 줄 수 있었다. 이후 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 자문안에서 청계천 연변도로 폭이 확대되었고, 청계천 복개는 경성시가지계획의 제1기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식민지 지방의회는 친일 유력자층의 정치 참여 욕구를 흡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려는 의도로 개설된 것이었다. 그러나 청계천 개수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보듯이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권위를 기반으로, 종종 한정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정치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때로는 민족적·지역적 대립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했던 것이다.[99]

4. 맺음말

제한적이지만 1930년대 말 지방제도 개정으로 인한 부회의 위상 증대는 일

98) ≪매일신보≫ 1936년 3월 24일.

99) 염복규, 앞의 논문, 2013, 266~267쪽.

본인, 조선인 가릴 것 없이 조선 내 유력자층의 정치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이를 반영하여 선거 과정에서 입후보자들 사이의 유권자 쟁탈전은 점점 치열해졌고, 뜨거운 선거 열기는 투표일까지 지속되었다. 1930년대 경성부회의 선거 결과를 보면 의석 정원이 1920년대 30명에서 48명으로 증대된 가운데, 1931년 조선인 18명(37.5%), 1935년 조선인 15명(31%)이 당선되어 전체 의석수의 1/3 가량을 조선인이, 나머지 2/3 정도를 일본인이 차지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민족별로 봤을 때 경성부회 내 일본인 의원들의 주도성이 관철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임원 구성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 당선자 개개인을 놓고 보면 50% 이상의 재선율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중역을 지낸 자본가, 변호사나 언론 계통의 전문직 등 고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20년대와 비교할 때 전문직의 진출이 활발했고, 상공업 종사자들의 소속 회사 범위를 볼 때 다양한 직업군을 보이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100] 전직까지 범위를 넓히면 경찰과 판·검사, 우편소장 등 조선총독부 관리 출신이 1931년 16명, 1935년 21명 등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직 경험이 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고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1930년대는 식민지 공업화, 전쟁 수행과 결부되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추진되던 시기로, 경성부에서는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경성부회 증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가 반영되어 15명의 당선자가 배출되었다. 이때 선거의 특징은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한 인물들이 대거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여러 방면에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경성부회에서는 도시행정 관련 논의가 다기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반영하는 예산 및 제반 논의 안건도 해마다 점차 증대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안이 의제의 중심이 되는 정기부회(통상

100) 이러한 경향은 부산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홍순권, 앞의 책, 2010, 394~410쪽 참조).

부회)만 놓고 보면 1932년에는 부회 일정 동안 총 21건의 안건이 논의, 가결된 것에 비해 부역 확장 직전에 열린 1936년 부회에서는 34건과 두 건의 의견서안이 논의되었다. 이후 1938년에는 43건의 의제와 1건의 답신의결이, 1939년에는 57건의 의제가 회의석상에서 논의되었다. 안건의 세부 목록을 보면 도시 정비 및 개발을 위한 토목과 위생, 사회사업,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기채와 각종 특별회계)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결되는 안건을 거의 찾기 힘들 정도여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거수기'로서의 식민지 지방의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밖에 1930년대 말로 가면서 '황군' 장병들에 대한 전보 발송, 전몰장병에 대한 묵도, 군인 및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한 안건 등이 다수 등장했다. 이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총동원체제기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그 흐름에 경성부회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다.[101]

전문직 비중 증대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부회의원의 등장, 도시화에 따른 예산 증대 및 자원 분배의 확장 가능성은 경성부회 내 민족별·계층별·지역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성전기가스 부영 문제와 청계천 개수문제 등을 통해 살펴봤듯이 1930년대 경성부회 석상에서는 매년 여러 의제를 두고 경성부 당국과 의원 사이, 때로는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논의가 펼쳐지는 일종의 제한적인 '공론장'의 모습이 형성되었다. 통치권력과 '경성부민의 대표'라는 각도로, 때로는 민족이나 지역간 차별의 각도로 각종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양상이 지속된 것이다. 그 사이에는 의원 내부의 파벌 형성과 이합집산도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활동과 행위가 경성부정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로 진행되고 있었는지는 1930년대 경성의 도시상(像), 지역정치의 전체상을 염두에 두며 좀 더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1930

101) 비록 완전히 겹치지는 않지만 1930년대 말 이후 부회의원들의 협력 행위에 관해서는 이 책의 양지혜 논문 참조.

년대 경성이라는 도시 공간, 넓게는 조선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식민지시기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갈지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제2부 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제6장

전시체제기(1939~1945년) 경성부회의 구성과 활동

양지혜(한양대 사학과 박사수료)

1. 머리말
2. 전시체제기 경성부회 선거와 당선자 현황
   1) 선거제도의 변화와 선거 결과
   2) 1939년 당선자의 구성
   3) 1943년 당선자의 구성
3. 전시체제기 경성부회의 회의 추이와 주요 관련사건
   1) 회의 구성 및 진행 과정
   2) 주요 관련사건
4. 맺음말

1. 머리말

제3·4회 경성부회의원 선거는 1939년·1943년 5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전시체제기 경성부회를 운영하며 '지역정치' 활동에 참여했다. 일제시기의 '지역정치' 활동은 제한적이나마 정치적 공론이 허용된 장이었기에 그간 여러 연구에서 주목해왔다. 그럼에도 제도적 측면에서 일제시기 지방의회는 ① 지방행정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이던 지방세 과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었다. 제도적으로 보면 식민지 조선의 지방의회는 행정관청(府·府尹)의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았다.[1)]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입증하는 한편, 공공재의 분배 및 공영(公營) 논쟁과 관련해 발생한 정치적 파국을 주목하며 '제도' 이면에 나타난 '정치성'을 주목하고자 했다.[2)] 하지만 이들 연구는 특정 사건과 논쟁에 주목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참여자의 구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불협화음'은 드러내지 못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주로 전시체제기 이전의 사건을 다루었기에 전시체제기의 활동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1939년 이후 경성부회의 구성과 활동을 정리하고, 전시체제하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1939년과 1943년의 선거와 당선자를 분석했다. 두 선거

1)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일제시대사 연구실,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지방제도 관계 법령 비교 자료집≫, 선인, 2010, 35~49쪽 참고.

2) 府의 전기·전차 부영화 논쟁 및 府有재산의 이권화 문제, 도시계획 관련 '개발' 논쟁 등이 다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제정, 〈일제 식민지기 京城지역 電氣사업과 府營化 운동〉,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 기유정, 〈1920년대 京城의 '有志政治'와 京城府協議會〉 ≪서울학연구≫ 28, 2007 ; 염복규,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최인영, 〈서울지역 電車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14가 있다.

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상세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었다.[3] 이 글에서는 기존연구를 참고해 그 흐름을 정리하는 한편, 선거규정, 유권자의 참여율, 선거 관행, 부정선거 등의 측면에서 두 선거의 특징을 비교했다. 또한 각 선거별 당선자를 직업, 당선 경력, 공직 경력별로 구분해 그 구성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1939년 이후 경성부회의 개최 추이와 주요 의제, 주요 관련 사건을 정리했다. 회의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전체 회의 개최 일수와 안건의 부결 여부, 의원별 발언 빈도, 선거 공약과 부회 석상에서의 발언 비교 등의 구체적 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친일 협력', 시국 강연 및 헌납, 부정조사회(府政調査會)의 조직 등 경성부회와 관련한 전시체제기의 특징적인 사건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경성부회의원의 해방 후의 활동을 정리해, 식민지기 지방의회 참여가 가진 의미를 해방 후와의 연속선상에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주요자료로 경성부의 기관지인 ≪경성휘보(京城彙報)≫를 비롯해, 경성부회 통상부회(通常府會) 회의록, 조선어·일본어 신문·잡지, 경찰문서 등을 참고했다.

2. 전시체제기 경성부회 선거와 당선자 현황

1) 선거제도의 변화와 선거 결과

제3·4회 경성부회의원 선거는 1939년·1943년 5월 21일에 개최되었다. 1939년 선거는 1930년 〈개정(改正) 부제(府制)〉(제령 제11호, 1930.12.1)의 틀을 유지했다. 자유 입후보가 허용되어 모두 88명이 입후보했으며, 의원 정원은 〈개정

3) 손정목,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 : 甲午更張 - 日帝强占期≫ 上, 일지사, 1992, 316~318쪽 ; 김동명,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식민지 참정권의 전개 - 1943년 조선 지방의회의 '추천선거'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73, 2007, 316~317쪽.

부제〉 제8조에 의거해 69명(일본인 40명, 조선인 29명)으로 결정되었다. 전시하(戰時下)라는 시국을 고려해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지만, 문서 배포, 정견 발표, 연설, 입간판 등은 허용되어 선거운동은 여전히 대규모로 전개되었다.[4] 집계에 따르면 3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784명의 선거운동원이 활동했으며, 배포된 선거운동 문서(포스터·삐라 등)는 약 170만 여 장에 달했다.[5] 이 과정에서 선거 전후로 세 건의 부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 및 신고되었다. 5월 초 선거운동원의 호별 방문이 문제가 되었던 오정환(吳珽煥)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20엔(円)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6] 또한, 선거 당시 최고득점을 얻어 당선된 임흥순(任興淳)은 정회(町會) 간부를 동원해 투표권을 매매한 혐의가 인정되어 그해 8월 부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200엔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7] 이외에 일본인 의원 하마다 도라쿠마(濱田虎熊)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향응·접대를 했다는 투서가 신고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투서 신고자의 무고로 결론지었다.[8] 이처럼 1939년의 선거는 선거운동에 약간의 제한이 적용되었으나, 기본 규정과 선거운동 관행 및 부정선거의 발생에서 이전의 선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

4) 〈대체로 성적은 甲: 각부 기권율 1할 6푼, 수위는 경성〉 ≪매일신보≫ 1939년 5월 23일.

5) 〈戰費四萬圓消費 主役八十八名, 엑스트라八百 포스터·삐라等百七十萬枚撒布: 京城府議 遂鹿決算〉 ≪매일신보≫ 1939년 5월 23일.

6) 선거운동원의 경우, 20~70엔의 벌금을 선고받았다(〈府議立候補햇든 吳珽煥等에 罰金 四名에 最低廿圓, 最高七十圓〉 ≪매일신보≫ 1939년 6월 7일).

7) 〈任興淳議員事件〉 ≪매일신보≫ 1939년 6월 24일 ; 〈選擧取締規則違反事件의 判決에 대한 部民의 言動에 관한 건(발신: 京畿道 警察部長, 수신: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思想에 關한 情報綴≫ 4, 京高秘 제1985호, 1939년 8월 1일.

8) 〈京城府會 議員選擧에 대한 投書事件에 관한 건〉(발신: 京畿道 警察部長, 수신: 警務局長 등)〉 ≪思想에 關한 情報綴≫ 4, 京高秘 제2075호, 1939년 8월 23일.

<표 1> 1939·1943년 경성부회의원 선거 비교

구분	시행일	입후보	의원 정원	선거운동	특징
3회	1939.05.21	자유	인구증감 반영 (69명)	호별 방문 금지	부정선거 적발
4회	1943.05.21	추천	한정 (56명)	전면 금지	자유입후보 문제

반면, 1943년의 제4회 선거는 '추천선거제'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관치화(官治化)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43년 2월 18일 〈총선거 지도요령〉을 발표해, 부윤이 임명한 '추천모체(推薦母體)'가 '의원 정수(定數)와 동수(同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선거 방침을 밝혔다. 즉, 자유입후보 제도 및 선거권의 부여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해 '선거'의 형태는 유지하되, '추천'을 통해 후보 선정에 관(官)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킨다('추천' 항목)는 취지였다.[9] 추천제 실시와 더불어 1943년 3월 29일에는 〈부제〉를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의 정원을 감축시켰다(제령 제4호). 이에 따라 경성부의 경우 1939년에 비해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원은 69명에서 56명으로 감소했다. 1943년 4월 경성부에서는 아래의 28명의 추천위원이 의원 정원과 일치하는 56명의 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표 2> 1943년 경성부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위원

일본인(16명)			조선인(12명)		
이름	현직	주요 경력	이름	현직	주요 경력
井上淸	朝鮮電力專務	경성부윤	朴興植	和信社長	실업가
谷多喜磨	漢江水電社長	경성부윤	閔奎植	東一銀行頭取	실업가
伊達四雄	土木協會長	경성부윤	李聖根(金川聖)	每日新報社長	경찰
林茂樹	京春鐵道社長	관리	張友植(玉山友彦)	漢城銀行重役	경찰

9) 渡部肆郎, 〈推薦選擧の運用〉 ≪朝鮮行政≫ 22-3, 1943.03, 2~8쪽. 1940년대 일본 본국의 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 官治化가 1943년 조선의 추천선거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손정목, 앞의 책, 1992, 316~318쪽 및 김동명, 앞의 논문, 2007, 316~317쪽에 자세하다.

일본인(16명)			조선인(12명)		
이름	현직	주요 경력	이름	현직	주요 경력
矢鍋永三郎	民間有志	관리	朴斗榮(木下斗榮)	中樞院參議	중추원참의
穗積眞六郎	商工會義所會頭	관리	鄭僑源(烏川僑源)	農地開發營團理事	중추원참의
賀田直治	前商工會議所會頭	실업가	金思演	京畿道會議員	중추원참의
田川常次郎	龍山工作社長	실업가	任明宰(松川明宰)	朝鮮醫師會長	전문직
坂口重治	麒麟麥酒工場長	실업가	趙東植(林川東植)	同德高女校長	전문직
進辰馬	本町龜屋主人	실업가	徐光卨(大山光卨)	辯護士	전문직
杉市郎平	現府會副議長	부회의원	李康爀(李原康爀)	東部隣保館長	지역유지
大梅健治	現府會議員	부회의원	太應善	民間有志	지역유지
國友尙謙	現府會議員	부회의원	○ 총 28명: 일본인 16명, 조선인 12명		
肥塚正太	京城府聯盟理事	지역유지			
池田長次郎	永登浦方面有志	지역유지			
新田義民	本町警防團長	지역유지			

출처: <府議候補推薦母體 委員二十八名을 決定하여 今日發足> ≪매일신보≫ 1943년 4월 15일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근현대인물자료(http://www.koreanhistory.or.kr).

추천위원은 일본인 16명, 조선인 12명으로, ① 전 경성부윤, ② 전 조선총독부 관리, ③ 중추원 참의, ④ 경성 내 주요기업 대표, ⑤ 의사·변호사·교육가 등의 전문인, ⑥ 현 경성부회 일본인 의원, ⑦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독부와 경성부의 의도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선정한 56명의 후보자들은 기존의 선거운동 일체를 폐지하고, 연명(連名)한 인사장 1부를 1회 한도로 유권자에게 전체 발송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10]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39년 제3회 선거 당시와 같은 선거규칙위반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천 후보 외에 자유입후보자가 출마 신청과 취소를 반복하는 혼란이

10) 〈合同選擧事務所設置 推薦된 京城府議 候補者의 決戰體制〉 ≪매일신보≫ 1943년 4월 24일.

이어졌다. 경성의 경우 1943년 4월 24일부터 선거 직전인 5월 19일까지 5명의 자유입후보자가 출마 신청을 취소했다.[11] 결국 1943년 선거는 자유입후보자 없이 추천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1939년과 1943년 경성부회 의원 선거는 자유선거에서 추천선거로 전환되며, 관의 선거 개입이 강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아래에서는 두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유권자의 대응을 살펴보겠다.

<표 3> 1931~1943년 경성부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단위: 명, %)

구분	시행일	유권자 수			투표자 수			기권율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日	朝
1회	1931.05.2.	14,849	7,907	22,756	18,497			18.7	
2회	1935.05.21	13,340	7,432	20,772	16,980			18.3	
증원	1936.09.20	13,164	9,050	22,214	5,753	4,492	10,246	36.2	50.3
3회	1939.05.21	25,033	12,280	27,313	11,679	9,539	21,218	22.2	22.3
4회	1943.05.21	68,730			35,748			47.9	

출처: 川原福臧(內務課), <府會議員選擧制度雜考> ≪경성휘보≫, 1941.09, 7~13쪽 ; <12府 득표 상황> ≪매일신보≫ 1943년 5월 23일.

<표 4> 1939·1943년 경성부회의원 선거의 득표율 (단위: 표)

구분	시행일	최고 득표		최저 득표		평균 득표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3회	1939.05.21.	471	504	160	163	275	274
4회	1943.05.21.	1,553	1,424	305	171	527	630

출처: <京城府民의 代言者 六十九議員決定 二萬千二百十七投票中에서 無効·散票가 百四十八票 開票整理十一時間만에 發表> ≪매일신보≫ 1939년 5월 23일 ; <六月七日에 첫 府會 京城府會議員五十六名決定·當選者氏名> ≪매일신보≫ 1943년 5월 23일.

11) 植田郡治(필명: 植田國境子), 安田榮, 木下榮, 楊潤植, 金敏植의 사례로, 이에 대해서는 손정목, 앞의 책, 1992 및 김동명, 앞의 논문, 2007에 상세하다.

먼저, 투표율을 보면 1939년 선거는 1936년 증원 선거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이전의 1·2회 선거와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인 20% 내외의 기권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1943년 선거는 약 48%로 기권율이 늘어 투표율이 크게 하락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추천선거를 통한 선거의 관치화가 투표 유인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득표율을 보면 1939년에는 최고 득표는 약 487표, 최저 득표는 약 161표로 득표율 사이에 3~4배의 차이가 유지되었다. 반면 1943년에는 상위 4명의 후보자(伊達四雄, 車相鎬, 朴疇明, 姜昌熙)가 각각 1,000표 이상을 받아 전체 득표의 15%를 차지하며 일부 유명인사에 대한 투표의 쏠림 현상을 낳았다. 이로 인해 최고 득표와 최저 득표 사이에 10배에 가까운 편차가 발생했다. 또한 1943년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권 내의 득표를 받아 추천 후보 중 한 명이 탈락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유권자가 자유입후보 신청을 철회한 김민식(金敏植)에게 투표하면서(209표) 추천 후보 중 최저 득표를 한 박영근(朴寧根)(171표)보다 높은 표를 받은 사건이었다. 김민식은 개표 발표 당일 다시 사퇴 수속을 밟아 박영근이 추가 당선되었는데, 이 사건은 추천선거제에 대한 유권자의 혼란 및 소극적 저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3·4회 경성부회의원 선거는 ① 전시체제 아래 지방의원 선거를 통제하고자 하는 조선총독부 및 경성부와, ② 시국에 앞서 개인의 영전(榮轉)을 바라는 출마자, ③ 투표권의 거부 또는 적극적인 무효표 투표를 통해 선거의 관치화에 대응한 유권자의 입장이 갈마들며 전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경성부회 의원의 구성을 분석하겠다.

2) 1939년 당선자의 구성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3·4회 경성부회의원의 정원은 69명과 56명이었다. 그러나 1939년에는 임홍순의 중도 사퇴(선거규칙위반), 1943년에는 김민식의 사퇴

(비추천 당선)가 원인이 되어 각각 차점자(제3회: 梅林卯三郎, 제4회: 朴寧根)가 추가 당선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사퇴·추가 당선을 포함한 인원(제3회: 70명, 제4회: 57명)을 대상으로 각 회기별 인적 구성을 살펴보겠다.

<표 5> 1939년 경성부회 당선 의원 명단

일본인(40명)				조선인(30명: 중도 사퇴 1명 포함)			
이름	연령	구분	직업	이름	연령	구분	직업
加納一米	50	◎	전문(언론인)	姜永晧	50	◎	광업
加藤好晴	68	◎	토지(대가업)	康容杓	50	◎	회사(京江物産(株) 이사)
間島梅吉	64	◎	상업(영화관)	姜昌熙	46	●	회사(朝鮮運輸(주) 임원)
古川敬介	56	◎	교육(도서관장)	金奎應	51	●	토지(충북 대지주)
關根金作	62	◎	상업(가구상)	金敏植	36	●	교육 (進興學校, 永彰學校)
廣綱德太郎	61	●	회사(內鮮石油(株) 이사)	金應純	53	◎	상업(목재상, 토목건축)
國友尙謙	64	◎	토지(耕業社(株) 대표)	金宗亮	36	●	상업(제재업, 토목건축)
南條晟	50	◎	전문(변호사)	金泰漵	52	◎	회사(中央酒造(株) 이사)
內田鯤五郎	52	◎	광업	梁在昶	55	◎	토지 (鮮滿土地鑛山(株) 사장)
臺岐幸義	43	◎	전문(의사)	朴勝城	42	◎	전문(사법서사)
大梅健治	55	◎	상업(사료상)	朴元信	51	◎	전문(의사)
鈴木文助	57	◎	회사(京城煉瓦 社長)	朴疇明	41	◎	상업(不老商會)
栗本正隆	57	●	상업(機工商)	成元慶	49	●	토지(충남 대지주)
梅林卯三郎	57	◎	전문(변호사)	蘇完圭	38	●	전문(변호사)
木下榮	53	◎	회사 (志岐工業(주) 지배인)	楊潤植	38	●	전문(변호사)
武田知星	53	●	교육(퇴직 교사)	芮興洙	46	◎	회사(三興商會(주) 대표)
寶諸彌七	65	◎	전문(사법서사)	李庚鳳	38	●	전문(약제사)

일본인(40명)				조선인(30명: 중도 사퇴 1명 포함)			
이름	연령	구분	직업	이름	연령	구분	직업
不破三平	64	◎	회사원 (興業無盡(株) 전무)	李斗用	50	●	회사 (中央商工(주) 支配人)
濱田虎熊	50	◎	전문(변호사)	李相殷	36	●	광업
山中大吉	43	◎	전문(변호사)	李信龜	43	●	토지(평북 지주)
杉市郎平	71	◎	전문(언론인)	李源祥	39	●	광업
森安敏暢	50	◎	전문(변호사)	李在元	41	●	전문(변호사)
上杉直三郎	54	◎	회사 (鮮光印刷(주)감사)	李昌業	44	◎	회사 (淸凉町荷主運輸組 대표)
上原誠治	46	◎	상업(도매업)	李弘鍾	49	◎	전문(변호사)
石原憲一	50	◎	토지(지주)	任興淳	45	▣	회사(東亞信託 중역)
石川倦造	50	●	회사 (裕豊商會(合資) 대표)	曹秉相	49	◎	회사 (京仁企業(株) 대표)
小川勝平	64	●	전문(변호사)	車相鎬	46	◎	우편국장
小坂貞雄	46	●	전문(언론인)	崔白洵	43	●	전문(변호사)
松原圖南	43	●	우편소장	韓萬熙	44	◎	회사 (中央釀造(株) 이사)
植田郡治	56	●	전문(민요작가)	韓相喆	43	◎	회사 (朝鮮火災海上保險(주))
野附勤一郎	58	●	광업	○ 정원: 69명/명단: 70명(중도 사퇴 1명 포함) ○ 중도 사퇴: 任興淳(선거부정, 1939.08) ○ 추가 당선: 梅林卯三郎(1939.08) ○ 임기 중 사망: 4명 曾我勉(1940.00) 韓萬熙(1941.04) 庄司秀雄(1942.02) 小坂貞雄(1942.07)			
伊藤東作	50	◎	상업 (名物出雲蕎麥屋 대표)				
伊藤奉圭	36	●	회사(共榮商事(株) 대표)				
庄司秀雄	53	◎	교육(퇴직 교사)				
中馬越之助	58	●	토지(東京建物(주) 임원)				
中尾豊	60	●	교육(퇴직 교사)				
中村郁一	60	◎	상업(신문판매업)				
曾我勉	76	▣	상업(토목건축)				

일본인(40명)				조선인(30명: 중도 사퇴 1명 포함)			
이름	연령	구분	직업	이름	연령	구분	직업
村岡太之助	46	●	토지 (朝鮮建物(주) 상무)				
播本恒太郎	64	●	회사 (동양옵셋인쇄(주) 사장)				

출처: 【부표 1, 2】 1939·1943년 경성부회 당선 의원 이력(일본인, 조선인).

비고: 1. '구분'의 ◎는 1935·1936년 이후 連任 의원을, ●는 1939년 初任 의원을, ▣는 1931년 이전 당선 경력 의원을 말함. 2. 조선인 의원의 창씨명은 별도의 표에 제시함.

1939년 당선 의원은 일본인 40명, 조선인 30명(중도 사퇴 임흥순 포함)으로, 이 가운데 4명의 의원이 임기 중 사망했다(曾我勉, 韓萬熙, 庄司秀雄, 小坂貞雄). 전체 70명의 의원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0대가 8명, 40대가 21명, 50대 28명, 60대가 11명, 70대가 2명으로 평균 연령은 50세였다.

직업별로는 ① 회사 관계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분야는 건설 자재 제조, 무역, 금융, 보험, 운수, 양조, 천연빙, 용달 등으로, 업종과 자금의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② 가구상, 기계상, 사료상 등의 상업 종사자가 1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중에는 거류민회 의장(曾我勉, 76세),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각종 상업조합장(關根金作, 62세)과 같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공직자로 재직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③ 변호사 역시 상업 종사자와 동수인 11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5명이 초선 의원이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전문성을 근거로 새롭게 공직에 진입하는 층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④ 9명의 의원이 부동산 임대 및 대가업, 대지주 등 토지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했다. 이외에 광업 경영자(5명), 교육 종사자(사립학교 설립자 및 퇴직 교사: 5명), 의료 종사자(의사, 약제사: 3명), 언론인(3명), 사법서사(2명), 우편소장 및 국장(2명), 작가(1명)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경력을 보면, 이들 중 이미 경성부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는 42명으로, 이들 중 40명이 1935·1936년의 제2회 선거에 이어 연

속 선발된 자였다. 전체를 비율로 환산하면 연임이 57%, 초임이 40%, 전임(제1회 선거 이전 당선자)이 2%로 연속 선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경성부회 이외의 공직 경력이 있는 자는 전·현직 정총대가 17명(일본인 10명: 不破三平, 木下榮, 中馬越之助, 杉市郎平, 中村郁一, 庄司秀雄, 森安敏暢, 小川勝苹, 栗本正隆, 石川倦造, 조선인 7명: 康容杓, 任興淳, 李信龜, 金奎應, 金敏植, 李源祥)이었고, 전·현직 도회 의원은 8명(일본인: 3명 中馬越之助, 廣綱德太郎, 內田鯤五郎), 조선인 5명(金敏植, 金應純, 曹秉相, 金泰濮, 金奎應(충북))이었다.[12] 특히, 1939년 선거에서 투표권 매수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임흥순이 1941년 성동 방면사업 후원회장, 1943년 유락정회 총대 등을 역임한 사례와 같이, 일부 의원의 경우 경성부회 차원과는 별개로 지역을 기반으로 공직에 재기(再起)할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3] 이외에도 9명의 의원이 전직 통감부·총독부 관리 및 헌병·경찰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일본인 5명: 철도국, 군부 고문관, 헌병, 경성 서무과장, 총독무 세무 관리, 조선인 4명: 철도국 기수, 용인 군수, 토지조사국 기수, 전 경찰).

12) 경성부회 의원과 정총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현주, 〈朝鮮末 日帝下 서울의 下部行政制度 연구 : 町洞制와 總代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도회 의원에 대해서는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 道評議會·道會議員을 중심으로≫, 선인, 2011에 자세하다.

13) 손정목은 1939년 임흥순의 부회의원직 상실을 "지방제도 민족차별정책의 한 標本例"로 보았지만, 이는 일면적 평가이다. 임흥순이 1931년과 1939년 두 차례에 걸쳐 부정 선거운동을 할 때 町會 등의 지역기반을 이용했고, 부회의원직 상실 이후에도 여전히 정총대 등으로 재기했음을 돌아볼 때 이는 '민족' 문제이기보다는 '金權·情實' 등의 선거 관행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임흥순의 1939년 이후 이력은 〈"如何히 하면 더 잘 發展 될까"-文化施設을 擴充하고 交通網을 整備하라 ②-東部京城 發展企圖座談會〉 ≪매일신보≫ 1941년 11월 27일 ; 〈鎰器를 獻納〉 ≪매일신보≫ 1943년 4월 1일 참고.

3) 1943년 당선자의 구성

<표 6> 1943년 경성부회 당선 의원 명단

일본인(32명)				조선인(25명: 사퇴 1명 포함)			
이름	연령	구분	직업	이름	연령	구분	직업
加納一米	54	◎	전문(언론인)	姜昌熙	50	◎	회사(朝鮮運輸(주) 임원)
加藤好晴	72	◎	토지(대가업)	金敏植	40	◎	교육(進興學校, 永彰學校)
高井建次	61	●	상업(마루비시상회)	金泰濮	60	◎	회사(京忠버스(株) 이사)
高澤藤子	58	●	회사(鷺梁津柳行李製造所 社長)	金興培	29	●	회사(野田被服 사장)
廣綱德太郎	65	◎	회사(內鮮石油(株) 이사)	梁在昶	59	◎	토지 (鮮滿土地鑛山(株)사장)
近藤秋次郎	51	▣	회사(朝鮮蠶糸株式會社)	朴勝城	46	◎	전문(사법서사)
南條晟	54	◎	전문(변호사)	朴寧根	51	●	광업
內田鯤五郎	56	◎	광업	朴永敏	29	●	토지(지주)
藤崎謙治	50	●	상업(요리업)	朴疇明	45	◎	상업(不老商會)
鈴木文助	61	◎	회사(京城煉瓦 社長)	朴昌薰	47	●	전문(의사)
柳樂達見	55	●	전문(齒專교장)	安錠遠	52	●	회사(朝鮮興産貿易(株))
栗本正隆	61	◎	상업(機工商)	芮興洙	51	◎	회사(三興商會(주) 대표)
梅林卯三郎	61	◎	전문(변호사)	尹琦爀	32	●	회사 (朝鮮厚織工業(株) 이사)
山口友造	61	●	전문(의사)	李庚鳳	42	◎	전문(약제사)
山崎廣龜	56	●	전문(약제사)	李斗用	54	◎	회사 (中央商工(주) 支配人)
山中大吉	47	◎	전문(변호사)	李敏求	39	●	회사(朝鮮工營(株) 대표)
森安敏暢	54	◎	전문(변호사)	李定宰	46	●	회사(永保合名會社 임원)
上杉直三郎	58	◎	회사(鮮光印刷(주) 감사)	李昌業	50	◎	회사 (淸凉町荷主運輸組 대표)

일본인(32명)				조선인(25명: 사퇴 1명 포함)			
이름	연령	구분	직업	이름	연령	구분	직업
石橋良祐	56	●	상업(영화관)	李弘鍾	53	◎	전문(변호사)
石森久彌	53	▣	전문(언론인)	全富一	45	●	토지(一富농장대표)
石原憲一	54	◎	토지(지주)	鄭商熙	37	●	전문(조선체육협회)
石川倦造	54	◎	회사(裕豊商會(合資)대표)	曹秉相	53	◎	회사(京仁企業(株) 대표)
小川勝平	68	◎	전문(변호사)	車相鎬	50	◎	우편국장
阿部喜之助	60	●	회사(朝鮮내셔널電球(株))	崔白洵	47	◎	전문(변호사)
野附勤一郎	60	◎	광업	洪必求	52	▣	토지 (대지주,合成(주) 대표)
伊達四雄	58	●	조합대표 (조선토목건축업협회장)	○ 정원: 56명/명단: 57명(자진 사퇴 1명 포함) ○ 사퇴: 金敏植(비추천 당선, 1943.05.24)			
伊藤奉圭	40	◎	회사(共榮商事(株) 대표)	○ 정원: 56명/명단: 57명(자진 사퇴 1명 포함) ○ 사퇴: 金敏植(비추천 당선, 1943.05.24)			
伊藤壽一	49	●	회사 (朝鮮計量器製作會社 사장)				
井原荒太郎	55	●	상업(직물상)				
中村郁一	64	◎	상업(신문업)				
太宰明	57	●	전문(변호사)				
戶谷正路	57	▣	토지(耕業社(株)대표)				

출처: 【부표 1, 2】 1939·1943년 경성부회 당선 의원 이력(일본인, 조선인).

비고: 1. '구분'의 ◎는 1939년 이후 連任 의원을, ●는 1943년 初任 의원을, ▣는 1936년 이전 당선 경력 의원을 말함. 2. 조선인 의원의 창씨명은 별도의 표에 제시함.

1943년 당선 의원은 일본인 32명, 조선인 25명(비추천 당선 사퇴 金敏植 포함)으로 전체 57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2명, 30대 3명, 40대 10명, 50대 29명, 60대 11명, 70대 1명으로 평균 연령은 52세였다. 1939년 당선 의원에 비해 최저 연령은 20대로 더 낮아졌지만, 20~40대(장년층)의 비율은 29명에서 15명으로 감소했다. 1943년 선거에서 의원 정원을 감축하며 50~70대의 인원은 유지

하고 20~40대의 인원만을 축소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① 회사 관계자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업종은 군수공업품 제조(피복·계량기·전구·모직) 및 건설자재, 무역, 용달, 버스 등이었다. 1939년에 비해 군수공업 종사자인 조선인 초임 의원이 다수 선발된 점(金興培, 尹琠爀, 李定宰)은 특징적이다. ② 변호사는 8명으로 1939년에 비해 3명이 줄었다. 감소한 인원은 모두 1939년 당시 조선인 초임 의원(蘇完圭, 楊潤植, 李在元)으로, 1943년 추천에 제외되어 연임에 실패했다. 이어서 ③ 상업 종사자와 토지 관련업자가 각각 7명으로 1939년에 비해 상업 4명, 토지 관련업 2명이 감소했다. 이외에 광업 3명, 의사 2명, 약제사 2명, 언론인 2명, 교육 관계자 1명, 체육 관계자 1명, 우편국장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력을 살펴보면, 전체 57명 중 경성부회 의원 연임자는 30명(전체의 52%), 초임자는 25명(43%), 제2회 선거 이전 당선 경력이 있는 전임자는 4명(7%)으로, 1939년에 비해 연임자가 다소 줄고, 초임자 및 전임자가 소폭 늘어났다. 연임자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1943년 10월 현재 경성부회 의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인물이 11명(전체의 19%)을 차지해 부회 내에서 중진층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4] 경성부회 이외의 공직 경력이 있는 자는 전·현직 정총대 12명(일본인 10명: 戶谷正路, 栗本正隆, 中村郁一, 森安敏暢, 小川勝苹, 廣綱德太郎, 高澤藤子, 石川倦造, 近藤秋次郎, 石森久彌, 조선인 2명: 李斗用, 姜昌熙), 전·현직 도회 의원 5명(廣綱德太郎, 內田鯤五郎, 洪必求, 曹秉相, 金泰濮)이 있었다. 이외에도 전 경성부윤이었던 다테 시오(伊達四雄)(1943년 선거 추천위원)와 전 본정(本町)경찰서장 도타니 마사미치(戶谷正路)가 초임 의원으로 당선되어 전직 관리·경찰의 참여가 늘어났다. 즉, 1943년 당선 의원의 경우 전시경제 및 식

14) 1943년 10월 경성부제 실시 30주년을 기념해 아래의 11명이 근속 기념 표창을 받았다. 일본인 森安敏暢(15년 4월), 中村郁一(14년), 石原憲一(12년 4월), 加納一米(12년 4월), 山中大吉(12년 4월), 小川勝平(10년 4월), 조선인 曹秉相(17년), 梁在昶(15년 4월), 朴疇明(12년 4월), 李弘鍾(12년 4월), 洪必求(10년 4월)(〈勤續者に輝く榮光〉 ≪경성휘보≫ 263, 1943.10, 50쪽).

민지 통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인물들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다수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체제기 경성부회의 회의 추이와 주요 안건

1) 회의 구성 및 진행 과정

> (상략) 부회의원이라고 해도 그중에는 이런저런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府會 기사를 읽으면 뭐랄까 불쾌한 기분이 든다. 때로는 정말 유치원생을 보는 것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다. (중략) 신문기사를 매일 단념한 채 훑어보면, 부회의원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되는 걸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건 왜 일까. 우리가 매일 통절하게 느끼고 있는 건 경제문제이고, 생활문제이다. 그런데 부회의원은 그런 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주택문제마저, 물가문제마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들게 하지 않는 걸까. 그저 府가 하는 일을 뒤에서 쫓으며, 통일된 질문을 하면 충분한 걸까. 그렇다면 부회의원은 町內의 한가한 사람들을 모아 두면 그걸로 그만일 것이다. (하략)[15]

1939년 6월 어느 논객은 '경성부회 의원에 대한 감상'을 위와 같이 술회했다. 여기에 따르면 경성부회 의원은 "'파리잡자' '빈대잡자'는 하찮은 문제"에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부민(府民)이 매일 고민하는 경제와 생활, 주택,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부(府) 행정 당국의 입장을 추수하는 집단으로 비춰졌다. 부회의원의 부정(府政) 활동이 세간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1939년 5월 이후 경성부회의원의 부정

15) 南山生, 〈京城府會議員への感想〉 ≪朝鮮公論≫ 315, 1939.06, 62~65쪽.

활동을 분석하여 이러한 세평의 맥락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개최 상황

1939~1945년의 ≪경성휘보≫와 ≪매일신보≫ 기사를 토대로 부회의원이 공식 소집된 (정기·임시)부회, 간담회, 기념식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

<표 7> 1939~1945년 경성부회 개최 일정

연도	일자	일수	구분	내용
1939년※ (총 11일)	05.31	1	간담	총독 훈시 전달
	06.03~06.05	3	선출	임원 선출, 총독부 자문 답신(시가지계획) 의결
	06.30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07.19	1	간담	日 · 英회담

16) 본문의 〈표 7〉 '비고'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는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간담회와 일반경제(정기·임시)부회 일정만을 정리했고, 이외의 일반경제부회 상임위원회 및 제1·제2 교육부회(상임위원회 포함) 일정은 다루지 않았다. 1939~1945년 경성부회의 일반경제부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총 18명, 제1·제2 교육부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각각 8~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정기·임시부회 외에도 별도의 간담회와 상임위를 개최했다. 이들 상임위원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939~1945년 경성부회 임원 구성

선출 시기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副議長	杉市郎平				伊達四雄	
일반 상임위원장	曾我勉	濱田虎熊	小川勝平	미상	石原憲一	梅林卯三郎
제1 상임위원장	加納一米	南條晟	山中大吉	加納一米	中村郁一	太宰明
제2 상임위원장	梁在昶	芮興洙	姜昌熙	梁在昶	李弘鍾	朴昌薰

출처: <記事: 京城府會> ≪경성휘보≫ 2102, 1939.07, 17~21쪽 ; <府常任委員 十八名 改選> ≪매일신보≫ 1941년 6월 7일 ; 京城府, ≪昭和十六年京城府通常府會及各教育部會會議錄≫, 1941 ; 京城府, ≪昭和十七年京城府通常府會及各教育部會會議錄≫, 1942 ; <人事> ≪매일신보≫ 1943년 6월 11일 ; <府會三委員長決定> ≪매일신보≫ 1944년 9월 8일.

비고: 일반은 일반부회를, 제1은 제1교육부회를, 제2는 제2교육부회를 의미함.

연도	일자	일수	구분	내용
1939년※ (총 11일)	08.22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09.23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10.16	1	임시	총독부 자문 답신(시가지계획) 의결
	10.25	1	간담	경성부 전차버스대책위원회
	11.30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1940년 (총 19일)	03.05	1	간담	
	03.12~03.30	15	정기	일반경제 예산 의결
	06.03	1	임시	사무검열 보고
	10.23	1	임시	
	12.12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1941년 (총 17일)	01.17	1	간담	부회 신체제 논의
	03.11	1	간담	부회 신체제 논의
	03.15~03.24	7	정기	일반경제 예산 의결
	05.15	1	임시	일반경제 결산 보고
	06.03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06.07	1	기념식	부회개설 10주년 기념식
	08.11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09.05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11.17	1	간담	조난자 위문방법 협의
	12.08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12.26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1942년 (총 20일)	02.16	1	임시	싱가폴 함락 축전
	03.12	1	임시	버마 수도 함락 축전
	03.18~03.25	6	정기	일반경제 예산 의결
	05.16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연도	일자	일수	구분	내용
1942년 (총 20일)	05.18	1	임시	징병제 실시 감사 전보 협의
	05.21	1	임시	징병제 실시 감사 전보 발송
	06.03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07.06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08.03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09.04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09.09	1	기념식	경성부제 30주년 기념 근속의원 표창
	11.09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11.12	1	임시	야채 배급통제 대책
	12.08	1	임시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 감사 전보
	12.14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1943년 (총 14일)	03.05~03.12	6	정기	일반경제 예산 의결
	03.29	1	간담	
	04.19	1	임시	교통세 조례안 심의
	04.21	1	임시	교통세 조례안 심의
	06.07~06.08	2	임원	임원 선출
	08.30	1	임시	경성 각 경방단 정원 변경
1943년 (총 14일)	10.12	1	임시	일반경제 예산 추가 심의
	11.19	1	임시	
1944년 (총 9일)	03.22~03.26	5	정기	일반경제 예산 의결
	08.14	1	간담	府政 기구 개혁
	09.30	1	임시	연료대책위원회 보고
	10.16	1	임시	일본군 승전 축전
	12.09	1	임시	松井 伍長 弔慰 전보

연도	일자	일수	구분	내용
1945년 (총 6일)	03.23~03.28	6	정기	일반경제 예산 의결

출처: <府政日程> ≪경성휘보≫, 각 년 판 ; ≪매일신보≫ 참조.

비고: '※'는 5월 31일~12월 31일을 대상. 일반경제부회의 상임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연료대책·전차버스위원회, 등) 일정, 제1부·제2부 교육부회 일정은 생략했음.

위의 〈표 7〉에 따르면, 1939년 개선(改選) 이후 5월 31일 첫 부회가 개최된 이래 경성부회 의원은 총 96일간 소집되었다. 1939년부터 1942년까지는 연간 20일 내외였지만 1943년부터는 계속 줄어들었다. 특히 정기 예산부회 일정은 1940년까지는 15일간 진행되었으나, 1941년부터는 7일 내외로 축소되었다. 부회의 개최 목적 역시 1941년까지는 일반경제 예산안 추가 심의를 주를 이루었던 반면, 1942년부터는 부 예산 운영과는 무관한 '전승(戰勝) 축전(祝電)', '감사 전보', '조위(弔慰) 전보' 발송을 위한 소집이 늘어났다. 개최 일정만을 중심으로 보면 1941년 전후로 의정 기구인 부회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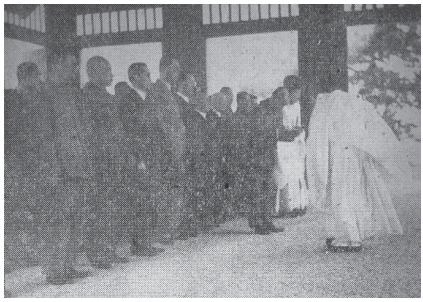
17) 부회의원의 '內地 시찰' 역시 1943년 이후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940~1942년도 內地 시찰 일정

기간	지역	참가자
1940.06.08.~06.20.	北海道	[日] 木下榮, 臺岐幸義, 南條晟, 上原誠治[朝] 金敏植, 金奎應
1940.oo.	九州, 近畿	[日] 石原憲一, 關根金作
1940.09.26.~10.05.	大阪, 京都, 名古屋, 東京(도시문제회의)	[日] 伊藤奉圭, 賓諸彌七, 小川勝平, 加藤好晴, 加納一米, 杉市郎平[朝] 梁在昶, 成元慶, 李信龜, 李源祥
1941.06.14.~07.13.	新潟, 函館, 旭川, 札幌, 小樽, 仙臺, 東京	[朝] 韓相喆, 崔白洵, 姜永皓, 曹秉相, 朴勝城
1941.06.25.~07.11.	大阪, 京都, 舞鶴, 敦賀, 新潟, 秋田, 青森, 函館, 小樽, 旭川, 札幌, 仙臺, 東京	[日] 伊藤東作, 山中大吉, 鈴木文助[朝] 朴元信, 金泰漢, 金應純, 楊潤植
1942.10.20.~oo.oo.	미상	[日] 中村郁一, 大梅健治, 間島梅吉, 石川倦造, 上杉直三郎, 植田群治

출처: <京城府會彙報> ≪경성휘보≫ 223, 1940.06, 40~43쪽 ; 木下榮, <北海道樺太方面視察記> ≪경성휘보≫ 228, 1940.11, 30~40쪽 ; 石原憲一, <大京城交通統制問題> ≪경성휘보≫ 228, 1940.11, 27~29쪽 ; <京城府會議員內地先進都市視察報告> ≪경성휘보≫ 234, 1941.05, 26~41쪽; <京城府會議員內地都市視察報告(第一班)> ≪경성휘보≫ 242, 1942.01, 16~44쪽; <內地都市行政視察報告書(第二班)> ≪경성휘보≫ 252, 1942.02, 12~34쪽; <府會議員府施設視察> ≪경성휘보≫ 243, 1942.11, 25쪽.

비고: 출발-도착 일정이 불명확한 경우 oo으로 표기.



<그림 1> 신사참배 장면

출처: ≪경성휘보≫, 1941.12.



<그림 2> 회의 장면

출처: ≪경성휘보≫, 1943.1.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인용문에서 말한 "부(府)가 하는 일을 뒤에서 쫓아가는 부회"라는 '관치 주도성' 혹은 '수동성'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요 의제' 항목에서 재론할 것이기에, '부결 여부'와 '의원의 발언 빈도' 등의 양적 요소들을 우선 살펴보겠다.

먼저 의안의 처리 흐름을 살펴보면, 1941년 경성부회 일반경제 예산부회에는 경성부 행정청이 작성한 62개의 안건이 제출되었다.[18] 총 7일의 회의기간 동안 각 안건은 제1일 3개 의안(상임위원장 사무보고, 전년도 세입출 예산, 당년도 세입출 예산), 제2~3일 제1일과 동일, 제4~6일 1개 의안(당년도 세입출 예산), 제7일 62개 의안 전체 일괄 상정, 원안이 가결·통과되는 순으로 처리되었다. 1941년 이외에도 경성부회는 회의 최종일에 의안을 일괄 상정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안건만을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가결·통과시켰다. 요컨대 1939~1945년까지 경성부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부결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19] 의원의 발언 참여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41년과 1942년의 일반경제 예산부회 기간(1941년 7일간, 1942년 6일간) 동안 의원별 발언 횟수를 조

18) 京城府, ≪昭和十六年京城府通常府會及各教育部會會議錄≫, 1941.

19) 〈土木事業만 置重하고 社會的 施設은 零星 尨大한 豫算의 缺陷을 指摘〉 ≪매일신보≫ 1940년 3월 31일; 〈記事: 京城府通常府會〉 ≪경성휘보≫ 221, 1940.04, 17~21쪽 ; 〈夜半까지 眞摯審議-二千八百萬圓豫算成立-京城府豫算府會作日로 閉幕〉 ≪매일신보≫ 1942년 3월 26일 ; 〈交通稅는 六月부터 廿一日 京城府會에서 審議〉 ≪매일신보≫ 1943년 4월 20일.

사해 보면 단 한 차례도 발언을 하지 않은 인원이 전체 인원의 30~36%(21~25명/69명)의 비율을 차지했다(【부표 3, 4】 1941·1942년 경성부회 일반경제 예산 부회 의원별 발언 횟수 참고). 이처럼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보면, 전시체제기의 부회 운영은 이전과 다름없이 수동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 의제

1943년 개선 이후 경성부회 석상의 논의는 '전시(戰時)'라는 특성상 분석 자료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주로 1939~1943년까지를 대상으로 통상부회를 중심으로 그 안건을 시기별로 소개하고 주요 의제를 살펴보겠다.[20]

1939년 당선 의원이 참여한 최초의 부회는 같은 해 6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선거 직후에 열린 부회는 주로 부회의 의장과 상임위원 등을 선거하는 목적이었는데, 해당 의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경성부시가지계획 총독부 자문안〉의 검토가 병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총독부 자문안의 지역 지정 문제와 시가지계획의 가로(街路) 설정 중 일부 변경안, 토지구획정리 지구의 추가, 풍치지구 결정, 공원 지역 결정문제가 논의되었다.[21] 주요 논의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소유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하루 빨리 보상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

---

20) 전시체제기 경성부의 정책과 이에 대한 경성부회의 논의에 대해서는 각 주제별로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① 예산: 이명학, 〈아시아-태평양전쟁기(1940~1945) 京城府 재정의 전쟁 지원과 자금 총동원〉,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1. ② 토목: 염복규,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③ 배급·유통: 이보성, 〈1930년대 경성부 도매시장정책 변화와 鮮魚 유통구조 개편〉,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6 ; 최병택, 〈전시체제 하 일제의 물자수급 및 통제정책 : 경성의 薪炭수급 통제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53, 2004 ; 허영란,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통제 연구〉 ≪국사관논총≫ 88, 2000. ④ 보건·위생: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 결핵 유행과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⑤ 행정: 김영미, ≪동원과 저항 : 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푸른역사, 2009 ; 서현주, 〈朝鮮末 日帝下 서울의 下部行政制度 연구 : 町洞制와 總代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서현주, 〈일제하 경성부 행정조직과 운영의 식민지성〉 ≪향토서울≫ 86, 2014 ; 염복규, 〈식민지 '수도'의 위상을 둘러싼 동상이몽의 연대기〉 ≪서울학연구≫ 66, 2017. ⑥ 방공: 김인호, 〈1945년 경성부 지역 疎開政策 연구〉 ≪鄕土서울≫ 59, 1999. ⑦ 교통: 최인영, 〈서울지역 電車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14.

21) 〈四案件上程 京城府會第二日〉 ≪매일신보≫ 1939년 6월 5일.

견을 비롯해(한상철), '남산터널은 조선신궁의 신역(神域)을 범하는 것이니 터널을 우회하는 경로로 변경해야 한다'(강창희)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토의 결과 총독부의 답신안은 원안 그래도 가결되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중대 문제를 2~3일 전에 새로 당선된 의원에게 연구할 겨를도 주지 않고 의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으며,[22] 원안 가결일인 6월 5일 출석의원은 49명에 그쳤다.[23]

<표 8> 1940년 통상부회 안건(1940년 3월 12일~30일)

1. 1940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2. 1940년도 경성부 부민병원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3. 1940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4. 1940년도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5. 1940년도 경성부 제2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6. 1940년도 경성부 번대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7. 1940년도 경성부 한남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8. 1940년도 경성부 사근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9. 1940년도 경성부 용두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0. 경성부 제3기 수도확장 제3차 공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설정의 건
11. 1940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 예산 추가 경정의 건
12. 1940년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 경정의 건
13. 경성부 중앙 도매[卸賣]시장 신설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14. 경성부 제2기 수도확장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방법 변경의 건
15.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16. 경성부 한남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연기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17. 경성부 부가세 조례 중 개정의 건
18. 경성부 특별영업세 잡종세 조례 중 개정의 건

22) 〈"都計"를 年年變更함은 府民에 影響이 不少〉 ≪매일신보≫ 1939년 6월 6일 ; 〈府內의 風致地區는 空襲避難에 置重〉 ≪매일신보≫ 1939년 6월 6일.

23) 〈居住·商·工地域制로 動搖되는 北村一帶 昨日府會에서 總督府諮問案可決로 不速實施 猶豫期間은 實施後十五年〉 ≪매일신보≫ 1939년 6월 6일 ; 〈地域指定·路線變更等 四種諮問案을 可決〉 ≪매일신보≫ 1939년 6월 6일.

19. 경성부 특별세 하수도 토지 평수할 조례 설정의 건
20. 경성부 시가지 계획 사업수익자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21.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22. 경성부 묘지 및 葬齋場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23. 경성부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24. 경성부 중앙 도매[卸賣]시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25. 경성부 가축시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26. 경성부 부민회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27. 경성부 부립부민병원 사용료,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28. 경성부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29. 경성부 오물수거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30. 경성부 吏員 조례 중 개정의 건
31. 경성부 助興稅 조례 폐지의 건
32. 경성부 수산시장 조례 폐지의 건
33. 경성부 順化院 건축자금 적립금 조례 폐지의 건
34. 기채의 건(제3기 수도확장 제3차 공사비 충당)
35. 기채의 건(水道防空시설비 충당)
36. 기채의 건(방공호 시설비 충당)
37. 기채의 건(중앙도매[卸賣]시장 한강분장 신설비 충당)
38. 기채의 건(중앙신탄시장 부지 구입비 충당)
39. 기채의 건(묘지확장비 충당)
40. 기채의 건(청소시설비 충당)
41. 기채의 건(보건광장 및 도로 축조비 충당)
42. 기채의 건(공익질옥 신설비 및 대부자금 충당)
43. 기채의 건(남산 주회도로 개수, 기타 사업비 기채 정리금 충당)
44. 경성부 중앙도매[卸賣]시장 한강분장 설치의 건)
45. 부가세 과율 결정의 건
46. 시가지계획 특별세 세율 결정의 건
47. 중앙도매[卸賣]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48. 중앙도매[卸賣]시장 특수설비 사용료 결정의 건
49. 공설일용품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50. 가축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51. 廢道 부지 매각 처분의 건

52. 至難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의 건
53. 1938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출 결산 보고의 건
54. 1940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 예산 추가의 건
55. 기채의 건(경성부 公金 新營費 충당)
56. 경성부 주택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정의 건
57. 경성부 주택조성사업비 계속비의 年期 및 지출 방법 설정의 건
58. 1940년도 경성부 주택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59. 기채의 건(경성 주택지 조성사업비 충당)
60. 경성부 청량리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설정의 건
61. 경성부 청량리토지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설정의 건
62. 경성부 청량리토지구획 정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설정의 건
63. 1940년도 경성부 청량리토지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64. 경성부 신당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설정의 건
65. 경성부 신당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설정의 건
66. 경성부 신당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설정의 건
67. 1940년도 경성부 신당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68. 경성부 공덕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설정의 건
69. 경성부 공덕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설정의 건
70. 경성부 공덕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방법 설정의 건
71. 1940년도 경성부 공덕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출처: <記事: 京城府通常府會> ≪경성휘보≫ 221, 1940.04, 17~21쪽.

1940년 정기예산을 심의하는 통상부회는 1940년 3월 12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개최되었다. 주택조성비를 포함한 3,000여만 원의 거액의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임이 강조되어,[24] 전시체제하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부(府) 당국과 세금 부담을 축소하려는 부회의원의 논쟁이 진행되었다. 1939년의 예산 기채 인가가 연말에야 이루어진 점을 두고 "부 당국의 늑장집행"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이홍종), 예산 확보보다 당장 전시하 부민(府民) 식량 확보 대책을 세

24) 〈尨大豫算 俎上에 京城府會 今日 開幕 明年度 豫算 編成에 高橋府尹 談〉 ≪매일신보≫ 1940년 3월 12일.

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강창희, 이홍종).[25] 특히, 조병상은 "1939년 예산의 집행 실적을 볼 때 1940년 예산을 예산 금액 전부를 소화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물자를 예산대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각 공사에 노무자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업세를 증징(增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두 차례나 피력하며 부의 예산안 편성을 비판했다.[26] 이외에 각종 토목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등귀로 인한 불안 문제, 사회사업 관련 사업비 증액 필요성, 전차 및 버스 부영화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27] 3월 30일 의회 최종일에 예산안은 모두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다.[28]

1940년 통상부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외에도 '산업부 설치에 관한 건'과 '한강 연안 지역의 제방 축조에 관한 건'의 2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가결되었다. 먼저, '산업부 설치에 관한 건'은 예흥수 외 45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성부가 소비도시라는 수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생산도시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무역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경성부의 산업관계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지로 했다. 다음으로 '한강 연안 지역의 제방 축조에 관한 건'은 강용균 외 51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성부 서부 방면의 신정정, 당인정 및 남부 방면의 동작정, 노량진정간, 응봉정,

---

25) 〈水源地外國人移住 觀光事業에 等閑한 것은 大都市體面問題-勞働者宿泊所를 完備하라-京城府會(第二日)〉 ≪매일신보≫ 1940년 3월 15일 ; 〈土木事業으로 昻騰한 地價의 抑壓이 急務 京城府會 第三日 劈頭의 論戰〉 ≪매일신보≫ 1940년 3월 16일.

26) 〈新編入地 交通施設과 町會의 改革이 急務 京城府會의 論戰 本格化(第八日)〉 ≪매일신보≫ 1940년 3월 21일 ; 〈撤毁家屋增加는 住宅問題에 影響至大 雜問一貫의 京城府會 第十二日〉 ≪매일신보≫ 1940년 3월 24일.

27)〈電車府營을 主張 都市計劃에 따르는 交通網의 整備가 急務 學務課를 部로 昇格시키라 京城府會 第四日〉 ≪매일신보≫ 1940년 3월 17일 ; 〈府宮住宅建築具體化 - 卓上計劃에서 實踐에! 年內五百戶 新築 明年에는 一千五百戶 建築할 計劃 府會席上 工營部長 確答〉 ≪매일신보≫ 1940년 3월 17일 ; 〈彰義門 幹線道路 住民負擔 坪當50錢이면 實施 金府議員 質問에 工營部長 明答〉 ≪매일신보≫ 1940년 3월 23일 ; 〈納稅奬勵費가 많다 汚物淸掃陣 强化하라 京城府會十四日〉 ≪매일신보≫ 1940년 3월 27일 ; 〈府民病院機構擴充 公營結婚紹介所를 設置할 必要는 없는가 糞尿掃除의 怠慢原因은 무엇〉 ≪매일신보≫ 1940년 3월 28일 ; 〈土木事業만 置重하고 社會的 施設은 零星 尨大한 豫算의 缺陷을 指摘〉 ≪매일신보≫ 1940년 3월 31일.

28) 〈三千萬圓 豫算可決 京城府會 終了〉 ≪매일신보≫ 1940년 3월 31일.

서빙고정, 신길정, 금호정 등에 제방 시설을 축조해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경제 및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29] 또한 이외에도 의원 개인의 의견서가 ≪경성휘보≫ 기사로 게재되기도 했다.[30] 이를 통해 신편입 지역에 대한 위생, 사회사업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차상호), 교통기관의 통제를 도모하라(이두용)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표 9> 1941년 통상부회 안건(1941년 3월 15일~24일)

(1, 2번 의안 누락)
3. 1941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4. 1941년도 경성부 부민병원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5. 1941년도 경성부립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6. 1941년도 경성부 택지조성비 사업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7. 1941년도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8. 1941년도 경성부 제2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9. 1941년도 경성부 번대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0. 1941년도 경성부 한남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1. 1941년도 경성부 사근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2. 1941년도 경성부 용두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3. 1941년도 경성부 청량리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4. 1941년도 경성부 신당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5. 1941년도 경성부 공덕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6. 경성부 호국신사 참궁도로 공사비 계속비 연기(年期) 및 지출 방법 설정의 건
17. 경성부 영등포 배수공사비 계속비 연기(年期) 및 지출 방법 설정의 건
18. 경성부 제2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연기(年期)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19. 경성부 번대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연기(年期)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20. 1940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 예산 추가 경정의 건
21. 경성부 중앙도매시장 선어부 운용자금 설치 및 관리조례 설정의 건
22. 경성부 공익질옥 대부자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설정의 건

29) 〈記事: 京城府通常府會〉 ≪경성휘보≫ 221, 1940.4, 17~21쪽.
30) 〈府政人の意見を聽く〉 ≪경성휘보≫ 222, 1940.5, 12~16쪽.

23. 경성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매매위탁수수료 조례 설정의 건
24. 경성부 부가세 조례 개정의 건
25. 경성부 특별 운영세 잡종세 조례 개정의 건
26. 공원 사용조례 개정의 건
27. 경성부 묘지 및 장제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28. 경성부 위생시험수수료 조례 개정의 건
29. 경성부 소독 및 환자수송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30. 경성부 오물수거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31. 경성부 납세 장려 조례 개정의 건
32. 경성부 수입증세 조례 중 개정의 건
33. 경성부 공익질옥 조례 중 개정의 건
34. 경성부 제2토지구획정리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35. 기채의 건(수도방공시설비 충당)
36. 기채의 건(방공방호시설비 충당)
37. 기채의 건(청소시설비 충당)
38. 기채의 건(공영신영비 충당)
39. 기채의 건(시장시설비 충당)
40. 기채의 건(묘지개장비 및 장제장 신설비 충당)
41. 기채의 건(경성호국신사 참궁도로 공사비 충당)
42. 기채의 건(영등포 배수공사비 충당)
43. 기채의 건(남대문광장 및 지하도 축조비 충당)
44. 호별세 부가세 부과액 결정의 건
45. 부가세 과율 결정의 건
46. 시가지계획 특별세 세율 결정의 건
47. 중앙도매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48. 중앙도매시장 특수설비 사용료 결정의 건
49. 공설일용품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50. 가축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51. 부민병원 사용료 및 수수료 결정의 건
52. 경성부립 부민병원 기금 처분의 건
53. 예산외 의무부담의 건(경성부립 부민병원 기금 반송[積戾])
54. 예산 외 의무부담의 건(경기도비 소방비 기부)
55. 토지매각 처분의 건(금호정 소재 임야)

56. 토지매각 처분의 건(번대방정 소재 묘지)
57. 토지매각 처분의 건(동교정 소재 대지, 창천정 소재 묘지)
58. 토지무상양도의 건(시흥군 동면 구로리 소재 임야)
59. 토지를 제2부 특별경제에 有償 전용[組替]의 건
60. 前 경성부 광화문공립청년훈련소 설비품 무상 양도의 건
61. 토지평수할 부과지역 결정의 건
62. 통인정 공설시장 설치의 건
63. 신당정 공설시장 설치의 건
64. 1939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출 결산 보고의 건

출처: 京城府, ≪昭和十六年京城府通常府會及各敎育部會會議錄≫, 1941.
비고: 의안의 항목별 번호는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름.

1941년 통상부회는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다. 1940년 당시 개최기간이 15일이었던 것에 반해 그 일정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의 개최 이전에는 부의장의 긴급 발의로 '황군용사에 대해 감사전문을 발송'했으며, '신도(神道) 실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31] 개회 첫날은 하마다(濱田虎雄) 상임위원장이 부(府) 사무 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경성부 사무 처리의 비능률'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의했다. 특히 부 직원 전체 인원 중 23%인 434명이 결원인 점, 부청 내 중견 사무원에 대한 대우 대책이 부족하고, 하급 사무원의 봉급과 승급이 매우 낮고 더디다는 점을 들어 그 개선을 요구했다.[32] 이튿날부터는 1941년 예산안 협의를 시작해, 1940년과 마찬가지로 부민에 대한 증세가 과중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또한 정회(町會)의 운영 문제, 결핵 예방 대책, 식량의 공동배급소 설치 문제, 암거래 방지 대책, 생필품 수급 대책, 오물처리문제, 부 직원의 부패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33]

31) 〈京城府會의 初日 府尹演述, 檢査報告〉 ≪매일신보≫ 1941년 3월 16일.
32) 〈人的機構의 缺陷으로 府行政에 重大危機〉 ≪매일신보≫ 1941년 3월 16일.
33) 〈傳染病對策 追窮 尨大한 本豫算을 上程檢討 京城府會 第三日〉 ≪매일신보≫ 1941년 3월 19일 ; 〈食糧問題를 中心 論戰 더욱 白熱 京城府會 第五日 南總督, 上瀧內務局長도 臨席〉 ≪매일신보≫ 1941년 3월 21일 ; 〈町會費 問題 追及〉 ≪매일신보≫ 1941년 3월 22일.

3월 24일 부회 마지막 날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다.[34]

<표 10> 1942년 통상부회 안건(1942년 3월 18일~25일)

1. 1942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부민병원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제2토지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번대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한남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사근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용두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청량리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신당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공덕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경성부 종합방공시설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설정의 건
1. 경성부 제3기 수도확장 제3차 공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1. 경성부 사근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1. 경성부 용두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이출 예산 추가 경정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 추가의 건
1. 경성부 弓道場조례 설정의 건
1. 경성부 府稅 제한외 부과조례 설정의 건
1. 경성부 吏員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吏員봉급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旅費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吏員宿舍料 지급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34) 〈二千四百萬圓 大豫算 無修正 通過를 可決 翼贊 京城府會 昨日로 閉幕〉 ≪매일신보≫ 1941년 3월 25일.

1. 경성부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의 건
1. 중일전쟁[支那事變]으로 인해 종군한 군인 및 군속에 대한 府稅 감면 납세 연기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소독 및 환자 수송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위생시험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묘지 및 葬齋場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부민관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인보관 진료부 사용조례 개정의 건
1. 경성부 노동숙박소 사용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훈련원 會場 사용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운동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중앙도매시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매매 위탁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오물수거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번대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사근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용두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청량리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신당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공덕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기채의 건(종합방공시설비 충당)
1. 기채의 건(청소시설비 충당)
1. 기채의 건(청소자동차 구입비 충당)
1. 기채의 건(긴급대책비 충당)
1. 기채의 건(방공방호시설비 충당)
1. 기채의 건(청사신영비 충당)
1. 기채의 건(區役所청사 및 직원 宿舍 신영비 충당)
1. 기채의 건(공익질옥 신설비 및 대부자금 충당)
1. 경성부 제3기 수도확장 제3차 공사비채 기채요항 변경의 건
1. 호별세 부가세 부과액 결정의 건
1. 부가세 과율 결정의 건

1. 중앙도매시장 특수설비 사용료 결정의 건
1. 공설일용품 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1. 가축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1. 부민병원 사용료 및 수수료 결정의 건
1. 인보관 사용료 및 수수료 결정의 건
1. 중앙도매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1. 시가지계획 특별세 세율 결정의 건
1. 예산 외 의무부담의 건(경기도비 소방비 기부)
1. 토지 평수할 부과지역 결정의 건
1. 토지매각 처분의 건(青葉町 소재)
1. 1940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출 결산 보고의 건

출처: <京城府通常府會開催> ≪경성휘보≫, 245 1942.04, 10~14쪽.

1942년 통상부회는 1942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1941년과 마찬가지로 회의 시작 이전에 육해군에 감사 전보를 발송하고, 부회의원을 대표해 부의장이 조선신궁과 경성신사를 참배했다.[35] 개회 첫날인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1941년 경성부 사무검사 보고서의 발표와 검토가 진행되었다. 특히, 부민병원의 불친절 문제(이홍종), 쓰레기 청소 문제, 겨울철 시탄 부족 문제(성원경) 등이 논의되었다.[36] 개최 3일째인 20일부터는 1942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특히 구제(區制) 실시를 앞두고, 그 영역 설정 및 부(府)와 구(區)의 행정 사무 분담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시가지계획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피해 문제, 토목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 증액의 부당함, 전차 요금 인하,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청소년의 결핵 대책 수립, 청소와 쓰레기 처리 문제, 생필품 배급 기구 문제, 토막의 비위생성 문제, 주택지 건설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전시체제하에서도 경성전기 측이 전차를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전차 요금 인하를 위한 교섭이나 관계 당국이 경

35) 〈戰時府會 開幕, 劈頭에 皇軍에 感謝 電報〉 ≪매일신보≫ 1942년 3월 19일.
36) 〈不親切한 府民病院 燃料配給確保하라-京城府會第二日論戰〉 ≪매일신보≫ 1942년 3월 20일.

성전기 측을 지도 편달할 수 없는지, 전등 및 전차 사용과 관련된 전기를 공영(公營)으로 할 수 없는지 등의 경성전기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회의 마지막 날인 3월 25일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다.

<표 11> 1943년 통상부회 안건(1943년 3월 5일~12일)

1. 1942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부민병원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제2토지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번대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한남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사근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용두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청량리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신당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공덕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의 건
1. 경성부 종합방공시설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설정의 건
1. 경성부 제3기 수도확장 제3차 공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1. 경성부 사근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1. 경성부 용두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年期 및 지출 방법 변경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세이출 예산 추가 경정의 건
1. 1942년도 경성부 공익질옥비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 추가의 건
1. 경성부 弓道場조례 설정의 건
1. 경성부 府稅 제한외 부과조례 설정의 건
1. 경성부 吏員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吏員봉급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旅費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吏員宿舍料 지급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의 건

1. 중일전쟁[支那事變]으로 인해 종군한 군인 및 군속에 대한 府稅 감면 납세 연기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소독 및 환자 수송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위생시험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묘지 및 葬齋場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부민관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인보관 진료부 사용조례 개정의 건
1. 경성부 노동숙박소 사용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훈련원 會場 사용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운동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중앙도매시장 사용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매매 위탁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오물수거 수수료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제1토지구획정리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번대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사근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용두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청량리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신당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경성부 공덕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중 개정의 건
1. 기채의 건(종합방공시설비 충당)
1. 기채의 건(청소시설비 충당)
1. 기채의 건(청소자동차 구입비 충당)
1. 기채의 건(긴급대책비 충당)
1. 기채의 건(방공방호시설비 충당)
1. 기채의 건(청사신영비 충당)
1. 기채의 건(區役所청사 및 직원 宿舍 신영비 충당)
1. 기채의 건(공익질옥 신설비 및 대부자금 충당)
1. 경성부 제3기 수도확장 제3차 공사비채 기채요항 변경의 건
1. 호별세 부가세 부과액 결정의 건
1. 부가세 과율 결정의 건
1. 시가지계획 특별세 세율 결정의 건

1. 중앙도매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1. 중앙도매시장 특수설비 사용료 결정의 건
1. 공설일용품 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1. 가축시장 사용료 결정의 건
1. 부민병원 사용료 및 수수료 결정의 건
1. 인보관 사용료 및 수수료 결정의 건
1. 예산 외 의무부담의 건(경기도비 소방비 기부)
1. 토지 평수할 부과지역 결정의 건
1. 토지매각 처분의 건(青葉町 소재)
1. 1940년도 경성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출 결산 보고의 건

출처: <京城府通常府會開催> ≪경성휘보≫ 257, 1943.04, 14~17쪽.

이후 통상부회의 개최 상황을 보면, 1943년 통상부회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1944년 통상부회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1945년 통상부회는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개최된 사실이 확인된다.[37]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논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1943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예산부회 의안 목록만이 남아 있다. 여기에 따르면, 1943년 역시 부 당국이 시가지 계획과 관련한 토목사업비의 확보를 계속해서 추진했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오물처리비, 일용품시장 신설비, 전염병원 신축비, 보건광장 증설비, 상수도 확충비 등 기존 부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항목의 기채 문제가 논의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부회의 주요 의제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37) 〈京城府通常府會開催〉 ≪경성휘보≫ 257, 1943.04, 14~17쪽 ; 〈決戰京城府會開幕 일반질문 않기로 決定〉 ≪매일신보≫ 1944년 3월 23일 ; 〈豫算府會招集 廿三日부터 六日間〉 ≪매일신보≫ 1945년 3월 22일.

<표 12> 1939~1945년 경성부회 주요 의제

항목	세부	항목	세부
재정	세입출 항목 설정	보건 · 위생	전염병 관리(결핵)
	예산 확보 · 소화 가능성		청소, 오물수거, 살수, 우물
	기채 인가 지연		토막 철거
	부채 증가	사회	부민병원 운영
	세금 부담		노동자숙박소
	부영 재산		세궁민 직업 지도
시가지 · 토목	시가지계획 구역 확정 · 변경	산업	府 産業部 설치
	토지 매수		轉業者 대책
	토지 소유자 보상 대책	행정	府 직원 결원 보충, 대우 조정
배급 · 유통	중앙도매시장	행정	정회, 區制
	연료[薪炭]대책		배급담당기구
	식량배급	방공	방공설비
	생필품 확보	교통	전차버스대책(부영, 요금 인하)
	암거래 방지		新府域 교통망 확충

주요 의제는 재정, 시가지계획·토목, 배급·유통, 보건·위생, 사회, 산업, 행정, 방공, 교통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나열하면, ① 재정에 대해서는 경성부청 당국자가 설정한 예산안의 세입출 항목의 설정, 예산 확보·소화 가능성, 기채 인가 지연, 부채 증가, 세금 부담, 부영(府營) 재산 문제 등을, ② 시가지계획·토목에 대해서는 시가지계획 확정·변경, 토지 매수비, 토지 소유자 보상 대책 등을, ③ 배급·유통에 대해서는 중앙도매시장 정책, 연료[薪炭] 대책, 식량 배급기구, 생필품 확보, 암거래 방지대책 등을, ④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전염병 관리, 특히 결핵 대책, 청소, 오물수거, 살수(撒水), 우물 설치, 토막 철거 등을, ⑤ 사회에 대해서는 부민병원 운영, 노동자 숙박소, 세궁민 직업 지도 등을,

⑥ 산업에 대해서는 경성부 산하 산업부의 설치, 전시하 중소상공업 전업자(轉業者) 대책 등을, ⑦ 행정에 대해서는 부(府) 직원 보충, 대우 조정, 정회(町會), 구제(區制), 배급담당기구 문제 등을, ⑧ 방공에 대해서는 방공설비 등을, ⑨ 교통에 대해서는 전차버스의 부영화(府營化) 및 요금 인하 요구, 신부역(新府域)의 교통망 확충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인 의원의 발언에 한정해 그 논의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겠다.

<표 13> 조선인 의원의 1939년 선거 공약과 경성부회 석상의 발언 비교

이름	공약[政見]	부회 석상의 발언 내용
姜永晧	1. 교육의 확충 2. 시가지계획 촉진 3. 청계천 암거 또는 운하 4. 사회시설 확충	- 시가지계획 중도 변경 이유(40.03.24)
康容杓	1. 초등교육 二部制를 급속 정상화 2. 新舊府域에 간선도로 급설	- 부민 보건 및 식량대책(40.03.14) - 신구부역 살수 차별 유감(40.03.23) - 부민병원 설비 징수 필요(40.03.29) - 신탄 배급 확보 요망(42.03.25)
姜昌熙	1. 대경성의 백년대계 수립 2. 교육비특별경제를 일반경제에 병합 3. 평화산업구제책 확립 4. 주택난 완화책 강구	- 남산터널은 조선신궁의 신역 침범(39.06.05) - 식량대책, 부리원 이사급 채용(40.03.13) - 부 직원 조선어 장려비(40.03.22) - 우물 설치(40.03.25) - 효자 · 절부 표창, 청년훈련소 통합(40.03.26) - 방공방호기구 보관설비(40.03.28) - 부민병원 시료 환자 표준(40.03.29) - 경성신사의 승격 필요, - 사회사업 중점주의 필요(41.03.18) - 구역(區域) 결정 근거(42.03.20) - 시가지계획 수익세 인상 부당(42.03.23)
金敏植	1. 府政機構의 재검토 2. 부민 부담의 균형 합리화 3. 교육문제 근본적 개혁 4. 신편입구의 수도 문제 해결 5. 부민병원 분원 증설	- 府 實踐部長의 區長 겸임 여부(42.03.20)
金應純	1. 재정의 정리 · 긴축 2. 부과의 공평, 府民의 부담 경감 3. 교육 개선 및 입학난 완화 4. 상하수도 개선 · 완비 5. 교통로의 개선 · 완비	

이름	공약[政見]	부회 석상의 발언 내용
金宗亮	1. 세민주택문제 2. 토목설비 쇄신	
梁在昶	1. 의무교육 급속히 실시	- 시가지계획 상업지역 지정(39.06.05) - 부 하급직원 빠른 승급 필요(40.03.22) - 예산 확대로 인한 과도한 증세(41.03.22) - 시가지계획사업 지연 피해 토지소유자 구제 필요(42.03.23)
朴勝城	1. 부제(府制)의 자치제 확립 2. 무료산원 및 결핵요양소 급설 3. 탁아소와 양로원 설치 4. 체육관 창설	- 호적과 민원 사무 강화,부 이사급 채용 필요(40.03.16) - 예산에 납세장려비 계상은 부당(40.03.25) - 부영운동장 건설 필요(40.03.26) - 청계천 암거 공사 필요(42.03.23)
朴元信	자기선전은 무의미. 발표할 말 없음.	- 세탁장 증설(40.03.26)
朴疇明	1. 사회사업 확장 · 강화 2. 도시위생시설 철저 · 완비 3. 교육문제	
成元慶	1. 위생시설 확충 2. 교육시설 확충	- 전염병 예방주사 표준 - 세탁장 증설 - 오물청소문제(40.03.25) - 부 직원 확충(41.03.1.) - 시탄 배급 강구(42.03.19)
蘇完圭	일하기 전에 떠들고 싶지 않다.	
楊潤植	1. 부립중학의 급속 설립 2. 부영주택 경영 3. 공동세탁장 설치 4. 공익질옥의 증설 5. 청계천 암거 공사의 촉진	- 주택지 조성지와 도심연결 전차 - 전차 부영 - 학무과가 아닌 학무부 설치(40.03.15) - 부영수영장 설치 필요 - 부영도서관 채광 문제(40.03.26)
芮興洙	1. 산업 조장, 資力 증진	- 시가지계획 공업지대 증가 필요(39.06.05) - 의사진행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40.03.15) - 府 용인급 급여 인상 필요(40.03.23) - 시탄 및 식량배급 문제 - 중앙신탄시장 설치 문제(40.03.27) - 府 산업부 신설 필요(40.03.29)
李庚鳳	1. 의무교육제도의 제정 2. 사회사업 확충 · 강화 3. 위생시설 완비	
李相殷	1. 공업[技術者]양성소 설립 2. 직업소개소를 부비로 설립 3. 고아원 부영 경영	- 전차요금이 과도. 교섭 필요 - 시가지계획으로 인한 건물소유자 피해보상(42.03.23)

이름	공약[政見]	부회 석상의 발언 내용
李信龜	1. 교육 확충 2. 부립중학 설립 3. 토목시설 촉진 4. 위생시설 촉진	
李弘鍾	1. 국고 보조를 통한 초등교육 확충 2. 부 산업부를 신설: 가정공업 장려	- 기채 지연 이유 - 효자정 시장 미설치 이유 - 망우리 공동묘지 채벌은 부당(40.03.13) - 부민병원 불친절 개선(42.03.19) - 區制 실시 후 사무분담(42.03.20) - 결핵예방법, 국민체력관리법 실시 필요 (42.03.24)
曹秉相	1. 세납의 균등 2. 사회사업의 확충	- 중소상공업자 구조정책 미비 비판 - 영업세 증세 과도 - 부 당국자의 예산 편성은 부민의 실정을 미반영 - 사회사업비 증강 필요 - 예산 편성의 현실성(예산 소화 가능성 의심: 물자 및 노동자 확보) - 정총대 개선 · 향상 정책 필요(40.03.19) - 예산 증액은 부민의 세금 부담을 늘려 업자의 이윤만 늘리는 꼴(40.03.23)
曹秉相	1. 세납의 균등 2. 사회사업의 확충	- 경성부 당국자 사회사업에 대한 성의가 없고 냉담하며 무관심. 부민병원의 약값 · 치료비 인상은 부민병원 설립정신을 몰각.(40.03.26) - 증세로 인한 부민의 세금 부담 문제(40.03.28) - 예산 편성은 고도국방건설 기조에 반함. 당장 실행할 수 없는 사업비를 계상하고 부민의 세금 부담을 늘림. - 결핵 요양소 급설. 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 부 당국이 생필품 배급을 절실히 파악할 필요. (41.03.24)
車相鎬	1. 중소공업 장려 · 촉진 2. 세민 · 乞兒의 구제지도기관 설치	- 북부 지역 토목사업 필요(40.03.23) - 서부 지역 오물청소 안 됨. 서부 주민 무시인가.(42.03.24)
崔白洵	1. 부립중학 급속 설립 2. 폐결핵료양소 완설 3. 교화문제	- 시가지계획 토지소유자 고려 필요 - 공원 설치 문제(39.06.05) - 정회 직원의 부 직원 채용 필요(40.03.16) - 정회 방호 · 방면사무 통합 후 부에 직접지도기관 설치 필요(40.03.28)
韓萬熙	포부와 이상 없다. 부민을 대변할 것.	
韓相喆	1. 母子法, 救護法의 법령 제정을 촉진	- 공원 설치 지역 토지소유자 배려해 시급히 가격 제시할 필요 - 시가지계획 지역지정 변동으로 인한 주민의 손해 문제(39.06.05)

이름	공약[政見]	부회 석상의 발언 내용
韓相喆	1. 母子法, 救護法의 법령 제정을 촉진	- 교통문제 근본대책 필요. - 식량 배급 기구 개혁 필요(40.03.14) - 공동묘지 도로 문제(40.03.24) - 묘지 부족 문제 대처 대책 - 조선인위해 세탁장 증설 필요(41.03.19) - 우량정회 표창비 폐지 필요 - 신당정 시장 확장 - 식량배급기구 개선 - 오물처리장 개수(41.03.22) - 식량배급 사무 강화(41.06.03) - 區役所 위치 신중 배치(42.03.20)

출처: <京城府議 當選 人物記> ≪삼천리≫ 11-7, 1939.06, 148~149쪽.

비고: 1. ≪삼천리≫ 기사에는 조선인 의원 29명 중 7명의 의견이 누락되어 있는데, 위 표 역시 그대로 따랐음(중도 사퇴자 의견 등 일부 제외함). 2. (00.00.00)은 발언 일자를 의미함.

위의 〈표 13〉은 1939년 조선인 의원 22명이 발표한 선거 공약[政見]과 이후 경성부회 석상에서 해당 의원의 발언 내용을 비교한 표이다. 당선 시점의 공약의 경우 의무교육 실시, 교육비의 국고 보조, 제1·2교육비 특별경제의 부(府) 일반경제로의 병합 등 초등교육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세금 부담 경감, 부영주택, 세민(細民)주택 건설을 비롯한 사회제도 확충, 보건·위생제도 강화, 부(府) 산업부(産業部) 설치 등의 경제정책이 주로 거론되었다. 이를 이후 부회 석상에서의 발언 내용과 비교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교육비의 부(府) 일반경제비 통합 및 국고 보조, 의무 교육 등 교육에 관련한 주요 사안은 교육부회에서만 언급할 뿐, 일반경제부회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둘째, 사회사업 및 위생·보건 등에 관련한 몇 가지 의제를 제외하면, 이들 의원은 주로 특정 계층·직업층이나 지역에 한정된 사안을 제기했다. 먼저, 시가지계획의 수익세 인상의 부당함(姜昌熙), 시가지계획사업 지연 및 지역지정 변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토지·건물 소유자의 구제 대책(梁在昶, 李相殷, 崔白洵, 韓相喆)을 들어 지주·부동산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사례와 영업세 증세 문제를 비판하며 상공업자의 이해를 대변한 사례가 있었다(曹秉相). 또한 새로 부

역에 편입된 지역 및 시가지계획 진행 지역에 대한 차별 및 시설 투자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다(康容杓, 楊潤植, 車相鎬).

셋째, 인물별로 발언의 빈도와 발언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주목할 만한 인물로 강창희(姜昌熙)와 조병상(曹秉相)의 경우를 비교할 수 있다. 두 인물 모두 발언 참여 횟수가 많은 편이지만, 강창희는 남산터널은 조선신궁의 신역(神域)을 침범하는 개발이다, 효자와 절부를 표창해야 한다, 경성신사를 승격해야 한다는 등의 부민(府民) 일반의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적고, 시급하지 않은 문제를 자주 발언했다. 반면, 조병상은 예산의 확보 및 소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은데도 부(府) 행정청이 거듭 예산 규모를 확대해 부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 예산 편성시 부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 사회사업비 문제, 생필품 배급 문제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부민 일반의 이해관계와 연관되는 문제들을 요청했다. 역설적이지만, 조병상의 경우 '유명 친일 인사'라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근거로 조선인 다수의 민족적 이해를 대변하는 발언을 다른 의원에 비해 더 비중 있게 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2) 주요 관련사건

(1) '친일 협력' 참여

1939·1943년에 당선된 일부 경성부회 의원들은 다양한 '친일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경성부회 의원으로서의 '배경'(인맥)을 얻었으며, 사회적 지위를 강화해 나갔다. 아래에서는 창씨개명, 친일협력단체 임원 참여, 시국 강연 및 헌납 사례를 중심으로 그 단편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38]

---

38) 전시체제하의 공직자를 직업이나 연령 등의 개인적 이력에 한정해 분석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여기서는 '전시체제하 사회적 관계'의 한 틀로 '친일협력' 문제를 다루었다. 다만, 이 또한 이 글 전체의 목적인 ① 일제 말 경성부회(의원)의 특징 정리와 ② 전시체제하 식민지 지방의회의 정치 경험·역사성 파악의 부분적 요소일 뿐이다. 단편적 분석을 근거로 전시하 경성부회의 성격을 '친일협력'과 등치시킬 수 없다.

(가) 창씨개명

1939년 11월 10일 〈조선민사령〉의 개정(제령 제19호)에 따라 창씨개명이 시행되었다.[39] 창씨개명 신청 일반을 '친일 협력'이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경성부회 의원의 사례는 '대민(對民) 장려'의 취지로 적극적으로 홍보되었기에 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39·1943년 당선된 경성부회 조선인 의원의 창씨명은 다음과 같다.

<표 14> 1939·1943년 경성부회 조선인 의원의 창씨명(異名)

1939년 당선 의원		1939 · 1943년 당선 의원		1943년 당선 의원	
본명	창씨명	본명	창씨명	본명	창씨명
姜永晧	神山永晧	姜昌熙	神岡昌熙	金興培	野田勝弘
康容杓	康本容杓	金泰潗	金井泰潗	朴永敏	新井永敏
金奎應	金子奎應	梁在昶	梁川在昶	朴昌薰	木村昌薰
金敏植	金光敏	朴勝城	朝野晴義	尹琦爀	伊東立雄
金應純	金山應純	朴疇明	三井疇明	李定宰	芝村定宰
朴元信	新本元信	芮興洙	草內興洙	鄭商熙	三井清次
李相殷	大山相殷	李斗用	松本斗用	洪必求	德山必求
李信龜	立本光世	李昌業	廣山鍾香	朴寧根	新井康弘
李源祥	平松源祥	李弘鍾	中本弘鍾		
韓相喆	西原宏	曹秉相	夏山茂		
		車相鎬	江村相鎬		
		崔白洵	德山白洵		

출처: <報告例第九七號 府二關スル報告> ≪京城府關係綴≫(CJA0003543), 1940년 5월 9일·6월 14일·7월 30일·9월 13일, 1941년 10월 7일 ; <六月七日에 첫 府會 京城府會議員五十六名選定·當選者氏名> ≪매일신보≫ 1943년 5월 23일.

39) 창씨개명 제도에 대해서는 미즈노 나오키 지음, 정태선 옮김,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산처럼, 2008 참고.

1939·1943년에 당선된 조선인 의원 총 41명(중복 제외) 중 본명(本名)과 다른 이명(異名)으로 창씨명을 사용한 사례는 총 30명이 확인된다. 이외에 1939년 당선자 7명(1943년 재선되지 않음), 1939·1943년 당선자 1명, 1943년 당선자 3명은 본명과 다른 이명을 사용한 예를 확인할 수 없다.[40] 다만, 양윤식(楊潤植)의 경우(1939년 당선) 본명으로 창씨개명한 것을 확인하는 문서가 남아 있어,[41] 기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으로 창씨한 의원 중 조병상은 창씨 신고일[届出日] 첫날인 1940년 2월 11일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문기사에 보도되었으며,[42] 조병상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은 그해 3월 12일 경성부회 일반경제예산부회 석상에서 창씨개명 사례가 소개되었다.[43]

(나) '친일협력단체' 임원 참여

1939·1943년 당선 의원 중 조병상, 김태집(金泰潗), 양재창(梁在昶), 성원경(成元慶)은 중추원 참의 경력이, 전부일(全富一)은 국민협회 참여 경력이 근거가 되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및 제13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다.[44]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표적 인물의 사례를 포함해 친일협력단체 임원 경력을 근거로 경성부회 의원의 사회적 관계를 개략적이나마 확인하겠다. 이를 위해 편의상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일제협력단체사전 -국내 중앙편-≫을 근거로,[45] 2명 이상의 의원이 임원으로 참가한 사례에 한정해 목록을 작성했다.

---

40) 異名을 창씨명으로 사용하지 않은 의원은 金宗亮, 成元慶, 蘇完圭, 楊潤植, 李在元, 任興淳, 韓萬熙(1939년 당선), 李庚鳳(1939·1943년 당선), 李敏求, 安錠遠, 全富一(1943년 당선)이다.

41) 〈報告例第九七號 府ニ關スル報告〉 ≪京城府關係綴≫(CJA0003543), 1940년 9월 20일 참고.

42) 〈73歲翁도 "山雄" 歷史的氏創設初日 府에 午後二時까지 41件 接受〉 ≪매일신보≫ 1940년 2월 12일.

43) 〈記事: 京城府通常府會〉 ≪경성휘보≫ 221, 1940.04, 17~21쪽.

4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V-1~1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2009 참고.

45)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 국내 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2004.

<표 15> 1939·1943년 경성부회 당선 의원의 '친일협력단체' (단위: 명)

이름		조선임전보국단	녹기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배영동지회	조선 지원병 제도 제정 축하회	임전대책협의회	동민회	국민협회	대일본흥아회(조선)	소화연맹(조선)	대의당
日	加納一米				■							
	間島梅吉			■								
	廣綱德太郎					■						
	鈴木文助					■						
	柳樂達見			■								
	木下榮					■						
	山中大吉			■								
	杉市郎平			■								
	森安敏暢				■							
	石森久彌										■	
	小川勝平			■		■						
	小坂貞雄			■	■							
	伊達四雄		■	■	■							
	庄司秀雄				■							
	井原荒太郎	■							■	■		
	中馬越之助			■								
朝	姜永晧	■										
	姜昌熙	■										
	金敏植	■										■
	金應純	■										
	金宗亮	■										
	金興培	■										
	梁在昶	■						■				

이름		조선임전보국단	녹기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배영동지회	조선 지원병 제도 제정 축하회	임전대책협의회	동민회	국민협회	대일본흥아회(조선)	소화연맹(조선)	대의당
朝	朴元信	■										
	朴疇明	■										
	朴昌薰	■										
	成元慶	■			■							
	蘇完圭	■					■					
	楊潤植	■										
	芮興洙	■										
	李庚鳳	■										
	李斗用	■										
	李相殷	■										
	李定宰		■				■					
	李昌業		■									
	李弘鍾		■	■		■						
	任興淳 ※		■				■					
	車相鎬		■									
	崔白洵		■									
	韓萬熙				■			■				
	韓相喆		■									
	安錠遠	■	■									
	全富一	■					■		■	■		
	曹秉相		■	■	■	■	■	■			■	■
합계 (단위: 명)		19	10	10	8	6	4	3	2	2	2	2

출처: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 국내 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2004.

비고: 1. 2명 이상의 의원이 참가한 단체만을 표기함. 2. ※는 부정선거로 1939년 8월 의원 자격을 상실한 자임.

참가인원 순으로는 조선임전보국단(19명), 녹기연맹(10명), 국민총력조선연맹(10명), 배영동지회(8명), 조선지원병제도 제정축하회(6명) 등에 많은 의원이 참가했다. 의원 개인별로는 가장 많은 수의 단체에 참가한 것은 조병상(갑자구락부, 흥아보국단, 애국금차회, 조선국방의회연합회, 지원병후원회, 국민동원총진회, 대화동맹, 조선식량영단, 지원병보국설전대, 대동사문회, 등)이었고, 조선인으로는 전부일(국민협회, 임전대책협의회, 조선임전보국단, 대일본흥아회 조선지부)이, 일본인으로는 이하라 아라타로(井原荒太郎)(조선임전보국단, 국민협회, 대일본흥아회 조선지부, 조선실업구락부)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몇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단체 임원 참가가 부회의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6> 1939·1943년 경성부회 당선 의원의 '친일협력단체' 내 연결 사례

단체명	단체 대표	1939 · 1943년 부회의원	1943년 추천위원
대일본흥아회(조선)	朴春琴	全富一, 井原荒太郎	
대의당	朴春琴	曹秉相, 金敏植	金思演, 朴興植, 李聖根
동민회	申錫麟	曹秉相, 梁在昶	肥塚正太
동우구락부	韓相龍	朴昌薰	任明宰
소화연맹(조선)	守屋榮夫	石森久彌, 曹秉相	金思演

출처: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 국내 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2004.

사례로 제시한 5개의 단체는 소수의 한정된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된 폐쇄 집단으로, 비교적 내부의 인적 관계나 유대, 목적이나 지향이 강한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회의원 중 일부는 이들 단체에 참여하며 박춘금(朴春琴), 신석린(申錫麟), 한상룡(韓相龍),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등과 관계를 유지했고, 의원 내부는 물론 1943년 선거의 추천위원과도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몇몇 사례를 통해 볼 때 경성부회 의원 일

부는 부회의원으로서 공직에 참가하는 동시에 폐쇄적 정치·유대 모임에 가담하며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민식, 박창훈 등 이전에 친일단체 임원 경력 등이 전무한 인물의 경우 이러한 대내외 단체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진입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시국 강연 및 헌납

전시체제하 경성부회 의원은 단체 참가 외에도 시국 강연이나 헌납에 참여했다. ≪매일신보≫를 근거로 이들의 시국 협력 강연·기부·헌납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1939·1943년 경성부회 당선 의원의 '친일 협력' 강연·기부·헌납 이력

구분	이름	기간	내용
강연	韓萬熙	1939.09.28~10.03	국민정신 앙양에 관한 강연회(춘천, 강릉)
기부	石川倦造	1939.11	국민정신총력동원 운영자금 1만 엔 기부
연설	梁在稷	1940.01.24	경성부 儒道會 창립 연설
연설	小坂貞雄, 曹秉相	1940.07.03	적성국가 격양 연설
헌납	伊藤東作	1943.03.17	佛壇 헌납
헌납	木下榮	1943.03	수집 佛像 247개 해군에 헌납
기부	의원 일동	1943.06.08	국방기 헌납 기금 1만 円 기부
헌납	木下榮	1944.08.17	수집 佛像 330개 해군에 헌납

출처: <國民精神 昂揚 巡廻講演 盛況> ≪매일신보≫ 1939년 10월 1일 ; <東洋精神을 鼓吹-京城府 儒道會 今日에 結成> ≪매일신보≫ 1940년 1월 25일 ; <府會議員들도 發奮-傳來의家寶도 아낌없이 續續獻納> ≪매일신보≫ 1940년 3월 17일 ; <紺綬褒章下賜> ≪조선총독부 관보≫ 4011, 1940년 6월 6일 ; <뜻있는 者는 모여라-敵性國家擊攘國民大會-드디어 明三日의 開催> ≪매일신보≫ 1940년 7월 2일 ; <府議 一同이 萬圓 愛國機에 헌금> ≪매일신보≫ 1943년 6월 9일 ; <擊敵의 三白卅羅漢 - 木下氏, 트럭으로 실어 海軍에 獻納> ≪매일신보≫ 1944년 8월 18일.

이에 따르면 시국 강연 및 연설에 한만희(韓萬熙), 양재창, 고사카 사다오(小坂貞雄), 조병상이 참여했으며, 이시카와 겐소우(石川倦造)와 1943년 당선 의원

일동이 각각 1만 엔을 기부했다. 또한 이토 도사쿠(伊藤東作)와 기노시타 사카에(木下榮)는 불단(佛壇) 및 불상(佛像) 570여 개를 헌납했다. 이 중 흥미로운 사례로, 이시카와의 경우 1939년 10월 가격폭리를 이용해 부당이득 3,000여 엔을 취득한 혐의로 경찰의 취조를 받았는데, 바로 다음 달인 11월 1만 엔을 기부해 총독부의 표창을 받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경성부회 의원이 기부·헌납을 통해 총독부에 '충성'을 거래하고, 경제범죄를 무마하며 공직자의 직위를 유지한 것을 보여준다.

(2) 부정조사회의 설립 · 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최 일정만을 대상으로 볼 때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는 1941년 전후 의정 기구로서 부회의 역할은 거듭 축소되어 나갔다. 그러나 경성부회가 갖는 의정기구로서의 입지 약화가 경성부회 의원의 부정(府政) 참여의 축소, 즉 관(官)의 장악력이 증가하며 의원의 발언권이 줄어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개적인 의정기구인 부회의 활동은 축소되었지만, 별도의 기구로 '부정조사회(府政調査會)'라는 비공개 위원회가 설립·개편되어 부회의원의 부정 '참여 범위'는 이전에 비해 오히려 확대되었다('권한'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조사회는 1941년 말 경성부에서 설립한 조직으로, 이전까지 경성부 내 각 과를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던 도시계획조사위원회, 사회사업조사위원회, 임시상수도확장조사위원회, 임시오물처리조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해소해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전시하 경성부 사무의 동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46] 설립 당시는 부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의 권위자"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경성부회의원은 6명으로 전체 성원의 30%를 차지했다. 이후 1943년 5월 경성부회의원 선거의 추천선거제로의 변화와 맞물려, 부정조사회는 전면적으로 개편·확대되었다. 이를 위해 경성부는

46) 〈京城府政의 臨戰體制 强力的인 府政調査會를 組織〉 ≪매일신보≫ 1941년 9월 28일.

1943년 2월 15일 현재 재임 중인 부회의원 하마다(濱田虎雄)[47]를 경성부 초대(初代) 이사로 임명하고, 부정조사회의 운영을 주관하도록 했다. 경성부는 이러한 인사 임명에 대해 ① 【직급】 "일본[內地] 각 도시의 조역제(助役制)[현 부시장제(副
市長制) - 인용자]와 유사한 이사제(理事制)의 시행"으로,[48] ② 【조직】 "조사실(調査室)을 신설해 일본의 시장실(市長室) 또는 시심의실(市審議室)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조사실 주간(主幹)으로 신임 이사를 충원"하여, ③ 【업무분장】 "부정(府政)에 관한 특히 중요한 사항을 기획·조사하도록 하며, 아울러 후생부문에 속하는 사회, 청소, 위생의 3과도 이사의 업무로 분장"시켰다.[49] 풀어보면, 기존 경성부 편제하에서 부리원(府吏員)의 최고직은 주사급(主事級)에 머물렀지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이사급(理事級)을 신설하고, 여기에 부회의원 하마다(취임 이후 의원직은 상실)를 임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시체제하에서 기존 부제하의 경성부회(의정기관)와는 별도로 경성부청(행정관청)과 경성부회 의원 사이를 매개하는 지위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성부는 이어서 부회의원의 개선 직후인 1943년 6월 부정조사회의 조직을 재정부, 도정부(都政部), 경제부, 문화위생부로 확대·개편하고 경성부회 의원을 위원으로 대거 임명했다. 이에 따라 1941년 설립 당시 위원의 30%에 불과했던 경성부회 의원

47) 濱田虎雄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1910년 大連電信局 근무, 1913년 普通文官試驗 합격, 京畿道書記, 총독부 判任官으로 內務課 근무, 1921년 東京 辯護士試驗 합격, 변호사사무소 개업. 1926년 5월 第1回 京畿道會議員 당선 후 경성부협의회원, 경성부회의원으로 활동. 1943년 경성부 이사로 취임. 1947~1951년 일본 鹿児島縣 指宿市 公選村長 당선.

48) 〈市制〉(일본 법률 제68호, 1911.04.06)에 따르면, '助役'은 市長의 사무를 보조하고 市長의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제96조), 市長의 추천에 따라 市會가 결정하며 신분은 有給吏員으로 그 임기는 4년이었다(제75조). 1943년 경성부에서 실시한 '理事制'는 지방의회와 지방관청을 매개하는 존재였다는 점, 신분이 吏員으로 편제되었지만 일반 吏員과 다르게 분과 업무를 통할해 종합적으로 관장했다는 점은 일본 본국의 助役과 유사했다. 그러나 〈府制〉 개정을 통한 정식 등용이 아닌 경성부의 특수한 임의 등용이었다는 점, 이로 인해 '시장을 대리한다'는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助役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낮았다.

49) 〈京城府理事設置〉 ≪경성휘보≫ 256, 1943.03, 1쪽.

의 비중은 1943년 개편 이후 60%까지 늘어났다.

<표 18> 1941년과 1943년 부정조사회 위원 구성 변화

1941년			1943년		
위원장	부윤	1명	主幹	濱田虎熊	1명
위원	府 실무관리	3명	위원	府 실무관리	3명
				現 區長	8명
	前 관료, 기업가, 명망가	10명		前 관료, 기업가, 명망가	部別 2~6명
	現 부회의원	6명		現 부회의원	部別 18~24명
정원	20명		정원	4部 * 각 부별 33~40명	

출처: 【부표 5】1941·1943년 府政調査會 위원 구성.

의정기관인 경성부회와 달리 부정조사회는 비공개 위원회 조직으로 그 보고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으며, 또한 1944년 3월호를 마지막으로 ≪경성휘보≫ 등의 기초자료마저 망실되어 조사회의 자세한 활동은 규명하기 어렵다. 단편적이지만 1943년 12월~1944년 2월 간행된 ≪경성휘보≫의 〈부정일지(府政日誌)〉란을 통해 부정조사회가 1943년 11월 3회(1·13·15일), 1943년 12월 4회(6·7·18·21일) 개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전시체제하에서 공개 의정기관인 경성부회의 역할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성부회 의원은 비공개 위원회인 부정조사회를 기반으로 부정에 대한 참여를 유지·확대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3) 경성부회의원의 해방 후 이력

전시체제하에서 경성부회 의원은 자산과 지위, 전문성을 근거로 공직을 차지하고 여러 친일협력 활동에 참가했다. 이들의 경험은 해방 후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현재 이력을 찾을 수 있는 사례에 한

해 시기별 내역을 정리했다.[50]

<표 19> 1939·1943년 경성부회 의원의 해방 후 이력

분야	이름	해방 후~한국전쟁 전	한국전쟁 후~장면정권	박정희 정권 이후
정치(서울)	康容杓	마포구 동회장	-	-
	朴勝城	종로구 정연합회	-	-
	李相殷	용산구 동연합회장	-	-
	任興淳※	성동구 동연합회장	-	-
	梁在昶⊙※	-	종로구 동대표	-
정치(한국)	姜昌熙	독촉국민회 서울시지부장	-	-
	車相鎬	반탁운동	-	-
	蘇完圭	독립애국금헌성회 조직	-	-
	任興淳※	제2 · 3대 국회의원, 서울시장, 1965년 보궐선거 출마 낙선		
	成元慶⊙	-	제3 · 5대 국회의원	-

50)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외에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다. 〈大谷女商 새出發〉 ≪중앙신문≫ 1945년 11월 6일 ; 〈獨立愛國金献誠會 百餘有志活動開始〉 ≪동아일보≫ 1945년 12월 12일 ; 〈서울町聯合會, 內容强化코저 任員一新〉 ≪중앙신문≫ 1945년 12월 26일 ; 〈이 새해는 独立을 爲하야 죽어도 信托 管理 下에서는 살지 않겟다!〉 ≪중앙신문≫ 1946년 1월 1일 ; 〈鍾路區町聯合會結成〉 ≪중앙신문≫ 1946년 2월 13일 ; 〈前府議 金敏植 謀利로 拘禁〉 ≪동아일보≫ 1946년 3월 30일 ; 〈朝鮮工業俱樂部設立〉 ≪동아일보≫ 1946년 5월 15일 ; 〈新韓公社에 疑獄? 듀럭再拂下無利融資等, 一般社會에 物議가 紛紛〉 ≪獨立新報≫ 1946년 11월 8일 ; 〈青果會社에 背任 · 橫領?〉 ≪경향신문≫ 1947년 2월 1일 ; 〈인사〉 ≪자유신문≫ 1947년 10월 31일 ; 〈市公館 관장 임명〉 ≪자유신문≫ 1947년 12월 13일 ; 〈洞會長들 選擧拒否? 公務員取扱에 對하야 抗議〉 ≪중앙신문≫ 1948년 4월 1일 ; 〈선거운동 금지문제로 서울 시내 洞長들 궐기〉 ≪자유신문≫ 1948년 4월 1일 ; 〈애국총연맹 결성식, 작일 市公館서 성대히 거행〉 ≪자유신문≫ 1948년 12월 2일 ; 〈人事〉 ≪朝鮮中央日報≫ 1948년 6월 8일 ; 〈釀造協會를創設〉 ≪경향신문≫ 1949년 2월 27일 ; 〈인사〉 ≪자유신문≫ 1950년 6월 22일 ; 〈韓電役員補選〉 ≪경향신문≫ 1961년 8월 11일 ; 〈그저 부끄럽다 ◇任興淳最後陳述〉 ≪경향신문≫ 1961년 8월 12일 ; 〈金宗亮씨 永訣式 오늘 聯合學校葬으로〉 ≪동아일보≫ 1962년 2월 16일 ; 〈죽음의歲月(31)〉 ≪동아일보≫ 1962년 5월 4일.

분야	이름	해방 후~한국전쟁 전	한국전쟁 후~장면정권	박정희 정권 이후
정치 (한국)	鄭商熙※	-	제4 · 5대 국회의원	-
정치 (일본)	濱田虎熊	일본 鹿児島縣 今和泉村 公選村長 (1947~1951)		-
경제	梁在昶⊙※	조선수리조합원대표	-	-
	朴疇明	대한양조협회 이사장	-	-
	李信龜	大谷女商 인수	-	-
	李昌業	신한운수사 대표	-	-
	韓相喆	재정금융위원회 위원	-	-
	朴寧根	조선공업구락부 회장	-	-
	安錠遠	서울화재해상보험(주) 사장	-	-
	金奎應	중양양조(주) 사장		-
	李定宰	동아의약업회사 사장, 경성전기(주) 감사		-
	李敏求	조선공영(주) 사장, 조선전업(주) 상무이사		
	朴永敏⊙※	대동정기(주) 대표, 1967년 부동산 사기 혐의 구속		
	金興培⊙	동일방직(주), 한국중앙무진(주), 한국신탁(주), 한국외대 설립		
	鄭商熙※	삼호방적 · 삼호무역 부사장,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사장, 삼성물산 사장		
경제 사범	金敏植	부당 이득 취득으로 기소	-	-
	芮興洙	배임, 횡령으로 소환	-	-
	朴永敏⊙※	대동정기(주) 대표, 1967년 부동산 사기 혐의 구속		
의료 (한국)	朴昌薰	서울약대 · 치대 후원회장	-	-
	李庚鳳	조선약제사회 부위원장	-	-
의료 (일본)	柳樂達見	東京치대 교수, 大阪치대 교수, 京都府치과의사회 명예회원		
법조 법조	李弘鍾	조선변호사회 회장	-	-
	楊潤植	판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분야	이름	해방 후~한국전쟁 전	한국전쟁 후~장면정권	박정희 정권 이후
문화 문화	李斗用	市公館 관장	-	-
	金宗亮	≪한성일보≫, ≪세계일보≫, ≪화교신문≫, ≪군산신문≫ 창간		
체육	鄭商熙※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제16회 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 총감독		

출처: 【부표 1, 2】 1939·1943년 경성부회 당선 의원 이력(일본인, 조선인).

비고: 1. '※'는 항목별 활동의 중복을 의미함. 2. '◉'는 반민특위의 조사를 받았음을 의미함. 3. 이들 외에 全富一은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가 한 달 만에 석방되었고, 曹秉相은 반민특위 재판을 통해 7년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가 1950년 보석으로 출감함.

먼저 '⊙'로 표기한 반민특위 관련자를 살펴보면, 양재창, 성원경, 김흥배(金興培), 박영민(朴永敏), 전부일, 조병상이 친일 협력 혐의에 대한 조사·재판을 받았다. 이 중 전부일, 조병상은 조사·재판 종료 이후 특별한 행적이 없지만, 이외 양재창, 성원경, 김흥배, 박영민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했다. 이들을 포함해 해방 후의 경력을 정치(서울/한국/일본), 경제, 의료(한국/일본), 법조, 문화, 체육의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① 서울에서 정·동연합회 활동을 한 인물은 5명으로, 이 중 4명이 한국전쟁 이전에 활동했고 나머지 1명(양재창)은 반민특위 조사 등으로 인해 한국전쟁 이전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전후에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51]

②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치에 참여한 인물은 6명으로, 이 중 3명은 한국전쟁 이전의 정치운동에 관여했고 나머지 3명은 한국전쟁 전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1931년과 1939년 선거운동 부정으로 인해 선거규칙위반 처분을 받았던 임흥순이 이승만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뒤 '3·15 선거 부정선거자금 유포'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은 사례는[52] 식민지기 지방의회 경험의 '부정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라 할 수 있다.

51) 식민지기 정총대와 해방 후 정·동연합회 인물·활동의 연속과 단절에 대해서는 김영미, ≪동원과 저항 : 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푸른역사, 2009 참고.

52) 〈그저 부끄럽다 ◇任興淳最後陳述〉 ≪경향신문≫ 1961년 8월 12일.

③ 이어서 일본인 중에는 하마다가 고향에서 공선촌장(公選村長)으로 당선된 사례 1건 외에는 정치 경력을 지속한 인물은 찾을 수 없다.

④ 경제 분야에서는 14명의 활동 내역을 찾을 수 있다. 이 중 9명이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활동했는데, 양재창, 박영근, 박주명(朴疇明) 등은 경제인단체 및 개별 산업조합의 대표로 참여해 식민지기의 명망을 다소간 유지했다. 반면 김민식, 예흥수는 부당 이득 취득 및 배임·횡령으로 권위를 실추했다. 이외에 한국전쟁 이후까지 활동을 지속한 인물은 5명으로, 이 중 동일방직(주) 및 한국외대를 설립한 김흥배와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및 삼성물산 사장을 역임한 정상희(鄭商熙)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두었다.

⑤ 이외에 의료 분야에서는 박창훈(朴昌薰), 이경봉(李庚鳳)이 한국전쟁 이전까지 활동했고, 일본인 나기라 타쓰미(柳樂達見)가 귀국 후 도쿄치대(東京歯大) 교수, 오사카치대(大阪歯大) 교수 등을 역임하며 활동을 지속했다.

⑥ 법조계에서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이홍종(李弘鍾)이, 한국전쟁 이후에는 양윤식이 각각 대한(조선)변호사협회장을 지냈다.

⑦ 문화계에서는 이두용(李斗用)이 서울시 시공관 초대 관장을 역임했고, 김종량(金宗亮)이 ≪한성일보≫, ≪세계일보≫ 등의 신문을 창간했다. ⑧ 체육계에서는 정상희가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1939·1943년 경성부회 당선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해방 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일부 기간에는 식민지기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지위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경제적 위치 역시 활동 내역은 한국전쟁 이전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쟁 이후 자산 자체의 유지·망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조·문화·체육 등 전문 분야에서는 일부 인물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그 사회적 지위를 유지·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1939년 선거부정사건 관련 임흥순의 동정에 대한 경찰 보고문서 표지

출처: ≪思想에 關한 情報綴≫ 4, 1939년 8월 16일.



<그림 4> 1961년 3·15 부정선거 관련 재판 당시 임흥순의 변론을 보도한 신문기사

출처: ≪경향신문≫ 1961년 7월 30일.

4. 맺음말

전시체제하에서 1939년 이후 경성부회의원 선거는 이전에 비해 더욱 강한 관의 개입을 받았다. 특히, 1943년 추천제 선거로의 전환에 따라 사실상 부(府)에서 후보를 선정했기 때문에, 전시경제 및 식민지 통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수의 인물이 부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일상적인 회의 역시 부의 운영과는 무관한 전승 축전 등의 시국 관련 의제가 다수 제출되었으며, 개최 빈도 또한 1940년 당시 연간 19일에서 1944년에는 연간 9일로 감소되었다. 선거제도와 개최 일정만을 중심으로 보면 1939년 이후 경성부회의 의정기구로서의 역할은 점차 축

소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성부회'의 의정기구로서의 기능 약화로 인해 '경성부회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939년 이후의 당선자 이력을 보면 이미 3~4회 동안 의원직을 역임한 중진의원층이 형성되어 의회 석상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1943년 추천제선거하에서 후보 추천위원에 포함되기도 했다. 또한 1943년에는 경성부 산하에 부정조사회가 조직되었고, 부회의원 하마다를 필두로 모든 부회의원이 조사 위원으로 편입되었다. 자료의 한계로 조사회의 자세한 활동은 규명하기 어렵지만, 남아있는 자료에 따르면 공개 의정기관인 경성부회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비공개 위원회인 부정조사회를 기반으로 경성부회 의원이 부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유지·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체제기 경성부회의원의 해방 후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으로는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한정된 기간 동안은 식민지기에 쌓아올린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그 지위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특히, 1939년 부정선거운동 문제로 의원직을 사임했던 임흥순이 이승만정권기 부정선거를 통해 서울시장까지 당선된 사례는 식민지기 지방의회 경험의 '부정적' 연속성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부표 1】 1939 · 1943년 경성부회 당선 일본인 의원 이력

이름	39	43	주요 이력
加納一米	○	○	(1890~?) 조선으로 이주 후 18년간 언론계 종사. 1936년 朝鮮經濟新聞社 社長.
加藤好晴	○	○	경찰로 37년간 봉직. 安東領事館 서장, 仁川 및 東大門 서장을 거쳐 1930년 퇴직. 1931년~1941년까지 警務局 외사과 및 보안과 촉탁. 東部敎化委員 역임.
間島梅吉	○		(1876~?) 1913년 이후 경성에서 상업 경영. 共濟無盡株式會社감사역, 희락관 주인, 남산정 고문, 京城神社 상담역, 日活館 주인.
高井建次		○	경성 마루비시(マルビシ)商會 점주. 고무 제품 취급. 1921년 전국상업회의소연합회 조선 대표로 활동. 1941년 사회교화공로자로 경기도청에서 표창.
古川敬介	○		(1884~?) 1908년 統監府 鐵道監理局 입사, 1910년 12월 朝鮮總督府 鐵道局 書記. 南滿洲鐵道株式會社 京城管理局 經理課 근무. 도서관장.
高澤藤子		○	(1886~?) 1917년 鷺梁津消防組頭, 北面協議員. 鷺梁津町總代, 鷺梁津水防團長. 鷺梁津柳行李製造所 社長, 京城杞柳工場組合長.
關根金作	○		(1878~?) 陸軍獸醫學校 수학. 1915년 조선에 건너와 가구제조, 고물상 영업. 和洋가구 제조 도소매, 鮮滿운수주식회사 감사역.
廣綱德太郎	○	○	(1779~?) 1911년 조선에 건너옴. 1924년 總督府 印刷局에서 봉직, 1923년 書籍會社가 조직되어 사원이 됨. 1930년 元町總代. 1931년 龍山各町總代會常番幹事長,
國友尙謙	○		(1876~?) 1905년 외무성 경부 경성 영사관 경찰서 담당으로 조선에 옴. 1909년 통감부 警視로 승진, 1917년 경무총감부 경무과장 취임. 1927년 고등관 2등으로 승임한 후 같은 해 12월 퇴직.
近藤秋次郎		○	(1893~?) 1914년 9월 조선에 옴. 초등학교 교원 재직. 朝鮮蠶絲株式會社 창립, 토지경영 사업을 운영. 朝鮮砂利株式會社 理事. 町會總代 역임.
南條晟	○	○	(1890~?) 熊本縣敎育講習所 졸업. 1918년 朝鮮總督府 巡査로 취업해 조선에 옴. 總督府 道警部(京畿道保安課 근무), 警察官講習所 助敎授 兼 警部 역임. 1926년 朝鮮辯護士試驗에 합격. 1936년 12월 退官하며 변호사 개업.
內田鯤五郎	○	○	(1888~?) 1912년 朝鮮總督府 平壤無煙炭鑛 技師로 조선에 옴. 無煙炭田 조사 및 기타 업무에 종사. 1918년 三井鑛山會社로 이직, 東京本店으로 이동. 1922년 조선 석탄매장량조사사업을 위해 主任技師로 임명, 다시 조선으로 옴. 1931년 퇴관. 특수광물 광업주.
壹岐幸義	○		(1897~?) 總督府 醫員으로 근무. 郵船株式會社 社醫가 되어 3년간 歐美에 체재. 귀국 후 다시 總督府議院에 취직. 1926년 퇴직. 小兒科醫院 개업.
大梅健治	○		(1885~?) 1903년 조선에 건너와 사료상을 운영. 1907~1911년 龍山 濱町 위생조합장 역임. 西大門金融組合 평의원 및 감사 역임. 西部方面委員 顧問, 橋南町會 相談役.
藤崎謙祐		○	요리점 운영. 西大門警防團 단장.
鈴木文助	○	○	1920년 永登浦에 京城窯業株式會社를 창립. 1933년 京城煉瓦會社 창립. 영등포의 조선인 보통학교 등에 자금 기부, 부근에 文化村을 건설. 永登浦面 및 北面 面協會員 중임.
柳樂達見		○	(1889~1967) 1914년 總督府醫院 醫官 취임. 1922년 경성치과의학교 신설, 교장 겸임. 경성제국대학 醫科講師 겸임.
栗本正隆	○	○	(1883~?) 機械工具 상점주. 龍山信用組合 理事. 親和會 계통 各般에 관여. 鐵道局에서 오래 근무. 1934년 漢江通 第3區 總代 취임.

이름	39	43	주요 이력
梅林卯三郎	○	○	(1881~?) 東京帝國大學 법학부 졸업. 변호사 개업. 慶南金融組合聯合會 이사장 역임.
木下榮	○		(1887~?) 東京外國語學校 영어과 졸업, 京城專修學校에서 러시아어 수학. 1911년 志岐組에 입사, 大連支店, 京城支店, 東京本店 등에서 근무. 1921년 朝鮮天然氷株式會社 지배인 취임. 1931년 志岐工業株式會社 및 朝鮮天然氷株式會社 理事로 취임. 같은 해부터 明水臺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 경영, 이상촌 건설. 명수대 촌장격으로 1938년 명수회장 추대. 고미술 수집가. 黑石町總代.
武田知星	○		(1887~1944) 1908년 東京府師範學校 졸업. 1911년 大邱尋常高等小學校 訓導로 임명. 이후 京城府 元町公立尋常高等小學校, 日出小學校, 西大門尋常高等小學校 訓導로 근무. 東大門公立尋常小學校 교장 역임. 1929년 조선총독부 道屬 겸 道視學 임명. 1933년 京城男子公立高等小學 校長 취임.
寶諸彌七	○		(1875~?) 1910년 조선에 건너와 경찰 전문 분야에서 활동, 조선의 치안 관련해 활동. 퇴직 후 京城 太平通에 司法書士사무소 개소.
不破三平	○		(1876~?) 1899년부터 橫濱稅監吏, 臺灣稅關 등에서 근무. 1907년 조선에 건너와 總稅務 司廳과 總督府 度支部 稅關課에서 근무. 1919년 퇴관. 北鮮開拓株式會社 專務取締, 1926년 興業無盡會社 지배인으로 취임. 1935년 漢芝面協議員 당선.
濱田虎熊	○		(1890~?) 소학교 졸업. 1913년 普通文官試驗 합격, 京畿道 書記, 判任官으로 總督府 內務課 근무. 1921년 東京辯護士試驗 합격, 변호사사무소 개업. 경기도회 및 경성부회 의원 역임. 1943년 경성부 이사 취임. 1947년~1951년 일본 鹿児島縣 今和泉村 公選村長.
山口友造		○	(1883~?) 小學校 졸업. 私立日本醫學校에서 修學. 1910년 東京에서 臨時醫術實地試驗에 합격, 의사면허증 취득. 1911년~1918년 朝鮮에 와 漢城衛生會立順化院에 근무. 사직 후 京城 本町 5丁目에 개인병원 개업. 檢疫醫, 警察醫, 校醫 등으로 근무.
山崎廣龜		○	약종업. 京城藥業組合 代表. 1935년 사상범보호단체 昭道會 구성에 임원으로 참여.
山中大吉	○	○	(1901~?) 1922년 中央大學 法科 졸업. 1923년 조선에 건너와 京城에서 변호사 개업. 京城YMCA 이사, 平田育愛會 이사 등을 역임.
杉市郎平	○		(1869~?) 동경법학원에서 법률학 연구. 소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1897년 臺灣憲兵隊附로 전직, 헌병분대장으로 근무. 1899년 퇴직. 帝國時報 주간으로 활동. 1902년 일본 중의원 의원에 입후보, 낙선. 1905년 韓國駐箚憲兵隊附道方面 헌병대장, 1905년 인천 헌병분대장. 1906년 소집해제 후 日韓인쇄회사 취체역으로 취임. 이후 동양영달 전무, 잡지 ≪新半島≫ 사장. 3 · 1운동 이후 東亞共昌會 조직, 내선융화운동. 1924~1925년 同民會 상임간사. 憲友會 幹事, 黃金町 6丁目 總代. 1936년 빈민자제 대상 보통교육 활동.
森安敏暢	○	○	(1891~?) 총독부 警官講習所 교수. 퇴관 후 변호사 활동.
上杉直三郎	○	○	(1886~?) 京城府 서무과장, 京城育兒院長, 도서관장, 직업소개소장 역임. 퇴직 후 〈京城日報社〉 高陽支局長 활동.
上原誠治	○		(1894~?) 1917년 조선으로 와 春川憲兵隊 근무. 1919년 시베리아 파견. 1921년 퇴직 후 경성부 文書課, 三井物産 근무. 1934년 이후 담배, 우표, 수입인지賣捌業에 종사.

이름	39	43	주요 이력
石橋良祐		○	1936년 극장 明治座 설립. 1942년 社團法人 朝鮮映畵配給社 이사 취임.
石森久彌		○	(1891~?) 明治大學 商科 修學, 外國語學校 夜學部 修學. 1913년 조선에 와 〈朝鮮公論社〉 입사. 1921년 編輯長 승진. 이후 〈朝鮮新聞社〉 社會部長, 經濟部長을 거쳐 專務理事 兼 主筆로 취임. 1925년 牧山耕藏에게 朝鮮公論社를 물려받아 경영. 1933년 朝鮮新聞社 取締役 副社長 兼 長崎日日新聞 取締役에 취임, 朝鮮公論社 경영을 金思演에게 위촉. 중앙조선협회 관계.
石原憲一	○	○	(1890~?) 1910년 부친 石原磯次郎과 함께 龍山으로 이주, 利川郡에서 石原農場을 경영. 1917년 龍山信用組合 상무이사로 근무. 1918년 龍山青年會 회장 역임. 1919년 普通選擧促進運動을 위해 일본으로 귀국. 1921년~1931년 ≪京城日日新聞≫ 정치부장, 편집장, 주필 역임. 퇴직 후 농장 경영.
石川倦造	○	○	裕豊商會(合資) 대표. 1938년 총독부 물가전문위원회 위원. 1939년 製革販賣會社 대표 취임. 경기도회의원, 경성부회의원 역임.
小川勝平	○	○	(1876~?) 1903년 明治大學法科 졸업. 日本大學高等師範科 졸업.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종군, 韓國駐箚軍司令部屬 활동. 1906년 제대 후 경성에서 변호사 개업. 衛生組合長, 商業會議所評議員, 民團議員 역임. 이후 광업 경영. 京城劇場 取締役, 京城肥料株式會社 取締役.
小坂貞雄	○		(?~1942) 〈長崎新聞社〉 근무, 1934년 ≪(外人に觀たる)朝鮮外交秘話≫(朝鮮外交秘話出版會, 1934.) 출판. 1937년 〈朝鮮新聞〉 外報部長 활동, 외교, 국제 정세 관련 집필. 1940년 社團法人 朝鮮電氣協會 이사 취임.
松原圖南	○		(1898~?) 1928~1941년 京城蓬萊町郵便所長. 1937년 봉래정 정총대 취임.
植田群治	○		민요작가. 필명 植田国境子. 1914년 '白頭山節'을 작사, 작곡. 일본 및 조선에서 대유행. 20년간 유랑 생활하며 민요 및 가요음반 제작에 참여.
阿部喜之助		○	松本組(株) 이사 겸 경성지점장 역임.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재임 중 1931년 경성토목담합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처벌. 이후 日本電球製作所(株) 대표, 朝鮮내셔널電球(株) 대표 역임.
野附勤一郎	○	○	(1884~?) 東京帝國大學 工科大學 採鑛冶金學科 졸업. 波佐見鑛山株式會社 技師, 1916년 合名會社 鈴木商店 技, 1927년 퇴직. 이후 朝鮮炭業株式會社 取締役 및 朝鮮鑛業會 理事 역임.
伊達四雄		○	(1886~?) 東京帝國大學 法科 졸업. 兵庫縣 內務部 근무 후 1921년 조선총독부 이사관에 임명. 이후 內務部 地方課 겸 審査課長, 충청남도 경찰부장, 평안남도 경찰부장, 경상남도 경찰부장, 평안북도 경찰부장, 경상북도 內務部長 역임. 1933년 경성부윤에 임명. 1936년 慶尙北道知事 취임. 이후 퇴관해 京城土木建築業協會 會長 역임.
伊藤東作	○		골동, 만년필상, 악기상 운영. 1936년 本町 2丁目에 식당 개업.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1942년 아들 伊藤寅三이 전사. 1945년 軍人援護會 朝鮮本部 理事.

이름	39	43	주요 이력
伊藤奉圭	○	○	1928~1931년 조선총독부 遞信吏員養成所 囑託 근무. 1941년 共榮商事(株) 대표, 有限會社 五盟商工社 임원. 교육사업.
伊藤壽一		○	(1895~?) 부친 伊藤大次郎이 1909년 구한국정부 商工部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조선에 건너 옴. 1926년 伊藤商行 專務取締役 취임. 이후 朝鮮計器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朝鮮砂利株式會社 代表取締役. 京城商工會議所 議員, 新龍山金融組合 監事, 朝鮮工業協會 監事.
庄司秀雄	○		(1887~1942) 1910년 宮城縣師範學校 졸업. 교장 재직 후 1924년 朝鮮總督府屬이 되어 조선에 옴. 道視學官 역임 후 1932년 퇴관. 동경제국지방행정학회 비서과장 겸 서무과장 역임. 조선대아세아협회 상임간사. 大和町 23丁目 總代.
井原荒太郎		○	직물상. 국민협회 및 大日本興亞會 임원.
中馬越之助	○		1905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朝鮮臨時派遣隊 부관, 龍山 第20師團 司令部附로 근무. 1924년 예비역 편제 후 京城高等工業學校 生徒監. 朝鮮專門學校 體育聯盟, 朝鮮體育協會 간부. 帝國在鄕軍人會 京城聯合分會 常任幹事. 京城國防義會 창설. ≪國防≫ 편집국장. 경성부립도서관장 역임. 삼판통 정회 총대.
中尾豊	○		1921~1933년 경성일출공립심상소학교, 용산보통학교, 주교보통학교 훈도 및 교장 역임. 八木權商店(合資) 임원.
中村郁一	○	○	(1880~?) 1904년 日新尋常小學校 訓導 겸 神崎郡 西鄕尋常小學校長. 1908년 佐賀縣屬을 거쳐, 1908년 조선에 와 京城地方裁判所 서기, 統監府司法廳屬, 朝鮮總督府法務局 근무. 1921년 퇴관 후 京城證券信託株式會社 庶務主任. 1924년 京城柱式現物取引市場으로 전근. 1926년부터 신문판매업 시작, 町田新聞舖 郁文堂을 경영.
曾我勉	○		(1864~?) 육군 군익 복무 후 1893년 조선에 옴. 1896년 경성거류민회 의원 당선. 1897년 경성일본인상업회의소 의원 당선. 경성거류민단장, 경성일본인상업회의소 회두. 1912년~1921년 京城府 本町 3丁目 郵便所長으로 근무.
村岡太之助	○		(1893~?) 滿洲 旅順 東洋協會語學校에서 수학. 朝鮮에 건너와 商業會議所 文書課에서 근무. 福德無盡會社 창립에 참가, 社長 馬場鍈를 보좌. 1937년 朝鮮建物株式會社 常務 취임, 營業部長 겸임.
太宰明		○	(1887~?) 關西大學 졸업. 1917년 判檢事登用試驗 合格. 1918년 司法官試補로 京城地方法院 근무. 1919년 京城地方法院 判事 취임. 이후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근무 후 1927년 퇴직. 변호사 개업.
播本恒太郎	○		(1876~?) 1905년 조선으로 와 京城 本町에서 인쇄업 및 紙商 개업. 1920년 大海堂인쇄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 1929년 동양오프셋인쇄주식회사 설립. 京城倉庫金融株式會 社取締役, 京城倭城金融組合 감사, 滿洲옵셋印刷株式會社 取締役. 大和町 總代.
戶谷正路		○	(1886~?) 1910년 警務總監部에 들어가 警務課 근무. 1913년 巡査部長. 1914년 文官試驗 합격. 1916년 警部가 되어 大邱警察署 근무, 1917년 永川警察署長, 1919년 慶尙北道 警務課 근무. 1929년 道警視로 승진, 全羅北道 警務課長, 1931년 慶尙北道 警務課長, 1933년 京城 本町警察署長, 1934년 平壤警察署長 역임.

【부표 2】 1939 · 1943년 경성부회 당선 조선인 의원 이력

이름	39	43	주요 이력
姜永皓	○		(1890~?) 1908년 私立化成學校 졸업, 1912년 韓英書院 졸업. 1913년 朝鮮總督府 土地調査局 사무원 및 기술원양성소 졸업. 臨時土地調査局 기술자, 林野조사원, 郡 地籍事務技術員 역임. 私立化成學校 교원.
康容杓	○		(1890~?) 1911년 私立 普成高等普通學校 졸업. 1921년 경성 시내와 마포 사이의 전차요금 통일 기성회 회장. 1923년 마포공립보통학교 후원회, 1926년 西江青年會 참여. 高陽郡 學校費評議員, 高陽郡 龍江面協議員 역임. 賀中町 · 上水溢町 · 下水溢町總代. 養正高等普通學校 서무주임. 해방 후 1946년 마포구 창천동 동회장. 한국전쟁 당시 납북.
姜昌熙	○	○	(1894~?) 善隣商業學校 졸업. 朝鮮總督府 鐵道局 運輸委員, 朝鮮運輸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朝鮮運送株式會社 取締役. 溪洞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朝鮮鐵道協會 評議員, 西部敎化區 常任委員, 京城國防議會 評議員, 京城府 水道調査委員, 京城府 財源調査委員. 西部 제1구 정회 총대.
金奎應	○		(1889~?) 明治大學 法科 졸업, 中央釀造株式會社 사장, 충북 괴산면장, 忠淸北道 評議員. 齋桂 町會 총대.
金敏植	○		東星商業 졸업, 東京 유학 중 관동대진재로 인해 경성으로 돌아와 독학. 이후 1930년까지 동아일보 始興支局 기자. 1935년 기자 재취직. 1937년 경기도회의원 당선. 정총대, 경방단장 역임. 영등포 지역에서 進興學校와 永彰學校를 개설. 1945년 6월 박춘금, 이광수, 김동진과 함께 大義黨을 결성. 1946년 永彰學校 매매 과정에서의 회계분식 혐의, 종연방적 소재 廣木을 매매하며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
金應純	○		龍山에서 목재상을 운영. 1919년 이후 龍山勸業(株) 이사, 京城府木材市賣(合資) 대표, 太平商行(合資) 대표로 활동. 청년단, 방면위원.
金宗亮	○		(1901~1962) 1928년 東京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1929년 朝鮮工學會 간사, 1935년 在京基督敎有志會 위원 역임. 경성목재점 대표로 주택경영회사를 운영하며 삼청동, 계동, 가회동 등에서 대형필지와 임야를 매입해 작은 필지로 분할한 뒤 개량한옥을 건설해 판매.
金泰濮	○	○	(1888~1947) 1909년 早稻田大學 경제과 졸업. 관직에 진출, 통감부 통신관리국 통신주사. 금융조합에서 근무. 이후 경성방직주식회사 재직. 京忠버스(株) 이사, 中央酒造(株) 이사, 豊林鐵工所(株) 이사.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 면협의회원, 경기도회의원, 1942~1945년 총독부 중추원 참의.
金興培		○	(1914~1987) 여주보통학교를 졸업. 1932년 金興商會 운영. 1942년 동양철강주식회사 설립. 野田被服 사장. 丹陽郡, 堤川郡 등에서 광업 투자. 東洋林業株式會社 임원. 1949년 한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설립, 반민특위에 연행 조사를 받았으나 특위 해체. 1952년 동일방직공업주식회사, 1954년 한국중앙무진주식회사, 1956년 한국신탁주식회사 설립. 1952년 재단법인 동원육영회를 설립, 1954년 한국외국어대학 설립. 198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서훈.

이름	39	43	주요 이력
梁在昶	○	○	(1885~1968) 대한제국 관료. 1910년 이후 경성부, 경기도 서기. 1920년대 초 경기 부천군, 용인군 군수 역임. 퇴임 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이사, 선만토지광산브로커주식회사 사장, 경성중앙번영회 이사.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음. 중추원 참의.
朴勝城	○	○	사법서사. 1935년 이후 東光生絲(株) 이사, 東海農業(株) 이사, 千代田그릴(株) 감사, 株式會社ちよだ 임원, 有限會社 京城司友會 임원. 해방 후 1945~1946년 서울정연합회, 종로구정연합회 임원.
朴寧根		○	(1895~?) 明治大學 法學科 硏究班　수료. 1925년 총독부 철도국 서기, 총독부 내무국 근무. 경남 사천군 관임관을 끝으로 퇴관. 경남 함양군, 거창군에 88만 평 규모의 광산 경영. 東海產業株式會社 임원,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株) 대주주, 京仁企業(株) 대주주. 해방 후 1945년 12월 대한경제보국회 발족 당시 위원 역임. 1946년 5월 조선공업구락부 설립 당시 평의원회장, 9월 조선산업건설협의회 부회장.
朴永敏		○	(1915~?) 대지주 출신. 1943년 京城東大門貸家組合 이사. 東亞學院長, 청년단 崇仁分隊長, 경방단 부단장. 해방 후 大東精機株式會社 社長. 1949년 반민특위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1961년 6월 중앙광업회사 대표로서 백미 100가마를 細民 구제용으로 군사회계에 기탁. 1967년 1억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
朴元信	○		(1889~?) 1903년 私立 漢南學校 高等科와 私立 徽文義塾中學科를 거쳐, 1913년 朝鮮總督府 醫學校 졸업. 같은 해 총독부 관비유학생이 되어 京都帝大 醫科大學 選科 졸업. 이후 조선으로 귀국해 의사로 일함. 面協議會員, 學務委員, 高陽郡 漢芝面長, 私立 漢南學校長.
朴疇明	○	○	(1899~?) 京城工業專門學校 중도 퇴학. 1921년부터 주조업에 종사, 京城麵組合長, 京城朝鮮酒 양조조합장, 동대문금융조합 평의원. 孝悌町總代, 東部方面委員, 忠信學院 顧問, 京城東大門金融組合 評議員. 朝鮮麵子株式會社 取締役. 해방 후 대한양조협회 이사장.
朴昌薰		○	(1897~1951) 京城醫學專門學校 卒業. 日本 京都帝大醫學部 外科教室에서 硏究, 1925년 논문 통과 의학박사 학위 수여. 中央基靑 夜間事務, 勞働夜學校 高等科 講師, 總督府醫院 外科勤務, 京城醫專 講師, 京城醫專 助教授, 京城世醫專 講師, ≪동아일보≫ 科學賞 授賞. 1933년 樂園洞에 外科肛門病科醫院 개업. 이후 朝鮮被服工業, 朝鮮工營會社, 興亞物產會社 등 取締役會長 역임. 고미술품 수장가.
成元慶	○		(1894~1975) 1910년 융희중학교 졸업. 1918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中央大學 정치경제학과 졸업. 조선으로 돌아와 1921년 주식회사 호서은행 천안지점에 은행원으로 취직, 대주주, 지배인을 거쳐 퇴직. 이후 동아일보사에 취직, 취체역 및 이사 역임. 경기도 수원 및 충남 공주에 170만 평에 광업권 설정. 1936년 이후 동일은행(주) 상무이사, 조선중앙일보사(주) 이사, 조선금광(주) 이사, 朝鮮被服工業(株) 감사. 충청남도회의원, 천안면협의회원, 직산면협의회원. 중추원 참의. 해방 후 1949년 충남 반민특위 불구속 취조. 이후 3, 5대 민의원 당선. 민주당 중앙상무위원회장, 대한농지개발영단 이사장 역임.

이름	39	43	주요 이력
蘇完圭	○		北京, 東京 등을 돌아다니며 문학 활동. 변호사로 전직. 1938년 경성변호사회 초대 임원으로 참여. 해방 후 1945년 12월 대한독립애국금헌성회 발기인. 한국전쟁 당시 납북.
安錠遠		○	(1902~?) 韓一銀行 근무. 일본 내각 척무차관 櫻井兵五朗의 협조로 자본금 500만 원을 얻어 興亞鑛業株式會社 설립. 1933년 崔潤錫商店(株) 전무이사, 1935~1939년 大丸商事(合資) 대주주, 1940년 朝鮮興産貿易(株) 대표, 1942년 朝鮮興産貿易(株) 대표. 1937년 이후 平昌郡, 金化郡, 洪川郡, 延白郡, 忠州郡에 광업권 설정. 해방 후 1946년 조선광업회 인계이사, 서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취체역사장.
楊潤植	○		(1902~1977) 1927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 변호사 개업. 1934년 경성 조선인 변호사회 부회장 역임. 여운형, 안창호, 광주학생운동 관련자를 변호. 해방 후 미군정청에서 경성공소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나 3개월 만에 사퇴. 정부 수립 후 대법관 취임 교섭을 받았으나 거절. 이후 변호사로 활동. 1970년 서울변호사회장, 1971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임.
芮興洙	○	○	三興商會(株) 대표, 模範賣藥商會(株) 이사, 廣興(合資) 대표, 太平古物糶(株) 대표, 中央燃料(株) 이사. 용달업. 해방 후 1947년 중앙청과물회사 대표 근무 중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소환.
尹琦爀		○	(1914~?) 日本大學 졸업. 1932년 중앙일보 입사, 1933년 퇴사. 왕십리에서 裕常精米所와 미곡상, 포목 · 잡화점, 마차업 등을 경영. 朝鮮厚織工業(株) 이사, 京城織物小賣商業組合 임원. 上街十里町, 東町會 總代.
李庚鳳	○	○	(1902~?) 京城藥學專門 졸업. 濟生堂(제약, 판매업) 경영. 京城 藥劑士會 會副長, 高麗藥劑士會 會長. 해방 후 1945년 10월 조선약품공업협회 결성 시 부위원장. 1948년 조선약제사회 부위원장.
李斗用	○	○	(1891~?) 官立 仁川實業學校 및 土地調査局 技術員養成所 졸업. 臨時土地調査局 技手가 되어, 京畿道郡屬으로 임명. 1922년 京城興業信託株式會社 지배인으로 임명. 時代日報 創立委員, 京城紡織株式會社 社員, 中央商工株式會社 支配人으로 활동. 경기도회의원, 학교평의원, 면협의회원. 1936년 道林町 第1區 總代. 영등포 공업학교 유치 등을 운동. 해방 후 市公館 초대 관장. 1950년 문교서적주식회사 지배인 임명. 1959년 大韓文敎書籍株式會社 부사장.
李敏求		○	(1905~?) 東京帝大 經濟學部 졸업. 朝鮮銀行, 平安北道廳, 京畿道廳, 京城稅務署 근무. 朝鮮土建協會 監事, 義林鑛業會社 監事, 朝鮮工營株式會社 창립자 겸 專務取締役. 해방 후 朝鮮工營株式會社 회장. 北三化學公社 고문, 朝鮮電業株式會社 常務理事 역임.
李相殷	○		광업가. 해방 후 正工社鍍金工業 대표, 新韓醬油工場 대표. 1948년 용산구 동 연합회장.
李信龜	○		(1897~?) 1917년 明治大學 제1부 政經科大學 豫科 졸업, 1920년 明治大學 政經科 2년 수료. 1921년~1924년 定州 五山高等普通學校 교원. 1925년~1927년 京城協成實業學校 교원. 城北里區長, 崇仁面協議會員, 城北町總代. 해방 후 1945년 11월 大谷여자상업학교(舊 向上여자실업학교) 재단을 인수, 교장으로 취임.

이름	39	43	주요 이력
李源祥	○		(1901~?)　1922년 上一公立普通學校 訓導로 임명. 惠化麻浦公立普通學校 훈도를 거쳐 養英普通學校 校長 재직. 이후 광업 투자. 新水町 舊水町總代.
李在元	○		변호사. 경성변호사회 임원. 저작으로 ≪朝鮮小作法槪論≫(以文堂發行, 1934.) 집필.
李定宰		○	(1898~?) 京城高商 졸업. 東一銀行 입사, 동대문 지점 지배인으로 퇴직. 漢城製綿株式會社, 永保合名會社, 朝鮮絹織株式會社, 東光製絲株式會社, 東海農業株式會社, 京城鍾路貸家組合, 東邦織物販賣株式會社, 永和產業株式會社, 株式會社豊林鐵工所에서 임원 역임. 해방 후 東亞醫藥業會社 사장,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대한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경성전기주식회사 감사역 역임.
李昌業	○	○	(1896~?) 朝鮮步兵隊 상등병, 京畿道 警官으로 근무. 1921년 總督府로부터 優良青年團長으로 발탁되어 九州 및 慶南지방 농업 시찰. 1923년에는 東京府知事의 소개로 일본의 近畿 농촌 및 노동 상황을 시찰. 1933년 이후 城東發展會 副會長, 淸凉里矯風會長 역임. 咸北 노동자 100명을 인솔해 朱乙, 淸津, 慶源 등지에서 1년간 철도 공사에 종사. 1936년 淸凉町荷主運輸組 대표. 해방 후 1946년 신한공사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재불하 받음. 신한운수사 대표.
李弘鍾	○	○	(1891~?) 京城專修學校 졸업. 1913년 총독부 판사로 임명되어 慶州, 全州, 開城, 京城, 平壤 法院 判事 역임. 1923년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 光化門金融組合, 財團法人省齋育英會 임원 역임. 信川郡에서 광업 투자. 해방 후 1945년 12월 경성변호사회(서울변호사회), 조선변호사회 회장 당선. 1947년 조선인권옹호연맹 위원장.
任興淳 ※(사퇴)	○		(1895~1971) 普成高等普通學校 졸업. 경기도 양주에 농장 및 목장 경영. 함경남도 북청에서 광산 개발. 1931, 1939년 경성부회의원 선거규칙위반 처벌. 1941년 성동 방면사업 후원회회장. 1941년 유락정회총대. 해방 후 서울 城東區 洞聯合會 會長, ≪自由新聞≫ 경영.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당선. 1952년 5 · 25 政治波動時 59일간 구금. 1953년 國會 國防委員長, 1953년 휴전대책 특별위원장.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1959년~1960년 서울특별시 市長(특별시장 1급). 3.15 부정선거 당시 부정선거자금 유포 혐의로 1961년 8월 징역 15년 구형. 1965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낙마. 1971년 노환으로 사망.
全富一		○	(1899~1964) 日本大學 법과 졸업. 1923년 北星會의 잡지 ≪斥候隊≫의 광고료 횡령하여 검사국에 기소. 1927년 신간회 동경지회 간사. 1936년 경성스프링제작소 이사, 1939년 일부(一富)농장 대표, 1942년 보인당제약(普仁堂製藥) 이사. 평창, 옥천, 단천군 등에서 광업 투자. 1937 이후 국민협회 이사, 이사장으로 활동. 해방 후 1946년 경성상공회의소 설립 발기인.　1949년 3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가 4월 석방.
鄭商熙		○	(1907~1981) 明治大學校 법학부 졸업. 총독부 鑛山課 근무. 베를린 올림픽 시찰원으로 파견. 총독부 사회교육과, 일본육상경기연맹 이사. 조선체육진흥회 자전거협회 단장. 1940년 大連 滿洲機械油工業株式會社에 재직. 해방 후 1946년 올림픽대책위원회, 조선체육회에 참여. 삼호방적 · 삼호무역 부사장, 동화통신사 부사장,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장, 삼호방직무역주식회사 회장, 삼성전자 사장, 삼성물산 사장, 동방생명보험 대표이사 역임. 제4대, 제5대 민의원 당선. 대한체육회 이사장,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제2 · 3회 아시아올림픽경기대회 한국대표단 총감독, 제16회 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 총감독.

이름	39	43	주요 이력
曹秉相	○	○	(1891~1978) 선린상업학교 졸업. 여러 상업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1922년 申錫麟과 安藤又三朗의 권유로 同民會에 가입. 1925년 甲子俱樂部 위원으로 참여. 1927~1939년 국민협회에서 총무, 상담역, 상의원으로 활동. 국민협회 기관지 〈민중신문사〉의 부사장 역임. 片倉生命保險會社) 고문, 공흥주식회사 이사, 북청전등주식회사 이사, 한양택시주식회사 사장, 京仁企業(株) 대표, 朝鮮農業(株) 대표, 漢陽택시(株) 사장. 경기도회의원, 중추원 참의.
車相鎬	○	○	(1894~?) 지주 車駿淵의 장남. 1918년 私立 大東法律專門學校 졸업. 1926년 高陽郡農會 特別議員, 1932년 朝鮮總督府 阿峴郵便所長 임명. 1936년 西大門金融組合監査役, 老姑山莊住宅經營株式會社 監査役에 취임. 阿峴町 第1區 總代. 해방 후 1946년 반탁운동 참여. 1947년 재단법인 保隣會 상무이사 취임.
崔白洵	○	○	(1897~?) 강릉 簡易農業 졸업. 1921년 강원도 순사로 임명. 1923년 문관보통시험 합격. 강원도 警部補, 江原道警部. 1928년 조선변호사시험 합격. 1929년 변호사 개업. 辯護士會 常任議員 역임. 普昌運輸株式會社 取締役 副社長. 해방 후 서울변호사회 회장, 1957~1959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韓萬熙	○		(1896~1941) 안국동 대지주 출신. 일본 專修大學 졸업. 漢城銀行 副支配人 역임. 제분업 경영. 1937~1939년 조선총독부직속 경성보호관찰소 囑託保護司 역임. 1941년 病死.
韓相喆	○		(1895~?) 보성전문 商科 졸업.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임원. 京城府學校費評議員, 京城南部方面委員, 京城府方面委員聯合會 理事 역임. 해방 후 1949년 재정금융위원회 위원 선임.
洪必求		○	(1892~?) 漢城外國語學校 日語課科 졸업.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 商業銀行, 海東銀行 근무. 織物商 錦成商會 경영. 대지주 출신으로 貸家業 경영. 금융신탁회사 合成(株) 대주주. 해방 후 1946년 종로구 정총대연합회 임원.

【부표 3】 1941년 경성부회 일반경제 예산부회 의원별 발언 횟수 (단위: 회)

일본인									조선인							
이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森安敏暢	28	4	2	4	3	1	6	8	李昌業	12						12	
濱田虎熊	17	4	5	1	1		4	2	李斗用	8				1		4	3
小坂貞雄	11		3	6			1	1	姜昌熙	6		2	1		1	2	
中村郁一	11		1	1	3		5	1	金敏植	5			2		2	1	
關根金作	10		1		2	2	5		金泰漵	5		3				2	
加藤好晴	9			4	1	1		3	成元慶	5		3			2		
伊藤奉圭	9						7	2	芮興洙	5						5	
上原誠治	8		1	4			2	1	朴元信	4			1			2	1
石原憲一	7		2			5			朴勝城	3				1		2	
廣綱德太郎	5			4		1			李相殷	3						3	
梅林卯三郎	5			1	1		2	1	曹秉相	3				2			1
木下榮	5		1	2			2		韓相喆	3				1		2	
寶諸彌七	5							5	姜永晧	2				1		1	
中尾豊	5		2		2		1		康容杓	2						2	
鈴木文助	4				1	1	2		梁在昶	2						2	
武田知星	4			1			3		李源祥	2				1		1	
不破三平	4		1	1			2		崔白洵	2							2
松原圖南	4				2	1	1		楊潤植	1						1	
栗本正隆	3			3					車相鎬	1				1			
庄司秀雄	3			2				1	金奎應	0							
中馬越之助	3		1		2				金應純	0							
村岡太之助	3				1		1	1	金宗亮	0							
古川敬介	2				2				朴疇明	0							
山中大吉	2			1		1			蘇完圭	0							
杉市郎平	2	1						1	李庚鳳	0							
伊藤東作	2						1	1	李信龜	0							

일본인									조선인								
이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臺岐幸義	1		1						李在元	0							
上杉直三郎	1		1						李弘鍾	0							
石川倦造	1					1			韓萬熙※	0							
加納一米	0								○ 발언 없음: 일본인 11명, 조선인 10명.								
間島梅吉	0																
國友尙謙	0																
南條晟	0																
內田鯤五郎	0																
大梅健治	0																
小川勝平	0																
植田郡治	0																
野附勤一郎	0																
曾我勉	0																
播本恒太郎	0																

출처: 京城府, ≪昭和十六年京城府通常府會及各敎育部會會議錄≫, 1941.

비고: 1. 일자별 발언 횟수를 합산하면 1일은 총 9회, 2일은 총 30회, 3일은 총 39회, 4일은 총 29회, 5일은 총 19회, 6일은 총 87회, 7일은 총 35회임. 2. ※는 1941년 4월 2일에 사망함(<韓萬熙氏別世> ≪매일신보≫ 1941년 4월 3일). 3. 발언횟수는 회의 속기록에서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발언 시간이나 수준과는 관련이 없음.

【부표 4】 1942년 경성부회 일반경제 예산부회 의원별 발언 횟수 (단위: 회)

일본인								조선인							
이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中村郁一	33	8	14	5		3	3	李弘鍾	5		2	1		1	1
森安敏暢	20				1	3	16	李斗用	4			1	2		1
上原誠治	15		1	8	1	3	2	金泰漵	4		1		1		2
木下榮	13		10	1	1		1	李相殷	4			1	2		1
栗本正隆	12		1	3	3	5		姜昌熙	3			1	2		
濱田虎熊	10	1	4	1		2	2	金敏植	3			2	1		
山中大吉	9		3				6	李昌業	2		1			1	
小川勝平	9	2	7					朴元信	2					1	1
加藤好晴	8	1	6			1		朴勝城	2				1		1
鈴木文助	7		1	2			4	曹秉相	2					1	1
關根金作	6		1		1		4	韓相喆	2			1			1
伊藤奉圭	6		1		1	1	3	姜永晧	2				1		1
廣綱德太郎	6	1		3	1		1	康容杓	2			1			1
杉市郎平	6	5	1					成元慶	1		1				
小坂貞雄	3			1		2		梁在昶	1				1		
中馬越之助	3		3					李源祥	1			1			
大梅健治	3	3						車相鎬	1					1	
中尾豊	2			1	1			芮興洙	0						
武田知星	2		1			1		崔白洵	0						
村岡太之助	2				1	1		楊潤植	0						
伊藤東作	2						2	金奎應	0						
石原憲一	1						1	金應純	0						
梅林卯三郎	1			1				金宗亮	0						

일본인								조선인							
이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不破三平	1						1	朴嚞明	0						
松原圖南	1						1	蘇完圭	0						
石川倦造	1						1	李庚鳳	0						
國友尙謙	1						1	李信龜	0						
寶諸彌七	0							李在元	0						
庄司秀雄※	0							韓萬熙※	0						
古川敬介	0							○ 발언 없음: 일본인 13명, 조선인 12명.							
臺岐幸義	0														
上杉直三郎	0														
加納一米	0														
間島梅吉	0														
南條晟	0														
內田鯤五郎	0														
植田郡治	0														
野附勤一郎	0														
曾我勉	0														
播本恒太郎	0														

출처: 京城府, ≪昭和十七年京城府通常府會及各敎育部會會議錄≫, 1942.

비고: 1. 일자별 발언 횟수를 합산하면 1일은 총 21회, 2일은 총 59회, 3일은 총 35회, 4일은 총 22회, 5일은 총 27회, 6일은 총 60회임. 2. ※는 1941년 4월(韓萬熙), 1942년 2월(庄司秀雄) 사망함(<韓萬熙氏別世> ≪매일신보≫ 1941년 4월 3일 ; ≪조선총독부 관보≫ 4567, 1942년 4월 21일). 3. 발언횟수는 회의 속기록에서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발언 시간이나 수준과는 관련이 없음.

【부표 5】 1941·1943년 府政調査會 위원 구성

1) 1941년 부정조사회 위원

일본인			조선인	
이름	현직	前職	이름	현직
矢野桃郎*	京城府尹		尹致昊(伊東致昊)	延禧專門學校長
谷多喜磨	漢江水電社長	경성부윤	韓相龍	朝鮮生命社長
伊達四雄	土木協會長	경성부윤	金季洙	京城紡績社長
松本誠	朝鮮金融組合聯合會會長	경기도지사	李聖根(金川聖)	每日新報社長
林繁藏	朝鮮殖産銀行頭取	총독부재무국장	方奎煥(頭山淸)	京城園藝學園長
上內彦策	東洋拓殖株式會社理事	총독부경무과장	朴勝城(朝野晴義)	現府會議員
小田省吾	淑明女專校長	총독부학무국장	梁在昶(梁川在昶)	現府會議員
矢島杉造	朝鮮米穀會社社長	총독부농림국장		
正岡喜一	京畿道警察部高等課長	경기도고등과장		
松原純一	朝鮮銀行副總裁			
武者鍊三	京城電氣專務			
田川常治郎	龍山工作社長			
御手洗辰雄	京城日報副社長			
杉山茂一	京城府總務部長			
星村宇德	京城府財務部長			
伴格夫	京城府工營部長			
石原磯次郎	京畿道會議員			
杉市郎平	現府會副議長			
加納一米	現府會議員			
小川勝平	現府會議員			
山中大吉	現府會議員			

출처: <新京城建設運動府政調査會陣容決定> ≪매일신보≫ 1941년 10월 29일.
비고: * 표시는 '위원장'을 의미함.

2) 1943년 부정조사회 위원

	현직	이름	현직	이름
공통위원	調査室 主幹	濱田虎熊	中區長	笠井一男
	工營部長	伴格夫	中區副區長	湯山淸一
	財務部長	星村宇德	鐘路區長	黑木儀壽圭
	總務部長	千田專平	龍山區長	福島二一
	○ 이하, 모든 위원회에 참가.		永登浦區長	福澤重臣
			城東區長	市木孝嗣
			東大門區長	宮野寬
			西大門區長	三和卓
財政部 일반 경제부	府會議員[日]	伊藤奉圭	府會議員[朝]	曹秉相(夏山茂)
		伊藤壽一		崔白洵(德山白洵)
		伊達四雄		李敏求
		石原憲一		金興培(野田勝弘)
		石森久彌		梁在昶(梁川在昶)
		石橋良祐		李斗用(松本斗用)
		加藤好晴		朴勝城(朝野晴義)
		加納一米		安錠遠
		太宰明		朴昌薰(木村昌薰)
		高井健次		鄭商熙(三井淸次)
		高澤藤子		朴疇明(三井疇明)
		梅林卯三郎		李昌業(廣山鍾香)
都政部	朝鮮殖産銀行 頭取: 林繁藏			
	漢江水力電氣 社長: 谷多喜磨			
	朝鮮米穀 社長: 矢島杉造			
都政部	府會議員[日]	伊達四雄	府會議員[朝]	崔白洵(德山白洵)

	현직	이름	현직	이름
都政部	府會議員[日]	石原憲一	府會議員[朝]	李敏求
		戶谷正路		曹秉相(夏山茂)
		加藤好晴		李弘鍾(中本弘鍾)
		高澤藤子		金興培(野田勝弘)
		南條晟		李昌業(廣山鍾香)
		內田鯤五郎		全富一
		野附勤一郎		
		近藤秋次郎		
		阿部喜之助		
		廣綱德太郎		
		鈴木文助		
經濟部	朝鮮金融組合聯合會會長: 松本誠			
	朝鮮生命 社長: 韓相龍			
	府會議員[日]	石川倦造	府會議員[朝]	尹琦燁(伊東立雄)
		井原荒太郎		姜昌熙(神岡昌熙)
		伊藤壽一		梁在昶(梁川在昶)
		加納一米		李斗用(松本斗用)
		太宰明		車相鎬(江村相鎬)
		高井健次		朴勝城(朝野晴義)
		梅林卯三郎		安錠遠
		藤崎謙祐		朴寧根(新井康弘)
				李定宰(芝村定宰)
				芮興洙(草內興洙)
文化衛生部	淑明女專校長: 小田省吾			
	每日新報社長: 李聖根(金川聖)			

	현직	이름	현직	이름
文化 衛生部	東洋拓殖 理事: 上內彦策			
	本町警察署長: 正岡喜一			
	延禧專門學校長: 尹致昊(伊東致昊)			
	京城園藝學園長: 方奎煥(頭山清)			
	府會議員[日]	伊藤奉圭	府會議員[朝]	洪必求(德山必求)
		石森久彌		李庚鳳
		石橋良祐		金泰濮(金井泰濮)
		中村郁一		朴永敏(新井永敏)
		上杉直三郎		朴昌薰(木村昌薰)
		栗本正隆		朴疇明(三井疇明)
		柳樂達見		鄭商熙(三井清次)
		山口友造		
		山崎廣龜		
		山中大吉		
		森安敏暢		